

獨逸의 租稅基本法과 財政法院法

— 原典翻譯 및 註解 —

韓國稅務士會 附設

韓 國 租 稅 研 究 所

◇ 研究責任者 ◇

李 愚 澤 (本研究所 研究委員)
(漢陽大教授・經營博)

張 台 柱 (漢陽大教授・法博)

머 리 말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조세연구의 대부분은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소에서도 그간 많은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를 해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조세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一過性的의 효과에 그쳐 애써 이룩한 연구의 결과가 사장되고 마는 예도 많이 있어 종종 연구의 성과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게 되기도 하였다.

본 연구는 외국의 租稅制度和 行政을 연구자의 의사에 따라 각색하거나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번역하여 소개하려는 뜻에서 시도되었다. 동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註解를 달아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외국의 法制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기초적 연구에 해당하여 한번 연구가 실행되면 이후 계속하여 그 효용성을 가질 수 있고 조세연구자, 조세정책 담당자, 실무자들에게 폭 넓게 이용될 수 있어 연구의 효과를 크게 확장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독일의 조세법체계는 전세계적으로 앞선 租稅法 理論과 技法 그리고 精巧한 立法 技術에 의하여 이루어 지고 있다. 장구한 세월을 거치면서 학설과 판례를 통하여 합리성을 바탕으로 전개되어 온 독일의 租稅基本法과 財政法院法은 우리나라의 조세법 이론과 체계의 연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대륙법계국가라고 자처하는 우리나라의 현재의 租稅法體系를 독일의 그것과 비교함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의 조세법체계를 본질적으로 다시 짜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본서에 포함된 (세무)기업조사규칙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독일의 경우 세무행정에서 있어서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適正節次는 대부분 實定法水準에서 議會의 검증을 받아 시행되고 있다.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제반 適正節次問題를 입법수준에 올려놓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조세입법은 대부분 과세요건만 의회에서 정하고 실제 납세자의 조세액 결정시 납세자의 권익과 직결되는 대부분의 적정절차는 집행청에 위임되어 있어 조세법률주의는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가 大陸法系 國家에 속한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이러한 독일의 입법행태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본서가 사계의 심도있는 연구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라며 짧은 연구기간에 연구를 맡아 주신 본 연구소 研究委員겸 漢陽大 李愚澤 教授와 漢陽大 張台柱 教授의 노고에 심심한 치하를 드린다.

1995. 3.

韓國租稅研究所長 方 孝 宣

目 次

【第一部 租稅基本法 (77년 A0)】

第 1 編 總則

第 1 章 適用範圍

第1條 適用範圍	1

第2條 國際條約의 優位	5

第 2 章 租稅에 관한 概念規定

第3條 租稅, 租稅附帶給付	5

第4條 法律	5

第5條 裁量	5

第6條 財務官廳	5

第7條 公務員	6

第8條 住所	6

第9條 居所	6

第10條 主된 事務所	6

第11條 法人 등의 住所	6

第12條 事業所	7

第13條 固定代理人	7

第14條 經濟的 事業	7

第15條 家族	8

第 3 章 財務官廳의 管轄

第16條 事物管轄	8

第17條 土地管轄	8

第18條 分離確認	9

第19條 自然人的 所得 및 財産에 대한 租稅	10

第20條 法人, 人的 結合, 財産集團의 所得 및 財産에 대한 租稅	11

第21條 賣上稅	11

第22條 物稅	12

第23條	關稅 및 消費稅	12
第24條	補充管轄	12
第25條	土地管轄의 重複	12
第26條	管轄의 變更	13
第27條	管轄의 合意	13
第28條	管轄權의 紛爭	13
第29條	遲延의 憂慮	13
第 4 章 租稅秘密		
第30條	租稅秘密	14
第30a條	銀行顧客의 保護	15
第31條	課稅基礎의 通知	16
第31a條	不法就業團束을 위한 通知	16
第 5 章 公務員 責任의 制限		
第32條	公務員 責任의 制限	16
第 2 編 租稅債務法		
第 1 章 租稅義務者		
第33條	租稅債務者	19
第34條	法定代理人 및 財産管理人の 義務	19
第35條	處分權者の 義務	20
第36條	代理權의 消滅	20
第 2 章 租稅債務關係		
第37條	租稅債務關係에서 發生하는 請求權	20
第38條	租稅債務關係에 의한 請求權의 發生	21
第39條	歸屬	21
第40條	法律違反行爲 또는 良俗違反行爲	21
第41條	無效한 法律行爲	21
第42條	法形成可能性의 濫用	22
第43條	租稅債務者, 租稅償還債權者	22
第44條	連帶債務者	22
第45條	包括權利承繼	23

第46條	讓渡, 擔保, 押留	23
第47條	消滅	24
第48條	第3者에 의한 給付, 第3者의 責任	24
第49條	失蹤	24
第50條	消費稅의 消滅 및 無條件化, 條件附消費稅債務의 移轉	24

第 3 章 租稅優待目的

第51條	通則	25
第52條	公益目的	25
第53條	慈善目的	26
第54條	宗教目的	27
第55條	公共性	27
第56條	專一性	28
第57條	直接性	28
第58條	租稅優待가 排除되지 않는 活動	28
第59條	租稅優待의 要件	29
第60條	定款의 要件	29
第61條	定款에 의한 財産拘束	29
第62條	定款에 의한 財産拘束의 例外	30
第63條	事實上 事業執行에 대한 要件	30
第64條	租稅義務있는 經濟的 事業	30
第65條	目的適合事業	31
第66條	社會福祉事業	31
第67條	病院	32
第67a條	스포츠 行幸	32
第68條	個個의 目的適合事業	32

第 4 章 責任

第69條	代理人의 責任	33
第70條	代理人의 責任	34
第71條	脫稅者와 租稅犯의 責任	34
第72條	計定眞實性의 義務違反에 대한 責任	34

第73條	機關關係에서의 責任	34
第74條	物件所有者の 責任	35
第75條	事業引受人의 責任	35
第76條	物上責任	36
第77條	受忍義務	36
第 3 編 一般節次規定		
第 1 章 節次의 諸原則		
第 1 節 節次에의 關與		
第78條	關係人	37
第79條	行爲能力	37
第80條	代理人 및 補佐人	37
第81條	聯權에 의한 代理人의 任命	39
第 2 節 公務員 및 其他 者의 除斥 및 忌避		
第82條	除斥者	40
第83條	偏見의 憂慮	41
第84條	委員會의 委員의 忌避	41
第 3 節 課稅의 諸原則, 證據方法		
第 1 款 通則		
第85條	課稅의 諸原則	42
第86條	節次의 開始	42
第87條	公用語	43
第88條	調查의 原則	43
第89條	助言, 情報	43
第90條	關係人의 協力義務	44
第91條	關係人의 意思聽取	44
第92條	證據方法	45
第 2 款 情報 및 鑑定人의 鑑定에 의한 立證		
第93條	關係人 및 其他의 者의 情報義務	45
第93a條	一般通知義務	46
第94條	宣誓에 의한 訊問	47

第95條 宣誓에 대신하는 保證	48
第96條 鑑定人의 依賴	49
第 3 款 文書 및 檢證에 의한 立證	
第97條 文書의 提出	50
第98條 檢證	51
第99條 土地 및 空間에의 出入	51
第100條 有價物의 提出	51
第 4 款 情報拒否權 및 提出拒否權	
第101條 家族의 情報拒否權 및 宣誓拒否權	52
第102條 一定한 職業上의 秘密保護를 위한 情報拒否權	52
第103條 犯罪 또는 秩序違反에 대한 訴追憂慮가 있는 경우의 情報拒否權	53
第104條 鑑定 및 文書의 提出의 拒否	53
第105條 官公署의 默秘義務에 대한 情報義務 및 提出義務의 關係	54
第106條 公益侵害의 경우의 情報義務 및 提出義務의 制限	54
第 5 款 情報義務者 및 鑑定人의 補償	
第107條 情報義務者 및 鑑定人의 補償	54
第 4 節 期間, 期限, 原狀回復	
第108條 期間 및 期限	54
第109條 期間의 延長	55
第110條 原狀回復	55
第 5 節 司法共助 및 行政共助	
第111條 行政共助義務	56
第112條 行政共助의 要件 및 限界	56
第113條 官廳의 選擇	57
第114條 行政共助의 實施	57
第115條 行政共助의 費用	58
第116條 租稅犯의 告發	58
第117條 租稅事案에 있어 國家間의 司法共助 및 行政共助	58
第 2 章 行政行爲	
第118條 行政行爲의 概念	60

第119條	行政行爲의 明確性과 形式	60
第120條	行政行爲의 附款	61
第121條	行政行爲의 理由附記	62
第122條	行政行爲의 告知	62
第123條	受領代理人의 選任	63
第124條	行政行爲의 有效	63
第125條	行政行爲의 無效	64
第126條	節次의 瑕疵 및 形式의 瑕疵의 治癒	65
第127條	節次의 瑕疵 및 形式의 瑕疵의 效果	66
第128條	瑕疵있는 行政行爲의 轉換	66
第129條	行政行爲시의 明白한 잘못	66
第130條	違法한 行政行爲의 取消	66
第131條	適法한 行政行爲의 撤回	67
第132條	權利救濟에 있어서 取消, 撤回, 廢止 및 變更	68
第133條	文書 및 物件의 返還	68

第 4 編 課稅의 實施

第 1 章 租稅義務者의 把握

第 1 節 身分登錄 및 事業登錄

第134條	身分登錄 및 事業登錄	69
第135條	身分登錄 및 事業登錄에 대한 協力義務	69
第136條	身分登錄에 대한 變更通知	70

第 2 節 申告義務

第137條	法人, 人的 結合, 財産集團의 租稅上の 把握	70
第138條	營利活動에 대한 申告	70
第139條	特殊한 경우에 있어서 事業의 申告	71

第 2 章 協力義務

第 1 節 記帳 및 記錄의 作成

第140條	他法律에 의한 記帳義務 및 記錄作成義務	71
第141條	一定한 租稅義務者의 記帳義務	72
第142條	農林業者에 대한 補充規定	73

第143條	商品受納의 記錄	73
第144條	商品販賣의 記錄	73
第145條	記帳 및 記錄에 대한 一般的 要請	74
第146條	記帳 및 記錄에 대한 秩序規定	74
第147條	資料의 保存에 대한 秩序規定	75
第148條	輕減의 承認	76
第 2 節 租稅申告		
第149條	申告義務者	77
第150條	租稅申告의 形式 및 內容	77
第151條	官公署에서의 租稅申告書의 作成	78
第152條	遲延加算金	79
第153條	申告書의 訂正	79
第 3 節 計定眞實性		
第154條	計定眞實性	80
第 3 章 確定節次 및 確認節次		
第 1 節 租稅確定		
第 1 款 通則		
第155條	租稅確定	82
第156條	租稅確定의 中止, 端數切捨	83
第157條	租稅決定의 形式 및 內容	83
第158條	記帳의 證據力	83
第159條	信託關係의 證明	83
第160條	債權者 및 支給受領者의 名稱	84
第161條	在庫에 대한 數量不足	84
第162條	課稅基礎의 推計	84
第163條	衡平을 理由로 하는 租稅의 特別確定	85
第164條	事後調査를 留保한 租稅確定	85
第165條	假租稅確定, 租稅確定의 延期	86
第166條	租稅確定의 第3者에 대한 效力	86
第167條	納稅申告, 收入印紙 또는 收入證紙의 使用	86

第168條 納稅申告의 效力	86
第 2 款 確定의 時效	
第169條 確定期間	87
第170條 確定期間의 開始	87
第171條 進行의 停止	88
第 3 款 確定力	
第172條 租稅決定의 取消 및 變更	90
第173條 새로운 事實 또는 새로운 證據方法에 의한 租稅決定의 取消 또는 變更	91
第174條 循環하는 租稅確定	91
第175條 其他의 경우에 租稅決定의 取消 또는 變更	93
第176條 租稅決定의 取消 및 變更에 대한 信賴保護	93
第177條 法的 誤謬의 訂正	94
第 4 款 費用	
第178條 關稅官廳의 特別한 行爲에 關聯한 費用	94
第 2 節 課稅基礎의 分離確認, 租稅算定基準額의 確定	
第 1 款 分離確認	
第179條 課稅基礎의 確認	95
第180條 課稅基礎의 分離確認	96
第181條 分離確認, 確認期間, 申告義務에 관한 節次規定	98
第182條 分離確認의 效力	99
第183條 統一確認에 關聯한 受領代理人	99
第 2 款 租稅算定額의 確定	
第184條 租稅算定額의 確定	100
第 3 節 分割 및 配分	
第185條 通則의 適用	101
第186條 關係人	101
第187條 書類의 閱覽	101
第188條 分割決定	101
第189條 分割의 變更	102

第190條 配分節次	102
第 4 節 責任	
第191條 責任決定, 受忍決定	102
第192條 契約에 의한 責任	104
第 4 章 臨場調査	
第 1 節 通則	
第133條 臨場調査의 許容	106
第194條 臨場調査의 事物上の 範圍	106
第195條 管轄	107
第196條 調査命令	107
第197條 調査命令의 告知	107
第198條 證明義務, 臨場調査의 開始	108
第199條 調査의 原則	108
第200條 租稅義務者の 協力義務	108
第201條 終結協議	109
第202條 調査報告의 內容 및 告知	109
第203條 短期臨場調査	109
第 2 節 臨場調査에 기초한 拘束確言	
第204條 拘束確言의 要件	110
第205條 拘束確言의 形式	110
第206條 拘束力	110
第207條 拘束確言의 實效, 取消 및 變更	110
第 5 章 租稅査察(關稅査察)	
第208條 租稅査察(關稅査察)	111
第 6 章 特別한 경우의 租稅監督	
第209條 租稅監督의 客體	111
第210條 財務官廳의 權限	112
第211條 監督을 받는 者の 義務	113
第212條 施行規定	113
第213條 特別監督措置	114

第214條 受任者	114
第215條 監督手段으로서의 保全	114
第216條 聯邦에의 所有權의 移轉	115
第217條 租稅補助者	116

第 5 編 徵收節次

第 1 章 租稅債務關係에서 發生하는 請求權의 實行, 納付期限 및 消滅

第 1 節 租稅債務關係에서 發生하는 請求權의 實行 및 納付期限

第218條 租稅債務關係로 發生한 請求權의 實行	117
第219條 責任決定에 關聯한 納付督促	117
第220條 納付期限	118
第221條 다른 納付期限의 指定	118
第222條 猶豫	119
第223條 延納	119

第 2 節 支給, 相計, 免除

第224條 支給의 場所, 支給日	119
第224a條 支給에 代身한 美術品の 引導	120
第225條 償還의 順序	120
第226條 相計	121
第227條 免除	121

第 3 節 支給의 時效

第228條 時效의 對象, 時效期間	121
第229條 時效의 開始	121
第230條 時效의 停止	122
第231條 時效의 中斷	122
第232條 時效의 效力	122

第 2 章 利子, 延滯加算金

第 1 節 利子

第233條 原則	123
第233a條 租稅追加請求와 租稅還給에 관한 利子	123
第234條 猶豫利子	123

第235條 脫稅에 관한 租稅利子	124
第236條 還給額에 대한 訴訟 系屬中の 利子	124
第237條 執行停止의 경우의 利子	125
第238條 利子額 및 利子計算	126
第239條 利子の 確定	126

第 2 節 延滯加算金

第240條 延滯加算金	127

第 3 章 擔保의 提供

第241條 擔保提供의 種類	127
第242條 通貨供託의 效力	128
第243條 有價證券에 대한 質權設定	129
第244條 適切한 租稅保證人	129
第245條 그외 다른 有價物에 의한 擔保의 提供	130
第246條 收納價格	130
第247條 擔保의 代替	130
第248條 補充義務	130

第 6 編 執行

第 1 章 通則

第249條 執行官廳	131
第250條 執行委託	131
第251條 執行possible한 行政行爲	131
第252條 執行債權者	131
第253條 執行債務者	132
第254條 執行開始要件	132
第255條 公法人에 대한 執行	132
第256條 執行에 대한 異議	132
第257條 執行의 停止 및 制限	132
第258條 執行의 一時停止 또는 一時制限	133

第 2 章 金錢債權에 대한 執行

第 1 節 通則

第259條	督促	133
第260條	債務原因의 記載	133
第261條	中止	133
第262條	第3者의 權利	133
第263條	夫婦에 대한 執行	134
第264條	用益權者에 대한 執行	134
第265條	相續人에 대한 執行	134
第266條	有限責任의 其他의 경우	134
第267條	權利能力없는 人的 結合에 대한 執行節次	134

第 2 節 連帶債務의 配分

第268條	原則	135
第269條	申請	135
第270條	配分의 一般基準	135
第271條	財産稅額에 대한 配分基準	136
第272條	豫納稅額에 대한 配分基準	136
第273條	稅額의 追加請求시 配分基準	136
第274條	特別配分基準	137
第275條	端數計算	137
第276條	未納稅額, 執行의 開始	137
第277條	執行	137
第278條	執行의 制限	138
第279條	配分決定의 形式 및 內容	138
第280條	配分決定의 變更	138

第 3 節 動産에 대한 執行

第 1 款 通則

第281條	押留	139
第282條	押留의 效力	139
第283條	瑕疵擔保請求權의 排除	139
第284條	宜誓에 대신하는 保證	139

第 2 款 物件에 대한 執行

第285條	執行官	141
第286條	物件에 대한 執行	141
第287條	執行官의 權限	142
第288條	證人의 立會	142
第289條	執行時間	142
第290條	執行官의 催告 및 通知	142
第291條	記錄簿	143
第292條	押留의 回避	143
第293條	제3자의 質權 및 優先權	143
第294條	未分離의 果實	143
第295條	物件의 押留禁止	144
第296條	換價	144
第297條	換價의 停止	144
第298條	公賣	144
第299條	競落	144
第300條	最低競賣價額	145
第301條	公賣의 中止	145
第302條	有價證券	145
第303條	記名證券	146
第304條	未分離果實의 公賣	146
第305條	特別換價	146
第306條	航空機의 豫備部品の 執行	146
第307條	參加押留	146
第308條	重複押留시의 換價	147
第 3 款 債權 및 其他 財産權에 대한 執行		
第309條	金錢債權의 押留	147
第310條	抵當權에 의해 擔保된 債權의 押留	147
第311條	船舶抵當權 또는 航空機 登錄質權에 의해 擔保된 債權의 押留	148
第312條	背書할 수 있는 證券의 債權押留	148
第313條	繼續收入의 押留	149

第314條	徵收處分	149
第315條	徵收處分の效力	149
第316條	第三債務者の陳述義務	150
第317條	換價의 다른 方法	150
第318條	物件의 引導 또는 給付의 請求權	150
第319條	債權의 押留禁止	151
第320條	債權의 重複押留	151
第321條	其他 財産에 대한 執行	151
第 4 節 不動産에 대한 執行		
第322條	節次	152
第323條	權利承繼人에 대한 執行	153
第 5 節 假押留		
第324條	物的 假押留	153
第325條	物的 假押留의 取消	154
第326條	人的 保全假押留	154
第 6 節 擔保의 換價		
第327條	擔保의 換價	154
第 3 章 金錢債權 이외의 給付에 대한 執行		
第 1 節 行爲, 受忍 또는 不作爲에 대한 執行		
第328條	強制節次	155
第329條	強制金	155
第330條	代執行	155
第331條	直接強制	155
第332條	強制手段의 警告	155
第333條	強制手段의 確定	156
第334條	代替強制拘留	156
第335條	強制節次의 終了	156
第 2 節 擔保의 強制		
第336條	擔保의 強制	156
第 4 章 費用		

第337條	執行費用	157
第338條	手數料의 種類	157
第339條	押留手數料	157
第340條	押收手數料	158
第341條	換價手數料	158
第342條	2人以上的 債務者	158
第343條	端數計算	159
第344條	執行經費	159
第345條	旅費 및 實費辨償	160
第346條	事案의 잘못된 取扱, 確定期間	160

第 7 編 裁判의의 權利救濟節次

第 1 章 權利救濟의 許容

第347條	權利救濟의 許容	161
第348條	異議申請	162
第349條	訴願	163
第350條	不利益	163
第351條	他行政行爲의 拘束力	164
第352條	統一確認決定에 대한 權利救濟權	164
第353條	權利承繼人의 權利救濟權	164
第354條	權利救濟의 拋棄	164

第 2 章 一般節次規定

第355條	權利救濟期間	165
第356條	權利救濟의 敎示	165
第357條	權利救濟의 申請	165
第358條	適法要件의 審査	166
第359條	關係人	166
第360條	節次에의 參加	166
第361條	執行의 停止	167
第362條	權利救濟의 取下	167
第363條	節次의 停止	167

第364條	課稅基礎의 通知	168
第365條	節次規定의 準用	168
第366條	權利救濟決定書의 形式과 內容	168
第 3 章 特別節次規定		
第367條	異議申請에 대한 決定	168
第368條	訴願에 대한 裁決	169
第 8 編 刑事規定 및 科料規定, 刑事節次 및 科料節次		
第 1 章 刑事規定		
第369條	租稅犯	170
第370條	脫稅犯	170
第371條	脫稅犯의 自認	171
第372條	禁制違反	172
第373條	職業的, 暴力的 및 集團的 密輸	172
第374條	租稅贓物犯	173
第375條	竝科效果	173
第376條	訴追時效의 中斷	174
第 2 章 科料規定		
第377條	租稅秩序違反	174
第378條	重過失에 의한 租稅免稅犯	174
第379條	租稅危害行爲	174
第380條	源泉徵收租稅危害行爲	175
第381條	消費稅危害行爲	175
第382條	輸入稅危害行爲	176
第383條	租稅還給請求權 및 償還請求權의 不法取得	176
第384條	訴追權의 時效	177
第 3 章 刑事節次		
第 1 節 通則		
第385條	節次規定의 適用	177
第386條	租稅犯에 대한 財務官廳의 管轄	177
第387條	事物管轄權을 가지는 財務官廳	178

第388條	土地管轄權을 가진 財務官廳	178
第389條	關聯刑事事件	179
第390條	管轄權의 重複	179
第391條	管轄法院	179
第392條	辯護	179
第393條	刑事節次의 課稅節次에 대한 關係	180
第394條	所有權의 移轉	181
第395條	財務官廳의 書類閱覽	181
第396條	節次의 停止	182
第 2 節 調查節次		
第 1 款 通則		
第397條	刑事節次의 開始	182
第398條	輕微한 罪를 理由로 하는 中止	182
第 2 款 租稅犯에 대한 財務官廳의 節次		
第399條	財務官廳의 權利 및 義務	183
第400條	略式命令 發令의 申請	183
第401條	獨立節次에 있어서 附加效果命令의 申請	183
第 3 款 檢察廳의 節次에 있어서 財務官廳의 地位		
第402條	財務官廳의 一般的 權利 및 義務	183
第403條	財務官廳의 關與	184
第 4 款 租稅查察 및 關稅查察		
第404條	租稅查察 및 關稅查察	184
第 5 款 證人 및 鑑定人의 補償		
第405條	證人 및 鑑定人의 補償	184
第 3 節 裁判節次		
第406條	略式命令節次 및 獨立節次에 있어서 財務官廳의 協力	184
第407條	其他의 境遇에 있어서 財務官廳의 關與	185
第 4 節 節次費用		
第408條	節次費用	185
第 4 章 科料節次		

第409條 管轄行政官廳	186
第410條 科料節次를 위한 補充規定	186
第411條 辯護士, 稅務士, 稅務代理士, 經濟檢査士 또는 公認帳簿檢査士에 대한 科料節次	186
第412條 送達, 執行, 費用	187
第 9 編 終結規定	
第413條 基本權의 制限	188
第414條 베를린 조항(폐지)	188
第415條 效力發生	188
附錄 I. 《19977년 租稅基本法 施行法 抜譯》	189
附錄 II. 《少額租稅 施行法》	204

【第二部 財政法院法】

第 1 編 法院組織	
第 1 章 法院	
第1條 財政裁判管轄權의 獨立性	207
第2條 財政裁判管轄權의 法院의 種類	207
第3條 財政法院의 設置, 移轉, 廢止	208
第4條 法院組織法의 適用	208
第5條 財政法院의 構成	208
第6條 訴訟의 單獨法官에의 委任	209
第7條 削除	210
第8條 削除	210
第9條 削除	210
第10條 聯邦財政法院의 構成	210
第11條 大裁判部	210
第12條 事務局	211

第13條	司法供助 및 行政供助	211
第 2 章 裁判官		
第14條	終身法官	212
第15條	試補法官	212
第 3 章 名譽職法官		
第16條	名譽職法官의 地位	213
第17條	名譽職法官의 委囑要件	213
第18條	名譽職裁判官의 除斥事由	213
第19條	名譽職裁判官 任命不適格者	214
第20條	名譽職裁判官에의 任命拒絕權	214
第21條	名譽職裁判官職 解免의 事由	215
第22條	名譽職裁判官의 選出	215
第23條	選舉委員會	215
第24條	議員數의 決定	216
第25條	候補者名簿	216
第26條	選任節次	216
第27條	名簿 및 補助名簿	216
第28條	削除	217
第29條	補償	217
第30條	秩序罰	217
第 4 章 司法行政		
第31條	勤務監督	218
第32條	行政事務委託의 禁止	218
第 5 章 財政訴訟方法 및 管轄權		
第 1 節 財政訴訟方法		
第33條	財政訴訟方法의 許容	218
第34條	削除	219
第 2 節 事物管轄		
第35條	財政法院의 事物管轄	220
第36條	聯邦財政法院의 事物管轄	220

第37條	削除	220
第 3 節 土地管轄		
第38條	財政法院의 土地管轄	220
第39條	聯邦財政法院에 의한 法院의 指定	221
第 2 編 節次		
第 1 章 訴訟의 種類, 當事者適格, 訴訟의 要件, 訴訟의 拋棄		
第40條	取消訴訟, 義務履行訴訟	222
第41條	確認訴訟	223
第42條	取消請求不能의 行政行爲	224
第43條	訴의 併合	224
第44條	裁判外의 權利上의 救濟	225
第45條	飛躍訴訟	225
第46條	不作爲訴訟	226
第47條	取消訴訟의 出訴期間	227
第48條	訴權	227
第49條	削除	228
第50條	訴訟의 拋棄	228
第 2 章 節次總則		
第51條	除斥 및 忌避	229
第52條	法庭警察 등	229
第53條	送達	229
第54條	期間進行의 開始	229
第55條	期間의 敎示	230
第56條	地位回復	230
第57條	節次의 關係人	231
第58條	訴訟行爲能力	231
第59條	共同訴訟	231
第60條	訴訟參加 (Beiladungen)	231
第60a條	參加의 限界	232
第61條	官廳의 參加	232

第62條 代理人 및 補助人	233
第 3 章 第1審 訴訟	
第63條 訴訟提出處	234
第64條 訴訟의 提起方法	234
第65條 訴狀의 必須內容	234
第66條 訴訟係屬	235
第67條 訴의 變更	235
第68條 係爭行政行爲의 變更	235
第69條 執行의 停止	235
第70條 訴訟係屬의 效力 : 權利救濟의 許容에 관한 裁判	237
第71條 訴狀의 送達	237
第72條 訴의 取下	237
第73條 들 以上의 訴의 併合	238
第74條 審理의 停止	238
第75條 關係人에 대한 課稅基礎의 通知	238
第76條 法院에 의한 事實調査	238
第77條 書面	239
第78條 書類의 閱覽	239
第79條 裁判의 迅速化措置	239
第79a條 準備節次의 裁判	240
第79b條 期間指定	241
第80條 本人出頭	241
第81條 證據調査	242
第82條 證據調査의 節次	242
第83條 證據調査에서 關係人의 權利	242
第84條 證言拒否權	242
第85條 證人의 補助義務	242
第86條 書類提出 및 情報提供	243
第87條 行政廳 등의 證言	243
第88條 鑑定人의 忌避에 대한 그밖의 理由	243

第89條	證書提出의 強制	243
第90條	口頭辯論에 의한 裁判의 原則 - 豫備決定	243
第90a條	口頭審理없는 裁判	244
第91條	關係人の 召喚	244
第92條	辯論의 進行	244
第93條	係爭事項의 解明	245
第94條	調書	245
第94a條	公正한 裁量에 의한 節次	245
第 4 章 判決 및 其他 裁判		
第95條	判決	245
第96條	自由心證, 判決의 必要的 內容	245
第97條	訴訟의 許容에 관한 中間判決	246
第98條	一部判決	246
第99條	請求原因에 관한 中間判決	246
第100條	判決에 의한 係爭行政行爲의 取消	246
第101條	行政行爲發令의 判決	248
第102條	裁量權行使의 再審査	248
第103條	判決에 關係하는 法官	248
第104條	判決의 宣告 및 送達	248
第105條	判決의 形式	249
第106條	假決定	250
第107條	判決의 訂正	250
第108條	構成事實 訂正申請	250
第109條	判決의 補完	250
第110條	判決의 確定力	250
第111條	削除	251
第112條	削除	251
第113條	決定	251
第114條	假處分命令	252
第 5 章 上訴 및 再審節次		

第 1 節 上告

第115條	上告의 許容	253
第116條	許可를 요하지 않는 判決	254
第117條	削除	255
第118條	上告理由	255
第119條	聯邦法違反의 境遇	255
第120條	上告의 提起	256
第121條	節次規定	256
第122條	上告訴訟에 있어서 關係人	256
第123條	訴의 變更 및 召喚의 不許可	257
第124條	上告의 許可審査	257
第125條	上告의 取下	257
第126條	上告裁判	257
第127條	還送	258

第 2 節 抗告

第128條	抗告가 許容되는 境遇	258
第129條	抗告提出	259
第130條	聯邦財政法院의 更正과 提起	259
第131條	抗告의 延期的 效力	259
第132條	抗告에 관한 裁判	259
第133條	法院의 裁判에 대한 異議申請	259

第 3 節 再審

第134條	民事訴訟法의 適用	260

第 3 編 費用 및 執行

第 1 章 費用

第135條	費用義務者	261
第136條	費用의 相計	262
第137條	關係人의 費用負擔	262
第138條	決定에 의한 費用裁判	262
第139條	費用의 償還	262

第140條	削除	263
第141條	削除	263
第142條	貧民無料訴訟權(Bewilligung des Armenrechts)	263
第143條	費用에 대한 裁判	263
第144條	權利救濟의 取下 境遇의 訴訟費用에 대한 裁判	263
第145條	費用裁判의 取消	264
第146條	削除	264
第147條	削除	264
第148條	削除	264
第149條	償還費用의 確定	264
第 2 章 執行		
第150條	租稅基本法規定의 適用	264
第151條	民事訴訟法規定의 適用	264
第152條	金錢債權에 대한 執行	265
第153條	執行文을 요하지 않는 境遇	266
第154條	強制金賦課	266
第 4 編 經過規定 및 終結規定		
第155條	法院構成法, 民事訴訟法의 準用	267
第156條	削除	267
第157條	州法の 規定의 無效宣言의 效果	267
第158條	宣誓에 의한 訊問, 宣誓	267
第159條	削除	267
第160條	參加 및 召喚	267
第161條	舊法令의 廢止	268
第162-第181條	다른 租稅法律의 改正規定들로서 掲載되지 않음	269
第182條	削除	269
第183條	(베를린에서의 효력) 適用對象地域 없음	269
第184條	效力	269

【第三部 (稅務)企業調查規則】

第1條 (稅務)企業調查規則의 適用範圍	270
第2條 企業調查課의 所管事務	270
第3條 規模別 分類	271
第4條 企業調查의 範圍	271
第5條 企業調查의 命令	272
第6條 企業調查의 重點	273
第7條 從業員에 대한 質問	273
第8條 統制調查資料의 通知(Kontrollmitteilungen)	274
第9條 租稅刑事犯의 嫌疑	274
第10條 秩序違反의 嫌疑	275
第11條 終結論議	275
第12條 調查報告와 調查確認事項의 利用	275
第13條 콘체른 調查	276
第14條 콘체른 調查의 指揮	276
第15條 콘체른 調查의 開始	276
第16條 콘체른 調查의 實施를 위한 指針	277
第17條 콘체른 調查報告의 評價와 終了	277
第18條 其他 結合企業에 대한 企業調查	277
第19條 外國콘체른 企業에 대한 企業調查	277
第20條 協力の 態樣	277
第21條 企業의 選定 및 豫定の 協力에 관한 敎示	278
第22條 調查活動에 의한 協力	278
第23條 調查報告書	278
第24條 聯邦國稅廳과 州租稅行政廳 間 見解의 差異가 있는 境遇의 節次	278
第25條 企業調查官으로서 公務員의 使用	278
第26條 企業調查官으로서의 行政事務員의 活用	279
第27條 企業調查官 및 企業調查係長으로서의 投入	280
第28條 企業調查補助官	280

第29條	調査官의 身分證明書	280
第30條	企業調査官의 協議	280
第31條	專門(部門)個別調査官의 協議	281
第32條	企業카드函	281
第33條	콘체른 目錄	282
第34條	콘체른 目錄의 變更 및 補充	282
第35條	調査實施計劃의 作成	282
第36條	年間統計	283
第37條	企業調査記錄集	283
第38條	企業調査記錄集의 項目	283
第39條	標準率	284
第40條	主된 場所 및 從된 場所	284
第41條	施行	284
〈 譯 解 後 記 〉		286

【第一部 租稅基本法 (77년 A0)】

연방하원은 연방상원의 동의로 다음의 法을 의결하였다 :

1976년 3월 16일

(BGBI. IS. 76, 613 ; BStBl I 76, S. 157)

第 1 編 總則

第 1 章 適用範圍

第1條【適用範圍】 (1) 이 법률은 연방법 및 유럽共同體法에 의하여 규제되는
租稅償還¹⁾을 포함한 일체의 조세 중, 聯邦財務官廳 또는 州財務官廳에 의해

1) 租稅償還(Steuervergütung)과 租稅還給(Steuererstattung)

(1) 租稅償還(Steuervergütung)

기왕에 납부한 조세를 정산하여 환급해주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수출의
경우 수출용 원자재에 과세했던 세금을 환급해주는 관세환급과 유사하다. 따라
서 조세가 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납부자(Steuerträger=Steuerdesinatar)에게
가격에 포함되어 부과해진 경우, 조세채무자(Steuerschuldner)에게 환급한 것
은 조세상환이 아니다.

(2) 租稅還給(Steuererstattung)

① 조세, 조세상환, 책임액 혹은 조세부대급부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되
거나 반환되는 경우에, 이들 급부수령자에 대하여 조세가 환급되는 것 또는
반환된 금액의 반환청구권을 말한다.(제37조 2항)

② 조세환급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 조세채무자 또는 조세납부자에 의한 조세지급
- ㉡ 재무관청에 의한 조세반환
- ㉢ 재무관청에 의한 조세상환지급
- ㉣ 조세상환채권자에 의한 조세상환의 반환
- ㉤ 책임자에 의한 책임금액의 지급
- ㉥ 재무관청에 의한 책임금액의 반환

관리되는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2) 物稅 중 그 관리가 자치단체에 위임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법률규정을 적용한다.

1. 제1편 제1장, 제2장 및 제4장의 규정 (적용범위, 조세에 관한 개념규정, 조세비밀)
2. 제2편의 규정 (조세채무법)
3. 제82조에서 제84조까지의 규정을 제외한 제3편의 규정 (일반적 절차규정)
4. 제4편의 규정 (과세의 실행)
5. 제5편의 규정 (징수절차)
6. 제351조, 제361조 제1항 제2단, 제3항의 규정
7. 제8편의 규정 (형벌규정 및 過怠料규정²⁾, 형벌절차 및 過怠料절차³⁾)

㉔ 급부의무자에 의한 조세부대급부의 지급

㉕ 재무관청에 의한 조세부대급부의 반환

③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경우란 조세급부를 확정된 행정행위보다 많은 세액을 납부한 경우이다(통설). 행정행위가 무효인 경우는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경우에 해당한다.

2) 刑罰規定 및 刑罰節次

① 일반형벌과 행정형벌 및 일반형벌절차와 행정형벌절차가 있다.

② 일반형벌 및 일반형벌절차는 일반형사벌로서 형사소송법절차에 따라 처벌된다.

③ 행정형벌은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법상의 제재로서의 처벌을 말한다. 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절차에 따르나, 통고처분, 즉결심판, 보호처분 등의 특별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④ 과료와 벌금은 형벌의 일종으로 그 차이는 다음과 같다.

㉔ 科料: 刑法이 규정하는 형벌의 일종이며 벌금과 더불어 재산형이다. 그 금액이 적고, 또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과하여진다는 점에서 벌금과 차이가 있다. 과료는 500원 이상 5,000원 미만이다(법률학사전, 114면).

㉕ 罰金(Geldstrafe): 刑法이 규정하는 형벌의 일종이며 科料와 더불어 財産刑이다. 그 금액이 많다는 점에서 과료와 구별된다(법률학사전, 351면).

3) 過怠料(Bußgeld): 金錢罰의 일종으로서, 형벌인 罰金 및 科料와 구별하여 특히 과태료라는 명칭으로 과하여지는 것으로 過料라고 할 때도 있다. 性質·適用法原理·科罰節次 등에 따라 秩序罰, 執行罰, 및 懲戒罰의 인 것으로 大別할 수 있다(법률학사전, 116면). 행정법상으로는 행정질서벌의 경우와 지방

(3) 租稅附帶給付⁴⁾에 대하여는 이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4편 제3장에

자치법에 의한 경우가 있다.

① 행정질서벌인 경우

원칙적으로 범법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부과하지만 최근 일차적으로 주무관청에서 직접 부과징수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② 지방자치법에 의한 경우

지자법 제20조에 의한 :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다. 지자법 제130조 2항의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부과·징수한다. (지자법 제130조 3항, 제131조 2항)

* 독일의 벌과금(Bußgeld)제도

질서위반자에 대하여 과해지는 금전벌을 말한다. 이에 대한 기본법으로는 질서위반법률(Ordnungswidrigkeitengesetze)이 있다. 어떤 행위가 질서위반에 해당하는지는 각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다(예, 조세기본법). Bußgeld의 부과징수는 주무관청에 의하여 행해진다.

4) 租稅附帶給付(Steuerliche Nebenleistung)

(1) 語義

조세부대금부란 당초 확정된 조세에 대하여 별개의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관련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추가적 급부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Steuerliche Nebenleistung을 번역함에 있어서 Nebenleistung을 “附帶給付”로 할 것인지 또는 “附隨給付”로 할 것인지 용어상의 혼동이 있을 수 있다. 附帶란 “결달아서 덧붙임 또는 덧붙여서 한데 따르게 함”의 의미이고 附隨란 “붙어서 따라감 또는 붙좃음”(이희승, pp. 1284, 1292)이라고 할 때 전자는 竝列的事象으로 후자는 從屬的事象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의 Nebenleistung은 당초 조세의무액의 발생과 확정에 관계없이 별개의 사정에 의하여 추가로 부과되는 급부이므로 부수급부보다는 부대급부로 번역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들 각 경우의 내용과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다.

(2) 租稅附帶給付의 內容

조세급부의 내용은 遲延加算金(제152조)·利子(제233-제237조)·延滯加算金(제240조)·強制金(제329조)·費用(제337-제345조) 등 5가지가 있다.

㉞ 遲延加算金(Verspätungszuschlag: 제3조, 제152조, 제276조)

조세신고서의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기한내에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가산금(152조 1항)을 과할 수 있다. 단 신고의무의 불이행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지연가산금을 과하지 않는다. 지연가산금의 최고한도액(10,000DM)을 두고 있다. 지연가산금은 조세 또는 분리확인된 과세기초에 결합하여 확정되지만 이 확정은 독립된 행정행위이다. 조세의 확정시 관련 조세규정의 의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過怠料로서 부과하는 조세의 일

중. 결정되는 조세와 함께 산정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가산금은 국세 기본법에서 遲延加算税로 표시하고 있다.

(나) 利子

①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범위에 한하여 이자를 징수한다. 조세부대급부 및 이에 대응한 환급청구권에는 이자를 붙이지 않는다(제233조)

② 이자는 월 0.05%로 한다(제238조).

③ 이자징수가 개개의 사정으로 형평에 맞지 않는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할 수 있다(제234조 2항, 제227조 참조)

④ 이자와 구별해야 할 개념

㉠ 유예이자(Stundungszinsen): 조세채무관계를 발생한 청구권에 대하여 인정된 유예기간에 대하여 징수하는 이자(제234조)

㉡ 탈세에 관한 조세이자(Hinterziehungszinsen: 제235조 참조)

㉢ 환급에 대한 소송계속중의 이자(제236조 참조)

㉣ 집행정지 경우의 이자(제237조 참조)

(다) 延滯加算金(Säumniszuschlag(제3조, 제240조, 제254조)

① 조세가 법률요건이 충족되어(제218조) 확정된 후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지체된 경우 지연기간에 대한 배상적 의미로 이자에 상당하는 일정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연체가산금은 연체가 시작한 각 월에 대하여 100DM미만을 절사한 미납세액에 대하여 1%에 의한 연체가산금을 부과한다. 단, 5일 이내의 연체분에 대하여는 징수하지 않는다(제240조 3항). 또한 일정한 경우에 연체가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제227조)

③ 연체가산금은(제240조) 지연가산금(제152조)과 구별된다.

(㉠) 強制金(Zwangsgeld: 329조)

조세강제수단의 일종으로 강제수단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작위, 부작위, 급부, 수인의 의무를 강제할 수 있다. 대표적인 강제수단에는 강제금제도 이외에 대집행(제330조) 및 직접강제(제111조 이하, 제331조)가 있다. 강제금은 조세상 의무(예, 조세부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절차에서 재무관청이 과하는 금전강제수단으로 개개의 강제금은 5,000DM을 초과할 수 없다. 의무가 강제수단의 확정후 이행된 때는 그 집행을 중지(제335조)한다. 강제금이 납부되지 않는 경우, 대체 강제구류를 명할 수 있고 기간은 1일 이상 2주 이하로 한다(제334조). 강제금은 조세부대급부(제3조 2항)이고, 이는 세채무관계에서 발생한 청구권이다(제37조 1항 참조).

(㉡) 費用(Kosten)

이에 관하여는 제178조, 제337조-제345조 등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178조에서는 비용발생의 구체적인 경우를 상세히 예시하고 있다.

서 제6장까지의 규정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第2條 [國際條約의 優位] 基本法 제59조 제2항 제1단의 규정에서 말하는 타국과의 과세에 관한 조약은, 이것이 직접 적용되는 國內法으로 되어있는 한 조세법에 우선한다.

第 2 章 租稅에 관한 概念規定

第3條 [租稅, 租稅附帶給付] (1) 조세란 특별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가 아니라 공법상의 단체가 수입을 얻기 위하여 법률이 당해 급부의무와 관련된 요건사실에 해당하는 일체의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금전급부를 말한다. 수입의 획득은 부수적 목적일 수 있다. 관세 및 賦課金⁵⁾은 이 법에서 말하는 조세이다.

(2) 物稅란 토지세 및 영업세를 말한다.

(3) 租稅附帶給付란 지연가산금 (제152조), 이자 (제233조에서 제237조까지), 연체가산금 (제240조), 강제금 (제329조) 및 비용 (178조, 제337조에서 제345조까지)을 말한다.

(4) 이자 및 연체가산금의 수입은 징수권을 가진 각 단체에게 귀속한다.

기타 조세부대급부는 이를 관리하는 단체의 수입이 된다.

第4條 [法律] 법률이란 각 법규를 말한다.

第5條 [裁量] 財務官廳은 그 재량에 따라 행할 것을 授權받은 경우에는 授權의 목적에 따라 재량을 행사하고 당해 재량의 법률에 의한 한계를 준수해야 한다.

第6條 [財務官廳] (1) 관청은 행정의 직무를 관장하는 곳을 말한다.

5) 賦課金(Abschöpfung: 제3조)

특히 유럽공동체에서 특정 농산물에 관한 거래에 과하는 조세의 일종이다. 이는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로 관세와 유사하다.

(2) 이 법률에서 말하는 財務官廳이란 재무행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다음에 언급하는 聯邦財務官廳 및 州財務官廳을 말한다.

1. 최고관청으로서 연방재무장관 및 재무행정을 관할하는 주최고관청
2. 연방상급관청으로서 연방브랜드전매행정청, 연방재무청 및 관세수사관청
3. 주의 상급관청으로서 회계청
4. 중급관청으로서 재무국
5. 지방관청으로서 支分官署를 포함한 세관본서, 관세사찰서, 세무서 및 특별 州財務官廳

第7條 [公務員] 공무원이란 독일법에 의해 다음의 자를 말한다.

1. 관리 또는 재판관 (형법전 제11조 제1항 제3호)
2. 기타 공법상의 직무관계에 있는 자
3. 그 밖에 관청 혹은 기타 기관에서 또는 이들의 위임에 의하여 행정의 職務執行을 위임받은 자

第8條 [住所] 주소란 주거를 가지거나 사용할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사람이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

第9條 [居所] 거소란 일정한 장소 또는 일정한 영역내에서 단지 일시적인 체재가 아니라고 인식되는 상황에서 사람이 체재하는 장소를 말한다. 6개월을 초과하여 계속하는 체재는 항상 또는 처음부터 이 법률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거소로 간주된다. 체재가 단기간 중단되더라도 居所로 인정된다. 그 체재가 오로지 관광, 휴양, 요양 또는 이들과 유사한 사적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지고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단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第10條 [主된 事務所] 주된 사무소란 업무상의 지휘관리의 주된 곳을 말한다.

第11條 [法人 등의 住所] 법인, 인적 결합, 재산집단은 법률, 정관, 규약, 기부행위 또는 이들과 유사한 행위에 의하여 정해진 장소에 그 주소를 가진

다.

第12條 [事業所] 사업소란 기업활동에 제공되는 고정적인 모든 업무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특히 다음의 사항들은 사업소로 간주한다.

1. 주된 사무소
2. 지점
3. 영업소
4. 제조장 및 작업소
5. 상품창고
6. 구입장 및 판매장
7.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지하자원획득을 위한 고정장소, 전진기지 혹은 이동기지
8. 건설작업 또는 기계설치에 대해서는 그 장소가 이동하는데 6월을 초과하여 계속되는 다음의 前進基地 또는 이동기지
 - a) 개개의 건설작업 또는 기계설치
 - b) 기간적으로 병행하는 두개 이상의 건설작업 또는 기계설치 중의 하나
 - c) 중단없이 차례로 계속되고 있는 두개 이상의 건설작업 또는 기계설치

第13條 [固定代理人] 고정대리인이란 계속적으로 기업의 업무를 관리하고 기업의 개별지시에 따르는 자를 말한다. 고정대리인이란 특히 기업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속하여 행하는 자를 말한다.

1. 계약을 체결하고, 중개 또는 주문을 받는 일
2. 재화 또는 상품재고를 관리하고 그 인도를 하는 일

第14條 [經濟的 事業] 6) 경제적 사업경영이란 수입 또는 기타 경제적인 이익

6) “事業”의 정의는 세법을 통일적으로 해석하고 집행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업의 정의가 뚜렷하지 않고 그때그때 편의에 따라 정의하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세법적용상 혼란을 초래하는 예가 많다. 특히 기업과세에 있어서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에서 사업에 대한 정의가 명확히 요구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소득세법에서 사업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을 추구하고 재산관리의 범위를 넘는 행위를 통한 독립한 계속적 활동을 말한다. 이익획득의 의도는 요하지 않는다. 재산관리란 통상 예컨대 자본재산을 증식시키거나 부동산을 임대차하는 것과 같이 재산을 이용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第15條 [家族] (1) 가족이란 다음에 언급한 자를 말한다.

1. 약혼자
2. 배우자
3. 직계혈족 및 직계인척
4. 형제자매
5. 형제자매의 자
6.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7. 양친의 형제자매
8. 장기간에 걸친 부양관계에 의하여 친자와 동일하게 주거공동체로 서로 결합되어 있는 자(수양부모 및 수양자)

(2) 제1항에 규정된 자는 다음의 각호의 경우에도 가족으로 한다.

1. 제2호, 제3호 및 제6호의 경우에, 당해 관계의 기초가 되는 혼인이 존속하지 않게 되는 경우
2. 제3호부터 제7호의 경우에 혈족관계 또는 인척관계가 입양에 의해 소멸되는 경우
3. 제8호의 친자처럼 계속 결합되어 있으나 더 이상 주거공동체가 존속하지 않는 경우

第 3 章 財務官廳의 管轄

第16條 [事物管轄] 재무관청의 事物管轄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무행정
에 관한 법에 의한다.

第17條 [土地管轄] 土地管轄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다음의 규정에 의한다.

第18條 [分離確認] (1) 제180조의 규정에 의한 분리확인에 대한 토지관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農林業, 부동산, 사업용부동산 및 광물채굴권에 있어서는 사업, 부동산, 사업용부동산 및 광물채굴권이 소재하는 구역을 관할하는 세무서 또는 사업, 부동산, 사업용부동산 혹은 광물채굴권이 다수의 세무서의 관할구역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가장 가치있는 부분이 소재하는 구역을 관할하는 세무서 (소재지관할세무서)
 2. 이 법률의 적용범위내에 주된 사무소를 가진 영업에 있어서는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구역을 관할하는 세무서, 이 법률의 적용범위내에 주된 사무소를 갖지 않는 영업에 있어서는 사무소가 소재하는 구역을 관할하는 세무서, 사업소가 다수 있는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무소가 존재하는 구역을 관할하는 세무서 (사무소소재지관할세무서)
 3. 자유직활동에 있어서는 직업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는 구역을 관할하는 세무서
 4. 농림업, 영업 또는 자유직활동에 의한 소득 이외의 소득으로 제180조 제1항 제2호 a의 규정에 의해 분리하여 확인되는 소득으로 다수가 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소득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구역을 관할하는 세무서 또는 관리가 이 법률의 적용범위내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공동소득이 발생하는 재산의 가장 가치있는 부분이 소재하는 구역을 관할하는 세무서. 제180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18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확인의 경우에도 본호를 준용한다.
- (2) 分離確認이 다수의 조세의무자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또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토지관할이 정하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대상지분이 구속하는 납세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에 관한 조세에 대하여 제19조 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해 관할을 갖는 각 세무서가 토지관할권을 가진다. 이들 세무서가 재무행정법 제17조 제2항 제3단 및 제4단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기초하고 분리확인에 대하여 사물관할권을 가지지 않는 경우는 당해세무서에 대신하여 사물관할권을 가진 세무서가 이를 행한다.

第19條 [自然人的 所得 및 財産에 대한 租稅] (1) 자연인의 소득 및 재산에 대한 과세에 대하여는 조세의무자의 주소가 소재하는 구역을 관할하는 세무서,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가 소재하는 구역을 관할하는 세무서가 토지관할권을 가진다(주소지관할세무서). 이 법률의 적용범위내에 다수의 주소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의무자가 주로 체재하는 주소를 기준으로 한다. 배우자와 계속하여 별거하지 않는 기혼의 조세의무자가 다수의 주소를 갖는 경우에는 그 가족이 주로 체재하는 주소를 기준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1조 제2항 및 재산세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無制限租稅義務를 지는 자연인에 대하여는 공적인 금전출납소가 소재하는 구역을 관할하는 세무서가 토지관할권을 가진다.

- (2)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세의무자의 재산이 소재하는 구역을 관할하는 세무서, 다수의 세무서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의 가장 가치있는 부분이 소재하고 있는 구역을 관할하는 세무서가 토지관할권을 가진다. 조세의무자가 이 법률의 적용범위내에 재산을 가지지 않는 경우는 이 법률의 적용범위에서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거나 그 효과가 발생되거나, 또는 활동이 이루어졌거나 효과가 발생되었던 구역을 관할하는 세무서가 토지관할권을 가진다.
- (3) 주소지 구역내에 다수의 세무서가 존재하고 동시에 농림업, 영업 또는 자유업활동에 의한 소득을 가진 조세의무자가 주소지 시읍면의 구역내에서 살지만, 주소지관할세무서의 관할구역외의 타 세무서의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면서 이들 활동을 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들 소득의 분리확인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당해 세무서가 토지관할권을 가진다. 이익지분에 의한 소득에 대하여는 그것이 제1단의 규정에서 말하는 조세의무자의 유일한 소득인 경우에 한하여 제1단의 규정을 적용한다.
- (4) 합산하여 세액을 산정할 수 있거나 산정될 수 있는 조세의무자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은 1인의 조세의무자에 의하여 취득된 것으로 본다.
- (5) 주정부의 법규명령에 의하여 2이상의 구역을 포괄하는 지역을 제3항의 규정에서 말하는 주소지 구역으로 규정할 수 있다. 다만 이것이 경제관계 또는

교통관계, 행정관청의 구성 또는 기타 지역적인 필요성에서 고려하여 합목적인 경우에 한한다. 주정부는 재무행정소관 주최고관청에게 授權할 수 있다.

第20條 [法人⁷⁾, 人的 結合⁸⁾, 財産集團⁹⁾의 所得 및 財産에 대한 租稅] (1)

법인, 인적 결합 및 재산집단의 소득 및 재산에 따른 과세에 대하여는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구역을 관할하는 세무서가 토지관할권을 가진다.

(2) 이 법률의 적용범위내에 주된 사무소가 존재하지 않거나 주된 사무소의 장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세의무자의 주소구역을 관할하는 세무서가 토지관할권을 가진다.

(3) 이 법률의 적용범위내에 주된 사무소도 주소도 없는 경우에는 조세의무자의 재산이 소재하고 있는 구역을 관할하는 세무서, 2이상의 세무서가 이에 해당되는 경우는 재산의 가장 가치있는 부분이 소재하는 구역을 관할하는 세무서가 토지관할권을 가진다.

(4) 이 법률의 적용범위내에 조세의무자의 주된 사무소도 주소도 재산도 없는 경우는 이 법률의 적용범위내에서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거나 그 효과가 발생되고, 또는 이루어졌거나 발생되었던 구역을 관할하는 세무서가 토지관할권을 가진다.

第21條 [賣上稅] (1) 매상세에 대하여는 수입매상세를 제외하고 사업자가 이 법률의 적용범위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주로 경영하는 구역을 관할하는 세무서가 토지관할권을 가진다. 사업이 이 법률의 적용범위내에 속하지 않는 장

7) 法人(Körperschaft(제20조, 제79조))

단체, 통일적인 인적 결합으로서 법인격을 갖춘 경우, 우리나라의 사단법인과 동일하다.

8) 人的 結合(Personenvereinigun)

인적 단체라는 점에서는 Körperschaft와 같으나 법인격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법인으로서 인정되지 못한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門中, 宗中 또는 同窓會 같은 親睦團體 등이다.

9) 財産集團(Vermögensmaßen)

'재산의 집단'이라는 단순의미로 일정한 재산집단이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면 相續財産集團과 같은 것이다.

소에서 행해진 경우에는 기업자의 매상이 이 법률의 적용범위내에서 전부 또는 주로 발생하는 구역을 관할하는 세무서가 토지관할권을 가진다.

- (2)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매상세는 소득에 대한 과세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관할권을 가진다(제19조, 제20조). 제180조 1항 2호의 경우는 분리확인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세무서가 매상세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제18조).

第22條 [物稅] (1) 조세산정액의 확정 및 분할에 대하여는 부동산세는 부동산 소재지세무서(제18조 제1항 제1호), 영업세에 대하여는 사업소재지관할세무서(제18조 제1항 제2호)가 토지관할권을 가진다.

- (2) 物稅의 確定, 징수 및 강제징수가 세무서에 의무지워지는 한 이들에 대하여는 징수권을 가지고 있는 구역을 관할하는 세무서가 토지관할권을 가진다. 징수권을 가진 구역이 2이상의 세무서의 관할구역에 속한 경우는 이들 세무서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관할권을 가진 세무서나 징수권을 가진 구역에 소재하는 영업, 부동산 혹은 사업용부동산의 부분만이 이 법률의 적용범위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세무서가 토지관할권을 가진다.

- (3) 제2항의 규정은 기본법 제106조 제6항 제3단의 규정에 의해 물세의 수입이 州에 귀속하는 범위에서 이를 준용한다.

第23條 [關稅 및 消費稅] (1) 관세 및 소비세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 요건이 충족되는 구역을 관할하는 세관본서가 토지관할권을 가진다.

- (2) 세관본서는 전항에서 규정하는 외에 조세의무자가 그 사업을 경영하는 구역에 대하여 토지관할권을 가진다. 제21조 제2단의 규정은 이를 준용한다.

- (3) 관세 및 소비세가 조세범 또는 조세질서위반에 관련하여 부과되는 경우에는 형사사건 또는 벌과금사건에 대하여 관할을 갖는 세관본서도 토지관할권을 가진다.

第24條 [補充管轄] 토지관할이 타규정에 의해서도 정해지지 않는 경우에는 직무상 행위의 원인이 발생한 구역을 관할하는 재무관청이 관할권을 가진다.

第25條 [土地管轄의 重複] 다수의 재무관청에 토지관할권이 있는 경우에는

사안에 최초로 관계한 재무관청이 당해 사안에 대하여 결정한다. 다만 당해 토지관할권을 가진 재무관청이 이와 다른 재무관청에 토지관할권을 인정하는데 합의가 성립하거나 전속관할권을 가진 공통의 감독관청이 이와 다른 토지관할권을 가진 재무관청이 당해 사안에 대하여 결정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공통의 감독관청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속관할권을 가진 감독관청이 결정을 공동으로 행한다.

第26條 [管轄의 變更] 토지관할권이 관할권의 기초에서 비롯된 사정의 변경에 의하여 하나의 재무관청에서 타재무관청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재무관청중 하나가 이를 안 때에 관할권의 변경을 가져온다. 전에 토지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재무관청은 그것이 관계인의 이익을 확보하고 간편하고 합목적적인 절차의 실현시에 도움이 되고 후에 토지관할권을 가지게 되는 재무관청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第27條 [管轄의 合意] 조세법률의 규정에 의해 토지관할권을 가진 재무관청과의 양해하에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이와 다른 재무관청이 과세절차를 승계할 수 있다.

第28條 [管轄權의 紛爭] (1) 2이상의 재무관청의 토지관할권의 유무가 판명되지 않는 경우, 또는 다른 이유에서 관할권이 의문스러운 경우는 전속관할권을 가지는 공통의 감독관청이 토지관할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에는 제 25조 제2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재무행정법 제5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은 적용을 방해받지 않는다.

第29條 [遲延의 憂慮] 지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직무상의 행위의 원인이 발생하는 구역을 관할하는 각 재무관청이 긴급한 조치에 대하여 토지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토지관할권을 가진 타관청에 지체없이 보고한다.

第 4 章 租稅秘密

第30條 [租稅秘密] (1) 공무원은 조세비밀을 지켜야 한다.

(2)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비밀을 범한 것이 된다.

1. 다음의 경우에서 알게된 타인의 사정을 권한없이 공개하는 경우
 - a) 조세사건에서 행정절차 또는 재판절차에서
 - b) 조세범을 이유로 하는 형사절차 또는 조세질서위반을 이유로 하는 벌과금절차에서
 - c) 재무관청의 통지 또는 조세결정서 혹은 과세시 행해지는 확인에 관한 증명서의 법률에 규정된 제출에 따른 기타 기회에서
2. 제1호에서 규정한 절차에서 알게된 타인의 사업 또는 업무상의 비밀을 권한 없이 공개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3. 전항 1호에 규정된 절차에 대하여 컴퓨터에 저장된 전항 1호 또는 2호에 따라 보호된 정보를 자동전산절차에서 권한없이 인출하는 행위

(3) 다음 각호의 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公共勤務에 대하여 특별한 의무를 지는 자 (형법전 제11조 제1항 제4호)
2. 직무상 초빙된 鑑定人
3. 공법상의 법인인 교회 및 기타 종교단체의 직무담당자직원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알게된 사항의 공개는 다음 각호에 언급한 경우만 이를 허용한다.

1. 제2항 제1호 a 및 b에서 말하는 절차의 실시에 공개가 유용한 경우
2. 공개가 법률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3.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4. 공개가 조세범이 아닌 행위를 이유로 하는 형사절차의 수행에 유용한 경우와 다음에 언급한 경우에 알게된 사항
 - a) 조세범 또는 조세질서위반을 이유로 하는 절차에서, 다만 조세의무자가 형사절차나 벌과금절차의 개시를 모르고 공개했거나 혹은 형사절차나 벌과금절차의 개시전에 이미 과세절차에서 알 수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 b) 조세상의 의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정보거부권의 포기하에 알게된 사항

5. 공개에 대하여 절대적 공익이 존속하는 경우. 절대적 공익의 존속은 다음 언급한 경우에는 특히 인정될 수 있다.
 - a) 추적되거나 추적되어야 할 생명 및 신체에 대하여 또는 국가 및 그 시설에 대하여 범죄 및 고의에 의한 중대한 위반행위
 - b) 그 범죄절차에 의해 또는 이것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손해의 정도로 인하여 경제질서를 현저히 훼손하거나 거래의 성실성에 대한 공중신뢰나 관청 및 공공시설의 질서에 맞는 활동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현저하게 동요시키는 경제범죄행위로 추적되거나 추적되어야 할 경우 경제법
 - c) 공개가 행정에 대한 신뢰를 현저하게 동요시키고 사회에 유포되고 있는 진실 아닌 사실에 대하여 그 訂正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결정은 권한있는 최고재무관청이 연방재무장관의 동의를 얻어 이를 행한다. 정정전에 조세외무자의 의견을 들어야만 한다.
- (5) 관계인의 고의로 잘못된 보고는 형사소추관청에 대하여 공개할 수 있다.
- (6) 컴퓨터에 저장된 제1항 2호에 규정된 정보는 제1항 2호 a와 b가 의미하는 절차의 실행이나 또는 정보의 인도가 허용된 경우에 한하여 정보의 자동인출이 허용된다. 조세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방재무장관은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어 법규명령으로 권한없는 자료인출에 대한 기술상 및 조직상의 조치를 규정할 수 있다. 특히 정보의 종류, 인출의 허용 및 그러한 정보를 인출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둘 수 있다. 법규명령은 맥주세 이외의 관세와 소비세에 대하여는 연방상원의 동의가 요구되지 않는다.

第30a條 [銀行顧客의 保護] (1) 사실을 조사하는 경우(제88조) 재무관청은 금융기관과 그들 고객간의 신뢰관계에 대하여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 (2) 재무관청은 신용기관에 대하여 통상적인 감시 목적으로 일정한 종류 또는 일정금액의 계좌에 대한 일회 또는 주기적인 보고를 요구할 수 없다.
- (3) 제154조 2항에 규정된 적법조사에 의하여 작성된 자산계정 또는 유가증권은 신용기관에 대한 입장조사가 행해진 때에 합법적인 납세에 대한 사후조사를 위해서 확인하거나 복사해서는 안된다. 감사보고에 관한 복사는 중지해야 한다.

- (4) 조세를 감소시키는 지출 또는 상황이 유효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지불관계의 청산을 세무서와 약정한 경우에는 신용기관에 보존된 조세의무자의 계좌 또는 유가증권의 번호를 조세신고서류에 신고토록 요구해서는 안된다.
- (5) 신용기관에 대한 정보요청은 제93조를 적용한다. 조세의무가 있는 자로 인정되고 또한 그에 대하여 조세벌이나 조세질서위반을 이유로 한 어떤 절차도 행해지지 않는 경우에 정보요청이 조세의무자를 목표로 하거나 효과를 귀속시키지 않는 것이 확실하다면 제208조 1항 1호의 절차에서도 맨처음 신용기관에 문서의 정보와 서류를 요청해야한다.

第31條 [課稅基礎의 通知] (1) 재무관청은 과세기초, 조세산정액 또는 세액에 관련된 공과의 확정을 위하여 공법인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공법상의 법인에 대하여 이들의 과세기초, 조세산정액 및 세액을 통지할 권한을 갖는다.

- (2) 재무관청은 保險料確定을 목적으로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된 예술인의 사회보험관계인과 법률상의 사회보험의 당사자에게 통지할 권한을 갖는다.

第31a條 [不法就業團束을 위한 通知] (1) 제30조에 의하여 보호된 관계인의 관계에 대한 공개는 불법취업단속을 위하고 관계인이 조세상의 의무를 이행치 않는 경우에 허용된다. 피용자가 직업촉진법 제19조 1항에 따른 필요한 허가없이 고용되었거나 일한 경우에도 같다.

- (2) 재무관청은 연방직업기관에 피용자위탁법에 따른 허가의 거부, 취소 또는 철회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할 권리가 있다. 재무관청은 연방기관에 허가되지 않는 피용자 위탁(Arbeitsnehmerüberlaßung)에 대한 근거이유를 통지해야한다.

第 5 章 公務員 責任의 制限

第32條 [公務員 責任의 制限] 공무원의 직무의무위반 또는 직무의무위반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 직무위반 또는 직무의무위반에 형벌이 부과되는 경우에 한해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 청구

할 수 있다.

1. 조세 또는 조세부대급부확정, 징수 또는 체납처분을 하지 않거나 과소하게 이를 행하거나 혹은 지연시킨 경우.
2. 불법하게 조세환급 또는 조세상환을 하는 행위.
3. 과세표준(Steuerglundle) 또는 조세의 교부참가의 확정을 하지 않거나, 이를 과소하게 하거나 지연시킨 행위.

第 2 編 租稅債務法

第 1 章 租稅義務者¹⁾

1) 租稅義務者(Steuerpflichtiger)

(1) 概念

총래의 제국조세기본법에서는 조세의무자의 개념을 실체법상의 의미와 절차법상의 의미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입법되었다. 현행 독일 조세기본법 제 33조에서 규정한 조세의무자는 조세채무법(Steuerschuldrecht)에 귀속하는 개념으로 입법되어 있다. 따라서 현행 조세기본법에서의 조세의무자는 실체법상의 의미로 이해된다. 그밖에 현행 조세기본법에서는 관계자의 절차법상의 개념을 도입하였다(78조). 동시에 현행 조세기본법 몇군데에서는 (예, 제191조) 조세의무자의 개념을 관계자의 개념 대신에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제43조 참조).

(2) 內容

누가 조세의무자가 되는가 하는 것은 본조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租稅債務를 負擔하는者(wer eine schuldet)

누가 조세채무자가 되는가 하는 것은 제43조에서 일괄 규정하여 개개의 조세법률에 일임하고 있다. (예: 소득세법 제38조 2항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세에 대한 조세채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租稅에 대하여 責任을 지는 者(wer eine Steuer haftet)

타인의 조세채무의 이행에 대하여 자기의 재산으로 책임을 진다. 조세기본법 제69-제76조에서 중요한 책임에 대한 법률요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밖의 경우는 각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③ 第三者의 計算에서 租稅를 留保하거나 이를 納付해야 하는 者.

원칙적으로 조세채무는 조세채무자가 지는 것이지만, 각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한 경우에는(제43조 2항) 위와 같은 경우가 발생한다(예: 사업자에게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근로소득세를 유보한 경우).

④ 租稅申告書を 提出하는 者(wer eine Steuerklärung abzugeben hat)

누가 조세신고서를 제출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각 개별법률이 규정한다(제149조 1항). 그밖에 재무관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요구를 받는 자가 조세신고서 제출의무가 있다(제149조 2항). 이때의 의무는 사실상 그자가 조세채무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른 것은 아니다. 이 규정은 오로지 절차법상의 규정에 근거하여 조세기본법상 조세의무자가 된 것이다.

⑤ 擔保를 提供하는 者(wer Sicherheit zu leisten hat)

담보제공의무에 관한 규정(제109조 2항, 제165조 1항, 제221조 2항, 제223조, 제361조 2항 3항)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자도 조세의무자이다.

第33條 [租稅債務者] (1)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자, 조세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 제3자의 계산에서 조세를 유보하고 또한 이를 납부해야 하는 자, 조세신고서를 제출하고 擔保를 제공하고 기장하고 기록을 작성해야 하는 자, 또는 조세법률에 의하여 부과되어지는 기타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자는 이를 조세의무자로 한다.

(2) 타인의 조세사안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문서를 제출하고 감정하고 또는 부동산, 사무소 및 사업소에의 출입을 인정해야 하는 자는 조세의무자가 아니다.

第34條 [法定代理人 및 財産管理人の 義務] (1) 자연인 및 법인의 법정대리인 및 권리능력없는 인적 결합 및 재산집단의 業務執行人은 그 조세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들은 특히 관리하고 있는 재산에서 조세가 납부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권리능력없는 인적 결합에 업무집행인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서 말하는 의무를 그 구성원 또는 사원이 이행해야 한다. 재무관청은 각 구성원 또는 각 사원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권리능력없는 재산집단에 대하여는 재산이 귀속하는 자가 조세상의 의무를 이행해야하는 것으로 보아, 제1단 및 제2단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재산관리가 재산의 소유자 및 그 법정대리인 이외의 자에게 속하는 때에는 당해 재산관리인은 그 관리가 미치는 범위에서 제1항에서 규정한 의무를 부담한다.

⑥ 記帳과 記錄을 作成하는 者(wer Bücher und Aufzeichnungen zu führen hat)

조세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기장 및 기록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 당해 의무자는 조세의무자가 된다. 이러한 의무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되어야 하며 따라서 이를 행정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세의무자가 되지 아니한다.

⑦ 租稅法律에 의하여 賦課된 其他의 義務를 履行해야 하는 者.

이 경우는 예컨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의무(제34조), 처분권자의 의무(제35조) 등이 해당된다. 이들 의무는 조세법자체의 근거에 의하여 이행의무가 지워지기 때문이다.

第35條 [處分權者의 義務] 자기 또는 타인의 이름으로 처분권자로서 행동하는 자는 법적 및 사실상 이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법정대리인의 의무(제34조 제1항)를 부담한다.

第36條 [代理權의 消滅] 대리권 또는 처분권의 소멸은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 그 의무가 대리권 또는 처분권이 존속하는 기간에 걸치고 동시에 의무자가 당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한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第 2 章 租稅債務關係

第37條 [租稅債務關係에서 發生하는 請求權] (1) 조세채무관계에 의하여 발생하는 청구권은 조세청구권, 조세상환청구권, 責任請求權²⁾, 조세부대금부청구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청구권(Erstattungsanspruch) 및 개별조세법률에서 규정한 조세환급청구권으로 한다.

(2) 조세, 조세상환, 책임금액 혹은 조세부대금부가 법률상의 원인없이 지급되거나 반환되는 경우는, 자기의 계산으로 지급이 이루어지는 자는 급부의 수령자에 대하여 지급된 금액 또는 환급된 금액의 환급청구권을 갖는다. 지급

2) 責任請求權(Haftungsanspruch)

① 조세법상의 책임은 통상적으로 특별한 구성요건(제38조)을 전제로 스스로 조세채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세납부의무를 지는 자(책임채무자, 조세책임자, 책임자)가 진다. 따라서 책임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으로 타인의 조세채무를 이행해야 한다(제33조).

② 책임청구권은 조세기본법(제69조-제70조), 각 개별법률 또는 일반법률(예, 재산양수인의 책임에 관한 민법 제419조의 규정)로부터 발생한다.

③ 법률에 의하여 조세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는 책임채무자이다(제191조1항). 따라서 이때의 책임채무자는 어떤 규정에 의하여 책임을 지느냐를 묻지 않고 책임을 진다.

④ 조세기본법상의 책임채무자가 아닌 자로서 책임을 지는 경우, 계약에 의하여 타의 조세채무에 책임을 진 자는 조세기본법에서 의미하는 책임채무자가 아니다.

또는 반환에 대한 법률상의 원인이 후에 소멸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第38條 [租稅債務關係에 의한 請求權의 發生] 조세채무관계에 의한 청구권은 법률이 급부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법률요건사실이 충족되면 즉시 발생한다.

第39條 [歸屬] (1) 經濟財는 소유자에게 귀속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다음 제규정을 적용한다.

1. 소유자 이외의 자가 통상의 경우에 통상의 이용기간에 경제재에 대한 작용을 소유자로부터 경제적으로 배제된 것 같이 경제재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행사한 때에는 당해 경제재는 당해 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귀속한다. 신탁관계의 경우에는 당해 경제재는 신탁자에게, 讓渡擔保의 경우에는 담보권자에게, 자주점유의 경우에는 자주점유자에게 귀속한다.
2. 2이상의 자의 합유에 속하는 경제재는 분할된 귀속이 과세에 필요한 한 관여자에게 지분에 따라 귀속한다.

第40條 [法律違反行爲 또는 良俗違反行爲] 조세법률의 요건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족시키는 행위가 법률의 명령 혹은 금지나 양속에 위반하는가의 여부는 과세와 관계없다.

第41條 [無效한 法律行爲] (1) 법률행위가 무효이거나 또는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관계인이 당해 법률행위의 경제적 결과를 발생시키면서 존속시키는 범위 및 기간에 대한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전단의 규정은 조세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假裝法律行爲³⁾ 및 假裝行爲는 과세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가장법

3) 假裝法律行爲(假裝行爲), 隱匿된 行爲

(1) 假裝法律行爲(假裝行爲)

가장법률행위란 상대방과 통정하여 진의 아닌 허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말한다. (예: 채무자의 집행을 못하게 하기 위하여 부동산소유자가 타인과 통정하여 그 타인에게 매매를 가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를 말한다).

(2) 隱匿된 行爲

를행위에 의하여 다른 법률행위가 은닉되는 경우는 은닉된 법률행위가 과세의 기준이 된다.

第42條 [法形成可能性의 濫用⁴⁾] 법의 형성가능성의 남용에 의하여 조세법률을 회피할 수 없다. 남용이 있는 경우는 경제적 사실에 상응하는 법률적 형성을 한 경우에 발생하는 것과 동일하게 조세청구권이 발생한다.

第43條 [租稅債務者, 租稅償還債權者] 조세법률은 조세채무자 또는 납부자에 대하여 조세상환채권자가 누구인가를 정한다. 조세법률은 제3자가 조세채무자의 계산으로 조세를 납부해야 하는가의 여부도 정한다.

第44條 [連帶債務者] (1) 조세채무관계로 발생하는 동일한 금부를 상호 병행하여 부담하는 자, 또는 그 금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 또는 하나의 조세에 대하여 합산하여 세액이 사정되는 자는 연대채무자로 한다. 특별히 다

은닉된 행위란 위의 경우에 그러한 외관을 이용하여 다른 행위를 진실로 행하고자하는 의사를 수반하는 경우가 있다. (예: 사실은 증여이나 매매를 가장한 경우, 이 때의 진실한 행위(증여)를 은닉행위라고 한다).

(3) 各各의 效力

이들 두 행위는 당사자간에서는 무효이지만 이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우리민법 제108조 2항). 다만 은닉행위에 대해서는 독일민법(제117조 2항)에서는 당사자간에서는 곧 그 은닉행위만 존재하고 또 유효성이 문제될 따름이라고 하지만, 외관과 행해진 행위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4) 法形成可能性의 濫用

① 본조의 규정은 經濟的 觀察方法의 하나의 형태이다. 법형성가능성의 남용에 의한 조세법의 회피는 脫法行爲(Gesetzesumgang)의 하나로서 간주된다. 탈법행위란 통상적으로 강행법규를 잠탈하는 행위로서 강행법규를 직접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강행법규가 금지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일으키는 행위를 말한다. (예: 이자제한법의 제한을 초과하는 고리를 얻기 위하여 사례금, 수수료 등을 붙인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② 본조의 해석적용에 있어서 어떤 경우가 법형성가능성을 남용한 것으로 볼 것인가는 법규흠결보충을 통한 해석에 일임되어 있다. 최종적인 해석기준은 법원에서 정한다.

른 규정이 없는 한 각 연대채무자는 전체급부를 부담한다.

- (2) 연대채무자의 1인에 의한 이행은 기타 채무자에 대해서도 효력을 발생한다. 상계 및 제공된 擔保에 대해서도 前段의 규정과 동일하게 한다. 기타의 사실은 그 사실이 발생한 연대채무자 개인에 대해서만 이익과 불이익의 효력이 발생한다. 합산사정의 경우에 집행제한에 관한 제268조부터 제280조까지의 규정은 그 적용을 방해받지 않는다.

第45條 [包括權利承繼] (1) 포괄권리승계의 경우에는 조세채무관계로 발생하는 채권 및 채무가 권리승계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이 제1단의 규정은 상속의 경우 강제금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 (2) 상속인은 유산으로 지불할 채무에 대하여 유산채무에 대한 상속인의 책임에 관한 민법의 규정에 따라 책임을 져야한다. 상속인의 세법상의 책임의 근거 규정은 그 적용을 방해받지 않는다.

第46條 [讓渡, 擔保, 押留] (1) 조세, 책임금액, 조세부대급부의 환급청구권 및 조세지급에 관련한 청구권은 이를 양도하고, 擔保를 설정하고, 押留할 수 있다.

- (2) 양도는 채권자가 당해 청구권의 발생후 소관재무관청에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형식으로 이를 신청하는 경우에 비로소 그 효력을 발생한다.
- (3) 양도는 공정서식용지에 양도인, 양수인 및 양도된 청구권의 종류 및 금액과 양도원인을 기입하여 소관 재무관청에 이를 신청한다. 신청서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이 署名해야한다.
- (4) 자기의 계산으로 수령하거나 기타 換價를 위해 환급청구권이나 상환청구권을 업무로 하여 취득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제1단의 규정은 양도담보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담보를 위해 양도된 청구권을 업무로 하여 취득하는 것 및 업무로 하여 징수하는 것은 은행업을 허가받은 기업에 한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 (5) 재무관청에 양도가 신청되는 때는 당해 신청된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효력을 발생하지 않거나,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대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에도 양도인 및 양수인은 소관세무서에 당해 신청된 양도는 자기에 대하여 인

정해야한다.

- (6) 압류결정과 송금결정 또는 압류처분과 인출처분은 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 행해져서는 안된다. 이 금지에 위반하여 행해진 압류결정과 송금결정 또는 압류처분과 인출처분은 무효이다. 2호에서 5호까지의 규정은 저당에 준용한다.
- (7) 환급청구권 또는 상환청구권을 압류하는 경우에 당해 청구권에 대하여 결정하였거나 결정해야하는 재무관청은 민사소송법 제829조, 제845조의 규정에서 말하는 제3자 채무자로 간주한다.

第47條 [消滅] 조세채무관계로 발생하는 청구권은 특히 납부(제224조, 제225조), 상계(제226조), 면제(제163조, 제227조), 시효(제169조에서 제171조까지, 제228조에서 제232조까지), 및 해제조건부청구권에 있어서 조건의 성취로 소멸한다.

- 第48條 [第3者에 의한 給付, 第3者の 責任]** (1) 조세채무관계에 의하여 발생하는 재무관청에 대한 급부는 제3자도 이를 행할 수 있다.
- (2) 제3자는 계약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서 말하는 급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다.

第49條 [失踪] 실종의 경우에는 실종된 자의 사망신고에 관한 결정이 확정력을 발생하는 날을 과세에 대하여 사망일로 간주한다.

- 第50條 [消費稅의 消滅 및 無條件化, 條件附消費稅債務의 移轉]** (1) 소비세법에 따라 소비세과세상품이 특별한 용도에 공급되는 것으로 하는 조건하에 조세우대가 인정되는 경우는 조세의 사전산정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조건이 성취되거나 상품이 소실되었다면 조세는 우대의 비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다.
- (2) 당해 상품이 조건성취전에 규제된 용도범위에서 조세채무자로부터 정당한 취득자에게 인도된 경우에는 조건부조세채무는 당해 정당한 취득자에게 이전한다.

(3) 조세는 다음의 경우에는 무조건이 된다.

1. 당해 상품이 규제된 용도에 반하여 사용되고, 또는 이미 당해 용도로 공급될 수 없는 경우. 당해 상품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대를 받는 자가 당해 상품을 규제된 용도로 공급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상품은 규제된 용도로 공급할 수 없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2. 기타 법률에 의하여 규정된 경우.

第 3 章 租稅優待目的⁵⁾

第51條 [通則] 단체가 전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공익목적, 자선목적 또는 종교목적(조세우대목적)을 추구하는 것을 이유로 법률이 조세우대를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제규정을 적용한다. 단체란 법인세법에서 말하는 법인, 인적 결합 및 재산집단을 말한다. 단체의 기능상의 하부구성(부서)은 독립한 조세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다.

第52條 [公益目的] (1) 단체의 활동이 비영리적으로 일반공중의 물질적, 정신적 또는 도덕적 영역에서 공공성을 助成하는 것에 방향을 두는 경우에는 당해 단체는 공익목적을 추구하는 것으로 한다. 공공성의 조성은 그 조성으로 도움을 받는 사람의 범위가 엄하게 폐쇄되어있는 경우 예컨대, 1가족에게 또는 기업의 인원에게 소속되어 있는 것 또는 그 범위가 특히 공간적 또는 직업상의 특징에 의한 제한에 의하여 계속하여 작은 범위일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단체가 그 재산을 공법단체에게 공급하는 것만으로는 공공성의 조성이라 볼 수 없다.

(2) 특히 다음에서 언급하는 사항은 제1항의 요건하에 공공성의 조성으로 인정된다.

5) 우리나라에서 公益法人 이나 財團이 상속·증여세 기타 조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남용되는 사례가 많아 오랫동안 중요한 조세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나 뚜렷한 개선점이 보이지 않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이들 단체들이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요건을 조세기본법에서 설정하고 엄격히 통제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이들 규정들을 검토하여 적극 도입해야 할 것이다.

1. 과학, 연구, 교육, 예술 및 문화, 종교, 국제간의 협조, 개발원조, 환경 보호, 풍경 및 기념비의 보호, 향토사상의 촉진.
2. 청소년복지사업, 노령자원조, 공적 보건제도, 사회복지제도 및 스포츠조성.
3. 이 법률의 효력범위에서의 민주적 국가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촉진 : 여기에는 국민적인 방식의 일정한 개인이익만을 추구하거나 또는 지역정치분야에 한정된 노력은 포함되지 않는다.
4. 동물사육, 식물재배, 소규모원예, 카니발, 사육제 및 가장무도회를 포함한 전통적인 풍습, 군인과 예비역후원, 아마추어무선전신모형비행기와 개(犬)스포츠의 촉진

第53條 [慈善目的] 단체의 활동이 비영리적으로 다음에서 언급하는 자를 후원하는데 관심을 두는 경우에는 당해 단체는 자선목적을 추구하는 것으로 한다.

1. 신체적, 정신적 또는 심적인 상태때문에 타인의 원조에 의지하고 있는 자.
2. 수입이 연방사회원조법 제22조의 규정에서 말하는 사회원조의 표준율의 4배를 초과하지 않는 자. 독신자 또는 세대주의 경우에는 표준율의 4배 대신 5배로 한다. 前段의 규정은 재산이 생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데 충분하고, 또 그 재산을 이에 사용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경제적 상황이 특수한 이유로 긴급상황에 이른 자에 대해서는 수입 또는 재산은 위에서 규정한 한계를 초과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말하는 수입은 독신자 또는 세대주 및 기타 세대원이 가지는 다음의 경우로 한다.
 - a) 소득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서 말하는 수입.
 - b) 생계비의 지불에 규정되거나 적용되는 기타 수입. 생계비급부가 없어서 빈민구제비를 청구할 수 있는 자에 대한 생계비지급은 빈민구제급부와 빈민구제비금액까지 수입에 계산하지 않는다. 생계비청구권은 이를 고려해야한다.

第54條 [宗教目的] (1) 단체의 활동이 공법인인 종교단체를 비영리적으로 조성하는 것에 방향을 두는 경우에, 당해 단체는 종교목적을 추구하는 것으로 한다.

(2) 이 목적에 속하는 것은 특히 교회 및 종교적 공동건물의 건립, 장식 및 유지, 예배의 거행, 성직자의 교육, 종교교육의 수여, 死者의 매장 및 기념품의 관리, 그위에 종교재산의 관리, 성직자, 교회의 공무원 및 교회의 사용인의 급료지급, 이들에 대한 양로수당 및 장해수당, 그리고 이들의 미망인 및 고아의 부양으로 한다.

第55條 [公共性] (1) 助成 또는 後援에 의하여 제1차적으로 자기의 경제목적 - 예컨대 영업목적 또는 기타 영리목적 - 으로 수행되지 않고, 다음의 요건이 존재하는 경우의 조성 또는 후원은 비영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다.

1. 단체의 재산은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구성원 또는 사원 (본조에서 구성원으로 略한다)은 당해 단체의 재산에서 이익지분 및 구성원으로서의 성질에서 어떠한 출연도 받을 수 없다. 단체의 재산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정당의 후원 또는 조성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2. 구성원은 탈퇴 또는 단체의 해산 또는 폐지의 경우에 그 불입한 자본지분 및 급부한 현물출자의 통상가격을 초과하여 반환받을 수 없다.
 3. 당해 단체는 그 단체의 목적과 관계없는 지출에 의하거나 지나친 고액의 사례로 누구도 우대할 수 없다.
 4. 당해 단체의 해산 또는 폐지의 경우나 종전의 목적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단체의 재산을 구성원이 불입한 자본지분 및 구성원이 급부한 현물출자의 통상가격을 초과한 범위에서 당해 단체의 재산을 조세우대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재산구속의 원리). 이 요건은 당해 재산이 다른 우대단체 또는 공법단체에 조세우대목적을 위해 위탁된 경우에도 충족된다.
- (2) 통상가격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산출에 대하여는 현물출자가 이루어졌던 시기의 사정에 의한다.
- (3) 단체의 구성원에 관한 규정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은 재단에 대하여

여는 기부행위자 및 그 상속인에 대하여, 공법단체의 영업에 대하여는 당해 단체에 대하여 준용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4호 제2단 및 제3단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재산에서 장부가격으로 지급한 경제재에 대해서는 통상가액 대신 지불한 장부가격을 준용한다.

第56條 [專一性] 단체가 정관에서 정한 그 조세우대목적만을 추구하는 경우에 전일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第57條 [直接性] (1) 단체가 그 정관에 따른 조세우대목적을 스스로 실현하는 경우에 당해 단체는 이 목적을 직접 추구하는 것으로 한다. 이 직접추구는 사안의 상황에 의해 특히 단체와 보조자간에 존속하는 법적관계 및 사실관계에 따라 보조자의 활동이 단체의 자기활동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자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2) 조세우대단체를 포괄하는 하나의 단체는 조세우대목적을 직접 추구하는 하나의 단체와 같다.

第58條 [租稅優待가 排除되지 않는 活動] 다음의 활동으로 조세우대는 배제되지 않는다.

1. 단체가 다른 단체의 조세우대목적의 실현을 위해 또는 공법단체에 의한 조세우대목적의 실현을 위해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2. 단체가 그 자금의 일부를 다른 부분과 동일한 조세우대를 받고 있는 단체 또는 공법단체에게 조세우대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하는 경우.
3. 단체가 그 노동력을 다른 者, 다른 기업 또는 다른 시설에 조세우대목적 을 위하여 자유로이 사용토록 하는 경우.
4. 단체가 자기에게 속하는 공간을 기타의 조세우대단체에게 그 조세우대목적에 사용토록 맡기는 경우.
5. 재단이 그 소득의 최대한 3분의 1을 적당한 방법으로 재단설립자와 그 근친자를 부양하고, 그 묘지를 돌보아주고, 기념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6. 단체가 그 정관에 따른 조세우대목적을 지속적으로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경우.

7. a) 단체가 초과수입액의 최대한 4분의 1을 자유적립에 관한 재산관리의 비용으로 사용한 경우
 b) 단체가 사원권 획득을 위한 물적회사에의 비율적인 참여의 유지를 위하여 축적하거나 수입년도에 사용하는 경우 : 이 금액은 전항 a호에 따라 같은 년도 또는 장래의 허용된 적립금으로 계산한다.
8. 단체가 그들의 조세우대활동에 비하여 제2차적 의미를 갖는 사교적인 공동집회를 갖는 경우
9. 스포츠단체의 비영리스포츠 이외의 영리스포츠로 조성하는 경우.

第59條 [租稅優待의 要件] 조세우대는 정관, 기부행위 또는 기타 조직규정 (이하 이들 규정에서 말하는 정관)에서 당해 단체가 어떠한 목적을 추구하는 지, 이 목적이 제52조에서 제55조까지의 규정의 요건에 적합하고 당해 목적을 전적으로 또한 직접 추구하는 것이 판명되는 경우에 인정된다. 업무집행의 실체는 이 정관의 규정에 합치해야한다.

第60條 [定款의 要件] (1) 정관이 정하는 목적 및 그 실현방법은 조세우대에 대한 정관의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가의 여부를 정관에 근거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정해져야한다.

(2) 정관은 법인세 및 영업세에 대하여는 쏠사정기간 또는 쏠산정기간 중, 기타 조세는 조세발생의 시기에 소정의 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第61條 [定款에 의한 財産拘束] 6) (1) 당해 단체의 해산 혹은 폐지의 경우, 또는 그 종래의 목적을 중지하는 경우에 그 재산이 사용되는 목적이 조세우대인가를 당해 정관에 근거하여 검토하도록 정관에 상세하게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충분한 재산구속 (제55조 제1항 제4호)이 있는 것으로 한다.

6) 財産拘束(Vermögensbindung)

일정한 재산의 사용목적이 정해 있는 경우로서 재산구속의 기본원칙은 정관상의 재산구속처럼 제55조 1항 4호와 제61조에서 정하고 있다. 이는 형식적으로는 재산구속이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만 그 효과는 정관규정에 의하여 정해진 것은 아니다. 제61조의 규정은 공공성의 조건으로 정해져 있는 재산구속은 단체해산의 경우 반드시 정관으로부터 발생하지 않으면 안된다.

-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관작성의 경우에 재산의 장래 사용목적을 중단할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상세하게 기재할 수 없는 경우는 당해 단체의 해산 혹은 폐지의 경우, 또는 그 종래의 목적을 중지하는 경우에 당해 재산을 조세우대 목적에 사용해 야하는 것 및 당해 단체의 재산의 사용에 관한 장래 결의를 세무서의 동의에 의하여 최초로 실행할 수 있는 것이 정관에 정해져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세무서는 결의된 사용목적이 조세우대인 경우에는 동의해주어야 한다.
- (3) 재산구속에 관한 규정이 후에 변경되고, 제5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개정되었을 때는 그 규정은 처음부터 과세상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조세결정이 재산구속에 관한 규정의 변경전, 최근 10년내에 발생한 조세에 관한 범위에서 당해 조세결정을 하고,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제175조 1단 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第62條 [定款에 의한 財産拘束의 例外] 공법단체의 영업, 국가의 감독을 받는 재단, 공법단체에 의해 관리되는 비독립의 재단 및 종교상의 단체 (敎團, 신도회)에 대하여서는 재산구속은 정관중에 정한 것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 第63條 [事實上 事業執行에 대한 要件]** (1) 단체의 사실상의 업무집행은 오직 그리고 직접적으로 조세우대목적의 달성을 지향하고, 조세우대의 요건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 합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 (2) 사실상의 업무집행에 대해서는 제60조 제2항의 규정을, 재산구속에 관한 규정의 위반에 대해서는 제61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3) 단체는 그 사실상의 업무집행이 제1항의 요건에 합치하는 것일 때는 그 수입 또는 지출에 관한 정규기록에 의해서 증명해야한다.
- (4) 단체가 제58조 6항과 7항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 자금을 비축했을 경우 세무서는 단체에 자금사용기간을 정할 수 있다. 단체가 그 기간안에 자금을 조세우대목적에 위하여 사용했다면 사실상의 사업진행은 1항에 의미하는 적법적인 효력을 갖는다.

第64條 [租稅義務있는 經濟的 事業] (1) 법률이 경제적 사업 (제14조)이 영

위되는 범위에서 조세우대를 배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단체는 이 사업에 속한 과세기초(재산, 수입, 매상)에 대하여 목적적합사업 (제65조에서 제68조까지)이 인정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세우대를 상실한다.

- (2) 단체가 목적적합사업(제65조부터 제68조까지) 아닌 다수의 경제적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경제적 사업으로 간주된다.
- (3) 수입이 목적적합사업이 아닌 경제적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매상세를 포함하여 연간 총 6만마르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경제적 사업에 속한 과세기초를 법인세와 영업세에 귀속시키지 않는다.
- (4) 하나의 단체를 중복하여 조세우대를 요구할 목적으로 다수의 독립한 단체로 분할한 경우에는 제42조에서 말하는 법률적 형성가능성에 대한 남용으로 간주한다.
- (5) 법인세와 영업세가 귀속된 고물영업을 위한 상설매장이외의 무상으로 취득한 고물의 활용에서 발생한 초과수입은 통상적인 사업체의 순수익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第65條 [目的適合事業] 다음의 전부에 해당되는 경우에 목적적합사업은 인정된다.

- 1. 당해 경제적 사업이 그 전체방침에서 당해 단체의 정관에 의한 조세우대 목적실현에 유익한 경우.
- 2. 당해 목적이 그와 같은 사업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는 경우.
- 3. 조세가 우대되지 않는 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제적 사업이 조세우대 목적달성의 불가피성보다 대규모의 경쟁을 하지 않는 경우.

第66條 [社會福祉事業] (1) 사회복지사업의 시설은 제53조에 규정된 용도에 특별히 제공되는 경우에는 목적적합사업으로 한다.

(2) 사회복지사업은 영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공공복지를 위해서, 곤궁하거나 위험에 처한 사람에 대하여 계획적으로 시행되는 배려이다. 이 배려는 보건적, 도덕적, 교육적 또는 경제적인 복지에 미칠 수 있고 또한 예방이나 구제를 목적으로 할 수 있다.

(3) 사회복지사업의 시설은 그 급부의 3分の 2이상이 제53조의 규정된 자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에는 이들의 사용에 특별히 제공되는 것으로 한다. 병원에 대해서는 제67조를 적용한다.

- 第67條 [病院]** (1) 연방간호시행령의 적용범위에 있는 병원은 일반적인 병원 급부(연방간호시행령 제5,6,21조)에 대한 보수만 계산된 환자에게 연간 간호일의 최소한 40%를 할당하는 경우에는 목적적합한 사업으로 한다.
- (2) 연방간호시행령의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병원은 병원급부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것보다 고액의 대가가 계산되지 않는 환자에게 연간 최소한 간호일의 40%이상이 할당되는 경우에는 목적적합사업으로 한다.

- 第67a條 [스포츠 行事]** (1) 스포츠 단체의 스포츠 행사는 매상세를 포함하여 연간 총6만 DM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목적적합사업으로 본다. 음식 음료의 판매와 광고는 스포츠행사에 속하지 않는다.
- (2) 스포츠단체는 법인세결정에 대한 불가쟁력이 생길 때까지 세무서에 대하여 제1항 1단의 적용에 대한 포기를 밝힐 수 있다. 포기의사는 최소한 5회의 세액산정기간 동안 스포츠단체를 구속한다.
- (3) 제1항 1단의 적용을 포기한 경우 다음에서 규정한 스포츠단체의 스포츠활동은 목적적합사업으로 본다.
1. 단체의 운동선수가 스포츠활동에 대하여 자기본인, 이름, 사진의 사용에 대하여 단체 또는 제3자의 홍보활동을 목적으로 한 스포츠활동에서 생긴 경비보상으로부터 보수나 다른 이익을 받지 않고 참가한 경우
 2. 다른 운동선수가 단체 또는 제3자의 행사참여에 대하여 단체와의 공동활동에서 생긴 경비보상으로부터 보수나 다른 이익을 받지 않고 참가한 경우
- 다른 스포츠행사는 조세의무있는 경제적 사업으로 본다. 이 경우에 보수 또는 다른 이익이 목적적합사업이 아닌 오로지 경제적 사업이거나 또는 제3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경우에는 조세상황이 제외된다.

第68條 [個個의 目的適合事業] 다음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특히 목적적합사업으로 한다.

1. a) 양로원, 노인복지시설, 요양소, 휴양소, 공중식당. 이는 다만 제53조

에서 규정한 자에게 특별히 제공되는 경우에 한한다. (제66조 제3항)

b) 유치원, 보육소, 청소년센터 및 기숙사, 학교부속휴양소, 유스호스텔.

2. a) 단체의 자급에 제공되고 이것에 의해 시설소속원의 적당한 식량 및 충분한 보급을 확보하는 농업 및 원예.

b) 목공업, 수리공장같은 단체의 자급을 위하여 필요한 기타 시설. 다만 이들 시설에 관계없는 자에 대한 공급 및 기타 급부의 가격이 당해 사업의 전체 공급 및 기타 급부 - 당해 단체 자신에게 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 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3. 고용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촉진할 수 있는 장애자에 대한 작업장, 장애에 의해 일반노동시장에서 일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직장제공 및 장애자에 대한 작업장 및 장애자의 작업력회복에 제공되는 작업치료에 대한 시설.

4. 맹인구호실시 및 신체장애자에 대한 구호실시를 위해 운영되는 시설.

5. 구호교육 및 자발적인 교육원조시설.

6. 조세우대를 받는 단체가 오로지 공익, 자선 또는 종교목적을 위해 최대한 1년에 2회 개최하는 소관관청에 의해 허가되는 복권 및 추첨.

7. 박물관, 극장 같은 문화시설 및 음악회, 미술전과 같은 문화적 모임. 다만 음식과 음료의 판매는 이에 속하지 않는다.

8. 독자적으로 강연, 강좌 및 그밖의 학문적 또는 교육적 유형의 행사를 하는 성인대학 및 기타시설.

전단은 당해 시설이 이를 행사의 참여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第 4 章 責任

第69條 [代理人의 責任] 제34조 및 제35조에 규정되어 있는 자는 조세채무관계에 의하여 발생하는 청구권(제37조)이 자기에게 부과되는 의무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위반에 의하여 확정 또는 이행되지 않거나 정당한 시기에 확정 또는 이행되지 않거나 또는 그 결과로서 조세보상이나 조세환급이 법적 근거없이 이루어진 때는 책임을 진다. 당해 책임은 의무위반에 의해 지급되는 지연가산금도 포함한다.

第70條 [代理人의 責任] (1) 제34조 및 제35조에 규정된 자가 그 직무의 실행시에 탈세 또는 중과실에 의한 조세의 면탈을 하거나 탈세에 참가하거나 이에 의해 조세채무자 또는 책임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들은 당해 행위에 의해 면탈된 조세 및 불법하게 주어진 조세이익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제1항의 규정은 자연인이 그 법정대리인의 행위로 어떠한 재산상의 이익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자연인의 법정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피대리인이 탈세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조세면탈을 한 자를 주의의무를 다하여 선임하고, 감독한 경우에도 전단과 동일하다.

第71條 [脫稅者와 租稅犯의 責任] 脫稅⁷⁾ 또는 租稅贓物犯⁸⁾을 범하거나 그와 같은 행위에 참가한 자는 면탈된 조세 및 불법하게 주어진 조세이익 및 제235조에 의한 이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第72條 [計定眞實性の 義務違反에 대한 責任⁹⁾]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자는 이에 의하여 조세채무관계에 의하여 발생하는 청구권의 실현이 침해되는 범위에서 책임을 진다.

第73條 [機關關係¹⁰⁾에서의 責任] 기관회사는 그들간의 기관관계가 과세상

7) 脫稅(Steuerhinterziehung)에 관해서는 제370조와 제378조에서 상세히 규정.

8) 租稅贓物犯(Steuerhehler)에 대해서는 제374조에서 상세히 규정.

9) 제72조 계정진실성의 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 제154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책임을 진다(제154조 2항). 이 경우 책임을 지는 자는 계정을 만든 자가 아니라 재무관청의 동의없이 예금, 유가물, 개인우편을 인도하고 인도케하는 자이다. 이때에 법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10) 機關(Organschaft), 機關會社(Organ Gesellschaft)

(1) 機關

기관의 특징은 기관회사의 주회사기업에서 재정적, 경제적 및 조직적으로 기관회사를 구성한다는 데에 있다. 기관회사는 이러한 형식으로 기관회사의 주된 회사에 소속되어 있고 독자적인 고유의 의사를 갖지 않는다. 기관회사의 主會

중요한 기관담당자의 조세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조세보상환급청구권은 조세와 동일한 것으로 한다.

第74條 [物件所有者의 責任] (1) 기업에 제공된 물건이 당해 기업자가 아니라 당해 기업에 중요하게 참가하고 있는 자에게 속하는 때는 당해 물건의 소유자는 이 기업자와 함께 당해 기업의 경영에서 발생한 사업의 조세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책임은 重要參加¹¹⁾의 존속중에 발행한 조세에만 미치는 것으로 한다. 조세상환환급청구권은 조세와 동일한 것으로 한다.

(2) 기업의 자본금 또는 재산에 4분의 1이상 직접, 간접으로 참가하고 있는 자는 당해 기업에 주로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한다. 기업에 지배적 영향을 끼치는 자 및 그 행위에 의해 제1항 제1단에서 말하는 납기도래의 조세가 납부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관여한 자도 중요참가로 간주한다.

第75條 [事業引受人의 責任] (1) 하나의 사업 또는 하나의 사업의 편성상 독립하여 행해지는 하나의 사업전체가 양도되는 때는, 취득자는 조세의무가 당해 기업의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조세에 대하여, 그리고 조세가 양도전 마지막년도에 개시이래 발생하고, 취득자에 의한 사업의 신청후 1년을 경과하기까지 확정되거나 또는 신고될 것을 전제로 하여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책임은 승계된 재산의 잔고에 한정된다. 조세상환환급청구권은 조세와 동일한 것으로 한다.

社, 법인, 자연인 또는 인적 회사일 수도 있다. 기관과 그의 효력에 대하여는 개별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2) 機關會社

기관회사는 재정적, 경제적, 조직적으로 기관의 주회사기관을 구성한다. 주회사는 수많은 기관회사를 둘 수 있다.

11) 重要參加(wesentliche Beteiligung)

중요한 참가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기업의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이상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법률상의 표현으로는 중요참가자와 목적물의 소유권자와 동일하다. 하지만 이는 다수의 중요참가자가 오직 자기의 개인재산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면가 회사가 그의 총재산의 목적물로 책임을 지기 위하여 민법 자체에서 중요한 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 것은 아니다.

- (2) 제1항의 규정은 파산재단에서의 취득, 화해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화해의 신청에 기초하여 환가된 화해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의 취득 및 집행 절차에서의 취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第76條【物上責任】 (1) 소비세과세물품 및 관세과세물품은 제3자의 권리에 관계없이 당해 물품에 관계된 조세에 대한 담보가 된다. (物上責任)

- (2) 물상책임은 소비세과세물품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그 제조 또는 수출과 동시에, 관세과세물품에 대해서는 당해 물품이 관세화물이 되면 즉시 발생한다.
- (3) 조세가 납부되지 아니하는 동안 재무관청은 당해 물품을 압류할 수 있다. 압류는 당해 물품을 보관하는 자에 대한 당해 물품의 처분금지로서 족하다.
- (4) 물상책임은 조세채무와 동시에 소멸한다. 물상책임은 압류의 취소, 또는 당해 물품이 재무관청의 동의에 의해 과세상 제한되지 않는 거래로 이행함으로써 소멸한다.
- (5) 당해 물품이 처분권자의 수중을 떠나고, 소비세과세물품이 제조사업에 수입되거나 또는 관세과세물품이 관세취급으로 바뀌는 때는 물상책임의 이행은 제외된다.

第77條【受忍義務】 (1) 법률에 의해 조세를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자금에서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는 그 범위에서 재산에 대한 집행을 수인할 의무를 진다.

- (2) 공적 부담으로서 부동산 소유 등에 비롯된 조세를 위하여, 소유자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수인해야 한다. 재무관청의 이익을 위하여 소유자로서 토지등기부에 등기된 자는 소유자로 간주된다. 공적 부담에 대하여 이익을 주장하는 등기되지 않은 소유자에 속한 권리는 그 효력이 변경되지 않는다.

第 3 編 一般節次規定

第 1 章 節次の諸原則

第 1 節 節次에의 關與

第78條【關係人】 관계인이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신고자 및 피신고자
2. 재무관청이 행하고자 하거나 또는 행한 행정행위의 상대방
3. 재무관청이 체결하고자 하거나 또는 체결한 공법상의 계약의 상대방

第79條【行爲能力】 (1)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자는 節次行爲의 수행에 대하여 행위능력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

1. 민법상의 행위능력을 갖는 자연인
 2. 민법상 행위능력을 제한받은 자연인. 다만 절차의 대상에 대하여 민법규정에 의해 행위능력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공법상의 규정에 의해 행위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3. 법인, 법정대표자 또는 특별한 수입자에 의한 인적결합 또는 재산집단
 4. 관청의 장, 관청의 장의 대리인 또는 위임인
- (2) 민법전 제1903조에 의한 절차의 대상에 대한 동의유보의 경우에 행위능력있는 피보호자는 민법에서 보호자의 동의없이 행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또는 공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능력이 인정된 범위내에서만 절차행위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
- (3) 민사소송법 제53조 및 제55조의 규정은 이를 준용한다.

第80條【代理人 및 補佐人】 (1) 관계인은 대리인에 의하여 대리될 수 있다.

1) 代理의 範圍

(1) 代理權과 內部關係

본조 1항 2는 단지 외부관계에서의 대리의 범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즉 관계인(대리권수여자 -본인- Vollmachtgeber)과 재무관청간의 관계에서의 대리의 범위를 정한 것이다. 대리인이 내부관계에서 관계인을 위하여 어느 범

위까지 권한을 갖는가 하는 것은 대리권수여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으로는 민법의 사무관리계약(독일민법 제675조), 위임계약(독일민법 제662조 이하) 또는 고용계약(독일민법 제611조이하)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내부관계에서 합의된 대리인의 권한은 외부관계에서 대리권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대리인이 어느 범위에서 관계인을 위하여 행정절차에서(im Verwaltungsverfahren)유효한 절차상의 행위를 할 수 있는가는 오로지 (외부관계에서의) 대리권의 범위에 따라 결정된다. 이 범위를 넘는 대표권행사는 내부관계에서 효력을 갖지 못한다. 대리권은 또한 내부관계로부터 독립한 포괄적인 성질을 갖는다(추상성의 원칙).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에서 한 행위는 내부관계에서의 의무를 위반했다 하더라도 본인의 이익과 손해에 대하여 효력을 갖는다.

(2) 代理의 法律上的 範圍

대리권의 내용에 관해서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대리권은 제80조 1항 2에 따른 권한을 갖는다. 또한 모든 행정절차상의 절차행위에 대해서도 동일(예외: 조세환급, 조세상환수령)하다. 따라서 대리권수여자는 대리의 범위를 결정한다. 제80조 1항 2단에서 의미하는 행정절차는 외부효력을 갖는 재무관청의 행위, 외부효력을 갖는 요건심사에 대한 행위, 행정처분행위 또는 공법상의 계약 체결 등을 말한다. 제80조 1항 2단의 절차행위 Verfahrenshandlung)는 포괄적인 의미로서 행정절차상의 의사표시뿐 아니라 사실행위도 포함한다.(예: 차감 계정신고나 복대리인의 선임 등을 말한다).

(3) 代理範圍의 法律上的 制限

대리는 법률에 의하여 조세환급과 조세상환을 수령할 수 없다(80조 1항 2단 후단). 이는 특히 근로소득세의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4) 代理範圍의 概念上的 制限

대리인에 의하여 대리될 수 없는 행위로는 특히 개인의 전속성이 강한 선서 절차를 들 수 있다(제95조). 다만 대리인은 선서절차에 참여하는 것은 허용된다.

(5) 財務官廳의 通知義務

재무관청이 관계인 자신을 상대할 때에는 대리인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제80조 3항 3단). 이 경우는 반드시 관청이 알려야 하는 당위규정(Sollvorschriften)으로 입법되어 있다. 그 이유는 대리권의 범위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적인 대리권이 수여되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이때에 재무관청으로부터 관계인을 상대한 사실상의 결과가 대리인에게 전달되면 그는 위임자의 개인적인 협력관계에서 최소한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대리권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대리인은 그의 임무를 행정절차에서 수행할 수 있고, 의도된 관계인의 탈세를 통한 악용을 막을 수 있다.

대리권수여행위는 그 내용에 다른 것이 발생하지 않는한 행정절차에 관계하는 일체의 절차행위에 대하여 권한을 부여한다. 대리권수여행위는 조세환급 및 조세상환의 수령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대리인은 청구에 의해 그 대리권수여행위를 서면으로 증명해야 한다. 관청에 대한 대리권수여행위의 철회는 철회가 관청에 송달된 때 비로소 효력을 발생한다.

- (2) 대리권수여행위는 피대리인의 사망, 그 행위능력 또는 그 법률상의 대리변동에 의해서도 소멸되지 않는다. 다만 대리인이 행정절차에서 권리승계인을 위해 행위하는 때는 청구에 의해 그 대리권의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 (3) 절차를 위해 대리인이 임명되는 때는 관청은 대리인을 상대방으로 해야 한다. 관청은 관계인에게 협력의무를 지워져있는 경우에는 관계인 자신을 상대방으로 할 수 있다. 재무관청이 관계인 자신을 상대하는 때는 대리인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 (4) 관계인은 심리 및 토론을 위해 보좌인과 동시에 출두할 수 있다. 보좌인에 의한 진술은 관계인이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한 관계인에 의한 진술로 간주한다.
- (5) 대리인 및 보좌인이 자격 없이 업무상의 세무원조를 하는 경우 이들을 거부해야 한다. 공증인 및 변리사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6) 대리인 및 보좌인이 서면에 의한 진술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대리인 및 보좌인이 적절한 진술능력을 갖지 않는 때는 구두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세무사법 제3조 및 제4조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자연인에 대해서는 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7)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 또는 보조인의 거부는 관계인에게도 통지해야 한다. 거부된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 거부후에 행한 절차행위는 무효로 한다.

第81條 [職權에 의한 代理人의 任命] (1) 대리인이 존재하지 않는 때는 後見法院²⁾은 재무관청의 청구에 의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하여 적당한 대리인

2) 後見法院(Vormundschaftsgericht)

後見이란 未成年者, 禁治産者, 限定治産者를 보호·교양하고 그 자의 행위를 대리하여 그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

을 임명해야 한다.

1. 신원불명의 관계인
 2. 그 거소를 모르거나 또는 그 事務執行을 방해받고 있는 不在의 관계인
 3. 이 법률의 적용범위에서 거소를 갖지 않는 관계인이 대리인을 임명하는 재무관청의 청구로 정해진 기간내에 응하지 않는 경우의 당해 관계인
 4. 심리질환 또는 육체적 정신적 심적 장애로 행정절차에서 스스로 행위할 상태가 아닌 관계인
 5. 절차에 관계되는 無主物件에 대하여 당해 물건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권리 및 의무를 유지하기 위하여.
- (2) 대리인의 임명에 대하여는 제1항 4호의 경우는 관계인이 주소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후견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임의의 재판사건에 관한 법률 제65조 1항). 그밖의 경우는 청구한 재무관청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후견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
- (3) 대리인은 그 임명을 청구한 재무관청의 장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의 청구권 및 그 現金代替金の 환급청구권을 갖는다. 재무관청은 피대리인에게 그 비용의 변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재무관청은 보수를 정하고 대체금 및 비용을 확인한다.
- (4) 그밖에 대리인의 임명 및 직무는 제1항 4호의 경우에는 보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이외의 경우는 감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第 2 節 公務員 및 其他 者の 除斥 및 忌避

第82條 [除斥者] (1) 다음 각호의 자는 행정절차에서 재무관청을 위하여 활동할 수 없다.

1. 스스로 관계인인 자
2. 관계인의 가족(제15조)인 자

거나 代理權·財産管理權이 없을 때에 비로소 後見이 개시된다. 無能力者의 保護制度인 것은 물론이다. 後見機關으로서의 후견의 事務自體를 집행하는 後見人과 후견인을 監督하는 親族會와 法院이 있다.(법률사전, 1132면). 후견법원은 지방법원의 한 部로서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가족법상의 문제에 대한 법률상 판단을 한다.

3. 법률 또는 授權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또는 행정절차에서 관계인을 대리하는 자

4. 행정절차에서 관계인을 위하여 조세사안에 관하여 원조를 행하는 자의 가족 (제15조)인 자

5. 관계인에게 대가를 받고 고용된 자 또는 관계인옆에서 이사, 감사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의 일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자. 다만 당해 임명기관이 관계인인 자에 대해서는 본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6. 자기의 직무상의 자격외에 사안에 대하여 감정을 한 자 또는 기타 활동을 한 자

활동 또는 결정에 의하여 직접적 이익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은 일이 있는 자는, 관계인과 동일한 지위에 있다. 이익이나 불이익이 사안에 의하여 공동의 이해가 영향을 받는 것과 같이 직업단체 또는 주민단체에 그자가 속하고 있다는 것에만 근거한 경우는 前段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척된 자는 지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1인의 위원이 자기가 제척된 자로 고려될 때 또는 제1항의 규정의 요건이 존재하는가의 여부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때는 이를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지해야한다. 위원회는 제척에 대하여 결정한다. 당해 관계인은 이 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 제척된 위원은 그후 심의 및 결의에 출석해서는 안된다.

第83條 [偏見의 憂慮] (1) 공무원의 공평에 대한 불신임을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족한 이유가 존재하거나 또는 관계인에 의하여 관련된 이유의 존재가 주장되는 때는 공무원은 관청의 장 또는 그 수임자에게 보고하고 그 명령에 기초하여 관여를 중지해야한다. 편견의 우려가 관청의 장에게 관계하는 때는 관청의 장이 스스로 관여를 중지하지 않는한 이 명령은 감독관청이 행한다.

(2)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제82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第84條 [委員會의 委員의 忌避] 각관계인은 행정절차에서 위원회의 위원으로

당해 행정절차에서 활동할 수 없거나(제82조) 또는 편견의 우려가 있는 자(제83조)를 기피할 수 있다. 구두심리에서의 기피는 서면 또는 기록부에서 이를 명백히 한다. 관계인이 자기에게 알려진 기피이유를 주장함이 없이 구두심리에 참가한 경우에 기피의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기피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제82조 제3항 제2단에서 제4단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기피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위원회 절차를 종결하는 결정에 대하여 병합해서만 이를 다룰 수 있다.

第 3 節 課稅의 諸原則, 證據方法

第 1 款 通則

第85條 [課稅의 諸原則] 재무관청은 조세를 법률이 정한 기준에 따라 평등하게 확정하고 징수해야 한다. 특히 재무관청은 조세를 경감하여 불법하게 징수하는 것 또는 조세환급 및 조세상환을 불법하게 허용 또는 거부하지 않도록 확보해야 한다.

第86條 [節次의 開始] 재무관청이 행정절차를 실시할 것인지의 여부 및 그 시기는 재무관청이 義務的 裁量³⁾으로 결정한다. 前段의 규정은 다음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재무관청이 법규에 근거하여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의해 활동해야 하는 경우
2. 재무관청이 법규에 근거하여 신청에 의해서만 활동할 수 있고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3) 義務에 合當한 裁量(Pflichtgemäßen Ermessen)

행정청에 재량권이 인정된다하더라도 그것은 행정청의 임의로운 재량권 행사를 허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재량권의 입법목적에 따라 행사해야 하고, 재량의 법률상의 한계를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재량은 언제나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의무에 합당한 것』이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모든 재량은 의무에 합당한 재량이다.

第87條 [公用語] (1) 공용어는 독일어로 한다.

- (2) 외국어로 재무관청에 신청서 또는 지원서, 證據書類, 證書 또는 그밖의 서면이 제출되는 때는 재무관청은 지체없이 번역한 것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認證된 번역문 또는 공개적으로 임명되거나 宣誓한 통역자 또는 번역자에 의해 작성된 번역문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된 번역문을 지체없이 제출하지 않는 때는 재무관청은 관계인 자신의 비용으로 번역문을 조달할 수 있다. 재무관청이 통역자 또는 번역자를 관여케하는 때는 이들은 증인 및 감정인의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보상을 받는다.
- (3) 재무관청이 일정한 방법으로 활동해야하는 기간의 진행이 신고, 신청 또는 의사표시의 통지에 관계되고 이들이 외국어로 되어있는 때는 기간의 진행은 당해 관청에 번역문이 제출된 날로부터 개시한다.
- (4) 외국어에 의한 신고, 신청 또는 의사표시에 의해 관계인의 이익을 위하여 재무관청에 대하여 기간이 엄수되고 공법상의 청구권이 행사되거나 급부가 요구되어야 하는 때는 재무관청의 요구에 의해 재무관청이 지정한 상당기간 내에 번역문이 제출되는 경우 당해 신고, 신청 또는 의사표시는 재무관청의 수령일자에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전단에서 규정하는 이외의 경우에는 국제협정에 의한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번역문의 수령일자 기준으로 한다. 기간이 지정된 경우에는 전 각단의 법적 효과를 알려야한다.

第88條 [調査의 原則] (1) 재무관청은 사실관계를 직권에 의해 조사한다. 재무관청은 조사의 방법 및 범위를 정한다. 재무관청은 관계인의 진술 및 증거의 제출에 구속되지 않는다. 이들 의무의 범위는 개별사안의 사정에 따른다.

(2) 재무관청은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중요한 일체의 사정, 관계인에 대해서는 유리한 사정도 고려해야한다.

第89條 [助言, 情報⁴⁾] 申告서 또는 신청서가 단지 과실로 또는 不知에 의해 제출되지 않거나 또는 부정확한 신고서나 신청서가 제출되는 경우에는 재무관청은 이들의 제출 또는 그 정정을 요구해야한다. 재무관청은 필요한 때는

4) 助言, 情報

본조 1단은 비단 행정절차에서 뿐아니라 행정절차개시 전에도 적용된다.

행정절차상의 관계인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第90條 [關係人の 協力義務] 5) (1) 관계인은 사실관계조사에 협력할 의무를 진다. 관계인은 특히 과세에 중요한 사실을 완전하고도 진실에 따라 명백히 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증거방법을 제출함으로써 협력의무를 다한다. 이들 의무의 범위는 개별사안의 사정에 따른다.

(2) 이 법률의 적용범위 이외의 사실에 관계된 사실관계가 조사되고 세법상 인정되는 때는 관계인은 이들 사실관계를 명백히 하고, 필요한 증거방법을 수집해야한다. 관계인은 전단의 경우, 자기에게 속한 일체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가능성의 달성에 노력해야한다. 관계인이 당해 사안의 사정에 따라서 자기의 제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전단의 가능성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은 사실관계를 명백히 하거나 증거방법을 수집할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할 수 없다.

第91條 [關係人の 意思聴取] 6) (1) 관계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결정을 위한 중요한 사실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부여해야한다. 특히 조세신고서에 기재된 사실관계에서 조세의무자의 불이익과 현저하게 다른 사실관계의 경우에는 전단의 규정을 적용한다.

(2) 개별사안의 사정에 필요하지 않는 때는 의견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즉시결정이 지연의 우려를 이유로 하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관계인의 협력의무(제90조)는 조세기본법 전반에 걸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제93조, 제95조, 제97조, 제99조, 제210조, 제100조, 제134조이하, 제137조이하, 제140조이하, 제149조이하, 제154조이하, 제200조이하, 제211조이하.

6) 關係人の 意思聴取(聽問)

관계인의 의사청취는 가장 중요한 관계인의(절차상의) 권리이다. 이는 맨먼저 절차에서 그리고 절차를 통하여 관계인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보호하고 또한 관계인에게 불이익한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기능을 갖는다. 이는 독일의 聯邦行政節次法(Bundesverwaltungsverfahrensgesetz)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제도로써 조세기본법에 규정된 것이다.

2. 의견청취에 의해 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의 엄수가 의문시되는 경우
 3.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서 관계인의 사실기재와 관계인의 불이익과 관계없는 사실기재인 경우
 4. 재무관청이 일반처분 또는 동종의 2이상의 행정행위를 하고 컴퓨터에 의해 행정행위를 하는 경우
 5. 집행상의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 (3) 의견청취는 긴급한 공익에 반한 경우에는 이를 하지 않는다.

第92條【證據方法】 재무관청은 義務的 裁量⁷⁾으로 사실관계의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證據方法을 채용한다. 재무관청이 특히 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관계인 및 그외자로부터 모든 종류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
2. 감정인을 초청하는 것
3. 증서 및 서류를 가져오게 하는 것
4. 檢證하는 것

第 2 款 情報 및 鑑定人의 鑑定에 의한 立證

第93條【關係人 및 其他의 者의 情報義務】 (1) 관계인 및 그외자는 과세에 대하여 중요한 사실관계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재무관청에 제공해야한다. 전단의 규정은 권리능력없는 사단, 재산집단, 관청 및 공법단체의 기업체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한다. 관계인 이외의 자에 대해서는 관계인에 의한 사실관계의 해명이 목적을 이루지 않거나 또는 아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비로소 정보가 요구되어야 한다.

(2) 정보의뢰에는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정보가 정보의무자의 과세를 위해서 또는 그외자의 과세를 위하여 요구되는가의 여부가 표시되어야한다. 정보의뢰는 정보의무자의 요구에 의해 서면으로 해야한다.

(3) 정보는 양심에 따라 진실을 제공해야한다. 정보의무자는 기억에 의해 정보

7) 제92조 - 위의 “義務에 合當한 裁量” 설명참조.

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장부, 기록, 업무상의 서류 및 기타 문서를 조사하거나 필요한 범위에서 이러한 것들로부터 기록을 작성해야한다.

- (4) 정보의무자는 정보를 서면, 구두 또는 전화로 제공할 수 있다. 재무관청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정보의무자가 서면으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5) 재무관청은 정보의무자가 관공서에 구두의 정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요구에 관계없이 서면에 의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거나 또는 서면으로 된 정보가 사실관계의 해명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재무관청은 특히 구두에 의한 정보의 제공을 명할 권한을 갖는다. 이 경우에는 제2항 제1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 (6) 정보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관공서에 구두로 한 정보에 관해서는 기록을 작성해야한다. 기록에는 출석자의 성명, 장소, 일시 및 정보의 중요한 내용을 기록해야한다. 기록에는 구두로 한 정보의 제공을 받는 공무원 및 정보의무자가 서명해야한다. 관계인에게는 기록의 등본을 교부해야한다.

第93a條【一般通知義務】 (1) 과세확보를 위하여(제85조) 연방정부는 상원의 동의를 얻어 법규명령으로 관청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재무관청에 통지하도록 의무를 과할 수 있다.

- 1. 조세우대의 거부 또는 제한의 효과가 있거나 관계인에게 조세의무의 부과를 가능하게 하는 행정행위
- 2. 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제정제치
- 3. 무허가불법노동 및 무허가노동자의 인도 또는 외국인의 무허가 직업종사근거지

또한 법규명령은 관청 및 공법상의 방송기관이 지급하는 경우 지급수령인은 그의 조세상의 조세기록의무 및 신고의무를 경감하기 위하여 연간 지급총액 및 당해 지급으로 발생한 조세의무자에 관한 재무관청의 평가를 신고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재무관청에게 수령자, 지급근거 및 시기를 통지해야한다는 규정에 근거한 통지, 정보 및 직무원조에 대한 관청 및 방송기관의 의무는 그 적용을 방해받지 않는다.

- (2) 채무관리국, 우편대체저금국, 우편저축국, 금융기관, 법인세법에서 말하는 공법상의 법인의 경제적 사업종류, 직업회의소 및 보험업자는 통지의무를 지지 않는다.
- (3) 법규명령은 통지장소, 관계인의 신고에 대한 의무, 통지할 사항 및 통지받을 관할권이 있는 재무관청을 상세히 규정하고 또한 통지의 범위, 시기, 절차를 규정해야한다. 법규명령은 특히 조세상의 의미가 적은 사안에 대한 통지의무의 예외를 규정할 수 있다.

第94條 [宣誓에 의한 訊問⁸⁾] (1) 재무관청은 정보의 의의를 고려하거나 진실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관계인이외의 자의 선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재무관청은 선서할 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관할 재정법원에 선서에 의한 신문을 촉탁할 수 있다. 선서할 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재정법원 또는 특별히 설치된 재정법원의 부서의 소재지에 소재하지 않는 때는 관할권을 가진 지방법원에도 선서에 의한 신문을 촉탁할 수 있다.

8) 宣誓에 의한 訊問

(1) 訊問의 意義

법원 또는 당사자가 증인 또는 반대당사자 등에 하는 질문을 말한다. 예) 증인신문. 신문에 관한 일반적인 조항은 93조임. 94조는 93조를 보충하는 조항임과 동시에 모든 조세법상의 행정절차에 적용됨. 이는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실제로 이용된 경우는 거의 없다.

(2) 적용범위

① 관계인이외의 者(Nichtbeteiligte)

여기에는 78조에서 규정한 관계인이나 34조, 35조, 79조 3항 4항, 80조, 81조에서 규정한 자가 아닌 자로서 선서거부권을 주장할 수 없거나(예, 101조, 102조, 103조 참조), 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없는 경우에 (예, 101조이하 참조) 선서에 의하여 신문에 응하여야한다.

② 선서능력자

선서를 해야할 정보의무를 진 그밖의 제3자는 정보제공능력이 있고 (93조) 또한 선서능력을 갖는다. 이때에 행위능력(79조)은 요구되지 않는다. 법인, 법인격없는 조합, 재산의 집단, 행정청, 공법상의 단체는 언제나 정보의무가 없다.

③ 대리인에 의한 대리

관계인이외의 자의 선서에 의한 정보제공행위는 대리할 수 없는 행위이다.

- (2) 재무관청은 촉탁서에 심문의 대상 및 관계인의 성명 및 수신인의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 법원은 관계인 및 촉탁한 재무관청에 개정일을 통지해야 한다. 관계인 및 촉탁한 재무관청은 심문중에 질문할 권리를 갖는다.
- (3) 법원은 증언 또는 선서의 거부의 적법성에 대하여 결정한다.

第95條 [宣誓에 대신하는 保證⁹⁾] (1) 재무관청은 관계인이 주장한 사실의 정당성에 대하여 선서에 대신하여 보증할 것을 당해 관계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선서에 대신하는 보증은 진실의 구명을 위하여 다른 수단이 존재하지 않거나 타절차가 아무런 효과를 발생하지 않거나, 또는 현저하게 지출을 요하는 경우에만 이를 요구하는 것으로 한다. 민사소송법 제393조의 규정에서 말하는 선서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선서에 대신하는 보증을 요구할 수 없다.

- (2) 선서에 대신하는 보증은 재무관청이 이를 기록으로 작성한다. 선서에 대신하는 보증은 관청의 장, 그 고정대리인, 및 재판관직의 자격이 있거나 또는

9) 宣誓에 대신하는 保證(Versicherung an Eides Statt)

(1) 의의

제95조는 제93조를 보충하는 조항이다. 또한 이 제도는 조세법상의 행정절차에서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선서에 대신하는 보증의 허용과 절차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다.

(2) 적용범위

① 관계인 및 관계인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

재무관청은 오직 관계인에 대해서만 선서에 대신하는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제95조 1항 1호). 관계인에 관한 규정은 제78조 참조. 관계인의 조세의무가 한정적인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관계인의 조세상의 의무를 이행한 자(제34조, 제35조) 직권으로 관계인의 대리인으로 선임된 자(제81조) 또는 관계인을 위하여 대리권을 갖는 자(제80조)는 관계인 대신에 정보제공의무가 있으므로 이 범위내에서 이들은 관계인과 동등한 지위에 있고 선서에 대신하는 보증을 주장할 수 있다(제93조).

② 관계인 또는 관계인과 동등한 자가 아니라 재무관청 또는 제3자가 주장한 사실은 선서에 대신하는 보증의 대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또는 예컨대, Bilanz의 적정성에 관한 것같은 조세법규의 해석이나 경험법칙에 의한 법률 효과에 대한 문제는 선서에 대신하는 보증의 대상이 안되는 사실이다. 다만 가격평가나 가치판단을 기초로 한 사실, 즉 사실상의 자료에 대한 문제는 본조에 해당된다.

독일 재판관법 제110조 제1단의 요건을 갖춘 公職務의 소속자가 이를 받을 수 있다. 관청의 장 또는 그 고정대리인은 공직무의 다른 소속자에게 선서에 대신한 보증을 받는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이를 위임할 수 있다.

- (3) 정당성을 보증하는 진술은 서면으로 확인하고 동시에 관계인에게 선서를 받기 전 최소한 1주간내에 통지되어야 한다. 보증은 관계인이 주장사실을 반복하여, '나는 선서에 대신하여 양심에 따라 진실을 말하고 아무것도 숨기지 아니함을 보증한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한다. 관계인의 대리인 및 보조인은 선서에 대신한 보증에 입회할 수 있다.
- (4) 선서에 대신한 보증을 받기에 앞서 관계인에게 선서에 대신하는 보증의 의의 및 진실이 아니거나 불충분한 선서에 대신하는 보증의 형사법상의 효과에 대하여 敎示하여야 한다. 교시는 이를 기록에 기재해야 한다.
- (5) 기록에는 출석자의 성명, 기록작성의 장소 및 날짜를 기재해야 한다. 기록은 선서에 대신하는 보증을 한 관계인에게 승인을 위하여 읽어서 듣게하거나 또는 열람의 요구가 있을 때 제시해야 한다. 승인은 그 취지를 조서에 기재하고 관계인이 이에 서명해야 한다. 전단의 경우 조서에는 선서에 대신하는 보증을 채용한 공무원 및 조서작성자가 서명해야 한다.
- (6) 선서에 대신하는 보증은 제328조의 규정에 의해 강제할 수 없다.

第96條 [鑑定人の 依頼] (1) 재무관청은 감정인의 의뢰여부를 결정한다. 지연의 우려가 없는 한 재무관청은 감정인으로 임명할 자를 관계인에게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

- (2) 감정인의 공평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또는 감정인의 활동에 의하여 업무상 또는 경영상의 비밀의 침해 또는 관계인의 업무상의 활동의 손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은 편견의 우려를 이유로 감정인을 기피할 수 있다. 기피는 재무관청에 대하여 감정인의 통지후 지체없이 해야 하고 늦어도 2주간 이내에 기피이유를 疎明하여 이를 주장해야 한다. 전단에 정한 날자이후의 기피는 기피이유를 사전에 주장할 수 없었던 이유가 소명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기피에 관해서는 감정인을 임명한 또는 임명하고자 한 재무관청이 결정한다. 기피신청은 절차연기의 효력을 갖지 않

는다.

- (3) 감정인으로 임명된 자는 그 요구된 종류의 감정을 하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임명된 경우 또는 감정을 하는데 그 지식이 요구되는 학술, 예술 또는 영업을 영리를 위하여 공개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또는 이들을 운영하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임명되거나 수권받은 경우에는 그 임명에 따라야한다. 재무관청에 대하여 감정을 하는데 따르는 취지를 진술하는 자도 또한 감정을 할 의무를 진다.
- (4) 감정인은 편견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들어 감정을 할 것을 거부할 수 있다.
- (5) 공직무의 소속원은 당해 소속원이 근무법에 의해 요구된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이를 감정인으로서 감정할 수 있다.
- (6) 감정인에게는 조세비밀의 확보에 관한 규정을 제시해야 한다.
- (7) 감정은 통상 서면으로 한다. 구두에 의한 감정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감정의 선서는 재무관청이 감정의 의의를 고려하여 선서를 요구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감정인이 관련사항에 관한 감정에 대하여 일반적 선서를 하는 때는 그 선서를 원용함으로써 족하다. 원용은 감정서에도 표명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의 선서에 대해서는 제94조의 선서를 준용한다.

第 3 款 文書 및 檢證에 의한 立證

第97條 [文書의 提出] (1) 재무관청은 관계인 및 그외자에게 장부, 기록, 업무상의 서류 및 기타의 문서제출을 점검 및 검사를 위하여 요구할 수 있다. 재무관청은 전단의 경우에는 문서의 제출이 요구되는 자의 과세에 필요하거나 그외자의 과세에 필요한가를 표시한다. 이 경우의 제93조 제1항 제2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 (2) 장부, 기록, 업무상의 서류 및 기타 문서의 제출은 통상 제출의무자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그 정당성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요구되어야 한다. 이들의 제한은 관계인이 조세우대를 주장하는 경우, 또는 재무관청이 臨場調査를 예정하지 않거나 중요한 과세상의 효과를 위한 빠른 해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적용하

지 않는다.

- (3) 재무관청은 제1항에서 정하는 문서의 관공서에의 제출을 요구하고 또는 제출의무자가 동의하거나 문서가 관공서에의 제출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의무자 앞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47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第98條 [檢證] (1) 재무관청이 검증을 하는 때는 그 결과를 서류에 기록해야 한다.

- (2) 검증에는 감정인을 초치할 수 있다.

第99條 [土地 및 空間에의 出入] (1) 재무관청에 의해 검증을 위탁받은 공무원 및 제96조 및 제98조의 규정에 의해 초치된 감정인은 과세를 위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는 범위에서 토지, 공간, 선박 및 사업설비 및 유사한 시설에 통상의 영업 및 작업시간내에 출입할 권한을 갖는다. 당해 출입을 당하는 자에게는 상당한 기간전에 통지되어야 한다. 거실에는 공공의 안전 및 질서에 대한 급박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서만 소유주의 의사에 반해서 출입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는 알려지지 않는 목적물을 탐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져서는 안된다.

第100條 [有價物의 提出] (1) 관계인 및 그외자는 과세를 위해 그 상태 및 가치에 관한 확인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요구에 의해 유가물(금전, 유가증권, 귀금속류)을 재무관청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9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2) 유가물의 제출은 알려지지 않은 목적물을 탐색하기 위하여 이를 명할 수 없다.

第 4 款 情報拒否權 및 提出拒否權¹⁰⁾

10) 家族의 情報拒否權

조세법상의 행정절차에서는 제3자에 대한 정보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제93

第101條 [家族의 情報拒否權 및 宣誓拒否權] (1) 관계인의 가족(제15조)이 자기의 조세관계에 관하여 관계인으로서 스스로 정보의무를 지지 않거나 관계인을 위하여 정보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는 한 정보를 거부할 수 있다. 가족은 정보거부권에 대하여 교시를 받는다. 교시는 이를 문서에 기록해야 한다.

(2) 제1항에 규정된 자는 정보의 선서를 거부할 권리를 갖는다. 이 경우에는 제1항 제2단 및 제3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第102條 [一定한 職業上の 秘密保護를 위한 情報拒否權¹¹⁾] (1)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보를 거부할 수 있다.

1. 성직자로서의 자격으로 고백받거나 알게된 경우
2. 연방의회의원, 주의회의원 또는 제2원의원 이들 기관의 의원이 그 자격에서 사실을 듣게 되거나 들은 경우의 그 상대방 및 이들 사실자체.
3. a) 변호인
b)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세무사, 經濟檢査士, 세무대리인, 공인장부 검사사
c) 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및 조산원
이들이 그 자격으로 듣게 된 사실 또는 알게 된 사실

조 1항) 관계인의 가족인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가족의 정보거부권은 진실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관계인의 과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관계인의 가족내에서의 밀접한 신뢰관계를 해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정보거부권에 관한 제101조는 모든 조세법상의 행정절차 예컨대, 강제집행절차에도 적용된다. 정보거부권은 일반적인 것으로 비단 부담적인 진술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가족을 위한 일반적인 정보거부권은 정보의무자 자신이 자기의 조세관계에 관하여 정보의무가 있거나 한사람의 관계인에 대한 정보의무를 제공해야 할 경우의 가족(제34조, 제35조 참조)은 그 범위에서 정보제공거부권이 제한된다.

11) 職業上の 情報提供拒否權(예시는 조문에 충분히 규정되어 있음)

이는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인간적인 신뢰관계를 최대한 보호하고 성공적인 직업종사의 기초를 제공하려는 취지이다. 다만 默秘義務를 면제받는 제1항 3호에서 정보제공거부권을 제한한 경우 이외에는 제102조의 규정은 모든 조세법상의 행정절차(강제집행절차포함)에 적용한다.

4. 정기인쇄물 또는 방송의 준비, 제작 또는 보급에 대하여 직업상 협력하는 자, 또는 협력한 자, 기자, 投書者 또는 기고자 및 자료제공자의 성명 및 이들의 활동에 관련하여 이들에게 이루어진 통지. 다만 기고, 자료 및 통지에 대해서는 편집공표된 부분에 한한다. 이 경우 제160조의 규정의 적용을 방해받지 않는다.
- (2) 제1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에 규정된 자의 보조자 및 직업준비를 위하여 당해 직업활동에 참가한 자는 제1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에 규정된 자와 동일한 것으로 한다. 제1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에 규정된 자는 그 보조자의 정보거부권의 행사에 관해 이를 결정한다. 다만 당해 결정을 상당한 기간내에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제한이 없다.
- (3) 제1항 제3호에 언급된 자는 이들이 묵비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정보를 거부할 수 없다. 묵비의무의 면제는 보조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4) 前 각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공증인의 법률상의 신고의무는 존속한다. 신고의무가 존속하는 한 공증인은 문서의 제출 및 기타정보의 제공에 대해서도 의무를 진다.

第103條 [犯罪 또는 秩序違反에 대한 訴追憂慮가 있는 경우의 情報拒否權]

관계인이 아닌 자 및 관계인을 위하여 정보의무를 지지않는 자는 그들의 답변이 그 자신 그 가족(제15조)이 형사재판상의 소추나 질서위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절차에 처해질 위험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보를 거부할 수 있다. 이들에게는 정보를 거부할 권리에 대하여 교시한다. 교시는 이를 기록으로 표시해야한다.

第104條 [鑑定 및 文書의 提出의 拒否] (1) 정보를 거부할 수 있는 한 감정 및 문서 또는 유가물의 제출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02조 제4항 제2단의 규정의 적용을 방해받지 않는다.

- (2) 관계인이 자주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제출을 의무지우는 한 관계인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문서 및 유가물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관계인을 위하여 작성된 업무상의 장부 및 기타 기록도 관계인을 위하여 보관되는 것으로 본다.

第105條 [官公署의 默秘義務에 대한 情報義務 및 提出義務의 關係] (1) 관청의 묵비의무 또는 독일연방은행, 주립은행, 채무관리소, 우편대체저금관서 및 우편저금국 및 이들의 기관 및 고용인을 포함한 기타 관공서의 묵비의무는 재무관청에 대한 이들의 정보의무 및 제출의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제1항의 규정은 관청 및 郵便義務를 위탁받은 자가 편지, 우편 및 통신의 비밀을 엄수할 것을 법률상 의무지우는 범위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第106條 [公益侵害의 경우의 情報義務 및 提出義務의 制限] 정보 또는 문서의 제출은 관할연방최고관청 및 관할주최고관청이 당해 정보 또는 문서의 제출에 의해 연방 및 주의 공익에 중요한 불이익을 발생할 것을 표명하는 경우에는 이를 요구할 수 없다.

第 5 款 情報義務者 및 鑑定人의 補償

第107條 [情報義務者 및 鑑定人의 補償] 재무관청이 입증목적을 위하여 의뢰한 정보의무자 및 감정인에게는 신청에 의해 증인 및 감정인의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보상한다. 전단의 규정은 관계인 및 관계인을 위하여 정보의무를 이행해야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第 4 節 期間, 期限, 原狀回復

第108條 [期間 및 期限] (1) 기간의 계산 및 기한의 지정에 대해서는 제2항에서 제5항까지의 규정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187조에서 제19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관청에 의해 정하여진 기간의 진행은 당사자에게 별도의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를 제외하고 통지된 날의 익일부터 개시한다.

(3) 기간의 말일이 일요일, 법률상의 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는 때는 기간은 다음 평일의 경과로서 종료한다.

- (4) 관청이 일정한 기간에 대해서만 급부를 해야하는 때는 이 기간의 말일이 일요일, 법률상의 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당해 기간은 그 말일의 경과로서 종료한다.
- (5) 관청에 의해 정해진 기한은 당해 기한이 일요일, 법률상의 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를 엄수해야 한다.
- (6) 기간이 시기에 의해 정해지는 때는 일요일, 법률상의 휴일 또는 토요일을 산입한다.

第109條 [期間의 延長] (1) 조세신고서의 제출의 기간 및 재무관청에 의해 정해진 기간은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전단의 규정에서 말하는 기간이 이미 경과한 때는 특히 기간경과로 발생하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을 소급하여 연장할 수 있다.

(2) 재무관청은 기간의 연장을 담보의 제공에 관련시키거나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행위의 부관에 연계시킬 수 있다.

第110條 [原狀回復] (1) 자기의 과실에 의하지 않고 법률상의 기간의 엄수를 방해받은 자는 신청에 의해 원상회복이 인정된다. 대리인의 과실은 본인의 과실로 본다.

(2) 신청은 방해가 제거된 후 1월 이내에 한다. 신청의 이유가 되는 사실은 신청할 때 또는 신청에 관한 절차에서 소명한다. 신청기간내에 懈怠行爲를 이행해야한다. 해태행위가 행해지는 때는 원상회복은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3) 해태기간종료후 1년을 경과한 때는 당해 1년을 경과하기 전에 불가항력이나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더이상 원상회복을 신청하거나 해태행위를 치유할 수 없다.

(4) 원상회복의 신청에 관해서는 당해 해태행위에 관한 判定財務官廳이 이를 결정한다.

第 5 節 司法共助 및 行政共助

第111條 [行政共助義務] 12) (1) 일체의 법원 및 관청은 과세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공조를 해야한다. 이 때에 제 102조 규정의 적용은 방해받지 않는다.

(2) 행정공조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1. 관청이 기존의 指示關係의 범위내에서 상호 원조를 하는 경우
2. 원조가 공조를 요구받은 관청이 자기의 임무로서 의무지워진 행위인 경우
- (3) 채무관리국, 우편대체저금국, 우편저금국, 금융기관 및 공법상의 단체인 기업체는 본조에 해당되지 않는다.
- (4) 관세행정의 영역에 대해서는 행정공조의무는 연방재무장관이 관세보조기관으로서 특히 임명한 공공 운수 또는 공공 화물취급기업 및 이들 기업체에서 근무하는 자에 미친다.
- (5) 이 경우의 제105조 및 제10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第112條 [行政共助의 要件 및 限界] (1) 재무관청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특히 행정공조를 요구할 수 있다.

1. 재무관청이 법적 이유에 의하여 직무행위를 스스로 행할 수 없는 경우
2. 재무관청이 사실상의 이유, 특히 직무행위를 행하기 위해 필요한 직원 또는 시설을 결여하여 직무행위를 스스로 행할 수 없는 경우
3. 당해 직무의 실시를 위하여 재무관청에 알려지지 않은 사실 및 재무관청

12) 行政共助義務

(1) 行政共助의 必要性

행정공조는 과세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 이는 일반적으로 재무관청의 권한 범위내에서 과세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공조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권한있는 재무관청이 단독으로는 과세실시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그 범위에서 행정공조를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지나친 공조요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2) 行政共助의 適用範圍

특별한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가족의 정보제공거부권은(제102조) 행정공조에 우선한다. 따라서 제102조에 적용을 받는 경우 제111조의 의무를 거부할 수 있다. 조세법과 관계없는 행정청의 의무와 묵비권에 관한 그밖의 공적인 지위는 행정공조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즉 제105조와 제106조가 적용된 경우는 행정공조의무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다.

스스로가 조사할 수 없는 사실을 알 것이 요구되는 경우

4. 당해 임무수행을 위하여 공조를 요구받은 관청이 점유하는 문서 또는 기타 다른 증거방법을 필요로하는 경우
 5. 직무행위를 하는데 공조를 요구받은 관청보다 현저하게 다액의 지출을 요하는 경우
- (2) 공조를 요구받은 관청은 당해 관청이 법적 이유로 공조를 금지받고 있는 경우에는 공조를 해서는 안된다.
- (3) 공조를 요구받는 관청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공조를 할 필요가 없다.
1. 타관청이 현저하고 용이하게 공조를 할 수 있거나 현저하게 소액의 지출로서 할 수 있는 경우
 2. 당해 관청이 공조를 하는데는 상당히 다액의 지출을 요하는 경우
 3. 당해 관청이 공조를 요하는 재무관청의 임무를 고려하여 공조의 범위에 의해 당해 관청의 본래의 임무의 실시를 현저히 위태롭게하는 경우
- (4) 공조를 요구받은 관청은 당해 관청이 위탁을 제3항에 언급된 이유와는 별개의 이유에 의하거나 행정공조로서 실현하려는 조치가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것을 이유로 하여 공조를 거부할 수 없다.
- (5) 공조를 요구받은 관청이 공조의 의무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는 공조를 요구한 재무관청에 그 견해를 통지한다. 공조를 요구한 재무관청이 행정공조를 요구하는 때는 공통의 사물관할권을 가진 감독관청, 또는 당해관청이 없는 때는 공조를 요구받은 관청에 대해 사물관할권을 가진 감독관청이 행정공조의 의무에 관하여 결정한다.

第113條 [官廳의 選擇] 행정공조에 대하여 2이상의 관청이 있는 때는 가능한 한 공조를 요구한 재무관청이 소속한 행정처분의 최하급행정단계의 관청에게 공조를 요구해야 한다.

第114條 [行政共助의 實施] (1) 행정공조에 의해 실시될 조치의 적법성은 공조를 요구한 재무관청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에 의하여, 행정공조의 실시는 공조를 요구받은 관청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에 의한다.

(3) 공조를 요구한 재무관청은 공조를 요구받은 관청에 대하여 채택된 조치의

합법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조를 요구받은 관청은 행정공조의 실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第115條 [行政共助의 費用] (1) 공조를 요구한 재무관청은 공조를 요구받은 관청에게 행정공조를 위한 행정수수료의 지급이 요구되지 않는다. 비용이 개별적 사안에 있어서 50DM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조를 요구한 재무관청은 공조를 요구받은 관청의 요구에 따라 비용변상을 해야한다. 동일한 단체에 속한 관청이 상호 행정공조를 하는 경우에는 비용변상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공조를 요구받은 관청이 행정공조의 실시를 위하여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직무행위를 하는 때는 이에 대하여 제3자에 의하여 부담된 당해 비용(행정수수료, 사용료 및 비용)은 공조를 요구받은 관청이 수납한다.

第116條 [租稅犯의 告發] (1) 법원 및 연방, 각주 및 공공행정의 자치단체의 제관청은 이들 기관이 직무상 인지한 사실 및 조세법의 혐의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세무서에 통지해야한다.

(2) 제105조 2항의 규정은 이를 준용한다.

第117條 [租稅事案에 있어 國家間の 司法共助 및 行政共助] (1) 재무관청은 독일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간의 사법공조 및 행정공조를 요구할 수 있다.

(2) 재무관청은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국제법상의 협정, 유럽공동체 및 유럽공동체 행정공조법의 법률서류에 근거하여 국가간의 사법공조 및 행정공조를 행할 수 있다.

(3) 재무관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무적 재량에 의해 기타 경우에도 위탁에 기초하여 국가간의 사법공조 및 행정공조를 행할 수 있다.

1. 상호주의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
2. 공조를 요구한 국가가 전달되는 정보 및 자료가 그 과세절차 및 조세법절차(질서위반절차를 포함한다.)의 목적을 위해서만 이용되는 것, 전달되는 정보 및 자료가 조세사안의 처리 또는 조세법의 추적에 관계가 있는 사람,

관청 또는 법원에만 입수되는 것을 보증하는 경우

3. 공조를 구하는 국가가 소득, 수익 및 재산에 관한 조세에 대하여 과세기초의 공정한 제한에 의한 협조적 방법으로 이중과세의 가능성을 회피하고자 한다는 것을 보증하는 경우
4. 위탁의 처리가 연방 또는 그 영역단체의 주권, 안전, 공공의 질서 또는 기타 다른 중요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또한 내국관계인에게 사법공조 및 행정공조의 목적과 합치하지 않는 손해를 발생할 우려가 없이 상업, 공업, 영업 또는 직업상의 비밀 또는 위탁에 기초하여 공표되는 업무상의 절차가 포기되는 경우

국가간의 사법공조 및 행정공조가 州재무관청에 의해 관리되는 조세의 범위는 연방재무장관이 관할권을 가진 주최고관청의 동의를 얻어 결정한다.

- (4) 사법공조 및 행정공조의 실시에 관하여 재무관청의 권한 및 관계인, 그외자의 권리 및 의무는 제1조 1항의 규정에서 말하는 조세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에 의한다. 제1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정보 및 자료의 전달에 관해서는 내국관계인에 대하여 제9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사법공조 및 행정공조가 주재무관청이 관리하는 조세와 관계된 경우 제91조 2항 또는 3항에 예외규정이 없는 한 내국관계인의 의견청취는 제91조 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언제나 행해진다.
- (5) 연방재무장관은 국가간의 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관세제도의 영역에서의 상호 사법공조 및 행정공조에 관한 국제법상의 협정을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어 법규명령으로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당해 협정에서 담보하는 의무가 이 법률에 의해 적법한 국가간의 사법공조 및 행정공조의 범위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第 2 章 行政行爲¹³⁾

13) 行政行爲(제118-제133조)

우리나라에서는 행정행위의 개념, 형식, 부관, 이유부기효력,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효력, 하자의 치유 및 전환, 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 등에 관한 것을 일반적으로 규정한 법률은 없고, 이들 문제를 완전히 이론적으로 그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이론적인 체계구성을 할 때에는 독일의 연방행정절차법, 행정법원법 등에서 입법적으로 해결한 위의 문제들을 참조하여 설명하려는 노력이 행

第118條 [行政行爲의 概念] 14) 행정행위란 관청이 공법상의 영역에서 구체적 사안을 규율하고 외부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처분, 결정, 기타 고권적 조치를 말한다. 일반처분은 일반적 징표에 의하여 특정되거나 또는 특정할 수 있는 인적 범위에 대해서 사물의 공법적 성질 혹은 공중에 의한 이용에 관련된 행정행위이다.

第119條 [行政行爲의 明確性과 形式] 15) (1) 행정행위의 내용은 충분하고 명확해야 한다.

(2) 행정행위는 서면, 구두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구두에 의한 행정행위는 정당한 이익이 있고 관계인이 지체없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해 이를 확인해야 한다.

해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거의 모든 학자들의 '행정행위'를 중심으로 한 논의는 비교적 의견일치를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우리 행정법에서 실제로 크게 문제될 수 있는 것은 행정행위에 흠이 있는 경우에 어떤 효력을 인정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흠있는 행정행위에 대하여 무효를 인정할 것인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로 할 것인가는 논란이 많은 부분이다. 독일 조세기본법에서 처럼 행정행위가 유효인 경우, 무효인 경우를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논란의 여지가 입법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경우보다는 훨씬 적다 하겠다. 우리 민법에서는 법률행위가 무효가 된 경우와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14) 行政行爲의 概念

독일에서는 행정행위의 개념을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행정행위 개념에 대한 규정이 없고 세법상으로도 분명하지 않아 그 개념정의와 적용에 있어서 혼동이 있다. 독일조세기본법 제118조에서는 행정행위를 ① 일반처분, ② 결정, ③ 기타의 고권적 조치, ④ 행정청이 법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 ⑤ 실제 법상인 개념인 동시에 쟁송법상의 개념 등으로 구분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15) 行政行爲의 形式에 관한 規定

우리나라에는 없는 규정으로 형식에 하자가 있으면 무효 또는 취소가 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문서 기타 법정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제119조의 규정은 서독 연방행정절차법상의 행정행위의 형식요건(제37조)과 동일한 것이다.

- (3) 서면에 의한 행정행위에는 처분청을 명기하고, 관청의 장, 그 대리인 또는 受任者의 서명 또는 記名을 해야한다.
- (4) 법정양식 또는 컴퓨터에 의해 이루어진 서면의 행정행위에 있어서는 제3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서명 및 기명을 하지 않을 수 있다. 행정행위의 상대방 또는 행정행위의 관계인이 그것에 첨부된 설명에 기초하여 행정행위의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내용을 기입하기 위하여 기호를 사용할 수 있다.

第120條 [行政行爲의 附款] 16) (1) 청구에 기초한 행정행위에는 부관이 법규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또는 부관이 행정행위의 법률상의 요건을 보장해야 되는 경우에 한하여 부관을 붙일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행정행위에는 의무적 재량에 의해 제1호에서 제3호까지 정한 부관을 붙이고 또는 이와 병행하여 제4호, 제5호의 부관을 붙일 수 있다.

1. 우대 또는 부담의 시기, 종기 또는 그 적용기간에 관련된 부관(기한)
2. 우대 또는 부담의 발생, 소멸을 장래의 사건의 불확실한 발생에 관련시킨 부관(조건)
3. 철회의 유보
4. 우대를 받는 자에게 행위, 수인 또는 부작위를 명하는 부관(부담)
5. 부담의 사후의 수용, 변경 또는 보충의 유보

16) 行政行爲의 附款

(1) 意義

부관이란 행정행위의 일반적인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그 행위의 요소인 의사표시의 주된 내용에 부가되는 종된 의사표시(법령상으로는 조건, 기한 등의 용어가 혼용)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부관에 관한 일반조항은 없고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예: 수산업법 제46조). 우리나라에서는 행정행위의 부관으로 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유보, 법률효과일부배제 등에 대해서 각 교과서에서 설명하고 있다.

(2) 附款의 範圍

행정행위의 부관은 ①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만 붙일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며 ② 또한 재량행위에만 붙일 수 있다. 왜냐하면 기속행위인 경우는 법규에 엄격히 기속되기 때문이다.

(3) 부관은 행정행위의 목적에 반할 수 없다.

第121條 [行政行爲의 理由附記] 17) (1) 서면에 의한 행정행위 또는 서면에 의해 확인하는 행정행위에는 그 이유를 아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이유를 부기해야한다.

(2) 이유부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요하지 않는다.

1. 재무관청이 신청에 응하거나 또한 당해 행정행위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경우.
2. 행정행위의 상대방 또는 행정행위의 관계인이 사실 및 법적 상태에 관한 재무관청의 견해를 이미 알고 있거나 이유부기가 없어도 직접 알 수 있는 경우.
3. 재무관청이 동종의 행정행위를 대량으로 하거나 또는 컴퓨터에 의해 행정행위를 하고, 동시에 개별사안의 정황에 의해 이유부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4. 이유부기를 요하지 않은 것이 법규에 의해 명백한 경우.
5. 일반처분이 공시되는 경우.

第122條 [行政行爲의 告知] 18) (1) 행정행위는 행정행위의 상대방 또는 행정행위의 관계인에게 고지해야한다. 이때에 제34조 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행

17) 行政行爲의 理由附記

행정행위에 이유를 부기할 수 있는 경우와 부기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다. 우리나라는 이와 유사한 일반규정이 없다.

18) 行政行爲의 告知

행정행위의 효력발생과 관련하여 입법된 규정이다.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 성립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함이 원칙이나 상대방에게 告知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 경우가 많다(한국, 조세기본법 제12조 1항 등). 고지는 송달 또는 公告의 방법에 의한다(우리나라에서는 개별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예: 국세기본법 제12조 2항 참조). 수령을 요하는 행정행위의 송달에 있어서는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으나(한국) 이는 도달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어렵기 때문에 독일 조세기본법에서는 도달추정규정을 두고 있다 (제122조 2항). 행정행위의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인 때에는 告知는 '公示'의 방법에 의한다(제122조 2항, 3항)(한국: 정부공문서 제5조 2항 단서).

정행위는 대리인에 대해서도 고지할 수 있다.

(2) 우편에 의하여 송달되는 서면의 행정행위는 다음의 경우에 고지된 것으로 본다.

1. 이 법률의 적용범위내에서의 송달은 우편발송후 3일이 되는 날.
2. 이 법률의 적용범위 이외에서의 관계인에 대한 송달은 우편발송후 1개월이 되는 날.

다만 당해 행정행위가 송달되지 않거나 위의 기일 이후에 송달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관청이 행정행위의 송달 및 송달일을 증명해야한다.

(3) 행정행위는 법규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에는 공시할 수 있다. 일반처분은 관계인에의 고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공시할 수 있다.

(4) 서면에 의한 행정행위의 공시는 처분내용을 그 지방의 관습에 따라 고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지방의 관습에 따른 고지에는 행정행위 및 그 이유부기의 열람장소를 기재한다. 행정행위는 토지의 관습에 따른 고지일의 2주후에 고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일반처분에 있어서는 전단의 규정과 다른 날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아무리 빨라도 고지의 익일 이후로 한다.

(5) 서면에 의한 행정행위는 송달이 법률로 규정되어 있거나 관청이 명하는 경우에는 이를 송달한다. 송달은 행정송달법의 규정에 의한다.

第123條 [受領代理人의 選任] 이 법률의 적용범위내의 주소, 거소, 본점 또는 영업소를 갖지 않는 관계인은 상당한 기간내에 요구에 의해 재무관청에 이 법률의 적용범위내의 수령대리인의 성명을 통지해야한다. 전단에서 규정하는 관계인이 수령대리인을 통지하는 않는 때는 관계인에게 보내진 서류는 우편발송후 1개월 이후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당해 서류가 도달하지 않거나 그후에 도달할 것이 확정된 경우를 제외한다. 관계인에게는 수령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경우의 법적 효과를 제시해야한다.

第124條 [行政行爲의 有效] 19) (1) 행정행위는 행정행위의 상대방 또는 그 관

19) 行政行爲의 有效

행정행위의 효력 및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규정이다. 제3항은 주의적인 규정

계인에게 고지된 날에 이들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행정행위는 당해 행정행위가 고지된 내용으로 그 효력을 발생한다.

- (2) 행정행위는 당해 행정행위가 취소, 철회, 기타의 방법에 의한 소멸, 또는 기간의 경과나 기타의 방법으로 처리되지 않는 기간 및 범위에서 효력을 가진다.
- (3) 무효의 행정행위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第125條 [行政行爲의 無效] 20) (1) 행정행위는 당해 행정행위가 특히 중대한 하자가 있고 동시에 이 하자가 일체의 사정을 적절히 고려할 때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한다.

- (2) 제1항에 정한 요건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의 각호의 행정행위는 무효로 한다.

- 1. 서면에 의한 행정행위에 처분재무관청의 표시가 없는 것
- 2. 사실상의 이유에 의하여 누구도 이에 따를 수 없는 것
- 3. 행정행위가 형벌요건 또는 벌과금요건을 실현하는 위법행위를 범하도록 요구하는 것
- 4. 행정행위가 선량한 풍속에 위반하는 것

- (3) 행정행위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사유에 의한 것만으로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

- 1. 토지관할에 관한 규정이 엄수되지 않는 경우
- 2. 제82조 1항 1단 2호에서 제6호까지 및 2단의 각규정에 의한 제척자가 관여한 경우
- 3. 법규에 의해 협력을 위하여 소집된 위원회가 행정행위를 하기 위하여 정해진 결의를 앞거나 또는 결의능력을 결한 경우
- 4. 법규에 의해 필요한 다른 관청의 협력이 없는 경우

인바 우리나라는 이에 해당하는 일반규정이 없다.

20) 行政行爲의 無效

행정행위의 하자의 경우의 효력에 관한 규정이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흠이 무효가 되고,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가 되는가에 대한 학설이 분분하다.

- (4) 행정행위의 일부분만이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 재무관청이 당해 행정행위를 무효부분없이 행하지 않을만큼 그 무효부분이 중요한 때는 당해 행정행위 전체를 무효로 한다.
- (5) 재무관청은 직권에 의해 언제라도 무효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인이 무효의 확인에 대하여 정당한 이익을 갖는 때는 재무관청은 신청에 의해 무효를 확인한다.

第126條 [節次의 瑕疵 및 形式의 瑕疵의 治療] 21) (1) 제125조의 규정에 의해 행정행위를 무효로 하지 않는 행정행위의 절차규정 또는 형식규정의 위반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1. 행정행위에 필요한 신청이 사후에 이루어진 경우
 2. 필요한 이유부기가 사후에 이루어진 경우
 3. 관계인의 필요한 의견청취가 사후에 이루어진 경우
 4. 행정행위를 하기 위하여 그 협력이 필요한 위원회의 결의가 사후에 이루어진 경우
 5. 타관청의 필요한 협력이 사후에 이루어진 경우
- (2) 제1항 2호에서 5호까지의 행위는 재판외의 권리구제절차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또는 재판외의 권리구제절차가 행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재정법원예의 소송을 제기하는데 한하여 허용된다.
- (3) 필요한 이유부기를 행정행위에 빠뜨리거나 행정행위를 하기 전에 관계인의 필요한 의견청취가 없고, 또한 그때문에 행정행위에 대한 법정기간내에 다룰 수가 없는 때는 권리구제기간의 경과를 묻지 않는다. 제110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기간에 대하여 기준이 되는 사실은 절차상의 행위가 보완되는 날에 발생한 것으로 한다.

21) 節次 및 形式의 瑕疵와 그 治療

절차의 하자 및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의 효력에 대한 입법적 해결이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규정이 없고 학설상 하자를 논의할 때에 행정행위의 成立要件(內部的 成立要件: 주체, 내용, 절차, 형식에 관한 요건; 外部的 成立要件: 외부에 표시)과 效力發生要件으로 나누어 각각 경우의 하자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독일 조세기본법의 제126조, 제127조의 규정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절차하자에 대한 해석의 기준을 제공해줄 수 있다.

第127條 [節次의 瑕疵 및 形式의 瑕疵의 效果] 제125조의 규정에 의해 무효가 되지 않는 행정행위의 취소는 당해 행정행위가 절차, 형식 또는 토지관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성립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될 수 없다. 다만 실제로 다른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第128條 [瑕疵있는 行政行爲의 轉換] 22) (1) 하자있는 행정행위는 다른 행정행위로 이를 전환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처분재무관청에 의해 동일한 절차방법 및 형식에서 적법하게 할 수 있고, 또한 당해 다른 행정행위를 하기 위한 요건을 만족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된 행정행위가 처분재무관청의 명백한 의도에 반하거나 또는 관계인에 대한 그 법적 효과가 하자있는 행정행위보다 불이익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전환은 하자있는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3) 법률상 구속된 결정으로서만 할 수 있는 결정은 재량결정으로 전환할 수 없다.

(4) 이 경우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第129條 [行政行爲시의 明白한 잘못] 재무관청은 행정행위를 할 때 범한 誤記, 계산의 잘못 및 유사한 명백한 잘못을 언제라도 訂正할 수 있다. 관계인의 정당한 이익은 정정하여야 한다. 재무관청은 정정되어야 할 서면의 제출을 요구할 권한을 갖는다.

第130條 [違法한 行政行爲의 取消] 23) (1) 위법한 행정행위는 당해 행정행위가 불가쟁력을 발생한 후에도 장래 또는 과거에 대한 효력으로서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22) 瑕疵있는 行政行爲의 轉換

우리나라는 이 문제를 학설 또는 判例에 맡기고 있을 뿐이다.

23) 行政行爲의 取消 및 撤回

우리나라는 이에 관한 규정 없고 학설, 판례에 의하여 해결하고 있다.

- (2) 권리 또는 법적으로 중요한 이익을 부여하거나 확인하는 행정행위(수익적 행정행위)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만 이를 취소할 수 있다.
1. 당해 행정행위가 사물관할권을 가지지않는 관청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2. 당해 행정행위가 사기, 강박 또는 매수에 의한 부정한 수단으로 이루어진 경우
 3. 수익자가 중요한 관계에 있어서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신청으로 당해 행정행위를 얻은 경우
 4. 수익자가 당해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알고 있거나 중대한 과실에 의해 알지 못했던 경우
- (3) 재무관청이 위법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가 정당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취소는 그 알았던 날부터 1년이내에 한해 할 수 있다. 전단의 규정은 제2항 2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4) 행정행위가 불가쟁력을 발생한 후 취소에 관해서는 토지관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관할권을 가진 재무관청이 이를 결정한다. 이 규정은 취소되어야할 행정행위가 타재무관청에 의해 행해진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26조 2단의 규정은 적용을 방해받지 않는다.

第131條 [適法한 行政行爲의 撤回] (1) 적법한 비수익적 행정행위는 당해 행정행위가 불가쟁력을 발생한 후에도 동일 내용의 행정행위를 다시 해야하거나 또는 다른 이유로 철회가 부적법한 경우를 제외하고 장래에 대한 효력으로서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 (2) 적법한 수익적 행정행위는 당해 행정행위가 불가쟁력을 발생한 후에도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장래에 대한 효력으로서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1. 철회가 법규에 의해 적법하거나 또는 행정행위로 유보되어 있는 경우
 2. 행정행위에 부담이 부과되고 동시에 수익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정해진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재무관청이 후에 발생한 사실에 기초하여 행정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및 철회를 하지 않으면 공공의 이익을 위협하게 되는 경우
이 경우 제130조 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3) 철회된 행정행위는 재무관청이 특정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철회의 효력을 발생하는 때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 (4) 철회에 관해서는 행정행위의 불가쟁력을 발생한 후는 토지관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관할권을 가진 재무관청이 결정한다. 철회될 행정행위가 타관청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도 또한 같다.

第132條 [權利救済에 있어서 取消, 撤回, 廢止 및 變更] 24)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폐지 및 변경에 관한 규정은 재판외의 권리구제절차계속증 및 재정재판절차계속증에도 이를 적용한다. 제130조 2항 및 3항, 제131조 2항 및 3항의 각 규정은 재판외의 권리구제절차 또는 재정재판절차의 계속증, 제3자에 의해 다루어진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는 당해 취소 및 철회에 의해 재판외의 권리구제 또는 소송의 대상이 소멸하는 경우에도 방해받지 않는다.

第133條 [文書 및 物件의 返還] 행정행위가 철회 또는 취소되어 불가쟁력을 발생하거나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하여 당해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거나 더이상 발생하지 않게되는 경우에는, 재무관청은 당해 행정행위에 기초하여 제공한 행정행위에 의한 권리의 증명 또는 그 행사를 위한 문서 혹은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들 문서와 물건의 보유자 및 그자가 점유자가 아닌 때는 당해 점유자도 그 반환의무를 진다. 다만 보유자 또는 점유자는 재무관청에 의해 무효로 표시된 당해 문서 또는 물건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무효의 표시를 할 수 없거나 또는 필요한 경우 명백하게 또는 계속하여 무효의 표시를 할 수 없는 물건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24)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폐지, 변경 등은 권리구제절차 중에도 할 수 있다는 주의적 규정이다.

第 4 編 課稅의 實施

第 1 章 租稅義務者의 把握

第 1 節 身分登錄 및 事業登錄

第134條 [身分登錄 및 事業登錄] (1) 과세의 대상이 되는 개인 및 사업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재무관청에 대신하여 신분등록 및 사업등록을 실시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제328조에서 제335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가진다.

(2) 신분등록은 현재 근무하고 있고 다른 주소를 갖지 않는 연방국방군, 연방국방수비대 및 경찰의 소속원에는 미치지 않는다.

(3) 주정부는 법규명령에 의해 조사기일을 정한다. 주정부는 조사의 범위(제135조)를 일정한 지방자치단체 및 일정한 사항에 제한할 수 있다. 주정부는 이 권한을 법규명령에 의해 최고재무관청에 위양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는 신분등록 및 사업등록의 목적을 위하여 특별조사의 법적 근거가 있는 범위에서 특별조사를 신분등록 및 사업등록과 동시에 할 수 있다. 이 특별조사에는 제1항 2단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第135條 [身分登錄 및 事業登錄에 대한 協力義務] 1) (1) 토지소유자는 신분등록 및 사업등록의 실시에 대하여 협조의무를 진다. 토지소유자는 특히 그 토지상에 주거, 거실, 사업소, 창고 또는 기타 사무소를 가지는 자를 신고해

1) 土地所有者의 身分登錄

토지소유자는 그의 토지상에 주거, 거실, 사업소, 창고, 기타 사무소 가진 자를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35조 1항). 이 협조의무는 독일기본법 제2조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에서 부담된다..

* 독일기본법 제2조

① 누구든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헌법질서나 도덕률에 반하지 않는 한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② 누구든지 생명과 不可侵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사람의 자유는 불가침이다. 이 권리는 법률을 근거로 해서만 침해될 수 있다.

야한다.

- (2) 주거보유자 및 임차인은 자기 및 그 생계에 속한 자에 대하여 신분등록 및 사업등록에 필요한 신고, 특히 성명, 가족의 상황, 생년월일 및 출생지, 신봉하는 종교, 주소, 영리활동 또는 직업, 사업소에 대하여 그 신고를 소정의 공문서양식에 의해 해야한다.
- (3) 사업소, 창고 또는 기타 다른 사무소의 보유자는 당해 공간에서 수행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등록에 필요한 소정의 양식에 의한 신고 특히 사업의 종류 및 규모 그리고 사업주에 관한 신고를 해야한다.

第136條 [身分登録에 대한 變更通知] 신고관청은 신고제도에 관한 주규정으로 알게된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의 변경을 소관세무서에 통지해야한다.

第 2 節 申告義務

第137條 [法人, 人的 結合, 財産集團의 租稅上の 把握] (1) 자연인이 아닌 조세의무자는 조세상의 파악에 대하여 중요한 사정, 특히 설립, 권리능력의 취득, 법형식의 변경, 주된 사무소 또는 본점의 이전 및 해산에 대하여 제20조에 규정한 소관세무서 및 물세의 징수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신고하여야한다.

- (2) 통지는 신고의무가 있는 사실발생일로부터 1월이내에 해야한다.

第138條 [營利活動에 대한 申告] (1) 농림업, 영업을 개시하는 자 또는 사업소를 개설하는 자는 이를 공정서식용지로 각 소관세무서 및 사업이 개시되거나 사업소가 개설되는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해야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즉시 제22조 1항에서 규정하는 관할세무서에 통지의 내용을 알려야한다. 물세의 확정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양되지 않는 때는 제22조 2항에서 규정하는 소관세무서가 지방자치단체에 대신하는 것으로 한다. 자유업활동을 개시하는 자는 그 뜻을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소관세무서에 통지해야한다. 사업, 사업소 또는 자유업활동의 이전 및 폐지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2) 이 법률의 적용범위에 주소, 거소, 주된 사무소 또는 본점을 가진 조세의무자는 제18조에서 제20조까지에서 규정하는 소관세무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지해야한다.

1. 외국에서의 사업 및 사업소의 설립 및 취득
 2. 외국의 인적회사에의 참가
 3. 법인세법 제2조 1항 1호에서 말하는 법인, 인적 결합 또는 재산집단의 자본 또는 재산에의 참가가 직접적으로 10%이상 또는 간접적으로 25%이상에 달하는 경우 당해 참가에 대한 취득
- (3) 통지는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신고의무가 있는 사실발생일로부터 1월이내,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신고의무가 있는 사실발생후에 소득세신고서 혹은 법인세신고서 또는 이익의 분리확인을 위한 신고서를 제출해야하는 때는 늦어도 그때까지 해야한다.

第139條 [特殊한 경우에 있어서 事業의 申告] (1) 취득, 제조, 제조사업에서 반출 또는 제조사업내에 있어서 소비에 대하여 소비세가 부과되는 상품을 취득 또는 제조하려는 자는 그 뜻을 사업개시전에 소관세무서에 신고해야한다. 특별유통세가 부과되는 기업을 경영하려는 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한다.

(2) 신고일, 형식 및 내용에 관한 규정은 법규명령에 의해 정할 수 있다. 전단의 법규명령은 유통세에 관한 것에 한해 연방정부가 제정하고 그밖의 것은 연방재무장관이 제정한다. 연방재무장관의 법규명령은 맥주세에 관한 한 연방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第 2 章 協力義務

第 1 節 記帳 및 記錄의 作成

第140條 [他法律에 의한 記帳義務 및 記錄作成義務] 2) 조세법률이외의 법률

2) 세법에 의한 과세자료 및 정보의 제공의무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과세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래행위를 하는 모든 자는 과세를 위하여 중요한 내용을 기장·기록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에 의해 조세에 대하여 중요한 기장 및 기록을 작성해야하는 자는 타법률에 의해 부과되어 있는 의무를 과세를 위해서도 이행해야한다.

第141條 [一定한 租稅義務者의 記帳義務] 3) (1) 영업자 및 농림업자로 재무관청의 확인으로 각 사업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제140조의 규정에 의해 기장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그 사업에 관련된 장부의 기장을 하고, 동시에 매년의 재고에 기초하여 결산을 할 의무를 진다.

1. 비과세되는 매상고를 합하여 매출세법 제4조 8호에서 10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이 당해 曆年에 500,000DM을 초과하는 경우
2. 사업용재산이 125,000DM을 초과하는 경우
3. 농림업용자작지가 경제가격으로(평가법 46조) 400,000DM을 초과하는 경우
4. 영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당해 사업연도에서 36,000DM을 초과하는 경우
5. 농림업에서 발생한 이익이 당해 역년에 36,000DM을 초과하는 경우

조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상법 제238조, 제240조에서 제242조까지 그리고 제243조에서 제25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3호적용시에는 그의 소유권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농림용자작지에 대하여 경제가격을 준용한다. 제1호, 제3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해 기장의무를 가진 농림업자에 있어서의 재고에 고정수목은 제외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는 재무관청이 이 의무의 개시를 지시한 통지고지가 있었던 다음해 사업연도개시일로부터 이를 이행하는 것으로 한다.

이 의무는 재무관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이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된 다음해 사업연도의 경과로서 종료한다.

- (3) 당해 기장의무는 당해사업의 전부를 양수한 자에게 이전한다.

2호의 규정은 기장의무의 개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4) 1항 5호의 현행규정은 1980년도 수익부터 적용한다.

3)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기장의무를 갖도록 한 규정이다. 우리나라에서 납세자들의 기장의무감이 매우 낮아 납세협력의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국세기본법에서 사업자의 기장의무규정을 두고 좀더 납세자들이 기장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第142條 [農林業者에 대한 補充規定] 제141조 1항 1호, 3호 또는 5호의 의
해 기장의무가 있는 농림업자는 매년의 재고 및 매년의 결산 외에 부속명세
표를 작성해야한다. 그 부속명세표에는 경과사업년도에서 自作地로 경작한
작물의 종류를 명시해야한다.

第143條 [商品受納의 記錄] 4) (1) 영업자는 상품수납을 구분하여 기록해야한
다.

(2) 기록은 영업자가 그 영업의 범위에서 재양도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자기나
타인의 계산에서 유상 또는 무상으로 취득하는 원재료, 반제품, 보조재료 및
부속품을 포함한 일체의 상품에 미친다. 상품이 재양도전 또는 사용전에 공
작 혹은 가공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사업의 종류에 의해 통상의 방법으로
사업을 위하여 재양도 또는 소비하기 위하여 취득된 상품에 대해서는 사업목
적외에 사용된 경우에도 또한 기록해야한다.

(3) 기록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한다.

1. 상품수납일 또는 계산의 날짜
2. 공급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3. 상품의 상관습상의 표시
4. 상품의 가격
5. 증빙의 표시

第144條 [商品販賣의 記錄] (1) 영업자로서 그 사업의 업종에 따라 타영업자
에 대하여 상품을 재양도 또는 보조재료로서 사용하기 위하여 상품을 규칙적
으로 공급하는 경우 이들 목적이 식별될 수 있는 특정한 상품불출을 구분하
여 기록해야한다.

(2) 기록은 기업자가 행하는 다음의 행위에 관련된 일체의 상품에도 미친다.

1. 외상(기한부, 신용, 공제계정, 상호계정), 교환 또는 무상공급

4) 제143조 및 제144조의 규정은 상품의 수불과 판매상황을 명확하고 진실되게
작성하도록 그 방법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납세자들이 성
실한 납세이행을 위한 필수적인 단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집행상의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국세청의 행정상의 혼령정도로 그치고 있다. 그러나 그 중요성
에 비추어 입법수준으로 끌어 올려 기본법에서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2. 상품이 구입수량때문에 소비자의 통상 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양도되는 경우의 현금지급

전단의 규정은 영업상 재사용이 명백하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3) 기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한다.

1. 상품판매일 또는 계산의 날짜
2. 구입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3. 상품의 상관습상의 표시
4. 상품가액
5. 증빙의 표시

(4) 사업자는 제1항 및 2항에 언급된 상품에 대하여 판매할 때마다 제3항에 언급된 사항 및 그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를 기재한 증빙을 교부해야한다. 전단의 규정은 매출세법 제14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대신 대변에 기입되거나 매출세법 제14조 6항에 기초하여 경감이 인정되는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5) 제1항에서 4항까지의 규정은 제141조에 의하여 기장의무를 갖는 농림업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第145條 [記帳 및 記錄에 대한 一般的 要請] (1) 기장은 전문지식을 가진 제3자에게 상당기간내의 기업의 거래사실 및 재산상태에 관한 개요를 알릴 수 있도록 작성되어 있어야한다. 거래사실에 대해서는 그 발생 및 결말에 이르기까지를 기록해야한다.

(2) 기록은 과세목적이 달성되도록 작성해야한다.

第146條 [記帳 및 記錄에 대한 秩序規定] (1) 기장 및 기타 필요한 기록은 완전하고 올바르게 날짜순으로 동시에 정연해야한다. 현금수입 및 현금지출은 매일 확실하게 관리되어야한다.

(2) 장부 및 기타 필요한 기록은 이 법률의 적용범위에서 작성하고 보존한다. 전단의 규정은 이 법률의 적용범위외의 사업소에 대하여 그 곳의 법령에 의해 장부 및 기록작성의무가 발생하고 동시에 그 의무가 이행되는 한 이를 적

용하지 않는다. 제2단의 경우 및 이 법률의 적용범위외의 기관회사에 있어서는 그 곳의 기장결과는 과세에 대하여 중요한 범위에서 법률의 적용범위내의 기업의 기장에 이를 승계하여야한다. 이 경우 이 법률의 적용범위에서 조세에 관한 규정에 필요한 조정을 하고 동시에 이를 알려야한다.

- (3) 기장 및 그외 다른 필요한 기록은 현행언어로 한다. 독일어 이외의 언어가 사용되는 때는 재무관청은 그 번역을 요구할 수 있다. 약어, 숫자, 문자 또는 부호가 사용되는 때는 그때마다 이들의 의미를 분명하게 확정해 두어야한다.
- (4) 기장 및 기록은 그 원래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방법으로 변경해서는 안된다. 변경이 처음부터 있었거나 또는 후에 있었거나 불확실하게 변경을 해서는 안된다.
- (5) 기장 및 기타 다른 필요한 기록은 이들에 대해 적용되는 절차를 포함하여 그 기장의 형식이 정규부기의 원칙에 적합한 것인 한, 증빙의 정연한 보존에 의해서도 할 수 있고, 또는 데이터 매체에 의해 처리할 수도 있다. 조세법률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야할 기록의 작성에 대해서 적용되는 절차가 허용되는가의 여부는, 기록의 작성이 과세를 달성할 목적에 의하여 결정한다. 장부의 기장 및 데이터매체에 의한 기타 필요한 기록의 작성에 대해서는 모든 데이터에 대하여 보존기간중에는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고 동시에 상당기간내에 라면 언제라도 볼 수 있도록 특히 보증되어야한다. 이 경우 제1항에서 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6) 이 질서규정은 기업자가 과세상 중요한 의의를 가진 기장 및 기록의 작성의 의무를 부여받지 않고 이를 이행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第147條 [資料의 保存에 대한 秩序規定] (1) 다음의 자료는 정연하게 보존해야한다.

- 1. 장부 및 기록, 재산목록, 연말결산 재산상태보고, 개시대차대조표 및 이들 자료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지시서 및 기타 조직상의 자료
- 2. 수신한 상업서신 및 거래서신
- 3. 발신한 상업서신 및 거래서신의 복제
- 4. 기장의 증빙

5. 기타 자료로 과세상 중요한 것

- (2) 년말결산과 개시대차대조표를 제외하고 제1항에서 규정한 자료와 이들이 정
규의 부기원칙에 적합하고 안전하고 동시에 또한 복제 또는 데이터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영상매체 또는 기타 데이터매체에의 복제로 보존할 수 있
다.

1. 수신한 상업서신 또는 거래서신 및 부기의 증빙과 영상적으로 일치하는
것 및 기타 다른 자료를 독해할 수 있는 때는 기타 다른 자료와 내용적으
로 일치하는 것
2. 보존기간 중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고 또한 상당기간내라면 언제라도
볼 수 있는 것

자료가 제146조 5항의 규정에 기초하여 데이터매체에 의해 작성되는 때는
데이터매체대신 그 데이터를 인쇄하여 보존할 수 있다. 이 인쇄된 자료도 제
1단의 규정에 의해 보존할 수 있다.

- (3) 제1항 1호에 언급한 자료는 10년간, 제1항에 언급한 기타 자료는 6년간 보
존하여야 한다. 다만 타조세법률에 의해 이보다 단기의 보존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단의 보존기간은 확정기간이 만료되지 않
은 조세에 대하여 당해 자료가 중요한 범위 및 기간에서 아직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제169조 2항 2단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 (4) 보존기간은 장부의 최근의 기입, 개시대차대조표 및 년말결산 또는 재산상
태보고의 기록, 상업서신 및 거래서신의 수신 또는 발신 및 기록의 작성 또
는 기타 자료가 작성된 해의 종결로 개시한다.

- (5) 보존된 자료를 영상매체 또는 기타 데이터매체의 복제의 형식으로만 제출하
는 자는 그 자료임는데 필요한 보조수단을 자기의 비용으로 사용하게 할 의
무를 진다. 재무관청의 요구가 있는 때는 그 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지체없이
자료를 전부 또는 일부 재현해야하고 보조수단없이 읽을 수 있는 복사를 제
출해야한다.

第148條 [輕減의 承認] 재무관청은 개개의 경우에, 또는 특정그룹의 경우에
조세법률에 근거를 둔 기장의무, 기록의무 및 보존의무를 엄수하는 것이 가
혹하고, 또한 이를 경감하여도 과세상 방해가 없는 경우에는 그 경감을 승인

할 수 있다. 제1단에 의한 경감은 소급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승인은 이를 철회할 수 있다.

第 2 節 租稅申告

第149條 [申告義務者] (1) 조세법률은 조세신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지는 자를 정한다. 재무관청에서 조세신고서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도 제출의무가 있다. 전단의 요구는 공고에 의해 할 수 있다. 재무관청이 조세기초를 推計한 경우에도(제162조) 조세신고서의 제출의무는 존속한다.

(2) 조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1년 또는 법규에 규정된 시기와 관련된 조세신고는 그 시기이후 늦어도 5개월만에 제출해야한다. 역년과 상이한 회계년도에 따라 농림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계산하는 조세채무자의 경우에는 달력에서 시작하는 회계년도 3개월 경과전에는 기간이 종료하지 않는다.

第150條 [租稅申告의 形式 및 內容] (1) 조세신고는 구두에 의한 조세신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양식에 의해 해야한다. 조세의무자는 법률로 정한 경우에 한하여 조세신고상 세액을 스스로 산정해야한다(조세신고).

(2) 조세신고서의 기재는 양심에 따라 진실에 부합되게 한다⁵⁾.

양식으로 정한 경우에는 양심에 따라 진실에 부합되게 기재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보증한다.

(3) 조세법률이 조세신고서에 조세의무자의 自署를 명하고 있는 때는 대리인에 의한 서명은 조세의무자가 그 심신의 상태에 의해, 또는 장기간부재로 서명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자서를 할 수 없었던 사유가 소멸하는 때는 사후에 자서를 요구할 수 있다.

(4) 조세신고서에는 조세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자료를 첨부

5) 良心에 따른 租稅申告

조세신고서의 기재는 양심에 따라 진실하게 해야 한다는 것으로(제150조 2항 1호) 이는 문서로 보증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그 이상의 부담은 없다는 것을 말한다. 신고의무자는 다만 그가 법률을 준수했다는 것을 증명하기만 하면 충분하고 보증은 신고의 필수요건이다. 이때의 보증은 선서에 대신하는 보증이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해야한다. 제3자는 필요한 증명서를 교부할 의무를 진다.

(5) 조세신고의 양식에는 조세통계⁶⁾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계목적⁷⁾을 위하여 과세자료의 보충에 필요한 질문도 할 수 있다.

(6) 자동화된 과세절차를 경감하고, 동시에 간소화하기 위하여 연방재무장관은 연방참의회의 동의를 얻어 납세신고서 또는 기타 과세절차상 필요한 데이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를 기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매체에 의하거나 데이터송달을 통하여 전달받을 수 있다는 뜻을 법규명령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특히 다음의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1. 절차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
 2. 전달할 데이터의 형식, 내용, 처리 및 보전에 관한 세목
 3. 데이터의 전달방법
 4. 전달받는 데이터의 수납관할
 5. 데이터의 잘못된 처리 또는 전달에 기초하여 면탈된 조세 또는 받은 과세상의 이익에 대한 제3자의 책임
 6. 이 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특별한 조세의무자의 신고의무의 범위 및 형식
- 데이터송달을 규율하기 위하여 법규명령으로 전문적인 출판물예의 게재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출판일시, 문서로서 확실하게 게재된 출판물의 구입처 및 장소를 표시해야한다.

第151條 [官公署에서의 租稅申告書の 作成] 서면에 의해 제출해야하는 조세 신고에 대하여 조세의무자의 일신상의 사정에 의해 서면형식에 의할 것을 요

6) 租稅統計(Statistik)

조세신고에 있어 일정한 양식에 의한 질문이나 대답은 개개의 조세사안에 관련된 것으로 조세신고서가 통계목적에 활용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다. 이는 조세신고 형성을 위한 일반적 권한은 아니나 1966년 6월 12일의 “租稅統計에 관한 法律”에 따른 조세통계의 목적을 위하여 인정된 것으로 정책적 이유에 근거한 것이다.

7) 조세신고에 있어서 자기의 납세액의 신고·납부뿐아니라 조세통계를 위하여도 필요한 자료의 제출의무를 명확히 한 규정이다. 조세관계에 있어서 관련사항에 대한 통계자료의 중요성과 이를 수집하기 위한 근거를 입법적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공평과세와 근거과세의 의지를 구체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할 수 없는 때 특히 조세의무자가 법률에 정한 세액의 자기산정을 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하게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는 소관재무관청에 출두하고 이를 기록부에 기재하고 신고할 수 있다.

第152條 [遲延加算金] (1) 조세신고서의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기한내에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지연가산금을 정할 수 있다. 신고의무의 불이행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는 지연가산금확정은 제외된다. 법정 대리인 또는 이행보조자의 책임은 본인의 책임으로 본다.

(2) 지연가산금은 확정된 세액 또는 확정된 산정기준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고 동시에 10,000DM을 한도액으로 한다. 지연가산금의 산정에 대해서는 조세의 무자에 대하여 조세신고서의 기한내의 제출을 촉구하는 목적외에 기한에 늦은 기간, 조세확정에 의하여 발생한 납부청구액, 조세신고서의 기한후 제출로 얻은 이익 및 조세의무자의 책임 및 경제상의 급부능력을 고려한다.⁸⁾

(3) 지연가산금은 통상 세액 또는 조세산정기준액과 동시에 확정한다.

(4) 분리확인할 과세기초에 관한 조세신고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 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항 1단의 규정의 준용에 대해서는 과세상의 효과를 추계한다.

(5) 연방재무장관은 지연가산금 특히 자동화된 과세절차에서의 확정에 관하여 상원의 동의를 얻어 일반행정규칙을 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지연가산금확정의 제외적 요건에 관해서도 규정할 수 있다. 일반행정규칙은 관세 및 소비세의 경우에는 상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第153條 [申告書の訂正] (1) 조세의무자는 신고서의 제출후 조세확정기간 경

8) 우리나라의 가산세제도에서 어떠한 조세상의 의무이행을 해태한 경우 지연가산세를 부과하는데 이 경우 사소한 착오나 부주의로 인한 것임에도 막대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례가 많아 매우 가혹하고 억울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의무해태의 정도와 이로 인하여 당해 납세자가 얻은 이익 그리고 이에 따른 국가의 손실에 전혀 관련이 없이 엄청난게 큰 금액을 부과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독일 기타 선진국의 예처럼 지연가산세에 대하여 일정한 한도를 두고 동시에 납세자가 얻은 이익과 국가에서 입은 손실을 감안하는 탄력적인 가산세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과전에 다음의 사실을 안 때는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고 필요한 정정을 할 의무를 진다.

1. 조세의무자에 의해 제출된 신고서, 또는 조세의무자를 위해 제출된 신고서가 잘못되었거나 불완전하고 또한 그것에 의해 조세가 면탈될 수 있는 경우, 또는 이미 면탈된 경우
 2.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의 사용으로 납부되는 세액이 정당액이 아닌 경우 이 의무는 조세의무자의 포괄권리승계인과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승계인 또는 조세의무자를 위하여 행하는 자에 대해서도 미친다.
- (2) 이 통지의무는 전항에 정한 경우외에 비과세, 조세경감 또는 기타 다른 조세우대의 요건의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후에 소멸하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 (3) 조세우대가 어떤 조건하에 인정된 상품을 그 조건에 합치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뜻을 미리 재무장관에게 통지해야한다.

第 3 節 計定眞實性

第154條 [計定眞實性] 9) (1) 누구도 허위 또는 가공의 명의로 자기 혹은 제3자를 위하여 계정을 만들거나, 또는 기장을 하거나 유가물(금전, 유가증권, 보석·귀금속류)을 보관, 전당잡히거나 또는 개인우편함에 넣게 해서는 안된다.

(2) 계정을 처리하는 자, 유가물을 보관하는 자, 質物로서 수령한 자 또는 사서함을 인도한 자는 미리 처분권자의 명칭과 주소, 계정거래에 관하여 확인하고, 이들에 관한 사항을 적절한 형식으로 계정에 기재하여 두어야 한다. 전

9) 計定眞實性

본조(제154조)는 번호계정(Nummernkonto)의 금지를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재산가치의 은폐를 차단하기 위한 조항이다. 제154조는 제93조 1항 3호를 보충하기 위한 조항으로 볼 수 있으며 계정을 열거나 유가물을 보관하거나 저당을 잡거나 또는 우편함을 위탁받은 자는 그의 고객에 대하여 관련된 과세절차에서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제154조는 구체적인 과세절차에서 사전에 과해진 공법상의 의무라고 할 수 있다. 사적인 이해관계 예컨대, 계약상대방을 알고 있는 銀行의 이해관계는 국가이익과 분명히 구별된 것이므로 은행은 자기의 이해관계 때문에 조세상 중요한 사항을 은폐해서는 안된다. 그 내용 및 사례는 본문조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단의 자는 항상 어떤 계정 또는 사서함에 대해서 어떤 자가 처분권한을 가지는가에 관한 정보제공을 보증해야한다.

- (3)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貸越金(Guthaben), 유가물 및 개인우편함의 내용물은 처분권자의 소득세 및 법인세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세무서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도하는 것이 허용된다.

第 3 章 確定節次 및 確認節次

第 1 節 租稅確定¹⁰⁾

10) 租稅確定(Steuereufestsetzung), 課稅基礎(Besteuerungsgrundlage), 基礎決定(Grundlagebescheid), 後續決定(Folgebescheid), 分離確認(gesonderte Feststellung) 등의 用語 定理.

(1) 租稅確定(Steuereufestsetzung)

① 원칙적으로 과세기초의 확인(die Feststellung der Besteuerungsgrundlage)은 권리구제와 함께 독립하여 다룰 수 없는 조세결정(steuerbescheid)의 일부이다(제157조 2항). 조세는 조세결정에 의하여 통일적인 과세절차에 근거하여 확정된다(Festsetzung, 제155조이하). 제179조 『과세기초의 확인』 이하에서 의미하는 과세기초는 제199조 1항에서 대상으로 하는 『과세기초의 조사』와는 다른 개념이다.(제199조 1항에서 말하는 과세기초의 조사는 이를테면 재산 또는 일부재산의 가격, 소득액, 매출액 등처럼 과세의 근거가 되는 기본사실관계와 같은 성질을 갖는다). <예외> 과세기초는 제180조 또는 그밖의 조세법의 규정이 있는 범위에서(제179조 1항) 제157조 2항과는 달리 확인결정(Feststellungsbescheid)을 통하여 분리하여(gesondert) 확인한다.

② 조세신고가 종료되면 재무관청은 조세(결과)에 관한 결정을 하는데 원칙적으로 행정행위에 의한다. 분리확인인 범위내에서는 재무관청은 이 범위에 구속된다.

(2) 分離確認(gesonderte Feststellung)

① 분리확인결정 (간단히는 확인결정)과 조세액결정은 기초결정(Grundlagenbescheide(제171조 5항)이다. 즉 그것은 독립한 행정행위로서 후속결정(개념: 제182조 1항)에 대하여 구속적인 성질을 갖는다. 또한 분리확인결정과 조세액결정은 동시에 후속결정과 기초결정일 수도 있다.(예: 기업토지에 관한 단일가격결정은 토지에 속한 기업에 관한 단일가격결정에 대한 기초결정이다(제180조 1항 1호). 이때의 최종결정은 그 범위에서 후속결정이지만 동시에 이는 기업과세액결정(제182조 1항)에 대한 기초결정이다(제171조 5항); 영업세결정을 말하자면 후속결정이지만 이는 또한 동시에 후속결정으로서 영

第 1 款 通則

第155條 [租稅確定] (1) 조세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조세관청의 조세결정으로 확정된다. 조세결정은 제122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된 행정행위이다. 조세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 및 조세확정의 신청의 거부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2) 기초결정전이라도 조세결정을 통고할 수 있다.

(3) 2이상의 조세채무자가 연대채무자로서 조세를 부담한 때에는 이들에 대하여 포괄적인 조세결정을 할 수 있다. 조세상의 부수적 급부 또는 이 법률이 적용되는 기타의 청구권에 관한 행정행위는 조세의무자의 1인 또는 2인 이상에 대하여 포괄적인 조세결정과 동시에 할 수 있다. 확정된 조세, 조세상의 부수적인 급부 또는 그밖의 청구권이 이들간에 존속하는 법률관계에 따라 모든 관계인에게 부담되지 않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4) 다른 관계인의 이익과 손해에 대하여 동시에 효력을 갖는 1인의 관계인에 대한 조세결정의 고지는 관계인들이 동의하는 범위에서 적법하다. 이들 관계인은 사후에 결정의 사본을 요구할 수 있다.

(5) 포괄적인 서면결정이 부부 또는 그들 자식들과 부부 또는 그들 자식들과 독신자에 대한 경우에는 그들의 공동주소의 1인에게 송달이 발송된 때에는 모든 관계인에게 고지한 것으로 본다. 그들 사이에 심한 의견차이가 존재한다

업세결정에 대한 기초결정이다.

② 분리확인의 경우는 특히 제180조에서 발생한다. 과세기초가 다수인에 귀속된 때에는 과세기초는 분리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단일적으로도 확인된다(제179조 2항 2호). 모든 단일적인 확인은 또한 분리되고 반대로 각자에게 분리되지 않는 경우에도 단일적으로 확인된다.(예: 한 개인에 속한 토지에 관한 단일가격결정)

(3) 租稅算定額の 確定(Festsetzung von Steuermeßbeträgen)

영업세와 토지세(자치단체에 속한 물세) 행정은 재무관청들이 조세상 중요한 사실관계(특히 조세주체와 조세객체)를 조사하고 이를 근거로 과세기초에 대한 조세산정수(算定數, Steuermeßzahl)의 적용을 통하여 조세산정액을 확정한 형식으로 나뉘어진다. 이러한 현상은 조세산정액결정에 나타난다(제184조). 조세산정액결정은 제171조 5항에서 의미하는 기초결정이다.

는 것을 신청했거나 또는 재무관청에 알려진 범위에서 결정은 관계인 각자에게 고지해야한다.

(6) 조세확정에 적용되는 규정은 조세상환의 확정에 준용한다.

第156條 [租稅確定의 中止, 端數切捨] (1) 연방재무장관은 행정간소화를 위하여 법규명령으로 다음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확정되는 금액이 이 법규명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조세 및 조세부수금부가 확정되지 않은 사항. 그 정한 금액은 20DM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2. 조세 및 조세부수금부가 단수를 절사될 것. 10독일 페니히 미만의 금액은 절사될 것. 절사금액은 50DM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법규명령은 맥주세를 제외하고 관세 및 소비세에 관한 경우에는 연방상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않는다.

(2) 조세 및 조세부대금부의 확정은 징수되지 않을 것이 확실한 경우 또는 확정을 포함한 징수비용이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하지 않을 수 있다.

第157條 [租稅決定의 形式 및 內容] (1) 조세결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서면으로 한다. 조세결정서에는 확정된 조세의 종류 및 금액을 기재하고 동시에 조세의 채무자를 표시해야한다. 조세결정서에는 어떤 권리구제가 인정되는가 및 권리구제가 어떤 기간내에, 어떤 관청에 제출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교시를 부기해야한다.

(2) 과세기초의 확인은 과세의 기초가 분리하여 확인되지 않는 한 권리구제로 독립하여 다룰 수 없는 조세결정이다.

第158條 [記帳의 證據力] 제140조에서 제148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한 조세의 무자의 기장 및 기록은 개개의 경우의 사정에 의해 그 객관적인 정당성에 이의제기의 근거가 없는 한 과세의 기초로 한다.

第159條 [信託關係의 證明] (1) 자기의 명의로 된 권리 또는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하여 단지 수탁자, 타인의 대리인 또는 담보권자로서 보유하

거나 또는 점유를 주장하는 자는 요구가 있는 때는 당해 권리 또는 물건이 누구에게 속하는가를 증명해야한다.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권리 또는 물건은 통상 그자에게 소속하는 것으로 한다. 재무관청의 사실을 조사하는 권리는 이것에 의하여 제한되지 않는다.

(2) 제102조의 규정은 그 적용을 방해받지 않는다.

第160條 [債權者 및 支給受領者의 名稱] (1) 조세의무자가 채권자 또는 지급 수령자의 명칭을 정밀하게 하고자하는 재무관청의 요구에 따르지 않는 때는 채무 및 기타 다른 부담, 사업경비, 필요경비 및 기타 지출은 통상 과세상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재무관청의 사실관계조사의 권리는 그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다.

(2) 제102조의 규정은 그 적용을 방해받지 않는다.

第161條 [在庫에 대한 數量不足] 소정의 재고, 또는 직권에 의해 실시되는 재고조사에 대하여 소비세과세상품에 수량부족이 발생한 때는, 수량부족이 조세를 발생시키지 않거나 또는 조건부조세를 무조건 하게하는 사정에 대한 説明이 없는 한 수량부족에 관해서는 소비세가 발생했거나 또는 조건부로 발생한 소비세가 무조건 부과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의심스러운 때는 조세는 재고조사시에 발생하고 또는 무조건 부과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第162條 [課稅基礎의 推計] (1) 재무관청이 과세기초를 조사 또는 계산할 수 없는 한 세무관청은 그를 추계해야한다. 그때 추계에 있어 의의를 가지는 일체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2) 조세의무자가 그의 신고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없고 혹은 정보 선언서에 대신한 보증을 거절하거나 제90조 2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의무에 위반한 때는 특히 추계한다. 조세의무자가 조세법률에 따라 작성해야하는 장부나 기록을 제출할 수 없고 혹은 기장이나 기록이 제158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의 기초가 아닌 경우도 또한 동일하다.

(3) 제55조 2항의 경우에는 기초결정으로 확인한 과세기초도 추계할 수 있다.

第163條 [衡平을 理由로 하는 租稅의 特別確定] (1) 개별사안의 상황에 의해 조세징수가 형평에 어긋난 경우에는 조세를 저액으로 확정할 수 있고, 동시에 세액을 증액시키는 개개의 과세기초를 조세확정시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소득에 대한 조세는 조세의무자의 동의를 얻어 조세확정의 경우에 조세를 증대시키는 범위에서는 과세기초를 나중에 고려할 수 있고 조세를 감액시키는 범위에서는 과세기초를 사전에 고려할 수 있다. 특별확정에 대한 결정은 조세확정과 병행하여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은 조세를 관리하는 단체의 최고재무관청, 또는 그의 지정한 재무관청에 속한다. 부담조정법 제203조 5항의 규정은 그 적용을 방해받지 않는다.

第164條 [事後調査를 留保한 租稅確定] 11) (1) 조세사안이 최종적으로 조사되지 않는 동안은 사후조사를 유보하고 개별적으로 또는 일반적으로 조세를 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유부기를 필요로 하지않는다. 예납의 확정은 항상 사후조사를 유보한 조세확정으로 한다.

(2) 유보가 유효한 동안은 조세확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조세의무자는 조세확정의 취소, 변경을 언제라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에 관한 결정은 상당한 기간내에 해야하고 조세사안의 최종적 조사까지 연기할 수 있다.

(3) 사후조사의 유보는 언제라도 취소할 수 있다. 취소는 사후조사를 유보하지 않은 조세확정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 제157조 1항 1단 및 3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사후조사를 유보한 조세확정에 대한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유보는 임장조사후 취소해야한다.

(4) 사후조사의 유보는 확정기간이 경과하는 때는 소멸한다. 제169조 2항 2단, 제171조 7항, 제8항 및 10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11) 사후조사를 유보한 조세확정은 일정한 조건에서 납세의무를 확정하여 주고, 차후 필요시 결정할 수 있는 탄력적인 조세확정방법이다. 특히 신고납세제도하에서는 조세신고를 일단 사후조사를 유보한 조세확적으로 인정한다면 이에 따른 시효와 제척기간의 적용 기타 제반 세법적용에서 통일성을 기하는데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第165條 [假租稅確定, 租稅確定的 延期] (1) 조세의 발생요건의 발생유무 및 그 범위가 불확실한 범위에서 조세를 임시로 확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조세채무자에게 이롭게 작용할 과세(2조)에 관한 외국과의 조약의 유무 및 시기가 불확실한 경우의 유효한 조세확정에도 적용할 수 있다. 가조세확정의 범위 및 이유는 이를 기재하는 것으로 한다. 제1단의 요건하에서 담보와 교환하거나 또는 담보없이 조세확정을 연기할 수 있다.

(2) 재무관청이 조세를 임시로 확정된 범위에서 재무관청은 이 확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불확실한 것이 제거되면 가조세확정을 취소, 변경, 또는 최종확정으로 표명해야 한다. 연기된 조세확정은 후에 이를 보정해야 한다.

(3) 가조세확정은 사후조사를 유보한 조세확정과 동시에 할 수 있다.

第166條 [租稅確定的 第3者に 대한 效力] 조세가 조세의무자에 대하여 확정된 불가쟁력을 발생한 때는 포괄권리승계인이외에 조세의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결정을 그 대리인, 위임대리인으로서 또는 자기의 권리로 다룰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이 확정의 불가쟁력을 자기를 위하여서도 인정해야 한다.

第167條 [納稅申告, 收入印紙 또는 收入證紙의 使用] (1) 법률상의 의무에 근거하여 납세신고해야 하는 때에는(제155조 1항 2단) 확정에 의해 세액이 다르게 되거나 또는 조세채무자나 책임채무자가 조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155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를 확정해야 한다. 조세를 법률상의 의무에 근거하여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의 사용으로 납부하는 때는 제1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조세신고가 기간내에 관할세무서에 도달한 경우에는 법정기관내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는 관세와 소비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第168條 [納稅申告의 效力] 납세신고는 사후조사를 유보한 조세확정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 납세신고의 결과 당초 납부할 세액이 감소되거나 또는 조세상환으로 되는 때는 재무관청이 동의한 경우에 비로소 제1단의 규정을 적용한다. 동의는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第 2 款 確定の 時效

第169條 [確定期間] (1) 조세확정 및 그 취소 또는 변경은 확정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더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명백한 과오에 의한 정정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당해 기간은 확정기간의 경과전에 다음의 경우에는 준수된 것으로 한다.

1. 조세결정서가 조세확정을 관할하는 재무관청의 영역을 떠나는 때
2. 공시송달의 경우에 조세결정 또는 행정송달법 제15조 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揭示되는 때

(2) 확정기간은 다음과 같다.

1. 1년 - 관세, 소비세, 관세환급 및 소비세환급에 대하여
2. 4년 - 제1호에서 규정되지 않은 조세 및 조세환급에 대하여

확정기간은 탈세된 때는 10년, 중과실에 의해 조세가 면탈된 때는 5년으로 한다. 전단의 규정은 탈세 또는 중과실에 의한 조세의 면탈이 조세채무자 또는 조세상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지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만 조세채무자가 당해 행위로 아무런 재산상의 이익을 얻지 않은 경우 및 당해 행위가 조세채무자가 조세면탈의 저지를 위하여 거래상 필요한 예방조치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第170條 [確定期間의 開始] (1) 확정기간은 조세가 발생한 그해 또는 조건부로 발생한 조세가 무조건이 되는 曆年¹²⁾의 경과와 동시에 개시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확정기간은 개시한다.

1. 법률의 규정에 기초하여 조세신고서 또는 납세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신고서를 신고한 때는 조세신고서, 납세신고서 또는 신고서가 제출된 曆年の 경과와 동시에, 늦어도 조세가 발생한 역년의 다음 역년의 경과와 동시에

12) 독일의 경우 조세의무이행기한을 대부분 曆年基準을 채택하고 있다. 제반 납세의무를 이행하는데 다양한 기한과 기간계산을 두면 납세자가 혼동을 일으켜 본의아니게 당해규정을 위반하고 억울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각 세법에서 다양하고 요구하고 있는 기한과 기간을 가급적 曆年 또는 月曆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개시한다. 다만 확정기간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에 개시한 경우는 이 제한이 없다.

2.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를 사용하여 조세를 납부하는 때는 당해 조세사안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가 사용된 역년의 경과와 동시에 개시한다. 다만 늦어도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가 사용되어야 하는 역년의 다음 역년의 개시와 동시에 개시한다.

전단의 규정은 관세 및 소비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3) 조세 또는 조세상황이 신청에 근거해서만 확정되는 때는 이 확정의 취소 또는 변경에 대한 기간은 당해 신청이 있는 역년이 경과하기까지는 개시하지 않는다.
- (4) 제2항 1호의 규정을 재산세 또는 부동산세에 적용함으로써 基本査定기간의 첫 역년에 대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으로 정해진 신고가 효과를 미치는 역년에 대하여 확정기간의 개시가 연기될 때는 기본사정기간의 그밖의 역년에 대한 확정기간의 개시는 어느 쪽이나 동일한 기간이 연기되는 것으로 한다.
- (5) 상속세(증여세)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2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기간의 개시는 다음에 정한 바에 의한다.
 1. 사망으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자가 취득을 알게된 역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개시하지 않는다.
 2.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자가 사망한 역년 또는 재무관청이 당해 증여를 알게된 역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개시하지 않는다.
 3. 생존자간의 목적출원에 대해서는 당해 의무가 이행되는 역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개시하지 않는다.
- (6) 어음세에 대해서는 당해 어음이 만기가 된 역년이 경과하기까지는 확정기간은 개시하지 않는다.

第171條 [進行的 停止] (1) 불가항력으로 기간진행의 최근 6월내에 조세확정을 할 수 없는 동안은 확정기간은 진행하지 않는다.

- (2) 조세결정을 하는데 명백한 잘못을 범한 때는 확정기간은 그 잘못의 범위에서 이 조세결정의 고지 후 1년을 경과하기까지는 종료하지 않는다.
- (3) 확정기간의 경과전에 조세확정의 신청 또는 조세확정의 취소, 변경의 신청

이 있는 때는 당해 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가항력이 발생하기까지는 확정기간은 진행하지 않는다. 확정기간경과후에 권리구제가 제기되는 경우에도 확정기간경과전에 이루어진 조세결정(제169조 1항)을 다루는 때는 제1단의 결정에 의한 신청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

재정법원법 제100조 1항 1단, 2항 2단, 제101조의 규정의 경우에는 상기의 제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조세결정이 불가쟁력을 발생한 경우에 비로소 당해 신청에 대하여 결정되고 불가쟁력을 발생한다.

- (4) 확정기간의 경과전에 임장조사가 개시되고, 조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임장조사의 개시가 연기되는 때는 임장조사가 미치는 조세에 대한 확정기간, 또는 임장조사의 연기의 경우에 미치는 조세에 대한 확정기간은 임장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조세결정이 불가쟁력을 발생하거나 또는 제202조 1항 3단의 규정에 의한 통지의 고지후 3월을 경과하기까지는 진행하지 않는다. 임장조사가 그 개시직후 6월을 초과하여, 재무관청의 책임에 귀착되는 이유로 중단되는 경우에는 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확정기간은 늦어도 종결결정이 행해진 일년의 경과 이후 또는 당해 결정이 중지된 경우에는 제169조 2항에서 말하는 기간에 임장조사 범위에서 최후 조사가 행해진 1년의 경과이후에 종료한다. 다른 규정에 의한 기간경과의 중단은 그 적용을 방해받지 않는다.

- (5) 관세사찰서 및 조세사찰을 위탁받은 주재무관청의 관공서가 확정기간의 경과전에 조세의무자에 대하여 과세기초의 조사를 개시하는 때는 그 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조세결정이 불가쟁력을 발생하기까지는 확정기간은 진행하지 않는다. 이 경우 제4항 2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확정기간의 경과전에 조세형벌절차 또는 조세질서위반에 의한 과료절차의 개시가 조세의무자에게 고지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이 경우 제169조 1항 3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 (6) 조세의무자에 대하여 이 법률의 적용범위에서 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정기간의 진행은 제92조의 규정에서 말하는 기타의 조세행위에 의해서도 이 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조세결정이 불가쟁력을 발생하기까지는 정지된다. 다만 기간진행의 정지는 조세의무자가 확정기간의 경과전에 제1단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개시를 제시받은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제169조 1항 3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 (7) 제169조 2항 2단의 규정의 경우에는 조세법 또는 조세질서위반의 소추권이 시효가 완성되기까지는 확정기간은 종료하지 않는다.
- (8) 제165조의 규정에 의해 조세의 확정이 정지되거나 조세가 가확정된 때는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동시에 재무관청이 이를 알게된 후 1년을 경과하기까지는 확정기간은 종료하지 않는다.
- (9) 조세의무자가 확정기간의 경과전에 제153조, 제371조, 제378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때는 확정기간은 신고수리후 1년을 경과하기까지는 종료하지 않는다.
- (10) 조세의 확정을 위한 확인결정, 조세산정기준액결정 또는 기타 행정행위가 구속력을 가진 범위에서(기초결정), 확정기간은 기초결정의 고지후 1년을 경과하기까지는 종료하지 않는다.
- (11) 행위무능력자 또는 한정행위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자가 무제한 행위능력자가 되거나 또한 법정대리인이 존재하게 된 후 6월을 경과하기까지는 확정기간은 종료하지 않는다. 전항은 보호자가 지명되고 민법전 제1903조에 따라 동의가 유보되어 있는 경우에 보호자가 사망하거나 기타의 사정 또는 법적인 이유에서 보호자의 대표적 행사가 중단 또는 방해받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12) 유산에 대하여 과세되는 때는 상속이 상속인에 의해 승인되거나 유산에 대하여 파산이 개시되고, 또는 대리인에 대하여 조세를 확정할 수 있게된 후 6월을 경과하기까지는 확정기간은 종료하지 않는다.
- (13) 확정기간경과전에 아직 확정되지 않은 조세가 파산절차에서 신고된 때는 확정기간은 그 범위에서 파산절차종료후 3월을 경과하기까지는 진행하지 않는다.
- (14) 조세청구권에 대한 확정기간은 그 청구권과 관련된 제37조 2항의 환급청구권의 시효가 완성되기까지는(제228조) 종료하지 않는다.

第 3 款 確定力

第172條 [租稅決定의 取消 및 變更] (1) 조세결정은 임시 또는 사후조사의 유보없이 이루어진 범위에서 다음의 경우에만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

다.

1. 조세결정이 관세 또는 소비세에 관한 것인 경우
2. 조세결정이 기타 조세에 관하여 다음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 a) 조세의무자가 동의하는 경우, 또는 사물의 성질상 조세의무자의 신청에 상응하고 있는 경우. 전단은 조세결정을 권리구제기간경과전에 동의했거나 신청한 경우에 조세의무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적용한다.
 - b) 당해 조세결정이 사물관할권을 가지지않는 관청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 c) 당해 조세결정이 사기, 강박 또는 매수와 같은 불순한 수단에 의해 얻어지는 경우
 - d) 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 제130조, 제131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당해 조세결정이 이의결정으로 확인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같다.

- (2) 제1항의 규정은 조세결정의 감면, 취소 또는 변경의 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부되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第173條 [새로운 事實 또는 새로운 證據方法에 의한 租稅決定의 取消 또는 變更] (1) 조세결정은 다음의 경우 취소 또는 변경한다.

1. 세액을 증대하는 사실 또는 증거방법이 후에 알려진 경우
 2. 세액을 감소하는 사실 또는 증거방법이 후에 알려지고, 또한 당해 사실 또는 증거방법이 후에 비로소 알려진 것에 대하여 조세의무자가 중과실이 없는 경우. 당해 사실 또는 증거방법이 제1호의 규정에서 말하는 사실 또는 증거방법과 직접, 간접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과실은 묻지 않는다. 세액의 확정이 종전 세액의 1%보다 낮고 500마르크이하의 차이가 난 경우에는 변경하지 않는다.
- (2)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조세결정이 임상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탈세 또는 경과실에 의한 조세의 면탈이 있는 경우에만 당해 조세결정을 취소, 변경할 수 있다. 제202조 1항 3단의 규정에 의해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다.

第174條 [循環하는 租稅確定] (1) 일정한 사실이 한번만 고려되어야함에도 불

구하고 1인 또는 2인이상의 조세의무자의 불이익으로 2이상의 조세결정에서 고려되는 경우에는 당해 하자있는 조세결정을 신청에 의해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조세결정에 대한 확정기간이 이미 경과한 때는 이루어진 조세결정중에 최근의 조세결정이 불가쟁력을 발생한 후 1년을 경과하기까지는 당해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이 법정기한내에 이루어진 때에는 조세결정의 취소 또는 변경은 기간에 대립하지 않는다.

- (2) 일정한 사실이 1인 또는 2인이상의 조세의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2번이상 고려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신청은 필요하지 않다. 다만 하자있는 조세결정은 당해 사실의 고려가 조세의무자의 신청 또는 표명에 귀속되는 경우에만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3) 일정한 사실이 타조세결정에서 고려되는 것을 가정하여 어떤 조세결정에서 당해 사실이 고려되지 않았던 경우 이 가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명한 때는 당해 사실의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조세확정을 그 범위에서 補正, 취소, 변경할 수 있다. 보정, 취소, 변경은 타조세확정에 대하여 적용된 확정기간이 경과하기까지만 인정된다.
- (4) 일정한 사실의 잘못된 결정에 기초하여 조세결정이 이루어지고¹³⁾, 당해 조세결정을 권리구제에 기초하거나 조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재무관청이 조세의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취소, 또는 변경하는 때는 조세결정을 하거나 또는 그 변경에 의해 당해 사실로부터 후일 올바른 과세상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조세결정이 법원에 의해 취소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과세상의 효과가 하자있는 조세결정의 취소 또는 변경후 1년내에 나타나는 때는 확정기간의 경과를 이를 묻지 않는다. 후에 취소되거나 변경된 조세결정이 이

13) 잘못된 事實에 근거한 租稅義務者の 利益을 위한 變更

제174조 4항은 재무관청이나 법원이 권리구제 또는 다른 이유에서 조세확정을 조세의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변경한 경우이다. 이는 사실관계로부터 과세처분의 존속력(또는 확정력)을 고려하지 않고 조세확정한 것을 사후에 올바른 조세효과를 귀속시키려는 것이다. 제174조 4항은 이러한 변경에 의하여 다수의 조세산정액기간동안 다수의 조세결정이 잘못 이루어진 경우에도 해당된다. 이 조항은 본래의 결정에 관계된 조세의무자에 대해서만 적용되어야 한다. 예컨대 재무관청이 양도소득을 소득세확정시 과세했다면 조세의무자는 이 확정에 대하여 권리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루어진 때 이미 확정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전단의 규정은 제3항 1단의 요건인 경우에만 이를 적용한다.

- (5) 제3자가 하자있는 조세결정의 취소 또는 변경의 결과가 된 절차에 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을 제3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자를 이 절차에 입회시키거나 소환하는 것은 인정된다.

第175條 [其他의 경우에 租稅決定의 取消 또는 變更] (1) 조세결정은 다음의 경우에는 이를 행하고 취소하고 또는 변경한다.

1. 이 조세결정을 위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기초결정(제171조 10항)이 이루어지고, 취소되고, 또는 변경되는 경우
2. 과거에 대한 조세상의 효력을 가지는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소급적인 사건)

제1단 2호의 경우에는 당해 사실이 발생하는 역년의 종료와 동시에 확정기간은 개시한다.

- (2) 소급적 사건은 조세우대에 대한 요건을 일정시기에 충족하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조세우대의 요건이 소멸하거나 또는 조세우대에 대한 보장의 기초형성을 행정행위로 확인한 경우 우대요건이 소멸한 때에도 적용한다.

第176條 [租稅決定의 取消 및 變更에 대한 信賴保護] 14) (1) 조세결정의 취소 또는 변경에 대해서는 조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하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서는 안된다.

1. 연방헌법재판소가 종래의 조세확정의 기초가 된 법률의 무효를 확인하는

14) 信賴保護

이는 납세자권익보호규정이다.

① 납세자의 신뢰보호는 법률적 판단의 변경이 허용된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 (예: 유보하의 조세확정의 경우(제164조), 사전조세확정(제165조), 제172조에 의한 조세결정의 취소 및 변경).

② 특히 제176조 2항은 예컨대 所得稅準則(Einkommenssteuer-Richtlinien) 또는 財産稅準則과 같은 일반적인 행정규칙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들 규칙이 실령 현행법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연방최고법원에서 행해지더라도 조세의무자에 불이익하게 고려되어서는 안된다.

사항

2. 연방최고재판소가 종래의 조세확정의 기초가 된 규범을 헌법위반으로 인정함으로써 당해 규범을 적용하지 않는 사항

3. 종래의 조세확정시 재무관청에 의해 적용된 연방최고법원의 판례가 변경된 사항

종래의 판례가 이미 조세신고 또는 납세신고에서 고려되고 이를 재무관청이 알 수 없었던 때는 재무관청이 사정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종래의 판례를 적용하리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조세결정의 취소 또는 변경에 대해서는 연방정부, 연방최고관청은 주최고관청의 일반행정규칙이 연방최고재판소에 의해 현행법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 것을 조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하게 고려해서는 안된다.

第177條 [法的 誤謬의 訂正] (1) 조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하게 조세결정의 취소 또는 변경의 요건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변경이 미치는 범위에서 취소 또는 변경의 원인이 되지 않는 법적 오류를 조세의무자의 이익 및 불이익을 위하여 정정할 수 있다.

(2) 조세의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조세결정의 취소 또는 변경의 요건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변경이 미치는 범위에서 취소 또는 변경의 원인이 되지않는 법적 오류를 조세의무자의 불이익 및 이익을 위하여 정정할 수 있다.

(3) 제164조 2항, 제165조 2항 및 제176조의 규정은 그 적용을 방해받지 않는다.

第 4 款 費用

第178條 [關稅官廳의 特別한 行爲에 關聯한 費用] (1) 연방관세행정관청 및 연방관세행정의 임무관리를 위탁받은 관청은 특별한 행위 또는 급부(비용부담의 의무가 있는 직무행위)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고 代替金の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서 말하는 특별한 행위 또는 급부는 특히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존재한다.

1. 조세감독의 조치에 관한 것이 아닌한 직무장소외 및 직무시간외의 직무행위
 2. 신청에 따라 일정한 시간에 직무행위를 해야하기 때문에 직무상의 곤란을 수반하는 직무행위
 3. 다음의 경우에서의 상품의 조사
 - a) 구속력있는 관세율에 대한 정보제공, 조세상환 또는 기타 우대 제공의 신청에 의해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
 - b) 직권조사시에 처분권자의 신고 또는 이의가 잘못되었거나 또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명하는 경우
 - c) 조사된 상품이 제시된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4. 조세수입확보를 위하여 발해진 법규의 위반행위가 원인이 되는 사업 및 사업상의 감시조치
 5. 운송수단 또는 상품의 직무상의 감시 및 운송
 6.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이루어진 관세화물의 보관
 7. 신청에 의해 이루어진 서류작성 (서면, 등본 및 복사의 작성)
- (3) 연방재무장관은 연방상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법규명령에 의해 비용 부담의무가 있는 직무행위를 상세하게 확정하고, 그 직무행위에 대하여 징수하는 비용이 당해 행위에 해당되는 평균의 행정지출에 따라 산정하여 총액을 내고, 근소액을 이유로 가혹함을 피하기 위하여 또는 이들과 유사한 이유에서 전부 또는 일부의 비용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 (4) 비용의 확정에는 관세 및 소비세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한다. 행정비용법 제18조에서 제22조까지의 각 규정은 이들 비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第 2 節 課稅基礎의 分離確認, 租稅算定基準額의 確定

第 1 款 分離確認

第179條 [課稅基礎의 確認] (1) 이 법률 또는 조세법률에 정해진 범위에서 제

157조 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조세기초는 확인결정에 의해 분리하여 확인한다.

- (2) 확인결정은 과세기 확인의 대상이 귀속되는 조세의무자에 대하여 행한다. 조세의무자가 2인 이상으로 법률로 정해있거나 또는 확인의 대상이 2인 이상에 귀속되는 경우 분리확인 은 이들에 대하여 통일하여 행한다. 이들 중에 1인이 다른 1인에 관해서만 확인의 대상에 관계한 때에는 그 범위에서 특별한 분리확인을 행할 수 있다.
- (3) 확인결정에 있어서 필요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확인은 보충결정에서 보완할 수 있다.

第180條 [課稅基礎의 分離確認] (1) 특히 다음의 사항은 이를 분리확인한다.

1. 평가법에 의한 통일가격¹⁵⁾
2. a) 소득에 2인이상의 자가 관계하고 소득이 과세상 이들에게 귀속하는 경우에 소득세과세소득 및 법인세과세소득
- b) a에 규정한 경우이외의 경우에 있어서의 농림업소득, 영업소득 또는

15) 評價法에 의한 統一價格(Einheitswerte)

(1) 概念

단일가격이란 다수의 조세에 대한 과세기초(제179조 1항) 때문에 하나의 분리확인 절차에서 통일되게(einheitlich) 확인된 가격을 말한다.

(2) 統一價格의 分離 및 統一確認

단일가격은 분리하여 확인한다. 예컨대 舍有者 또는 지분소유권자로서 다수인이 관계된 때에는 이들에 대한 평가는 통일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179조 2항)

(3) 統一價格의 分離 및 統一確認의 目的

이는 다수의 조세 및 다수인에 대하여 '통일적인 효력을 갖는 가격이 단지 하나의 재무관청에 의하여'-특히 사안별 및 장소적으로- 그리고 오로지 단 한번 내용적 구속력을 가지고 모두 결부된 (또는 종속된) 조세의 확정이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독립적인 확인절차의 절차경제적인 목적: 제179조 참조) 따라서 이 절차는 하나 및 동일한 가격이 여러 재무관청에게 상이하게 확인되는 것을 막는다.

(4) 適用範圍

평가평의 통일가격규정은(평가법 제19조-제109조) 재산세, 토지세, 영업세, 상속세에 적용된다.

자유영업에 의한 소득, 다만 분리확인을 관할하는 세무서가 소득의 조세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가지지않는 경우에 한한다.

3. 재산세과세경제재(평가법 제114조에서 제117조까지)의 가격 내지 채무 및 기타 공제(평가법 제118조)의 가격. 다만 경제재, 채무 및 기타의 공제가 2인이상의 자에게 귀속하고, 확인이 과세에 중요한 것이어야한다.

(2)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통일적인 법적용을 보장하고 과세절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연방재무장관은 상원의 동의를 얻어 1호에서 규정한 경우 이외의 경우의 과세기초를 분리하고, 다수인에 대한 통일적인 확인에 관한 법규명령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히 규정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분리확인의 대상과 범위
2. 확인절차의 요건
3. 세무서의 지역적인 관할권
4. 확인절차에 관계된 자(절차참가자)의 결정 및 다른 참가자를 통한 참가자의 대표를 포함한 그들의 조세상의 의무와 권리의 범위
5. 절차참가와 수령대리권자에 대한 행정행위의 고지
6. 과세기초조사를 위한 입장조사의 허용범위 및 실시

법규명령으로 연방재무장관은 상원의 동의를 얻어 후에 행하여질 과세확보를 위하여 나중에 효력을 발생할 과세기초를 분리하고 다수인에 대한 통일적인 확인을 규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2항 1호와 2호를 준용한다. 법규명령은 맥주세이외의 관세와 소비세에 대하여는 상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3) 제1항 2호 a의 규정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소득에 관계하는 자 중 1인만이 이 법률의 적용범위에서 그 소득세에 대하여 소득세납세의무 또는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
2. 특히 확인된 세액정도와 분할이 별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이 경우는 1항 3호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18조 1항 4호에 따라 관할권있는 세무서는 분리확인을 실시하지 않을 것을 결정으로 확정할 수 있다. 이 경우의 결정은 조세결정의 효력이 있다.

(4) 제1항 2호 a의 규정은 유일한 목적이 단독의 도급계약 또는 도급공급계약의 이행으로 제한되는 노동협동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계약체결시 당해 계약이 3년이내에 이행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때는 이 제한이 없다.

- (5) 제1항 2호 a 및 3항의 규정은 이중과세방지조약에 의해 산정기초에서 제외되는 소득이 관계인의 조세확정에 대하여 의의를 가지는 범위에서 이를 준용한다.

第181條 [分離確認, 確認期間, 申告義務에 관한 節次規定] (1) 과세기초의 분리확인예 조세확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0조 2항 1호의 규정에서 말하는 조세신고는 분리확인을 위한 신고로 한다.

- (2) 분리확인을 위한 신고는 확인의 대상의 전부 또는 일부가 누구에게 속하는가를 제출해야한다. 특히 신고의무가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제180조 1항 2호 a 규정의 경우의 각 확인관계자들에게 귀속되는 소득세 과세소득 또는 법인세과세소득에 대한 할당분
2. 제180조 1항 2호 b 규정에서의 사업자
3. 제180조 1항 3호에서 규정한 각 확인관계자들에게 귀속되는 경제재, 채무 또는 기타 공제액에 대한 할당분
4. 제180조 1항 2호 a와 3호 및 제34조에 규정된 자

1인의 신고의무자가 분리확인을 위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다른 관계자들은 그 범위에서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 (3) 통일가격의 분리확인의 기간(확인기간)은 통일가격의 기본확인, 변경확인, 사후확인 또는 통일가격의 취소가 된 역년의 경과와 동시에 개시한다. 통일가격의 분리확인을 위하여 기본확인기일에 제출되어야할 신고서가 기본확인기간의 역년의 경과후 제출되는 때는 기본확인기일에 있어서 분리확인에 대한 기간은 신고서가 제출된 역년의 경과와 동시에 개시한다. 다만 늦어도 기본확인이 이루어진 역년의 다음 역년의 경과와 동시에 개시한다. 제2단에 의한 확인기간의 개시가 연기되는 때는 변경확인기일에 분리확인에 대한 확인기간의 개시는 동일기간만 연기되는 것으로 한다.
- (4) 제3항의 경우에 있어서 통일가격이 최초로 과세상 적용되는 역년이 경과하기까지는 확인기간은 개시하지 않는다.
- (5) 분리확인은 분리확인의 기일에 확정기간이 아직 경과하지 않은 조세확정에 대하여 분리확인이 의의를 가지고 있는 범위에서 분리확인예 적용되는 확인기간의 경과후에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제171조 10항의 규정은 고려되지

않는다. 확인결정에 있어서는 제1단의 취지를 제시한다. 이 경우의 제169조 1항 3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第182條 [分離確認의 效力] (1) 확인결정은 불가쟁력을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다른 확인결정, 조세산정기준액결정, 조세결정 및 납세신고(후속결정)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다만 확인결정으로 이루어진 확인이 이들 후속결정에 대하여 의의를 가지는 경우에 한한다.

(2) 통일가격에 대한 확인결정(제180조 1항 1호)은 확인의 대상이 확인기일후에 과세상의 효력으로서 이전하는 권리승계인에 대해서도 효력을 가진다. 확인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권리승계가 발생할 때는 당해 확인결정이 권리승계인에게 고지된 경우에만 당해 확인결정은 권리승계인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3) 권리승계가 이루어짐으로서 제180조 1항 2호와 3호에서 말하는 확인결정에 있어서 관계자가 부정확한 경우에는 관계자에 대한 특별한 결정으로 정정할 수 있다.

第183條 [統一確認에 關聯한 受領代理人] (1) 확인의 대상에 사원으로서 또는 조합원으로서 참가하는 2인이상의 자(확인참가자)에 대하여 확인결정이 이루어진 때는, 그들은 확인절차 및 이에 관련한 재판외의 권리구제에 관한 절차에 관련한 일체의 행정행위 및 통지를 자기를 위하여 수령할 권한이 있는 1인의 공동수령대리인을 선임해야한다. 공동수령대리인이 없는 때는 회사 또는 확인참가자의 대리권자 또는 확인의 대상의 관리권자를 수령권자로 간주한다. 전단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무관청은 일정한 상당기간 내에 수령대리인의 지정을 참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자의 1인은 수령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고 다른 수령대리인이 지정되지 않는한, 제1단에 규정한 행정행위 및 통지가 일체의 참가자를 위하여 및 그 이익에 반한 효력으로서 고지된다는 것을 주지시킬 수 있다. 수령대리인에의 고지시에는 모든 확인참가자를 위하여 또는 그 이익에 반한 효력으로서 고지가 이루어진 것을 주지시킬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은 회사 또는 조합이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참가자 1인

이 회사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탈퇴했다는 것, 참가자간에 의견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재무관청에 알린 범위에서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100인 이상이 참가하고 있는 회사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개별지분, 참가자의 수 및 개인적으로만 관계된 과세기초를 고지해야한다. 권한있는 자에게 의의가 있는 경우에는 참가자에게 확인결정의 전내용을 통지해야한다.

(3) 1항 1단에 의한 수령대리인이 존재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에 대한 확인결정은 참가자 또는 수령대리인에 반하지 않는 범위와 기간에 한하여 2항 1단에서 규정한 1인을 위한 효력으로서 고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리권의 철회는 세무서에 도달한 때에 비로소 세무서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4) 하나의 경제단위가 부부, 그들의 자와 부부 또는 그들 자와 독신자에게 귀속하고 이들 관계자들이 공동의 수령대리인을 임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일가격에 대한 확인결정의 고지에 대하여 제155조 5하의 종합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第 2 款 租稅算定額의 確定

第184條 [租稅算定額의 確定] (1) 조세법률에 의해 산출되는 조세산정액은 조세산정액결정에 의해 확정한다. 조세산정기준액의 확정으로 인적 조세의무 및 물적 조세의무에 대해서도 결정한다. 이 경우 과세실행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단외에 제18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동조 제2항과 제183조의 규정도 부동산세산정기준액결정에 대해서 준용한다.

(2) 물세산정기준액을 확정하는 권한은 제163조 1항 1단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대하여 연방정부 또는 주최고재무관청의 일반행정규칙에서 준칙이 수립된 범위에서의 관련된 조치에 대한 권한도 포함한다. 제163조 1항 2단의 규정에 의한 조치가 소득에 대한 조세확정에 대한 기초로서의 영업소득에 영향을 주는 범위에서 관련된 조치가 영업세산정기준액의 확정에 대한 기초로서의 영업수익에 대해서도 영향이 있다.

(3) 재무관청은 확정된 조세산정결정의 내용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이루어진 조치를 조세확정(물세조세결정을 하는 것)의 직무를 가지는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한다.

第 3 節 分割 및 配分

第185條 [通則의 適用] 조세법률에 정해져 있는 조세산정기준액의 분할에는 다음 조문이하에 특별한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조세산정기준액의 산정 및 확정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第186條 [關係人] 분할절차에는 다음의 자가 관계하는 것으로 한다.

1. 조세의무자
2. 조세산정기준액에 대한 할당분이 분배되는 조세권리자¹⁶⁾, 또는 관련된 할당분을 청구하는 조세권리자. 조세의 확정이 조세권리자의 직무가 아닌 경우 조세의 확정에 대한 관할관청이 조세권리자에 대신한다.

第187條 [書類의 閱覽] 관계징수권자는 관할재무관청에게 분할기초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고 동시에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분할자료의 열람을 시키게 할 수 있다.

第188條 [分割決定] (1) 분할에 대해서는 서면에 의한 결정(분할결정서)을 한다. 이 분할결정은 관계인과 관계되는 범위에서 당해 관계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2) 분할결정서에는 분할한 조세산정기준액을 기재하고 어떤 할당분이 관계조세

16) 租稅權利者(Steuerberechtigten)

物稅인 경우 재무관청은 조세산정액을 조사하고 조세경정의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한다(제184조 3항). 지방자치단체는 그 조세를 확정하고 징수할 의무를 진다. 이 조세산정액에 배당이 주어졌거나 또는 배당을 주장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배분절차에 참가한다. 이때의 참가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실제로 그러한 권리가 있는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가 배당을 주장하는 것으로 족하다. 物稅가 완전히 전부 주재무관청에 의하여 관리되는 범위에서 다시 말하면 재무관청이 조세산정액뿐만 아니라 Berlin이나 Hamburg 처럼 物稅 자체를 확정하고 징수하는 범위에서 제186조 2항에 따라 다른 재무관청들도 배분절차에 참가한다. 따라서 제186조의 Steuerberechtigten은 '조세권리자'라고 함이 징수권자보다 文辭에 가깝다.

권리자에게 분할되는가를 결정해야한다.

분할결정서에는 분할결정의 기초를 기재해야한다.

第189條 [分割의 變更] 조세산정기준액의 할당분에 대한 조세권리자의 청구가 고려되지 않고, 각하도 되지 않는 때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분할을 변경하거나 보완한다. 종전의 분할결정이 이미 분할절차에 관계된 조세권리자에 대하여 불가쟁력을 발생한 경우에는 분할의 변경에 대하여 종전에 간과된 조세권리자의 사후의 고려에서 발생한 변경만을 할 수 있다. 분할의 변경 또는 사후의 분할은 조세산정기준액결정이 불가쟁력을 발생하여 1년을 경과한 때는 하지 않는다. 다만 간과된 조세권리자가 1년을 경과하기까지 분할의 변경 또는 사후의 분할의 신청을 한 때는 이 제한이 없다.

第190條 [配分節次] 조세산정기준액의 전액이 1조세권리자에게 배분되거나 어느 조세권리자가 그 조세산정기준액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는가에 대하여 이미 다툼이 존속하는 때는, 관계인의 신청으로 재무관청이 배분결정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에는 분할절차에 대하여 적용된 규정을 준용한다.

第 4 節 責任

第191條 [責任決定¹⁷⁾, 受忍決定] (1) 법률에 의하여 조세에 대하여 책임을

17) 責任決定(Haftungsbescheid)

(1) 責任

타인의 조세채무이행을 자기의 재산으로 보증을 지는 경우로서 통상적으로는 조세채무자는 책임자로 하지않는다. 그러나 책임채무자는 조세채무자와 동일한 부담을 갖는다. 또한 법률에 의해서만 조세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책임채무자)는 책임결정에 의하여 청구를 받는다(제191조 1항). 계약에 의하여 조세채무를 지는 자(제48조 2항)는 조세기본법에서 의미하는 책임채무자가 아니다.

(2) 責任決定

① 책임결정은조세결정이 아니고 조세결과와 같은 것도 아니다. 책임결정은 제118조에서 의미하는 하나의 행정행위이다. 따라서 조세확정에 관한 규정(제155조 이하)을 적용할 수 없다. 책임결정의 형식, 내용, 변경 또는 취소는 제119조 이하의 일반규정에 따라 정한다.

지는자(책임채무자)에 대해서는 책임결정에 의해 법률에 의해 집행을 수인할 의무를 지는자에 대해서는 수인결정에 의해 청구할 수 있다. 이들 결정은 서면으로 행한다.

(2) 재무관청은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세무사, 세무대리인, 經濟檢査士, 또는 공인장부검사가 그 직무수행상 한 제69조의 규정에서 말하는 행위를 위하여 책임결정을 하기 전에 재무관청은 관할직업단체에 그 입장에서 결정에 대하여 의의를 가지는 견해를 진술할 기회를 부여한다.

(3) 확정기간에 관한 규정은 책임결정에 준용한다. 확정기간은 4년으로 하고, 제70조의 경우에는 탈세에 대하여 10년, 경과실에 의한 조세의 면탈에 대하여 5년, 제71조의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확정기간은 법률이 책임의 결과에 결부된 요건사실이 실현된 역년의 경과와 동시에 개시한다. 조세가 확정되지 않는 때는 당해 조세에 대한 책임결정의 확정기간은 조세확정에 대하여 적용된 확정기간이 경과하기까지는 종료하지 않는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제171조 10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3조 및 제74조의 경우에는 조세채무자에 대하여 확정된 조세가 시효가 완성되기까지는(제228조) 확정기간은 종료하지 않는다.

(4) 책임이 조세법률로부터 발생하지 않는 때는 책임청구권이 시효가 완성되기 전 동안은 그 기준이 되는 법에 따라 책임결정을 할 수 있다.

(5) 책임결정은 다음의 경우에는 더이상 할 수 없다.

1. 조세가 조세채무자에 대하여 확정되지 않고 동시에 확정기간이 경과하기 때문에 더이상 확정할 수 없는 경우
2. 조세채무자에 대하여 확정된 조세가 시효가 완성되거나 또는 조세가 면제

② 책임결정은 서면으로 해야 하므로 제119조 3항에 따라 결정을 한 행정청을 명기하고 관청의 장, 그 대리인 또는 수임자의 서명 또는 기명을 해야 한다.

③ 행정행위는 내용적으로 명확해야 하므로 행정청의 의사가 완전하고 분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책임결정에는 책임채무자(Haftungsschuldner)와 책임금액(Haftungsbeträge)이 명확히 나타나야 한다. 그밖에는 책임결정의 유형에 따라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표시되어야 할 내용이 정해진다.

(3) 責任決定이 許容되지 않는 경우

책임결정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로서는 제191조 5항에서 정하고 있다.

되는 경우

책임이 책임채무자가 탈세 또는 조세범을 범한 것에서 비롯된 경우는 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第192條 [契約에 의한 責任] 계약에 기초하여 타인의 조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해서는 민법의 규정에 의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

第 4 章 臨場調査¹⁸⁾¹⁹⁾

18) Außenprüfung: 臨場調査

독일의 조세기본법에서 Außenprüfung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함에 있어서 稅務調査, 現場調査, 臨場調査, 實地調査, 出張調査 등 여러가지 용어가 사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제반 세무조사 개념들을 개별적인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고 관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용어와 개념의 정리가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세무조사에는 그 조사의 성격과 내용, 조사의 強度, 또는 적법절차 유무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조사가 있다. 그런데 독일의 경우에는 이러한 여러가지 세무조사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각각에 맞는 適法節次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적법절차에 어긋나면 조세불복단계에서 곧 바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엄격히 세무조사의 성격과 내용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Außenprüfung은 여러가지 적법절차를 따로 두고 엄격하게 실행하는 세무조사의 하나의 방법으로서 용어 그 자체로서 세무조사의 성격과 여기에 따른 여러가지 절차를 함축하는 고유의 세무조사 개념이다. 이처럼 세무조사로서 독특한 하나의 형태를 취하는 용어를 일반적인 세무조사의 개념으로 번역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경우 現場調査, 實地調査 또는 出張調査 등의 용어가 사용될 수 있겠으나 아직 각각에 대한 개념정리나 적법절차를 갖춘 세법체계를 갖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독일의 “Außenprüfung”을 現場調査, 實地調査 또는 出張調査 등으로 번역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發動要件과 節次 및 그 法的效果면에서 애매한 이들 개념의 사용을 피하고 엄격한 법적절차를 갖춘 정규의 세무조사로서 실지 현장에 임하여 세밀한 세무조사를 한다는 의미에 적합한 것으로 보아 “Außenprüfung”을 “臨場調査”로 번역하기로 한다.

19) 臨場調査(Außenprüfung)

(1) 調査請求權 與否

임장조사는 행정청의 하나의 선택재량행위이다(연방헌법재판소 판례). 따라

서 조세의무자가 조사청구권을 갖는 것이 아니다. 재무관청은 적법한 과세, 대등한 과세의 관점에서 선택적으로 입장조사를 해야한다. 조사가 조세에 대한 추가청구가 아니라 조세환급을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한 것은 제85조, 제88조 1항, 제199조 1항에 따라 하자있는 재량이다. 조사는 가능하면(변경된) 결정을 위하여 재심사가 행해진 그 해에만 허용된다.

(2) 調査對象

조사대상은 원칙적으로 사업자 - 영업, 농림업, 자유업 - (제193조 1항)와 다른 조세납부의무자(제193조 2항 1호)이다. 이들에 대하여는 조사의 필요성이 충족된다.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는 일정한 경우에만 허용되고(제193조 2항 2호) 제194조는 입장조사의 사물적인 범위(Sachlicher Umfang)로 기술되어 있다. 이 규정이 조사객체와 조사주체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누가 조사주체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에 항상 유의해야한다. 핵심은 재무관청이 그들의 일반적인 경험에 따라 조사가 필요한가 또는 합목적적인가를 정한다는 점이다.

(3) 調査課題와 調査內容

조사자는 사실상 및 법률상 중요한 관계 예컨대, 조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그리고 불리한 관계를 조사한다.(제194조 1항 1호, 제199조 1항; 제85조, 제88조에 일반적으로 규정됨). 반드시 전체조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입장조사는 하나 또는 수개의 조세, 일회 또는 수회의 과세기간,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제203조 1항은 축약적인 본질적으로 중요한 과세기초에 한정하여 조사할 것을 허용하고 있다. 입장조사시 제3자와의 관계를 확인하여야 할 때에 그것이 조세상 중요한 경우에는 이의 이용이 허용된다(제194조 3항).

(4) 臨場調査 實施

입장조사가 시행되어야 할(조사주체) 조세의무자와 인적 물적 시간적 조사범위는 서면에 의한 조사명령서 Prüfungsanordnung에 의하여 결정된다. 조사의 시간적 범위(역년 또는 경제년도)는 제171조 4항, 제173조 3항, 제371조 2항 Nr.1a의 규정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조사의 시간적 확대나 연장은 하나의 독립적인 조사명령서에 의하여야 한다. 조사명령서는 관계인에게 원칙적으로 조사개시전 일정한 시기에 고지해야 한다.(제196조, 제197조 1항). 중요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조사개시의 연기가 허용되며(제197조 2항), 조사의 시기 및 장소는 조사명령서의 구성요건이 아니라 독립된 행정행위이다. 조사명령서와 조사시기와 장소에 대하여는 訴願이 허용된다.(제349조 1항). 조사관이 입장한 때는 지체없이 신분을 증명하고 입장조사의 일자와 시간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제198조). 입장조사는 통상의 영업시간 또는 작업시간 중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거 또는 사무실에서도 행한다. 이 경우 조세의무자의 協力義務에 대하여는 제200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입장조사는 조세추적(Steuerfahndung)과

第 1 節 通則

第193條 [臨場調査의 許容] (1) 임장조사는 영업 또는 농림업을 경영하는 조세의무자 또는 자유업을 경영하는 조세의무자에 대하여 인정된다.

(2) 제1항에서 규정한 자 이외의 조세의무자에 대해서는 임장조사는 다음의 경우에 인정된다.

1. 임장조사가 이들 조세의무자의 타인의 계산으로 조세를 납부할 의무 또는 조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한 경우
2. 과세에 대하여 중요한 사정의 해명을 필요로 하고 관공서에서 검사할 사실의 종류 및 범위에 따른 관공서에서의 조사가 합목적적이 아닌 경우

第194條 [臨場調査의 事物上의 範圍] (1) 임장조사는 조세의무자의 과세상 사정의 조사를 위하여 행해진다. 임장조사는 하나 혹은 둘이상의 세종목, 하나 혹은 둘이상의 과세기간을 포괄하거나 일정한 사실에 한정할 수 있다. 인적 회사에 대한 임장조사는 사원의 과세상의 사정이 조사되는 통일적인 확인에 대하여 의의를 가지는 범위에서, 사원의 과세상의 사정을 포괄한다. 조세의무자가 타인의 계산으로 조세를 납부하고, 또는 조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거나 또는 부담하고 있는 범위에서 타인의 과세상의 사정을 조사할 수 있다. 타인에 대하여 조세의 불시의 사후청구를 하는 경우

는 다르므로 주로 조세범을 조사할 목적으로 행해서는 안된다. 물론 이 조사과정에서 조사자가 조세범 또는 질서위반자를 찾아내는 경우가 드문 일은 아니다.

(5) 臨場調査와 聽問權(Recht auf Gehör)

조세의무자에게는 조사 중에 조사의 목적과 수행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확인된 사실관계와 가능한 과세상의 효과를 알려야 한다(제199조 2항). 그밖에 조사의 결과에 관하여 최종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조사결과 과세기초에 변경이 없거나 조세의무자가 최종진술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臨場調査에 基礎한 確約

임장조사후 재무관청은 조세의무자의 신청으로 조사보고서에 기재된 사실관계가 장래에 조세법상 어떻게 취급될 것인가를 확약할 수 있다(제204-제207조 참조).

도 적용한다.

- (2) 개별사안에서 합목적인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규정외에 사원 그리고 구성원 및 감독기관의 구성원의 과세상의 사정을 회사에 대하여 실시하는 임장조사에 포함시킬 수 있다.
- (3) 임장조사시에 제1항에 규정된 자 이외의 자가 그 관계를 조사할 때에는 이를 알게된 것이 그 타인의 과세에 대하여 의의를 가지거나 또는 그 확인이 부당한 세무보조²⁰⁾에 관계된 범위에서 당해 확인을 이용하는 것이 인정된다.

第195條〔管轄〕 임장조사는 과세를 관할하는 재무관청에 의해 실시한다. 당해 재무관청은 타재무관청에게 임장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수탁재무관청은 관할재무관청의 이름으로 조세확정을 하고 구속확인(제204조에서 제207조)을 할 수 있다.

第196條〔調査命令〕 재무관청은 권리구제고지(제356조)를 포함하는 서면으로 이루어진 조사명령서에서 임장조사의 범위를 정한다.

第197條〔調査命令의 告知〕 ²¹⁾ (1) 조사명령 및 조사개시의 예정 및 조사관의

20) 不當한 稅務補助(unerlaubte Hilfeleistung in Steuersachen)

① 확인의 이용은 이를 알게된 것이 그 타인의 과세에 대하여 의의를 가지거나

② 이 확인이 부당한 세무보조(unerlaubte Hilfeleistung)에 관계된 범위에서 허용된다.

①에 대한 논리가 ②에 준용된다. 이러한 규정의 의미는 허용되지 않는 세무보조가 확립되는 것을 반대하려는 입장으로 보인다. 허용되지 않는 세무보조란 이를테면 세무보조에 대한 권한이 없는 자가 조세의무자에 대하여 상담(beraten) 하거나 대리하고 이러한 행위가 영업행위로 보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이다.

21) 調査命令의 告知(Bekanntgabe der Prüfungsanordnung: PA-調査命令書)

고지는 PA의 모든 형식이다. PA는 행정행위이고 고지의 효력을 필요로 한다. 고지는 PA의 취소, 철회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제197조의 의미는 제196조를 보충한 것이고 행정행위의 고지에 관한 일반규정인 제122조와의 관련하에서 고찰해야한다. 제197조는 또한 조세실시의 방법에 관한 규정이며 이는 납세자의 권익보호의 측면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마찰없는 조사수행을 확보한다는 측면도 있다.

성명은 입장조사를 받은 조세의무자에 대하여 조사개시전 상당기간에 이를 고지해야한다. 다만 고지에 의해 조사목적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는 때는 이 제한은 없다. 조세의무자는 전단의 기간에 관계된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조사가 제194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원 및 구성원 및 감독기관의 구성원의 과세상의 사정에까지 미치는 때는 그 범위에서 조사명령은 이들에 대해서도 고지되어야한다.

- (2) 조세의무자의 신청으로 중요한 사유가 소명되는 때는 입장조사의 개시를 다른 시기로 변경해야한다.

第198條 [證明義務, 臨場調査의 開始] 조사관이 입장하는 때는 지체없이 자기의 신분증명을 해야한다. 입장조사의 개시는 날짜 및 시간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한다.

第199條 [調査의 原則] (1) 입장조사관은 조세의무 및 조세의 산정기준이 되는 사실상 및 법률상의 사정(과세기초)을 조세의무자의 이익 및 불이익을 위하여 검사해야한다.

- (2) 확인된 사실 및 가능한 과세상의 효과에 대해서 입장조사중에 조세의무자에 대하여 이를 알린다. 다만 알려줌으로써 조사의 목적 및 수행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200條 [租稅義務者の 協力義務] (1) 조세의무자는 과세를 위한 중요한 사실의 확인에 대하여 협력해야한다. 특히 조세의무자는 정보를 제공하고, 기록, 장부, 업무상의 서류 및 기타의 문서를 열람 및 조사를 위하여 제출하고, 또한 기록을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명을 해야한다. 조세의무자 또는 그가 지명하는 자가 정보를 제공할 상황이 아닌 경우, 또는 정보가 사실의 해명에 불충분한 경우, 또는 조세의무자의 정보에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장조사관은 다른 종업원에게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3조 2항 2단 및 제97조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2) 제1항에 규정한 자료를 조세의무자는 그 사무소에서 또는 입장조사의 실시 에 적당한 사무소가 없는 때는 그의 거소 또는 관공서에 제시해야한다. 입장

조사의 실시에 적당한 방 또는 작업장 그리고 필요한 보조수단은 무상으로 사용에 제공해야한다.

- (3) 입장조사는 통상의 영업시간 또는 작업시간중에 행하는 것으로 한다. 조사관은 부동산 및 사업장에 출입하고 조사할 권한을 가진다. 사업의 조사의 경우에는 사업주 또는 그의 대리인을 입회시켜야한다.

第201條 [終結協議] (1) 입장조사의 결과에 대해서는 협의를 한다(종결협의). 다만 입장조사의 결과에 의해 과세기초에 어떠한 변경을 발생하지 않는 경우, 또는 조세의무자가 협의를 포기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결협의에서는 특히 다툼이 있는 사실 그리고 조사확인의 법적인정 및 그 과세상의 효과를 논의해야 한다.

- (2) 조사확인에 기초하여 형벌절차 또는 과료절차가 실시되어야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의무자에게 형벌법 또는 과료법상의 판정이 특별절차에 유보되어 있다는 취지를 지적해야한다.

第202條 [調査報告의 內容 및 告知] (1) 입장조사의 결과에 대해서는 서면에 의한 보고(조사보고서)를 한다. 검사보고서에는 사실상 및 법률상의 관점에서 과세에 중요한 조사확인, 및 과세기초의 변경을 기술한다. 입장조사에 의해 과세기초에 어떠한 변경을 발생하지 않는 때는 서면에 의해 그 취지를 조세의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족하다.

- (2) 재무관청은 조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조사보고서를 그 이용전에 조세의무자에게 송부하고 상당한 기간에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조세의무자에게 주어야한다.

第203條 [短期臨場調査] (1) 재무관청이 사안에 따라 통상의 기간의 입장조사를 필요로 하지않는다고 인정한 조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단기입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조사를 중요한 조세기초에 한정할 수 있다.

- (2) 조세의무자에게는 조사가 종결하기까지 조세신고 또는 조세확정과 어느 정도 다르게 되는가에 대하여 揭示한다. 과세상 중요한 조사확인은 조세의무자에게 지체없이 조세결정과 동시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경우 제201조 1항

및 제202조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第 2 節 臨場調査에 기초한 拘束確言²²⁾

第204條 [拘束確言의 要件] 임장조사에 관련하여 재무관청은 장래의 조세상의 취급을 조세의무자가 알아두는 것이 자기 업무상의 처리에 중요한 경우에는 조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過년도에 조사되고 또한 조사보고서에 기술되어 있는 사실이 장래 세법상 어떻게 취급되는가에 대하여 구속확언을 해야한다.

第205條 [拘束確言의 形式] (1) 구속확언은 서면에 의해 부여되고 동시에 구속으로 기재한다.

(2) 구속확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한다.

1. 구속확언의 기초가 되는 사실. 그 경우 조사보고서에 기술되어 있는 사실을 인용할 수 있다.
2. 신청에 대한 결정 및 당해 결정에 대한 결정적인 이유
3. 구속확언이 적용되는 조세종류 및 기간에 대한 기재

第206條 [拘束力] (1) 구속확언은 후에 실현되는 사실이 구속확언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일치할 때는 당해 구속확언은 과세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다.

(2) 제1항의 규정은 구속확언이 현행법에 위반하고 신청자의 불이익이 될 때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第207條 [拘束確言의 實效, 取消 및 變更] (1) 구속확언은 그 결정의 기초가

22) 拘束確言(Zusage)

① 행정주체가 私人에 대하여 장차 일정한 행정작용(예, 행정행위발생, 행정계획수립 등)을 하거나 하지 않겠다는 구속적인 약속을 말한다. 행정행위라고 보는 설(독일), 행정법상의 독자적인 행위형식으로 보는 설, 행정행위의 성질을 갖는다고 보는 설(다수설) 등이 있다.

② 원칙적으로 구속성을 갖는다. 확인한 내용이 불이행되면 행정쟁송이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된 법규가 개정될 때는 실효한다.

- (2) 재무관청은 구속확언을 장래에 대한 효력으로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3) 소급효력을 가지는 구속확언의 취소, 또는 변경은 조세의무자가 동의하거나 제130조 2항 1호, 또는 2호 요건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第 5 章 租稅査察(關稅査察)

第208條 [租稅査察(關稅査察)] (1) 조세사찰(관세사찰)의 임무는 다음 사항으로 한다.

- 1. 조세범 및 조세질서위반의 조사
- 2. 제1호에 규정한 경우의 과세기초의 조사
- 3. 알려지지 않은 조세사안의 적발 및 조사

조세사찰을 위탁받은 주재무관청의 부서 및 관세사찰서는 제404조 2단 전 반부의 규정에 의한 권한이외에 세무서(관세본서)에 속한 조세권한도 갖는다.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93조 1항 3단, 2항 2단 및 제97조 2항 및 3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200조 1항 1단 및 2단, 2항, 3항 1단 2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93조 1항의 규정의 적용은 방해받지 않는다.

(2) 제1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조세사찰을 위탁받은 주재무관청의 부서 및 관세사찰서는 다음 의 사항을 관할한다.

- 1. 소관 재무관청의 의뢰에 의한 입장조사를 포함한 세무조사
- 2. 재무관청의 관할권의 범위에서 위탁받은 임무

(3) 세무서(관세본서)의 임무 및 권한은 그 효력에 변경이 없다.

第 6 章 特別한 경우의 租稅監督

第209條 [租稅監督의 客體] (1) 국경을 넘은 물품의 거래 및 비과세영역의 물품거래 및 이윤, 제조, 저장, 운송 그리고 소비과세물품의 영업사용 및 소비세과세물품의 거래는 세관의 감시(조세감독)에 따른다.

(2) 전항외에 다음의 사항은 조세감독에 따른다.

1. 관세절차 또는 소비세절차에 있는 물품의 발송, 수출, 저장, 사용, 폐기, 정제, 변조 및 기타 工作 또는 가공
2. 관세 또는 소비세의 면제, 환부 또는 환급이 청구되는 물품의 제조 및 수출

(3) 기타 다른 사실은 법률에서 정해진 경우에는 조세감독에 따른다.

第210條 [財務官廳의 權限] (1) 재무관청에 의해 조세감독을 위탁받은 공무원 은 독자적으로 영업활동 또는 직업활동을 하고 조세감독을 받는 사실이 귀속 되는 자의 부동산 및 공간에 과세에 대하여 중요한 조사를 하거나 기타 확인 을 하기 위하여 영업시간중 또는 작업시간중에 출입할 권한을 가진다(검사 23)).

(2) 밀수품의 존재 또는 정규로 과세되지 않는 소비세과세물품의 존재, 또는 조 세감독에 의해 그 엄수가 확보되는 규정 또는 명령의 위반을 인정하는 것을 정당하게 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시간의 제한없이 조세감독을 받는 사실 이 귀속하는 자의 부동산 및 공간은 검사를 받는다. 지연의 우려가 있는 경 우에는 주거 및 사무소의 검색은 재판관의 명령없이도 인정된다.

(3) 재무관청에서 조세감독을 위탁받은 공무원은 시간 및 장소적으로 제한된 조 사의 범위안에서 외부적인 이동으로 영업목적 달성을 선박과 그밖의 차 량을 멈추게할 권한을 가진다. 관계자는 신분을 밝히고 수송하고 있는 물품 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그는 특히 선하증권과 그밖의 운송장을 조세 상의 양식이 아닌 것도 제시해야한다. 공무원은 이 제시에 따라 또는 소비세 과세물품을 수송하는 등의 기타의 사실에서 수송물품을 검사하고 이 물품의

23) 檢索(Durchsuchung), 檢査(Nachschau)의 차이

(1) 檢索(Durchsuchung)

주소의 거주자가 스스로 공개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는 것에 대한 人, 物 또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탐색하는 것을 말한다.

(2) 檢査(Nachschau)

Durchsuchung과 다른 점은 의무자가 검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통지가 행해진다.

과세에 중요한 일체의 확인을 할 수 있다. 관계자는 소비세과세물품의 출처를 신고하고 시료를 위한 무상의 수거를 인용하고 필요한 협력을 해야한다.

(4) 조세감독을 행사하는데 확인을 필요로하는 경우에는 사전의 검사명령(제196조)없이 제193조의 규정에 의한 입장조사를 이행할 수 있다. 입장조사에의 이행은 서면으로 이를 지시한다.

(5) 연방국방군의 공간 또는 일반적으로 출입할 수 없는 연방국방군의 시설 혹은 설비의 검사가 필요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방국방군의 상급청에 검사를 의뢰한다. 재무관청은 이에 협력할 권한이 있다. 병사이외의 자가 오로지 거주하는 공간에서 검사가 행해지는 때는 검사의 의뢰를 요하지 않는다.

第211條 [監督을 받는 者의 義務] (1) 조세감독의 조치를 받는 자는 공무원에게 그 필요에 의해 조세감독에 따르는 사실 및 관세 또는 소비세과세물품의 구입 및 판매에 관한 기록, 장부, 업무용 서류 및 기타 문서를 제출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조세감독의 실시에 그 밖에 필요한 보조를 해야한다. 이경우 제200조 2항 2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는 조세감독을 받는 사업 또는 기업에서 법률에 의해 정해진 소비세과세물품의 사후과세시 사후과세물품의 공급을 받는 자 및 그 공급량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3) 조세감독의 행사를 방해하거나 곤란하게하는 사전절차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第212條 [施行規定] (1) 연방재무장관은 조세감독의 범위에서 이행할 의무를 상세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법규명령으로 명할 수 있다.

1. 일정행위가 재무관청에 신고되어 있는 공간 또는 이 목적을 위하여 사용이 재무관청에 의해 특별히 허가되어 있는 공간에서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2. 과세물품의 제조, 공작, 가공, 저장, 운송 또는 축정에 제공되거나 제공될 수 있는 공간, 차량, 도구, 용기 및 導管을 사업주의 비용으로 일정방법으로 정리, 정비, 도장을 찍거나 직권으로 폐쇄하는 것.

3. 감시받는 물품을 일정한 방법으로 취급하고, 기호를 붙이고, 저장, 포장,

송부 또는 사용하는 것.

4. 과세물품의 판매인이 동시에 제조자인 경우에 당해 물품의 거래를 특별히 감시하는 것.
 5. 사업상의 사실 및 과세물품에 대하여 그리고 과세물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투입재료, 제조재료, 보조재료 및 중간제품에 대하여 일정한 방법으로 기록을 작성하고, 재고를 확인하는 것.
 6. 장부, 기록 및 기타의 자료를 일정한 방법으로 보관하는 것.
 7. 과세에 중요한 사실 및 조치를 재무관청에 신고하는 사업 또는 기업의 사실과 조치.
 8. 과세물품, 관세 또는 소비세의 면제, 환급 또는 상환이 청구되는 물품, 이들 물품의 제조에 제공되는 재료 그리고 이들 물품의 포장에서 무상으로 試料를 뽑아내도 되는 것, 또는 무상으로 견본이 공탁되는 것.
- (2) 법규명령은 맥주세에 관한 경우외에는 연방상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第213條 [特別監督措置] 사업이나 기업의 소유자 또는 업무책임자가 탈세범, 탈세미수범 또는 그에 관련된 범죄의 가담때문에 처벌의 효력이 발생한 때 유효한 조세감독을 보증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이나 기업을 그들의 비용으로 특별한 감독조치에 따르게 할 수 있다. 특히 추가기록 및 신고의무, 空間, 容器 및 도구의 확실한 폐쇄 및 유사한 조치를 정할 수 있다.

第214條 [受任者] 조세감독을 받는 사실에 기초하여 부과되는 과세상의 의무 이행을 위하여 이들 의무에 대한 주의를 위임받은 그의 사업이나 기업의 종업원에 의해 대리되는 자는 재무관청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관세취급에 관련한 수입세사안의 대리에 대해서는 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第215條 [監督手段으로서의 保全] (1) 재무관청은 다음 각항의 물건을 압수, 封印 또는 처분금지에 의해 보전할 수 있다.

1. 공무원이 특히 다음 경우에 발견한 소비세과세물품
 - a) 재무관청에 신고되지 않은 제조사업 또는 기타 다른 신고의무가 있는

공간에서.

b) 조세법률에 의한 포장, 기호, 직인이 없는 거래, 또는 규정에 의한 증지가 없는 거래에 있어서

2. 관세경제지역 또는 경계감독을 받는 영역에 있어서 물품이 비과세도 아니고 또한 사정으로 보아 명백히 비과세화물도 아닌 경우에 발견되는 때의 당해 물품

3. 관세비과세영역인 水域 또는 河口에서 발견되는 물품이 비과세도 아니고 또한 사정으로 보아 관세법 제67조 2항에 의해 명백하게 제외되지도 않는 경우의 당해 물품

4. 제1호내지 제3호에 규정한 물품의 포장물

5. 소비세과세물품의 제조의 용도에 제공되고 재무관청에 신고되지 않은 제조사업에 쓰는 器具

물건이 형사절차에서 우선 차압되고 그후 재무관청에 처분이 위임된 경우에 보전은 허용된다.

(2) 보전에 대해서는 조서를 작성해야한다. 보전은 알고 있는 관계인(소유자, 점유자)에게 통지해야한다.

第216條 [聯邦에의 所有權의 移轉] (1) 제215조의 규정에 의해 보전된 물건은 연방의 소유로 이전된다. 다만 제375조 2항의 규정에 의해 당해 물건이 몰수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습득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에 기초한 반환청구권이 행사되지 않는 경우에만 전단의 규정을 적용한다.

(2) 보전되어 있는 물건의 연방에의 소유권의 이전은 관계인에게 통지해야한다. 관계인이 알지 못한 때는 행정송달법 제15조 2항 및 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소유권의 이전은 재무관청의 행정행위가 불가쟁력을 발생한 때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소유권은 제1단의 요건을 충족하면 분리와 동시에 이전하다. 보전된 물건에 대한 제3자의 권리는 존속한다. 다만 제3자가 연방의 소유권에 이전된 물건이 보전을 받는 것에 대하여 경과실을 범한 경우, 또는 제3자가 보전의 원인이 된 사정을 알고 당해 물건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이들 권리의 소멸을 명할 수 있다.

(4) 보전된 물건이 부패 또는 현저한 가격의 감소의 우려가 있는 때, 또는 그

보관, 유지에 현저히 다액의 비용과 곤란을 수반하는 때는 연방의 소유에로 이전전에도 당해 물건을 양도할 수 있다. 이 목적을 위하여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물건도 토지에서 분리할 수 있다. 수익금은 당해 물건에 代位한다. 긴 급양도는 이 법률의 차압물건의 환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관계인은 양도명령전에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명령 및 양도의 시기 및 장소는 가능한 한 관계인에게 통지한다.

- (5) 보전된 물건 또는 이미 연방의 소유로 이전한 물건은 보전의 원인이 된 사실이 소유자의 책임으로 귀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연방에의 소유권이전이 관계인의 입장에서 불공평하게 가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한다. 연방에의 소유권의 이전에 의해 그 권리가 소멸되거나 침해된 선의의 제3자는 당해 물건의 수익금에서 적당한 배상을 받는다. 배상을 거부하는 것이 불공평하게 가혹한 범위에서 배상을 인정할 수 있다.

第217條 [租稅補助者] 24) 관세법 및 소비세법상 중요한 사실확인을 위하여 재무관청은 확인의 결과에 대하여 관계하고 있지 않은 자를 조세보조자로서 임명할 수 있다.

24) 租稅補助者

이때의 보조자는 오로지 자연인만 허용된다. 사업자의 피용인이나 제3자도 가능하다 (예: 수로안내인, 부두관리소의 사무원 등). 이들은 확인결과에 대하여 자신과 관계없는 사람만 허용된다. 이러한 제한은 이해충돌을 피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第 5 編 徵收節次

第 1 章 租稅債務關係에서 發生하는 請求權의 實行, 納付期限 및 消滅

第 1 節 租稅債務關係에서 發生하는 請求權의 實行 및 納付期限

第218條 [租稅債務關係로 發生한 請求權의 實行] 1) (1) 조세채무관계(제37조)로 발생하는 청구권의 실행에 대한 기초는 조세결정, 조세환급결정, 책임결정, 및 조세부대금부를 확정하는 행정행위로 한다. 연체가산금에 있어서는 법률요건(제240조)의 충족으로 족하다. 납세신고(제168조)는 조세결정과 동등한 것으로 한다.

(2) 제1항에서 말하는 청구권의 실행에 관계한 다툼에 관해서는 재무관청이 행정행위에 의해 이를 결정한다. 전단의 규정은 다툼이 환급청구권(제37조 2항)에 관계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第219條 [責任決定에 關聯한 納付督促] 별도규정이 없는 한 조세채무자의 동산에 대한 집행의 효과가 없는 때, 또는 그 집행이 가망없는 것으로 인정

1) 請求權의 實行

① 조세채무관계로 발생한 청구권의 실행은 제38조에 의하여 성립한 청구권의 실행을 의미한다. 이는 행정행위의 집행으로 말하자면 조세징수, 조세상환 실행 등을 뜻한다.

② 조세청구권 실행에 대한 기본원리는 법률에서 말하는 행정행위로 하나의 확정된 조세결정에 대한 금부 또는 이행이다. 이는 행정행위의 발령없이는 원칙적인 조세채무관계에서 발생한 청구권이 실행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청구권의 구체화는 명문의 결정이나 또는 단지 법률의 구성요건을 통하여 나타난다.

③ 추상적인 청구권의 금액이 확정된 금액과 일치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선언적 행위의 결정이다. 확정된 금액이 추상적인 조세채무를 상회한 경우, 이 결정은 징수절차가 오로지 행정행위에서 확정된 금액을 준용한 범위에서만(구성이) 허용된다. 연체가산금징수는 법률의 구성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충분하다. 제167조의 규정은 특히 제168조를 언급한 납세신고는 조세결정과 동등한 것이다. 이는 납세신고도 또한 납세신고에 들어있는 조세채무관계로부터 발생한 청구권의 실행에 대한 기초라는 의미이다.

되는 범위에 한하여 책임채무자²⁾에게 납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제한은 당해 책임이 관세법 제6조 1항, 3항 및 5항, 제8조 3항, 제40a조 1항 또는 제41조 2항, 5항 및 8항의 각규정에 기초한 경우, 또는 책임채무자가 탈세 또는 조세회피를 범하고, 또는 법률상 조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거나 타인의 부담으로 납부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第220條 [納付期限] (1) 조세채무관계로 발생하는 청구권의 납부기한은 조세법률의 제규정에 의한다.

(2) 납부기한에 관하여 법률에 의한 특별 규정이 없는 경우 청구권은 그 발생과 동시에 납부기한이 도래한다. 다만 제254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급부명령에 의하여 납부기간이 인정되어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단의 경우에 청구권이 조세, 조세상환 또는 조세부수금부의 확정에서 발생한 것일 때는 당해 납부기한은 확정의 고지전에는 도래하지 않는다.

第221條 [다른 納付期限의 指定] 조세의무자가 소비세 또는 매상세를 2회이상 법정기한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무관청은 법률에 의해 정해진 납부기한전에 재무관청이 지정한 조세발생 이후의 일자에 당해 조세의 납부를 요구할 수 있다. 전단의 규정은 소비세 또는 매출세의 수입이 위태로워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이유가 있는 경우도 적용한다. 납기전의 징수에 대신하여 담보의 제공도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제1단의 경우에 납기전의 징수는 당해

2) 責任債務者 등 規定

(1) 責任의 構成要件

책임의 구성요건은 제69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191조와 제192조는 실제법상의 책임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법률에 의하여 조세책임을 지는 자에 대한 책임결정의 발령을 규정하고 있다. 책임결정에 의하여 책임을 질 자와 책임금액이 확정된다.

(2) 責任決定

제219조 1항에 따라 책임채무자에 대하여 - 다른 규정이 없는 한 - 책임결정에 기초하여 납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조세채무자의 동산에 대한 집행의 효과가 없는 때 또는 그 집행이 가망없는 범위에 한하여 허용된다.(책임, 책임채무자에 대하여는 제191조 註釋참조 요).

납기전의 징수가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새로이 법정기한에 납부가 고지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第222條 [猶豫] 재무관청은 납부기한에 징수가 채무자에게 현저하게 가혹한 경우 그리고 유예로 청구권이 위태롭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는 조세채무관계로 발생한 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유예할 수 있다. 유예는 원칙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그리고 담보의 제공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부여되어야 한다.

第223條 [延納] 관세 및 소비세에 대하여 납부기한이 도래한 금액의 납부는 조세법률에 그 규정이 있는 한 조세채무자의 신청으로 담보를 제공하고 이를 연기할 수 있다.

第 2 節 支給, 相計, 免除

第224條 [支給의 場所, 支給日] (1) 재무관청에의 납부는 소관수납처에 한다.

수납처외에 있어서는 수납처외에 특별히 통화의 수령권한을 가지고 그 증명을 할 수 있는 공무원에 한해 통화의 교부를 받을 수 있다.

(2) 유효하게 이루어진 납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은 각각 규정한 날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1. 通貨의 인도 또는 송금 수납일

2. 재무관청의 계좌에 대체 또는 불입 및 수표, 대체불입표 또는 우편대체로서 하는 불입은 당해 금액이 재무관청의 구좌 대변에 기입된 날

3. 수금권한이 있는 경우의 납부일

(3) 재무관청의 납부는 현금이외로 행한다. 연방재무장관 및 재무행정소관의 주 최고관청은 그 직무범위를 위하여 특례를 제정할 수 있다. 대체 혹은 우편수표에 의한 것에 있어서는 연방우편 혹은 신용기관에 인도 혹은 위탁송부후 3일째, 또는 당해 금액이 직접 대변기입이 되지 않는 경우는 대변기입후 3일째를 납부일로 간주한다.

4. 소관금고는 영수증과 교환되는 지불수단의 인도에 대하여 이를 폐쇄할 수

있다. 금고가 제1단의 규정에 의해 폐쇄할 때에 금고소재지에 있는 1 혹은 2이상의 독일연방은행지점이, 또는 금고소재지에 독일 연방은행지점이 없는 때는 1 혹은 2이상의 금융기관이 금고를 위하여 영수증과 교환에 통화를 수령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때는 제2항 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第224a條 [支給에 代身한 美術品の 引導] (1) 조세의무자가 상속세 또는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공법상 계약으로 납부하는 대신 미술품, 미술품, 학문자료수집품, 도서관조각과 문고에 대한 재산권을 조세수입권한이 있는 중에 인도할 수 있다. 단 이에 대한 취득으로 예술, 역사, 학문을 위하여 의의있는 공공의 이익이 존재한 경우에 한한다. 1단에 의한 재산권의 인도는 상속세법 제13조 1항 2호 2단에서 말하는 양도의 효력은 없다.

(2) 1항에 의한 계약은 문서형식을 갖추어야한다. 조세의무자는 계약제안을 장서관할 재무관청에 해야한다. 계약체결에 대한 관할은 조세수입권한이 있는 주최고재무관청에 있다. 계약은 문화업무에 권한이 있는 주최고관청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을 갖는다. 이 동의는 주최고재무관청의 요청에 의하여야 한다.

(3) 계약이 성립하면 조세채무는 계약에서 합의된 세액이 조세수입권한이 있는 주에 재산권이 인도되는 날 소멸된 것으로 본다.

(4) 계약의 성립여부가 확정되지 않는 동안은 조세청구권은 제222조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계약이 성립하면 유예기간에 대하여 유예기간이자징수는 포기한다.

第225條 [償還의 順序] (1) 조세의무자가 2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자유의사에 의해 납부하는 경우 납부액이 전부의 채무의 상환에 충족되지 않는 경우는 조세의무자가 납부시에 지정한 채무를 상환하는 것으로 한다.

(2) 조세의무자가 전항의 지정을 하지 않은 때는 총채무에 충족하지 않은 자유의사에 의한 납부는 우선 벌금을 다음에 강제금, 원천징수세액, 기타 조세, 비용, 지연가산금, 이자 및 연체가산금을 순차충당한다. 전단의 순서내의 개개 채무는 그 납부기한의 순서에 의한다. 납부기한이 동일일이 되는 금액, 연체가산금에 대해서는 재무관청이 상환의 순서를 지정한다.

- (3) 납부가 행정처분으로 강제되고(제249조) 처분할 수 있는 금액이 채무의 전부를 상환할 수 없기 때문에 집행 또는 담보의 환가가 이루어진 경우에 상환의 순서는 재무관청이 정한다.

第226條【相計】 (1) 조세채무관계로 발생하는 청구권으로서 하는 상계와 이 청구권에 대하여 이루어진 상계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2) 조세채무관계로 발생한 청구권이 시효 또는 제척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소멸한 때는 그 청구권으로서 상계할 수 없다.

- (3) 조세의무자는 조세채무관계로 발생한 청구권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거나 확정력으로서 확인된 반대청구권으로서만 상계할 수 있다.

- (4) 상계에 대하여 조세를 관리하는 단체도 조세채무관계에 의하여 발생하는 청구권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로 본다.

第227條【免除】 (1) 재무관청은 채무관계에 의하여 발생한 청구권의 징수가 개별사안의 상황에 의해 형평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동일한 요건하에 이미 납부완료한 금액은 환부 또는 충당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은 조세를 관리하는 단체의 최고재무관청 또는 당해 관청에 의해 지정된 재무관청에 속한다. 부담조정법 제203조 5항의 규정은 그 적용을 방해받지 않는다.

第 3 節 支給의 時效

第228條【時效의 對象, 時效期間】 조세채무관계에 의하여 발생한 청구권은 특별한 납부의 시효에 걸리게 된다. 납부의 시효는 5년으로 한다.

第229條【時效의 開始】 (1) 시효는 청구권의 납부기한이 처음으로 도래한 역년의 경과로서 개시한다. 다만 그 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조세채무관계에 의하여 발생한 청구권의 확정, 또는 확정의 취소 및 변경이 효력을 발생한 역

년의 경과전에 있어서는 시효는 개시하지 않는다. 조세신고는 조세확정으로 본다.

- (2) 책임결정이 납부독촉을 수반하지 않고 이루어진 때는 시효는 그 책임결정이 효력을 발생한 역년의 경과로서 개시한다.

第230條 [時效의 停止] 시효는 불가항력으로 시효기간의 최근 6월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정지된다.

第231條 [時效의 中斷] (1) 시효는 서면의 청구권행사, 연납, 유예, 집행의 정지, 담보의 제공, 집행연기, 집행조치, 파산절차에 있어서 신고 및 납부의 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 대한 재무관청의 조사에 의하여 중단된다. 제169조 1항 3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 (2) 연납, 유예, 집행의 정지, 담보의 제공, 집행의 연기, 압류질권, 강제저당권 또는 변제에 대한 기타 우선권이 되는 집행조치, 또는 파산절차에 있어서 신고에 의한 시효의 중단은 연납, 유예, 집행의 정지 또는 집행의 연기에 대해서는 그 기간만료까지 담보, 압류질권, 강제저당권 또는 변제에 대한 기타 우선권에 대해서는 이들이 소멸하기까지 또는 파산절차가 종료하기까지 계속한다. 재무관청에 대한 청구권이 행사되는 경우 이에 의한 시효의 중단은 청구권에 관하여 결정이 이루어지고 확정력이 발생하기까지는 발생하지 않는다.

- (3) 중단이 종료하는 역년의 경과로서 새로운 시효기간이 개시한다.

- (4) 시효는 중단행위에 관련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중단된다.

第232條 [時效의 效力] 시효에 의하여 조세채무관계에 의하여 발생한 청구권 및 당해 청구권에 관한 이자는 소멸한다.

第 2 章 利子, 延滯加算金

第 1 節 利子

第233條【原則】 조세채무관계로 발생한 청구권(제37조)에는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자를 붙인다. 조세부대금부(제3조 3항) 및 이에 대응한 환급청구권에는 이자를 붙이지 않는다.

第233a條【租税追加請求와 租税還給에 관한 利子】 (1) 소득세, 법인세, 매출세 또는 영업세의 확정으로 조세의 추가청구 또는 조세환급이 행해진 경우에는 다음의 원칙에 따라 이자를 과한다. 이경우는 조세예납과 조세감면액에 관한 확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2) 이자기간은 조세가 성립한 역년의 경과후 15개월부터 기산한다.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한 이자기간은 최초의 조세확정시의 농림업에 의한 소득이 다른 소득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 확정기일후 21개월부터 기산한다. 이자기간은 조세추가청구나 조세환급의 만기일로 종료하고 늦어도 이자기간 개시 4년이 경과하면 종료한다.
- (3) 이자산정에 대한 기준은 확정된 조세에서 계상될 조세감면액, 계상될 법인세 및 확정된 조세예납(차액)에 대하여 감경한 것이다. 재산세의 경우는 이자계산에 대한 차액으로서 환정조세에서 확정된 조세예납 또는 현재까지 확정된 년세(年税)에 대하여 감경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조세의무자의 이익을 위한 차액은 환급금액까지만 이자를 과한다. 이자는 빨라도 납부일로부터 개시한다.
- (4) 이자의 확정은 조세확정에 구속되어야한다.
- (5) 조세확정 또는 조세액산정이 취소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지금까지의 이자확정을 변경해야한다. 이자산정의 기준은 확정된 조세과 이전에 확정되었던 조세간의 차액으로 계상될 조세감면액과 계산될 법인세에 대하여 각각 감경한 것이다. 이에따라 발생한 이자액은 현재까지 확정될 이자에 귀속한다. 조세의 무자의 이익을 위한 차액은 조세의무자의 확정된 이자에서 제외된다. 그밖의 경우는 3항 3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 (6) 1항에서 5항까지의 규정은 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에 준용한다.

第234條【猶豫利子】 (1) 조세채무관계로 발생한 청구권에 대하여 인정된 유예기간에 대해서는 이자를 징수한다.

- (2) 이자징수가 개개의 사정으로 형평에 맞지 않게되는 때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할 수 있다.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은 이자를 징수할 조세를 관리하는 단체의 최고재무관청 또는 당해 단체에 의해 지정된 재무관청에게 귀속한다.
- 부담조정법 제203조 5항의 규정은 그 적용을 방해받지 않는다.

- 第235條 [脱稅에 관한 租稅利子]** (1) 탈세에 관한 조세에는 이자를 붙인다. 이자채무자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탈세한 자를 말한다. 조세채무자 이외의 자가 원천징수한 조세를 재무관청에 납부할 의무 또는 제3자가 부담할 조세를 납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서 탈세가 이루어진 때는 그자가 이자채무자가 된다.
- (2) 이자기간은 면탈의 발생 또는 조세상의 이익획득일에 시작한다. 다만 탈세에 관한 금액에 대하여 탈세가 없는 경우에 그 납부기한이 후에 비로소 도래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경우에는 후에 도래한 일자가 기준이 된다.
- (3) 이자기간은 탈세에 관한 조세의 납부일로 종료한다. 연체가산금이 부과되고, 납부가 유예되고 혹은 집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해서는 본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는 징수되지 않는다.
- (4) 동일기간에 대하여 확정된 제233a조에 의한 이자는 계상해야한다.

第236條 [還給額에 대한 訴訟 系屬中の 利子³⁾] (1) 확정된 조세가 확정력있

3) 訴訟系屬中の 利子

(1) 意義

이는 환급액에 대한 소송계속 중의 이자에 관한 규정이다.

(2) 利子請求權의 對象

① 법원의 판결 또는 그 판결에 근거한 환급 및 상환청구에 이자를 붙인다.

② 확정된 조세 : 상환은 확정된 조세로부터 계산한다. 따라서 과다납부로부터 산정된 것이 아니다.

(3) 還給利子請求權의 根據 및 對象

환급이자청구권은 법원판결에 의하거나 변경된 행정행위에 의하여 성립된다. 이자청구권은 환급청구권 및 상환청구권의 성립에 의존하며 판결의 법률효과로 성립한다는 것이 중요 요소이다. 고로 소송계속으로 이미 성립해있다는 설명은

는 재판에 의하여 또는 확정력있는 재판에 기초하여 감액되거나 또는 조세환급이 인정되는 때는 그 환급된 세액 또는 조세상환액은 제3항의 규정의 경우를 제외하고 訴訟係屬日에서 당해 지불일까지 이자를 붙인다. 환급된 세액이 소송계속 개시후 비로소 납부된 때는 이자계산의 기산일은 당해 납부일로 한다.

(2) 다음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다투어진 행정행위가 취소 혹은 변경되거나 또는 신청에 의한 행정행위가 행해짐으로써 소송이 종결한 경우
2. 확정력있는 재판, 또는 불가쟁력있는 행정행위에 의해 소송을 종결시킨 다음의 어느 항목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a) 후속결정에서 확정된 조세의 감액
 - b) 영업세산정기준액의 변경에 의한 영업세의 감액

(3) 재정법원법 제137조 1단의 규정에 의해 당해 관계인에게 권리구제의 비용이 부과된 경우에 한하여 환급된 세액 또는 상환된 세액에는 이자를 붙이지 않는다.

(4) 동일기간에 대하여 확정된 제233a조에 의한 이자는 계상해야한다.

第237條 [執行停止의 경우의 利子] (1) 조세결정, 납세신고 또는 조세환급결정을 취소하고 혹은 변경하는 행정행위 또는 이러한 행정행위에 관한 이의결정에 대한 정규의 재판외의 권리구제, 또는 취소소송이 종국적으로 인용되지 않은 범위에서 채무금액에 대하여 다투어진 행정행위 집행이 정지된 때는 당해 채무금액에는 이자를 붙인다. 전단의 규정은 기초결정(제171조 10항) 또는 기초결정에 관한 권리구제결정에 대한 정규의 재판외 또는 재판상의 권리구제 청구이후의 후속결정에 대한 집행의 정지에 준용한다.

(2) 이자는 당해 행정행위가 다투어지고 있는 재무관청에 재판외의 권리구제가

인정되지 않으며 소송계속이 의미를 갖는 것은 단지 이자청구권의 범위 즉 액수에 대한 것이다.

(4) 利子請求權의 内容

이자청구권의 내용은 이자부과기간, 이자부과액수이다. 이자부과는 소송계속일부터 시작되고 소송계속은 소의 제기로 시작된다. 재판이외의 사전절차의 기간은 제237조와는 달리 이자부과가 행해지지 않는다.

수리된 날부터 또는 재판소에 소송계류일부터 집행의 정지가 종료한 날까지 이를 징수한다. 집행이 재판외의 권리구제의 수리후 최초로 또는 소송계류후 최초로 정지된 때는 이자계산의 기산일은 당해 집행정지효력일로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소득세결정, 법인세결정 또는 확인결정의 집행정지후에, 영업세산정기준액결정 또는 영업세결정의 집행이 정지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4) 이경우 제234조 2항 및 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第238條 [利子額 및 利子計算] (1) 이자는 30일에 대하여 월0.05%의 금액으로 한다. 이자는 이자계산의 기산일로부터 30일단위로 계산한다. 다만 최초 30일은 계산외로 한다.

(2) 이자계산에 대해서는 이자를 붙일 각 세목별 稅額이 100DM미만인 경우 절사한다.

第239條 [利子の 確定] (1) 이자에는 그 조세에 대하여 적용되는 제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확정기간은 역년으로 한다. 확정기간은 다음의 날로서 개시한다.

1. 제233a조의 경우에 있어서는 조세가 확정 취소 또는 변경된 역년의 경과한 날
2. 제234조의 경우에 있어서는 유예가 종료한 역년이 경과한 날.
3. 제235조의 경우에 있어서는 탈세한 조세의 확정이 불가쟁력을 발생한 역년이 경과한 날. 다만 형벌절차가 개시되고, 확정력으로서 종결한 역년이 경과하기까지는 개시하지 않는다.
4. 제236조의 경우에 있어서는 조세가 환부되거나 또는 조세환급이 지불된 1년이 경과한 날
5. 제237조의 경우에 있어서는 재판외의 권리구제 또는 취소소송이 종국적으로 인용되지 않은 역년이 경과한 날.

제233a조의 경우에 있어서는 조세확정 및 그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동안은 확정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

(2) 이자는 최소한 20DM이상의 금액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정된다.

第 2 節 延滯加算金

- 第240條 [延滯加算金]** (1) 조세가 납부기한의 만료까지 납부되지 않은 때는 연체가 시작한 각 월에 대하여 100DM미만을 질사한 미납세액에 대하여 1%에 의한 연체가산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한다. 상환할 조세환급에 대하여 동일한 것으로 한다. 제1단의 규정에 의한 연체는 조세가 확정되거나 또는 신고되기까지는 발생하지 않는다. 조세 또는 조세상환의 확정이 취소되거나 변경된 경우에 당해 처분시까지 발생한 연체가산금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다.
- (2) 연체가산금은 조세부대급부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 (3) 연체가산금은 5일 이내의 연체분에 대하여는 징수하지 않는다(1994. 1. 1일 터 : 제224조 1항 1호에 의한 납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4) 연대채무의 경우에 연체가산금은 연체한 각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발생한다. 다만 그 총액은 1인의 연대채무자의 연체에 관한 경우에 발생한 연체가산금액을 초과한 지급은 요하지 않는다.

第 3 章 擔保의 提供

- 第241條 [擔保提供의 種類]** (1) 조세법률의 규정에 의해 담보를 제공해야하는 자는 다음의 경우이다.
1. 이 법률의 적용범위에서 유통되는 통화의 소관재무관청에의 공탁
 2. 담보제공의무자로부터 독일연방은행 또는 신탁업무가 허가되어 있는 신용기관에 보관하려고 위탁된 제2항에 규정한 유가증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 다만 당해 질권에 타권리가 우선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유가증권의 보관 및 관리에 관계되는 보관자의 청구권에 대한 당해 유가증권의 책임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1937년 2월 4일자 유가증권의 보관 및 취득에 관한 법률<라이히 관보 제1부 171면> (최근개정 1974년 3월 2일자 형법전 시행법 연방관보 제1부 469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혼합재산의 지분에 대한 질권설정은 유가증권에 대한 질권설정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
 3. 이 법률의 적용범위에서 예금업무를 허가받고 있는 신용기관에 저축통장

의 인도에 의한 저축예금에 대한 질권설정. 다만 당해 질권에 타권리가 우선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4. 연방회계, 연방 또는 주의 특별재산의 장부에 등록되어 있는 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 다만 당해 질권에 타권리가 우선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5. 다음에 규정한 물건의 설정

a) 이 법률의 적용범위에 있는 부동산 또는 지상권에 대한 제1순위의 저당권, 토지채무 또는 정기토지채무

b) 이 법률의 적용범위에서 작성된 선박등록부 또는 선박건조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선박, 건조중의 선박 또는 부양식도크에 대한 제1순위의 선박저당권

6. 이 법률의 적용범위에 있는 부동산 혹은 지상권에 대한 제1순위의 유통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 또는 이 법률의 적용범위에 있는 부동산 혹은 지상권에 대한 제1순위의 토지채무 혹은 정기토지채무에 대한 질권설정. 다만 당해 채권, 토지채무 또는 정기토지채무에 타권리가 우선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7. 채무약속, 보증 또는 적절한 조세보증인(제244조)의 어음의무

(2) 제1항 2단에서 말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에 언급한 것을 말한다.

1. 연방 채무증서, 주, 지방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 조합의 특별재산의 채무증서.

2. 연방이 고권을 위양하고 있는 국제조직의 채무증서. 다만 당해 채무증서가 이 법률의 적용범위에서 관청의 거래소거래를 허가받은 경우에 한한다.

3. 독일협동조합금고, 독일 移住은행 및 주연금은행, 부담조정은행, 復興을 위한 신용기관 및 농업연금은행의 채무증서.

4. 담보증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및 이에 준하는 채무증서.

5. 이자의 지급 및 상환이 연방 또는 주에 의해 보증되고 있는 채무증서.

(3) 과세물품의 보세창고에 있는 재고품은 부과된 조세에 대한 충분한 담보로 본다.

第242條 [通貨供託의 效力] 제241조 1항 1호의 규정에 의해 공탁된 통화는 그 통화가 공탁된 재무관청이 속하는 단체의 소유로 이전한다. 반환청구권에

는 이자를 붙이지 않는다. 공탁으로 그 채권이 담보되어 있는 단체는 공탁과 동시에 공탁된 통화의 반환청구권에 대한 질권을 취득한다.

第243條 [有價證券에 대한 質權設定] 제241조 1항 2호에서 규정한 유가증권에 대한 질권설정에 의한 담보제공은 보관자가 처분할 수 있는 것을 보증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이 보증은 다음 것에 대한책임을 포함한다.

1. 공탁자의 반환청구권이 법원의 금지 및 압류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 것
2. 위탁받은 유가증권은 실효유가증권일람부에 도난 또는 분실신고가 없는 것, 그리고 지불금지도 실효선고의 공고도 없는 것, 또는 실효선고가 없었던 것.
3. 그 유가증권이 지참인의 지급 또는 記名式으로 발행되는 경우에는, 白地裏書가 구비되어 있는 것, 또한 구비되지 않아도 지불금지가 없는 것, 배당증서 및 갹신증서가 그 증권에 첨부된 것.

第244條 [適切한 租稅保證人] (1) 채무약속, 보증 및 어음법 제28조 또는 제78조의 규정으로 발생하는 어음상의 의무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담보로서 충분한 것으로 한다.

1. 제공할 담보상당액의 재산을 보유하고, 또한 이 법률의 적용범위에서 보통재판적(일반적인 재판관할을 뜻함)을 가진 자에 의해 제공 또는 인수받은 것.
2. 보증의 경우에는 先訴항변을 포기하는 것.

담보제공자 및 담보수령자는 상호 교환적으로 상대방에게 담보의 제공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상호 경제적 관계를 가져서도 안된다.

(2) 이 법률의 적용범위에서 업무를 허가받은 신용기관, 업무상 타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동시에 이 법률의 적용범위에서 사무소를 가진 보험회사에 대해서 재무관청은 이들을 일반적으로 조세보증인으로서 인정할 수 있다. 당해 허가에 대해서는 최고액을 확정해야한다(보증액). 조세보증인이 재무관청에 대하여 인수한 채무약속, 보증 및 어음약속으로 발생한 의무총액은 보증액을 초과할 수 없다.

第245條 [그외 다른 有價物에 의한 擔保의 提供] 재무관청은 제241조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것을 담보로서 할 것인지의 여부는 그 재량에 따른다. 이 경우 담보가액이 크거나 또는 이상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도 현저한 곤란을 수반하지 않고 동시에 상당기간내에 환가할 수 있는 재물을 선정해야한다.

第246條 [收納價格] 재무관청은 그 재량에 의해 수납담보물의 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그 수납가격은 환가의 경우 예상환가대금보다 환가비용을 공제한 액을 초과할 수 없다. 수납가격은 제241조 1항 2호 및 4호에서 규정한 재물 및 제245조의 규정에 의해 담보로서 수납된 동산에 있어서는 민법전 제234조 3항, 제236조 및 제237조 1단에서 언급한 가격미만이어서는 안된다.

第247條 [擔保의 代替] 제241조에서 제245조까지의 규정에 의해 담보를 제공한 자는 담보 또는 일부를 제241조에서 제244조까지의 규정에 의해 그밖의 상당한 담보로 대체할 수 있다.

第248條 [補充義務] 담보가치가 불충분한 때는 이를 보충하거나 그밖의 담보를 제공해야한다.

第 6 編 執行

第 1 章 通則

第249條 [執行官廳] (1) 재무관청은 금전급부, 기타의 행위, 수인 또는 부작위를 요구하는 행정행위를 행정수단으로 집행할 수 있다. 제1단의 규정은 납세신고(제168조)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한다. 집행관청은 세무서 및 세관본서로 한다. 이 경우 제328조 1항 3단의 규정은 그 적용을 방해받지 않는다.

(2) 집행준비를 위해 재무관청은 집행채무자의 재산관계 및 소득관계를 조사할 수 있다.

第250條 [執行委託] (1) 다른 집행관청의 위탁에 의하여 집행조치를 실행한 범위내에서 집행관청은 그 다른 집행관청을 대신한다. 채권의 집행에 대하여 위탁한 집행관청은 책임을 진다.

(2) 위탁을 받은 집행관청이 관할권이 없거나 또는 위탁받은 행위가 그 집행관청에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한 곤란을 위탁한 집행관청에 통지한다. 위탁의 시행에 이러한 곤란이 존재하고 위탁받은 집행관청이 실행을 거부하면 감독관청이 위탁집행관청을 결정한다.

第251條 [執行 가능한 行政行爲] (1) 행정행위는 그의 집행이 정지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권리구제의 제기에 의하여 집행이 정지(재정법원법 제361조, 제69조)받고 있지 않는 범위에서 집행할 수 있다.

(2) 이 경우 파산법과 화해법의 여러 규정 및 연방헌법재판소법 제79조 2항의 적용을 방해받지 않는다. 재무관청은 파산법 제164조 2항과 제194조 및 화해법 제85조 1항의 경우에 채무자에 대하여 행정수단으로 집행할 권한이 있다.

(3) 재무관청은 파산절차에서 조세채무에서 발생한 청구권을 파산채권으로 주장하여 필요한 경우에 문서상의 행정행위에 의하여 파산채권 및 파산우선권을 확인한다.

第252條 [執行債權者] 집행절차에서 집행관청에 속하는 단체는 집행청구권의

채권자로 본다.

第253條 [執行債務者] 제249조에 의하여 집행절차를 받는 자를 집행채무자로 본다.

第254條 [執行開始要件] (1) 별도규정이 없는 한 집행은 급부이행기가 도래하고 또한 집행채무자에게 급부, 수인 또는 부작위에 대한 청구가 있고(급부명령) 청구가 있는 후 최소한 일주일의 경과한 후에야 개시할 수 있다. 급부명령은 집행되는 행정행위와 함께 할 수 있다. 급부명령은 집행채무자에 대한 행정행위가 그에 대한 고지 없이 유효한 경우에도 필요로 한다. 집행채무자가 자신의 납세신고에 기초한 채무급부를 이행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급부명령을 요하지 않는다.

(2) 지연가산금과 이자가 조세와 함께 징수될 경우에는 그들로 인한 급부명령은 요하지 아니한다. 전단의 규정은 주된 청구권과 함께 징수된 집행비용에 준용한다.

第255條 [公法人에 대한 執行] (1) 연방 또는 주에 대한 집행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밖에 국가감독을 받는 공법인에 대한 집행은 관계감독관청의 동의에 의해서만 허용된다. 감독관청은 집행시기와 집행을 받을 수 있는 재산의 대상을 정한다.

(2) 공법상의 신용기관에 대하여는 전항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第256條 [執行에 대한 異議] 집행하는 행정행위에 대한 이의는 집행절차의외에서 이의가 허용된 권리구제에 따른다.

第257條 [執行의 停止 및 制限] 다음의 경우에는 집행을 중지 또는 제한해야 한다.

1. 제251조 1항의 집행가능의 요건이 소멸한 경우
2. 집행된 행정행위가 취소된 경우
3. 급부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4. 급부가 유예된 경우

- (2) 제1항 2단 및 3호의 경우에는 이미 이루어진 집행조치를 취소한다. 행정행위가 법원의 재판에 의해 취소되는 때는 당해 재판이 불가쟁력을 가지게 되고, 동시에 당해 재판에 기초하여 새로운 행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제1단의 규정을 적용한다. 집행조치의 취소가 명시적으로 명령되지 않는한 당해 집행조치는 존속한다.

第258條 [執行의 一時停止 또는 一時制限] 개별적 경우에 집행이 형명에 맞지 않는 집행관청은 집행을 일시 정지하거나 혹은 일시제한하고 또는 집행조치를 취소할 수 있다.

第 2 章 金錢債權에 대한 執行

第 1 節 通則

第259條 [督促] 집행채무자에 대해서는 통상, 집행개시전에 일주간의 급부기한으로 독촉해야한다. 金錢徵收의 위탁도 독촉으로 간주한다. 집행채무자가 납기한 도래전에 급부를 최고받은 때는 독촉을 요하지 아니한다. 공시에 의해서도 일반적으로 납부의 최고를 할 수 있다.

第260條 [債務原因의 記載] 집행위탁서 또는 압류처분서에는 강제징수되는 금액의 채무원인을 기재한다.

第261條 [中止] 조세채무관계에 의하여 발생하는 청구권에 대해서는 그 징수의 효과가 없는 경우 또는 징수비용이 징수금액에 비하여 클 때는 그 징수를 중지할 수 있다.

第262條 [第3者の 權利] (1) 제3자가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양도를 방해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주장하거나 또는 민사소송법 제772조에서 제774조까지의 규정에 의해 이의가 제기되는 때는, 당해 집행에 대한 이의는 필요

한 경우에는 정규의 법원에의 소송에 의해 행사해야 한다. 자기가 관리하는 재산에 대한 집행을 수인할 의무를 지는 자도 자기에게 속한 목적물에 대하여 집행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때는 제3자로 간주된다. 어떤 권리가 양도를 방해하는가는 민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2) 집행의 정지 또는 집행조치의 취소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769조 및 제77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3) 소송은 오로지 집행이 행해지는 구역의 법원에 제기해야한다. 집행관청이 소속한 단체 및 집행채무자에 대하여 소송이 이루어진 때는 당해 단체 및 집행채무자를 소송당사자로 한다.

第263條 [夫婦에 대한 執行] 부부에 대한 집행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739조, 제740조, 제741조, 제743조 제744a조 및 제745조의 각 규정을 준용한다.

第264條 [用益權者에 대한 執行] 재산의 용익에 供한 목적물에 대한 집행에는 민사소송법 제7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第265條 [相續人에 대한 執行] 상속인에 대한 집행에는 민법전 제1958조, 제1960조 3항, 제1961조 및 민사소송법 제747조, 제748조, 제778조, 제779조, 제781조에서 제784조까지의 각규정을 준용한다.

第266條 [有限責任의 其他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781조에서 제784조까지의 규정은 민법전 제1489조의 규정에 의한 유한책임에, 민사소송법 제781조의 규정은 민법전 제419조, 제1480조, 제1504조 및 제2187조에 의해 발생한 유한책임에 이를 준용한다.

第267條 [權利能力없는 人的 結合에 대한 執行節次] 권리능력없는 인적 결합으로서 납세의무를 지는 권리능력없는 인적 결합의 재산의 집행에는 당해 인적 결합에 대한 집행가능한 행정행위로서 족하다. 전단의 규정은 목적재산 및 그밖에 법인에 유사한 납세의무를 지는 조직에 대하여 준용한다.

第 2 節 連帶債務의 配分

第268條 [原則] 소득에 대한 조세 또는 재산세에 대하여 합산사정되기 때문에 연대채무자가 된 때는 각인은 이들 조세에 대한 집행이 제269조에서 제27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세배분의 경우에 발생하는 금액에 한정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第269條 [申請] (1) 신청은 신청기일에 소득 또는 재산에 의한 과세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는 세무서에 서면으로 하거나 또는 기록부에 기입하여 이를 표명해야한다.

(2) 신청은 급부명령의 고지후에야 할 수 있다. 미납세액을 완납한 후에는 신청은 더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신청서에는 세액의 배분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기재해야한다. 다만 이들 사항이 조세신고서에 의해 명백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270條 [配分의 一般基準] 미납세액은 분리사정의 경우에 소득세법 제26a조의 규정 및 제271조에서 제276조까지의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금액에 비례하여 배분된다. 전단의 경우 합산사정에 조세확정의 기초가 된 사실확인 및 법 적확인이 기준이 된다. 다만 분리사정¹⁾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의하여 다른

1) 分離査定

① 분리사정의 경우에는 종합사정결정과 마찬가지로 사실상의 과세기초와 법적인 판단으로부터 출발해야한다. 과세기초는 그것이 종합사정의 경우에 잘못 이루어진 경우 또는 잘못 관련된 때는(예, 광고비 또는 특별지출이 고려되지 않는 경우) 수정됨이 없이 그대로 수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② 비례산정의 경우에는 미납조세는 분리사정으로부터 각 종합사정의 각각의 세액으로 곱하고 분리사정에서 조세총액으로 도표를 그리면 다음과 같다.

事例)

미납세액	2,000 DM
분리사정된 남편의 세액	2,400 DM
분리사정된 아내의 세액	600 DM
남편의 배분액	$2,000 \times 2,400 / (2,400 + 600) = 1,600 \text{ DM}$
아내의 배분액	$2,000 \times 600 / (2,400 + 600) = 400 \text{ DM}$

결과가 되지 않는 범위로 한다.

第271條 [財産税額에 대한 配分基準] 재산세액은 다음과 같이 배분된다.

1. 개별연대채무자의 재산 및 재산세액의 계산에 대해서는 제2호 및 제3호의 별단의 규정을 제외하고 합산사정의 기초가 된 법문의 평가법 및 재산세법의 규정을 기초로 한다.
2. 합산결정에 있어서 농림업용재산으로서 또는 사업용재산으로서 배우자의 他方에 귀속되어 있는 배우자의 일체의 경제재는 자기의 농림업용재산 또는 자기의 사업용재산으로서 취급한다.
3. 1인의 연대채무자에게 귀속되는 일정한 경제재와 경제적 관련이 없는 채무는 일정한 채무자가 확인되지 않는한 개별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동일부분으로 배분된다.

第272條 [豫納税額에 대한 配分基準] (1) 미납의 예납세액은 예납세액의 분리확정의 경우에 발생하는 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예납세액의 배분의 신청은 동시에 동일 조정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예납세액 및 임시의 정산 납부세액의 배분신청으로 본다. 결정의 실시후에 결과배분을 한다. 조세총액은 예납세액의 배분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을 공제하여 이를 배분한다. 전단의 경우에 각 연대채무자가 배분된 예납세액을 납부한 금액은 각 연대채무자에 이를 산입한다. 배분금액에 대하여 초과납부가 되는 때는 초과납부금액을 환부해야한다.

(2) 결정후에 비로소 예납세액이 배분되는 때는 결정된 조세에 적용되는 배분기준을 적용한다.

第273條 [税額の 追加請求시 配分基準] (1) 조세확정의 변경에 기초하여 세액이 추가청구되는 때는 추가청구에 의해 발생하는 미납세액은 訂正된 분리결정을 정정전의 분리결정과 비교하여 발생한 초과액에 비례하여 이를 배분

③ 배분문제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EStG 26a조에 따른 종합사정된 조세의무자에 대한 분리사정의 경우에 나타난다. 따라서 종합사정에 대하여는 의제된 분리사정이 시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한다.

- (2) 제1항에서 규정한 배분기준은 이미 확정되어 있는 세액이 아직 납부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第274條 [特別配分基準] 미납세액은 완납이 보장되어 있는 때에는 제270조에서 제273조까지의 규정과 달리 연대채무자가 공동으로 제안한 기준에 따라 이를 배분할 수 있다. 공동제안은 서면에 의해 제출하거나 또는 기록부에 기입하여 표명한 것으로 한다. 공동제안에는 일체의 연대채무자가 서명해야 한다.

第275條 [端數計算] 배분된 금액은 DM미만을 절사한다. 산출된 배분액은 그 총계가 배분의 기초가 되는 금액과 일치하도록 하여 10독일페니히에 의해 나누어진 가장 가까운 금액으로 이를 절상하거나 절사한다.

第276條 [未納稅額, 執行의 開始] (1) 집행개시전에 신청이 재무관청에 이루어진 때는 배분신청서수리시에 부담된 세액을 배분한다.

(2) 집행개시후에 신청이 이루어진 때는 집행개시시에 부담되어진 집행되는 세액을 배분한다.

(3) 원천징수세액 및 분리확정예납세액은 신청전에 납부되는 경우에도 이를 배분에 산입한다.

(4) 연체가산금, 이자 및 지연가산금도 미납세액에 속한다.

(5) 집행은 체납고지서의 교부로서 개시된 것으로 본다.

(6) 제1항의 경우에 신청후, 제2항의 경우에 집행의 개시후 1인의 연대채무자에 의해 급부된 지급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배분에 산입된 지급은, 이를 납부한 채무자, 또는 그자를 위하여 지급이 이루어진 채무자에게 산입한다. 전단의 경우에 배분액에 대하여 초과지급이 되는 때는 그 초과지급액을 환급한다.

第277條 [執行] 집행제한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이 이루어지고 불가쟁력을 발생하지 않는 동안은 청구권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집행조치를

할 수 있다.

第278條 [執行의 制限] (1) 배분후에는 개별 채무자에게 할당된 금액에 따라
서만 집행할 수 있다.

(2) 미납세액이 아직 존재하는 결정기간에, 또는 당해 결정기간후에 1인의 조세
채무자와 합산결정된 자가 당해 조세채무자에게 무상으로 재산목적물을 증여
할 때는 제1항의 규정으로 발생한 금액을 초과하여 이 증여의 통상가격까지
수령자에 대하여 세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전단의 규정은 관례상의 일시적인
선급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第279條 [配分決定의 形式 및 內容] (1) 집행제한의 신청에 대해서는 집행개
시후는 결정서(배분결정서)에 의해 관계인에 대하여 통일적으로 결정해야한
다. 다만 집행조치가 없는 때, 또는 이미 있었던 집행조치가 취소되는 때는
결정을 요하지 않는다.

(2) 배분결정서에는 각 연대채무자에게 할당된 세액을 기재해야한다. 배분결정
서에는 허용된 권리구제, 권리구제제기기간 및 권리구제기관청의 교시를 부
기해야한다. 또한 배분결정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한다.

1. 배분된 세액
2. 미납세액계산의 기준일
3. 연대채무자의 기재와 다른 때는 개별연대채무자가 귀속하게 되는 과세기
초액
4. 분리결정(제270조)의 경우에 개별연대채무자에게 할당되는 세액
5. 연대채무자의 배분된 세액에 산입되는 금액

第280條 [配分決定의 變更] (1) 배분결정은 제129조의 경우외에 다음에 규정
된 경우에만 이를 변경할 수 있다.

1. 배분이 부정확한 기재에 기초하고 미납세액이 다른 배분에 의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강제징수할 수 없었던 것이 사후에 알려진 경우
 2. 조세확정의 변경에 의해 미납세액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
- (2) 집행의 종료후에는 배분결정의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第 3 節 動産에 대한 執行

第 1 款 通則

第281條 [押留] (1) 동산에 대한 집행은 압류에 의한다.

(2) 압류는 강제징수될 금액 및 집행비에 충족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여 할 수 없다.

(3) 압류는 압류대상목적물의 환가액이 집행비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행하지 않는다.

第282條 [押留의 效力] (1) 압류에 의하여 당해 집행관청이 소속한 단체는 압류된 목적물에 대한 질권을 취득한다.

(2) 당해질권은 다른 질권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제1항에서 정한 단체에 대하여 민법에서 말하는 질권과 동일한 권리를 부여한다. 이 경우 파산절차에서 당해 질권과 동순위가 아닌 질권 및 우선권에 우선한다.

(3) 앞의 압류에 의해 발생한 질권은 나중의 압류에 의해 발생한 질권에 우선한다.

第283條 [瑕疵擔保請求權의 排除] 압류에 기초하여 목적물이 양도된 경우 그 취득자는 권리의 하자 또는 양도된 물건의 하자에 관하여 하자담보청구권을 가지지 않는다.

第284條 [宣誓에 대신하는 保證] (1) 집행채무자의 동산에 대한 집행에 의하여 완전한 만족에 이르지 못한 경우, 또는 완전한 만족에 이르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집행채무자는 집행관청에 대하여 관청의 요구에 따라 재산명세서를 제출하고 동시에 채권에 대하여 그 원인 및 증거방법을 기재해야한다. 다음 각호의 행위에 대해서도 당해 재산명세서에서 명백히 해야한다.

— 선서를 대신하는 보증을 하기 위하여 정해진 최초의 기일전의 마지막 년도에, 집행채무자가 그 배우자에게 혼인전 또는 혼인중에 집행채무자 또는

그 배우자의 直系尊屬 또는 卑屬, 집행채무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쌍방 및 일방을 같이하는 형제자매, 또는 이들의 어느 1인의 배우자에 대하여 행한 유상의 양도

二 선서를 대신하는 보증을 하기 위하여 정해진 최초 기일전의 마지막년도에, 집행채무자가 행한 무상의 처분, 다만 그 처분이 관례의 일시적인 선불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이 제한이 없다.

三 선서를 대신하는 보증을 하기 위하여 정해진 최초 기일전의 마지막 2년에 집행채무자가 그 배우자를 위하여 행한 무상의 처분. 민사소송법 제811조 1호 2호에 의하여 압류에 속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물건은 재산명세서에 기재할 요하지 않는다. 다만 교환압류(Austauschpfändung)로 고려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집행채무자는 집행채무자에 대하여 요구된 진술을 그 양심에 따라 올바르게 완전하게 행할 것을 선서를 대신하여 증서로 보증해야한다. 집행관청은 선서를 대신하는 보증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
- (3) 본조의 규정 또는 민사소송법 제807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선서를 대신하는 보증을 한 집행채무자는 채무자명세서에서 선서를 대신하는 보증(민사소송법 제915조)을 아직 없애지 못한 경우, 집행채무자가 후에 재산을 취득하고 또는 집행채무자의 종전의 고용관계가 해제되어 있다고 인정된 때에 한하여 당해 선서를 대신한 보증을 한 후 최초 3년에 있어서 다시 선서를 대신하는 보증을 할 의무를 진다. 집행관청은 집행채무자가 최근 3년이내에 선서를 대신하는 보증을 한 것 또는 선서를 대신하는 보증을 할 것을 강제하기 위하여 집행채무자에 대하여 구류가 명해지는데 관한 기재가 채무자명세서에 존속하는가를 직권에 의해 확인하여야한다.
- (4) 선서를 대신하는 보증을 시킨 것에 대해서는 그 구역내에서 집행채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있는 집행관청이 관할권을 가진다. 집행에 종사하는 집행관청에 대하여 전단의 요건이 구비되지 않는 경우는 당해 집행관청은 집행채무자가 선서를 대신하는 보증을 한 준비가 갖춰진 때에 당해 보증을 시킬 수 있다.
- (5) 선서를 대신하는 보증을 하는 기일의 소환장은 집행채무자 본인에게 이를 송달해야한다. 집행채무자가 선서를 대신하는 보증을 할 의무에 대하여 이의

를 제기한 경우는 집행에 종사하는 집행관청이 당해 이의에 대하여 결정한다.

선서를 대신하는 보증은 전단의 결정에 대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후에만 이를 행한다. 다만 집행관청은 이미 이전의 이의가 기각되어 다룰 수 없는 경우는 전단의 불가쟁력이 발생하기 전에 선서에 대신하는 보증을 명할 수 있다.

- (6) 선서를 대신한 보증이 있는 후에 집행관청은 민사소송법 제899조의 규정에 의해 관할권을 가진 지방법원에 대하여 채무자명세서에 기재하기 위하여 집행채무자의 성명, 생년월일, 직업 및 주소 및 선서에 대신하는 보증일자를 통지하고, 또한 재산명세서의 공증등본을 송付해야한다. 전단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915조 2항에서 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 (7) 집행채무자가 충분한 변명을 하지 않고, 선서에 대신하는 보증을 하기 위한 정해진 기일에 제4항 1단에서 규정한 집행관청에 출두하지 않고, 또한 이유 없이 재산명세서의 제출 혹은 선서에 대신하는 보증을 거부한 경우에는, 집행에 종사하는 집행관청은 민사소송법 제89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권을 가지는 지방법원에 대하여 선서에 대신하는 보증을 강제하기 위하여 구류를 명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902조, 제904조에서 제910조까지, 제913조에서 제915조까지의 각 규정은 이를 준용한다.
- (8) 지방법원이 구류를 명할 것을 요구하는 집행관청의 청구를 거부한 경우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즉시항고가 인정된다.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 재항고가 인정된다.

第 2 款 物件에 대한 執行

第285條 [執行官] (1) 집행관청은 동산에 대한 집행을 집행관에 의해 행한다.

(2) 집행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하여 집행관은 집행관청의 위임장에 의하여 집행권을 부여받는다. 이 경우 당해 위임장을 제시해야한다.

第286條 [物件에 대한 執行] (1) 집행채무자가 점유하는 물건은 집행관이 이를 점유함으로써 압류된다.

- (2) 금전, 보석, 귀금속 및 유가증권이외의 물건은 집행채무자에게 점유케하여도 집행을 만족시키는데 위법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채무자에게 점유케할 수 있다. 물건이 인계집행채무자의 점유로 있게 되는 경우에는 압류는 봉인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해 이를 명시한 때에만 효력을 발생한다.
- (3) 집행관은 집행채무자에 대하여 압류를 한 취지를 통지해야한다.
- (4)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은 인도를 거부하지 않는 제3자가 점유한 물건의 압류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한다.

第287條 [執行官의 權限] (1) 집행관은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집행채무자의 주거 및 사업소 및 容器를 搜索할 권한을 가진다.

- (2) 집행관은 폐쇄된 문 및 용기를 열게할 권한을 가진다.
- (3) 저항을 받은 때는 집행관은 威力을 사용하거나 경찰관의 원조를 구할 수 있다.
- (4) 법관의 수색영장에 대하여는 수색이 행해질 지역의 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다.

第288條 [證人의 立會] 집행행위시에 저항을 한 경우 또는 집행행위시에 집행행위자의 주거 혹은 사업소에 집행채무자, 그 가족 혹은 피용자의 누구도 없는 경우는 집행관은 성인 2인 혹은 지방자치단체공무원 혹은 경찰관1인을 증인으로 하여 입회시켜야한다.

第289條 [執行時間] (1) 야간(민사소송법 제188조 1항), 일요일 및 국가가 인정한 일반공휴일에는 집행행위는 집행관청의 허가서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행할 수 있다.

- (2) 당해 허가서는 집행행위시에 이를 제시해야한다.

第290條 [執行官의 催告 및 通知] 집행행위에 속하는 최고 및 기타의 통지는 집행관이 구두로 하고 또한 그 전부에 대하여 기록부에 기입한다. 집행관이 당해 최고 및 기타의 통지를 구두로 할 수 없는 경우는 집행관청이 당해 최고 또는 통지의 상대방에게 기록부의 등본을 송부해야한다.

第291條 [記錄簿] (1) 집행관은 일체의 집행행위에 관하여 기재부를 작성해야 한다.

(2) 기재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기재부에 기입한 장소 및 시간
2. 집행행위의 목적물 및 사실의 간단한 기술
3. 집행행위의 관계인의 성명
4. 제3호의 관계인의 서명 및 기재부를 읽게 하거나 열람하게 하고 동시에 그 승인 후에 서명한 취지의 기술
5. 집행관의 서명

(3) 제2항 4호에서 정한 요건을 만족할 수 없는 때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第292條 [押留의 回避] (1) 집행채무자는 채무금액을 집행관에게 납부하는 경우, 또는 납부기한연장의 승인이 있다는 것, 혹은 채무가 소멸한 것을 증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압류를 회피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은 집행채무자가 압류가 위법인 취지를 표시한 판결을 제시한 경우, 또는 채무금액을 납부한 것을 표시한 우체국 또는 은행의 영수증을 제시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第293條 [제3자의 質權 및 優先權] (1) 물건의 압류에 대하여 그 물건을 점유하고있지 않은 제3자는 질권 또는 우선권에 기초하여 異議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제3자는 그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는가를 묻지않고, 매매이익에서 우선변제를 요구할 수 있다.

(2) 우선변제를 구하는 소송에 대해서는 압류가 이루어진 구역의 통상 법원이 전속관할권을 가진다. 소송이 집행관이 소속한 단체 및 집행채무자에 대하여 제기된 경우는 당해 단체 및 집행채무자는 공동피고가 된다.

第294條 [未分離의 果實] (1) 토지에서 미분리한 과실은 부동산에 대한 집행에 의하여 압류되지 않는한 이를 압류할 수 있다. 미분리의 과실은 통상 성

속시기의 1월전보다 빠른 시기에 이를 압류할 수는 없다.

- (2) 토지에 의해 변제받을 권리를 가진 채권자는 토지에 대한 집행에서 이에 우선하는 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제262조의 규정에 의해 압류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할 수 있다.

第295條 [物件의 押留禁止] 민사소송법 제811조에서 제812조까지 및 제813조 1항에서 3항까지의 각 규정 및 기타의 법률상의 규정에 의해 물건의 압류에 대하여 존재하는 제한 및 금지는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집행법원을 집행관청으로 대체한다.

- 第296條 [換價]** (1) 압류된 물건은 집행관청의 명령서에 기초하여 원칙적으로 집행관에 의해서 이를 공매에 붙인다. 이 경우 제29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금전이 압류된 경우, 압류는 이를 집행채무자에 의한 급부로 간주한다.

第297條 [換價의 停止] 집행관청은 직접 환가하는 것이 형평에 반하는 경우는 납부기한을 지정하여 압류된 물건의 환가를 일시 정지할 수 있다.

第298條 [公賣] (1) 압류된 물건은 압류일에서 1주년을 경과하기까지는 이를 공매에 붙일 수 없다. 다만 집행채무자가 그 이전에 공매에 동의하는 취지를 표명한 경우, 또는 현저한 가치의 저하의 위험 혹은 장기간의 보관에 따르는 부당한 비용을 피하기 위하여 그이전에 공매가 필요하게 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공매일 및 장소는 이를 공고한다. 이 경우 공매에 붙여진 물건에 대하여 일 반적인 표시를 한다. 집행관청의 요구에 기초하여 시군읍 직원 또는 경찰관 1인이 공매에 임회해야 한다.

- (3) 공매의 경우에 민법전 제1239조 1항 1단 및 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第299條 [競落] (1) 최고가경매인에 대한 경락에 앞서 그 가액을 3회 부르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민법 제15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2) 경락물의 인도는 현금지급과 인도만으로 할 수 있다.

- (3) 최고가경매인이 공매조건에 정해진 기일에 또는 당해 기일의 규정이 없는 경우는 공매기일종료전에 매수대금을 지급하고, 물건의 인도를 요구하지 않은 때는 당해 물건은 다시 공매에 부친다. 당해 최고가경매인은 다시 경매신청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당해 최고가경매인은 매매이익이 적계된 경우의 부족액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매매이익이 많게 된 경우의 초과액에 대하여 청구할수는 없다.
- (4) 채권자가 경락한 경우는 채권자는 집행비용공제후의 매매이익을 자기의 만족에 충족하는 범위에서 현금지급의무를 면제받는다. 채권자가 현금지급의무를 면제받은 범위에서 당해금액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간주된다.

第300條 [最低競賣價額] (1) 경락은 물건의 통상 매각가격의 1/2(최저경매가액)이상의 신청에 의해서만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통상의 매매가격 및 최저경매가격은 경매시에 이를 고지하는 것으로 한다.

- (2) 최저경매가액에 달한 신청이 없어서 경락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질권이 존속한다. 집행관청은 언제라도 새로운 공매기일을 정하거나 압류된 물건에 대하여 제305조의 규정에 의해 다른 방법의 환가를 명할 수 있다. 다른 방법에 의한 환가가 명해진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3) 금제품 및 은제품에 대해서는 그 금 또는 은의 가격에 의해 낮은 가액에 의한 경락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 경락을 인정받은 신청이 없는 경우는, 당해 금제품 또는 은제품은 집행관청의 명령에 기초하여 임의로 이를 매각할 수 있다. 매각가액은 그 금 또는 은의 가격 및 통상의 매각가격의 1/2 이상이어야 한다.

第301條 [公賣의 中止] (1) 공매는 매매이익이 집행비용을 포함한 강제징수금에 충당하기에 족한 때는 즉시 이를 중지한다.

- (2) 공매관리에 의한 매매이익의 수령은 집행채무자에 의한 납부로 간주한다. 다만 매매이익이 공탁(제308조 4항)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302條 [有價證券] 압류된 유가증권으로 거래소가격이나 시장가격이 있는

것은 상장가격으로서 임의로 이를 매각한다. 그밖의 유가증권은 일반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이를 공매에 부친다.

第303條 [記名證券] 압류된 유가증권이 기명증권인 경우는 집행관청은 매수인의 명의로 고쳐쓰거나 무기명증권에서 기명증권으로 바뀐 때는 무기명증권으로 변경하게 하고 동시에 필요한 진술을 집행채무자에 대신하여 할 권한을 가진다.

第304條 [未分離果實의 公賣] 압류된 과실로 토지로부터 미분리된 것은 그 성숙후에 비로소 이를 공매에 부칠 수 있다. 집행관은 당해 과실을 분리전에 공매하지 않은 경우는 이를 수확케해야한다.

第305條 [特別換價] 집행채무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특별한 합목적성의 이유에서 집행관청은 압류된 물건에 대해서 전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해진 바와 다른 방법 또는 장소에서 환가할 것, 또는 집행관 이외의 자에 의해 공매에 부쳐질 것을 명할 수 있다.

第306條 [航空機의 豫備部品の 執行] (1) 항공기에 대한 등록질권이 항공기 권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의 규정에 의해 미치는 예비부품의 집행에 대해서는 동법 제10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법원집행관을 집행관으로 대체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외국항공기에 대한 권리가 미치는 예비부품의 집행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항공기 권리에 관한 법률 제106조 1항 2호 및 4항의 규정을 고려한다.

第307條 [參加押留] (1) 이미 압류되어 있는 물건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기록부에 언급한 채권을 위해 압류된 취지의 표시를 기록부에 기재함으로써 족하다. 집행채무자에게 당해 압류에 대하여 통지한다.

(2) 최초의 압류가 타집행관청을 위하여 또는 법원집행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타집행관청 또는 법원집행관에 대하여 기록부의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집행관청의 위임에 기초하여 이미 압류된 물건을 압류한 법원집행관도 동일한 의무를 가진다.

第308條 [重複押留시의 換價] (1) 동일한 물건이 집행관에 의하거나 집행관과 법원집행관에 의해 중복하여 압류된 경우는, 최초의 압류가 경매의 전속관할 권을 가진 것으로 한다.

(2) 채권자의 1인이 공매를 주장한 경우 일체의 관계채무자를 위하여 공매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다.

(3) 매매이익은 압류의 순서에 의하여 또는 관계채권자와의 다른 약정으로 이를 배당한다.

(4) 매매이익이 채권에 충당하기에 충분하지 않거나 자기를 위하여 제2의 압류 또는 그후의 압류가 이루어진 채권자 1인이, 다른 관계채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압류의 순서와 다른 배당을 구하는 경우는 매매이익을 공탁하여 압류가 이루어진 구역의 법원에 대하여 당해 사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당해 신청서에는 절차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배당절차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873조에서 제88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5) 2이상의 채권자를 위하여 동시에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는 매매이익을 채권액의 비율로 배당하도록 대체하고 제2항에서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第 3 款 債權 및 其他 財産權에 대한 執行

第309條 [金錢債權의 押留] (1)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는, 집행관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집행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서면으로 금지하고 동시에 집행채무자에 대하여 당해 채권의 모든 처분, 특히 징수하지 않을 것을 서면으로 명하여야 한다(압류처분).

(2) 압류는 압류처분이 제3자에게 송달된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

당해송달은 집행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하는 것으로 한다.

第310條 [抵當權에 의해 擔保된 債權의 押留] (1) 저당권이 존재하는 채권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압류처분 외에 집행관청에 대한 저당증권의 인도를 필요

로 한다. 당해 인도는 집행관이 저당증권을 압수하는 때에 행해진 것으로 간주한다. 저당증권의 교부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압류는 부동산등기부에 이를 등기해야한다. 이 경우 등기는 압류처분에 기초하여 집행관청의 촉탁에 의해 행해진다.

- (2) 압류처분이 저당증권의 인도 또는 압류의 등기전에 제3채무자에 대하여 송달된 경우는, 압류는 제3자에 대하여 송달시에 효력을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민법 제1159조의 규정에서 언급한 급부를 구하는 청구권이 압류된 경우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민법전 제1187조에서 규정한 보전저당권의 경우 주된 채권의 압류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第311條 [船舶抵當權 또는 航空機 登録質權에 의해 擔保된 債權의 押留]

- (1) 선박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는 선박등록부 또는 造船등록부에 등록할 것을 요한다.
- (2) 항공기에 대한 등록질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는 항공기질권등록부에 등록할 것을 요한다.
-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압류처분에 기초하여 집행관청의 촉탁으로 등록한다. 제310조 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4)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은 등록선박 및 造船권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항공기 권리에 관한 법률 제53의 규정에서 언급한 급부를 구할 청구권의 압류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무기명채무증서, 어음 또는 배서에 의해 양도된 기타 증권에 기초한 채권을 위한 선박저당권의 경우 주된 채권이 압류된 때에도 동일한 것으로 한다.
- (5) 외국항공기에 대한 권리가 있는 채권의 압류에 대해서는 항공기 권리에 관한 법률제106조 1항 3호 및 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第312條 [背書할 수 있는 證券의 債權押留] 어음 및 배서에 의한 양도할 수 있는 기타 증권에 기초한 채권은 집행관이 당해 증권을 점유함으로써 이를 압류한다. 제1단의 규정은 우편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압류에 이를 준용한다.

第313條 [繼續收入의 押留] (1) 봉급채권 또는 이와 유사한 계속수입채권의 압류에 의하여 취득한 질권은 후에 지불기일이 도래하는 금액에도 미친다.

(2) 근무에 기초한 수입의 압류는 집행채무자가 轉任, 兼任 또는 昇給후에 받는 수입에도 미친다. 제1단의 규정은 고용주가 바뀌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314條 [徵收處分] (1) 집행관청은 압류된 채권의 징수를 명한다. 제309조 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징수처분은 압류처분과 동시에 이를 할 수 있다.

(3) 자연인인 집행채무자의 금융기관에 대한 압류된 대변기입잔액에 대하여 징수가 명해진 때는 민사소송법 제835조 3항 2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第315條 [徵收處分の 效力] (1) 징수처분은 민법이 정한 바에 의해 징수권리가 집행채무자의 요식표시와 관계된 경우의 당해 표시에 대신하는 것으로 한다. 저당권, 선박저당권 또는 항공기 등록질권이 있는 채권에 대해서도 징수처분으로 족하다. 제3채무자를 위하여 위법하게 된 징수처분은 그것이 취소되거나 제3채무자가 그것을 알기까지는 집행채무자에 대하여 적법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집행채무자는 당해 채권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당해 채권에 관한 문서를 인도할 의무를 진다. 집행관청은 당해 문서를 집행관에게 압수시키거나 인도를 제328조에서 제335조까지의 규정에 의해 강제할 수 있다.

(3) 당해 문서를 발견 못한 경우는 집행채무자는 집행관청의 요구에 의해 집행채무자가 당해 문서를 소지하지 않는 것, 당해 문서의 소재장소도 알지 못하는 것을 선서를 대신하여 보증해야한다. 집행관청은 사정에 따라 선서를 대신한 보증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284조 4항, 5항, 7항 및 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4) 제3자가 당해 문서를 소지한 경우는 집행관청은 그 인도를 구하는 집행채무자의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

第316條 [第三債務者の 陳述義務] (1) 집행관청의 요구에 의해 제3채무자는 압류처분의 송달에서 기산하여 2주 이내에 집행관청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진술해야한다.

1. 제3채무자가 당해 채권을 근거한 것으로 인정하는가의 여부 및 인정하는 범위, 그 지급의도의 유무 및 그 의도가 있는 범위
2. 당해 채권에 대하여 그 밖의 자로서 청구하는 자의 유무 및 그 청구의 내용
3. 당해 채권이 그 밖의 자를 위하여 이미 압류되어있는가의 유무 및 그 원인이 되는 채권의 내용

제1호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제3채무자의 진술은 이를 채무의 승인으로는 간주하지 않는다.

(2) 제1항의 진술을 구하는 최고는 이를 압류처분서에 기재할 수 있다. 제3채무자는 집행관청에 대하여 그 의무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3채무자에 대하여 당해 진술을 하도록 강제금에 의하여 강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3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3) 민사소송법 제841조에서 제84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第317條 [換價의 다른 方法] 압류된 채권이 조건부 혹은 기한부이거나 징수가 곤란한 경우는 집행관청은 다른 방법으로 환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15조 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단의 경우 집행채무자의 의견을 사전에 듣는 것으로 한다. 다만 이 법률의 적용범위외에서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318條 [物件의 引導 또는 給付의 請求權] (1) 물건의 인도 또는 급부를 구하는 청구권에 대한 집행에 대해서는 제309조에서 제317조까지의 규정외에 이 조문 제2항이하의 규정을 적용한다.

(2) 동산에 관계된 청구권의 압류의 경우는 집행관청은 당해 동산을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한다. 당해 동산은 압류된 물건과 동일하게 이를 환가한다.

(3) 부동산에 관련된 청구권의 압류의 경우는 집행관청은 부동산소재지의 구역법원이 집행관청의 주장에 기초하여 임명한 위탁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인도

할 것을 명한다. 청구권이 소유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집행채무자의 대리인으로서의 당해 위탁자에게 明渡하는 것으로 한다. 집행채무자로의 소유권의 이전시에 집행관청이 소속하는 단체는 당해 채권을 위하여 보전저당권을 취득한다. 위탁자는 보전저당권의 등기에 동의해야한다. 인도된 물건에 대한 집행은 부동산 집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를 행한다.

(4) 제3항의 규정은 청구권이 선박등록부에 등록된 선박, 조선등록부에 등록되어 있거나 등록할 수 있는 조선 또는 부양식도크, 항공기등록부에 등록되어 있거나 당해 등록부의 말소후 아직 항공기질권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항공기와 관계된 것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5) 수탁자에게는 신청에 의해 보수를 지급한다. 보수는 1970년 2월 16일의 강제관리인의 의무집행 및 보상에 관한 명령 (연방 관보 제1부 185면)에 의하여 결정된 보상액을 초과할 수 없다.

第319條 [債權의 押留禁止] 민사소송법 제850조에서 제852조까지의 규정 및 기타 법률상의 규정에 의해, 채권 및 청구권압류에 대한 제한 및 금지는 이를 준용한다.

第320條 [債權의 重複押留] (1) 채권이 2이상의 집행관청에 의하거나 집행관청과 법원에 의해 압류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853조에서 제856조까지의 규정 및 항공기 권리에 관한 법률 제99조 1항 1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2) 민사소송법 제853조 및 제854조의 규정에 의해 관할권을 가진 구역법원이 없는 경우는 압류처분을 제3채무자에게 최초로 송달한 집행관청이 소재하는 구역의 구역법원에 공탁하는 것으로 한다.

第321條 [其他 財産에 대한 執行] (1) 부동산에 대한 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기타 재산권에 대한 집행에 대해서는 前條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제3채무자가 없는 경우 압류는 집행채무자에 대하여 당해 권리에 관한 모든 처분을 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명령이 송달된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

(3) 양도할 수 없는 권리는 별단의 규정이 없는 경우는 그 행사를 그밖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를 압류할 수 있다.

- (4) 집행관청은 행사를 그밖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양도할 수 없는 권리에 대한 집행에 대해서는 특별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이 경우 압류는 용익물을 관리인에게 인도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압류처분의 송달에 의하여 이미 그전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 권리의 양도가 허용되는 경우는 집행관청은 그 양도를 명할 수 있다.
- (6) 물적 담보, 토지채무 또는 정기토지채무에 대한 집행은 저당권이 있는 채권 집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7) 민사소송법 제858조에서 제8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第 4 節 不動産에 대한 執行

- 第322條 [節次]** (1) 부동산에 대한 집행은 토지외에 토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제권리, 선박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선박, 선박등록부에 등록되어 있거나 당해 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는 건조중의 선박, 또는 부양식도크, 항공기등록부에 등록되어 있거나 항공기등록부에서 말소후에도 항공기 질권을 위해 당해 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항공기에 미친다. 당해 집행에는 재판상의 강제집행에 적용되는 제규정, 특히 민사소송법 제864조에서 제871조까지의 규정, 강제경매 및 강제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다만 집행유예 및 집행정지를 이루는 경우에는 동시에 집행조치의 취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의 방법에 의해 등기된 보증저당권은 민사소송법 제868조의 규정에 의해 소유자에게 이전하고, 선박저당권 또는 항공기에 대한 저당권은 민사소송법 제870a 3항 및 항공기권리에 관한 법률 제99조 1항의 규정에 의해 소멸한다.
- (2) 외국선박에 대한 집행은 강제경매 및 강제관리에 관한 법률 제171조의 규정을 외국항공기 집행에 대해서는 항공기 권리에 관한 법률 제106조 1항, 2항 및 강제경매 및 강제관리에 관한 법률 제171h조에서 제171n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 (3) 부동산 집행에 대하여 필요한 채권자의 신청은 집행관청이 행한다. 이 경우에 집행관청은 집행을 위하여 법률상 요건의 존부에 대해서 집행법원 또는 부동산등기소에 확정권은 없다. 보전저당권, 선박저당권, 항공기에 대한 등록질권의 등기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38조 및 선박등록법 제45조의 규정에서

말하는 촉탁으로 한다.

- (4) 강제경매 및 강제관리는 동산에 대한 집행에 의해 당해 금액을 강제징수할 수 없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관청이 이를 주장한다.
- (5) 집행된 청구권은 강제경매 및 강제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1항 3호의 규정에 의해 토지에 대한 권리에 그 순위가 우선하는 범위에서 보전저당권은 당해 우선권이 소멸한다는 정기조건부로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다.

第323條 [權利承繼人에 대한 執行] 제322조의 규정에 의해 보전저당권, 선박저당권 또는 항공기에 대한 등록질권이 등기된 때는 당해 권리에 기초한 강제경매에는 당해 권리의 등기후 소유권이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受忍결정을 필요로 한다. 제1단의 규정은 제322조의 규정에 의해 등기된 보전저당권으로 발생한 강제관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第 5 節 假押留

第324條 [物的 假押留] (1) 제249조에서 제32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조세규정에 관할권이 있는 재무관청은 강제징수 목적이 달성되지 않거나 강제징수가 현저하게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때는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재무관청은 채권의 금액이 확정되지 않거나 채권이 조건부 또는 기한부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가압류명령서에는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하고, 집행된 가압류가 취소되기 위해 필요한 공탁금액을 결정해 두어야한다.

(2) 가압류명령서는 이를 송달한다. 가압류명령서에는 이유가 부기되고 동시에 그 명령을 한 직원이 서명해야한다.

(3) 가압류명령서의 집행은 당해 명령서에 서명날로부터 1월을 경과한 때는 이를 할 수 없다. 집행은 가압류채무자에의 송달전에도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송달이 집행후 1주 이내에 또한 서명후 1월 이내에 행해지지 않은 때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외국에서 송달 및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제169조 1항 3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가압류의 집행에는 민사소송법 제930조에서 제932조까지, 항공기 권리에 관한 법률 제99조 2항 및 제106조 1항, 3항 및 5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가압류법원 및 집행법원」은 「집행관청」과, 「법원집행관」은 「집행관」과 대체한다. 압류에 관한 제규정이 제시하는 범위에서는 이 법률의 상당규정을 적용한다.

第325條 [物的 假押留의 取消] 가압류명령은 후에 당해 명령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사정이 명백한 때는 이를 취소한다.

第326條 [人的 保全假押留] (1) 조세확정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재무관청의 주장으로, 지방법원은 의무자의 재산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인적 보전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관할권은 당해 재무관청이 그 주소를 가지거나 당해 의무자가 거소하는 구역의 법원이 이를 가진다.

(2) 주장서에는 조세확정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 재무관청이 청구권의 종류 및 액수, 가압류원인이 되는 사실을 기재해야한다.

(3) 인적 보전가압류의 명령, 집행 및 취소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921조 1항, 제922조에서 제925조까지, 제927조, 제929조, 제933조, 제934조 1항, 3항 및 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제911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4) 송달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第 6 節 擔保의 換價

第327條 [擔保의 換價] 행정절차에서 집행할 수 있는(제251조) 금전채권이 납부기한에 이행되지 않는 때는 집행관청은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획득한 담보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다. 담보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해 환가한다. 환가는 집행채무자에 대하여 환가의도를 고지하고 동시에 또한 당해 고지시 때부터 1주이상을 경과한 경우에 비로소 이를 할 수 있다.

第 3 章 金錢債權 이외의 給付에 대한 執行

第 1 節 行爲, 受忍 또는 不作爲에 대한 執行

第328條 [強制節次] (1) 행위의 실행을 구하거나 수인 또는 부작위를 구하는 행정행위는 강제절차(강제금, 대집행, 직접강제)에 의해 이를 실시할 수 있다. 담보의 집행은 제336조를 적용한다. 행정행위를 행한 관청을 집행관청으로 한다.

(2) 의무자 및 공증이 침해되는 사실이 가장 적은 강제수단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강제수단은 그 목적에 비하여 상당한 것이어야한다.

第329條 [強制金] 개개의 강제금은 5000DM을 초과할 수 없다.

第330條 [代執行] 제3자가 실행할 수 있는 행위(대체가능한 행위)를 실행할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때는 집행관청은 제3자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실행을 의무자의 비용으로 위탁할 수 있다.

第331條 [直接強制] 강제금 또는 대집행이 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또는 실현불가능한 때는 재무관청은 의무자에 대하여 작위, 수인 또는 부작위를 강제하거나 행위를 스스로 행할 수 있다.

第332條 [強制手段의 警告] (1) 강제수단은 서면으로 경고해야한다. 집행할 행정행위의 실시가 서면에 의한 경고로서는 실현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는 구두에 의한 경고로서 족하다. 의무의 이행을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2) 경고는 행위, 수인 또는 부작위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와 동시에 할 수 있다. 경고는 강제수단을 특정하고 동시에 각 의무마다 이를 행해야한다. 강제금은 일정액으로서 이를 경고하는 것으로 한다.

(3) 동일의무에 대해서는 우선 경고한 강제수단이 그 목적을 달할 수 없는 때 비로소 새로운 경고를 할 수 있다. 수인 또는 부작위를 의무자에게 요구할 때는 강제수단은 각 위반행위때마다 경고할 수 있다.

(4) 행위가 대집행으로 행해지는 때는 비용액을 경고시에 잠정적으로 대략 계산한다.

第333條 [強制手段의 確定] 의무가 경고로 정해진 기간내에 이행되지 않는 때 또는 의무자가 의무에 위반하는 때는 재무관청은 강제수단을 확정한다.

第334條 [代替強制拘留] 2) (1) 자연인에 대한 확정된 강제금이 납부되지 않는 경우 강제금의 경고시에 대체강제구류를 제시하고 있는 때는 지방법원은 재무관청의 주장으로 의무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대체강제구류를 명할 수 있다. 지방법원이 대체강제구류를 명한 때는 주장관청, 의무자 및 구류이유를 기재한 구류영장을 작성해야한다.

(2) 구역법원은 의무적 재량에 따라 결정으로 재판한다. 의무자가 그 주소를 가진 地區, 조소를 가지지않는 때는 그 거소를 가진 지구의 구역법원이 토지관할권을 가진다. 구역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3) 대체강제구류는 1일이상, 2주이하로 한다. 대체강제구류의 집행은 민사소송법 제904조에서 제907조까지, 제909조 및 제910조의 규정에 의한다.

(4) 강제금의 청구권이 시효에 관련된 때는 구류를 집행할 수 없다.

第335條 [強制節次의 終了] 의무가 강제수단의 확정후 이행되는 때는 그 집행을 중지한다.

第 2 節 擔保의 強制

第336條 [擔保의 強制] (1) 담보제공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때는 재무관청은 상당한 담보를 압류할 수 있다.

(2) 담보의 강제는 사전에 서명으로 경고해야한다. 이경우에는 제262조에서 제3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代替的 強制拘留(Ersatzzwangshaft)

강제금 납부의무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정된 강제수단의 일종을 말한다. 조세의무자가 강제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강제금의 징수에 성과가 없는 때에 법원의 의무재량에 따라 결정으로 재판한다. 이는 형벌수단이 아니라 강제수단의 하나이다.

第 4 章 費用

第337條 [執行費用] (1) 집행비용(수수료 및 지출비)은 집행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2) 최고절차에 대해서는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집행채무자는 금전징수우편위탁(제259조 2단)에 의하여 발생한 비용을 부담한다.

第338條 [手數料의 種類] 집행절차에는 압류수수료(제339조), 압수수료(제340조) 및 환가수수료(제341조)를 징수한다.

第339條 [押留手數料] (1) 압류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압류에 대하여 징수한다.

1. 동산, 토지로부터 미분리된 과실, 어음채권 또는 배서에 의하여 인도될 수 있는 기타 증권에 의한 채권 및 우편저금의 압류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채권 및 기타 재산권의 압류
- (2) 수수료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때에 발생한다.
1. 집행관이 위탁받은 집행에 착수한 때
 2. 채권 또는 기타 재산권의 압류처분서의 송달한 때
- (3) 수수료는 집행할 금액의 총계에 따라 산정한다. 압류로 발생한 비용은 이를 계산에 산입하지 않는다. 가압류의 집행에 대해서는 압류수수료는 공탁금총계(제324조 1항 3단)에 따라 산정한다.
- (4) 수수료액은 제1항 1호의 규정의 경우에는 법원집행관의 비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1항에 대한 수수료표에, 제1항 2호의 규정의 경우에는 이 법률에 附表로서 첨부된 표에 의한다.
- (5)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반액을 징수한다.
1. 압류가능한 목적물이 없어서 압류목적 달성이 못한 경우
 2. 이 법률의 제281조 3항, 민사소송법 제812조 및 제851조b조 1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압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6) 압류가 회피된 경우에는(제292조) 집행관이 현장으로 간 후에 집행관에게

납부한 때는 수수료전액을 징수한다. 전단에서 정한 시간이후 다른 방법으로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수수료의 반액을 징수한다. 압류가 다른 방법에 의해서 회피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 (7) 동청구권을 위하여 제1항 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2이상의 채권 또는 기타 재산권이 압류된 경우에는 수수료는 1회만 이를 징수한다.

第340條 [押收手數料] (1) 압수수료는 제310조, 제315조 2항 2단, 제318조, 제321조, 제331조 및 제336조의 각 규정의 경우에는 문서를 포함한 동산의 압수에 대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단의 규정은 집행채무자가 집행을 위하여 임명한 집행관에게 임의로 급부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 (2) 제339조 2항 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 (3) 압수수료의 액수는 법원집행관의 비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1항 1단의 규정에 의한다.

- (4) 제1항에서 언급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한 때는 당해 압수로 인한 임장에 대하여 반액의 수수료만을 징수한다.

第341條 [換價手數料] (1) 환가수수료는 목적물의 경매 및 기타 환가에 대하여 이를 징수한다.

- (2) 수수료는 집행관 또는 기타 수탁자가 위탁받은 환가에 착수한 때에 발생한다.

- (3) 수수료는 賣收金에 의해 산정한다. 매수금이 집행할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집행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해 산정한다. 수수료액은 제339조 1항 1호의 규정에 의한 압류수수료의 2.5배로 한다.

- (4) 환가가 회피되는 경우에는(제296조 1항 후단) 제33조 6항 1단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이 경우 수수료의 1/4, 최고 60DM이하를 징수한다. 그외에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수수료는 목적물의 환가에 의한 예상매매이익(견적가격)의 금액에 의해 산정한다. 제3항 2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第342條 [2人以上의 債務者] (1) 2인이상의 채무자에 대하여 집행하는 경우에는 집행관이 동시에 2이상의 집행행위를 행한 경우에도 수수료는 각 집행채

무자로부터 이를 징수한다.

- (2)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연대채무로 인하여 동시에 집행하는 경우에는 압류수수료, 압수수수수료 및 환가수수료는 1회만 징수한다. 제1단에서 언급된 자는 연대채무자로서 수수료채무를 진다. 연대채무의 집행이 제268조에서 제278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때까지 발생한 수수료는 그에 따라 경감한다.

第343條 [端數計算] 수수료계산의 결과 페니히금액이 발생한 때는 10페니히 미만끝수를 절사한다.

第344條 [執行經費] (1) 다음에 언급한 것을 집행경비로서 징수한다.

1. 직권에 의해 교부되지 아니하는 사본의 筆耕경비. 필경경비는 작성의 종류에 관계없이 1항에 대하여 1DM로 한다.
 2. 시외통화료, 전신료 및 전보료.
 3. 배달증명우편료 및 착불우편료. 관청이 송달하는 때(행정송달법 제5조), 배달증명우편료상당액을 징수한다.
 4. 공시비용
 5. 문 또는 용기의 개봉 및 집행채무자의 검색을 위한 입회인의 보상료.
 6. 압류물의 수송, 보관 및 감시비용, 압류된 과실의 수확비용, 압류된 동물의 사육비용
 7. 증인, 정보제공자 및 감정인(제107조), 수탁자(제318조 5항)에게 보상료로서 지급하는 금액.
 8. 집행조치에 기초하여 제3자에게 지급된 기타 금액, 특히 대집행 또는 직접강제에 대하여 수탁자 및 보조자에게 지급된 금액, 및 직접강제의 실행 또는 대체강제구류의 적용으로 발생한 기타의 비용.
- (2) 2인이상의 집행채무자에 대하여 압류된 물건이 통일절차로 일괄되고 동시에 환가되는 경우에 그 절차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관계 집행채무자에게 배분한다. 전단의 경우 개별적 특별사정, 특히 목적물의 가격, 용적 및 중량을 고려한다.

第345條 [旅費 및 實費辨償] 집행채무자는 집행절차상 집행관의 여비 및 실비변상에 의해 지급된 집행경비를 부담하지 않는다.

第346條 [事案의 잘못된 取扱, 確定期間] (1) 사안을 정당하게 취급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은 징수하지 않는다.

(2) 비용산정 및 비용산정의 취소 및 변경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그 기간은 비용이 발생한 1년의 경과와 동시에 시작한다. 취소 또는 변경의 신청이 기간의 경과전에 이루어지는 때는 기간경과후에도 취소 또는 변경을 할 수 없다.

第 7 編 裁判의의 權利救濟節次

第 1 章 權利救濟의 許容

第347條 [權利救濟의 許容] (1) 이편에서의 권리구제는 다음 각호에 언급한 사항에 대하여 인정된다.

1. 이 법률이 적용되는 조세사건

2. 제1호에서 언급한 조세사건 이외의 사정에 의한 행정행위의 집행절차.

다만 당해 행정행위가 연방재무관청 또는 주재무관청에 의해 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집행되는 경우에 한한다.

3. 세무사법 제1편, 제2편 제2장 및 제6장, 제3편 1장에 정해진 사항에 관한 공법상 및 직업법상의 분쟁¹⁾.

4. 재무관청이 관리하는 그밖의 사항. 다만 재판외의 권리구제에 관한 규정 이 법률에 의해 적용된다는 취지가 정해져있거나 정해진 경우에 한한다.

1) 職業으로서의 紛爭

조세기본법상의 권리구제를 공법상 및 직업법상의 분쟁으로 제한하였는 바 세무대리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세무사법 제1편에 의하여 규율된 사안, 특히 영업적인 세무보조서비스를 위한 권한(세무사법 제2조-제4조) 및 금지(세무사법 제5조-제7조), 광고금지와 보수담합금지(제8조-제9조) 및 근로소득세협조단체의 인정과 감독(제13-제31조)에 관한 직업법적 분쟁

② 세무사회사의 인정 및 임명의 취소와 철회를 포함한 세무사의 시험 및 임명에 대한 허용에 관한 직업법적 분쟁(세무사법 제2편 제2장 제35조-제56조)

③ 제2편 제6장에는 세무사대리직업 및 세무대리직업(제154-제157조) 특히 경과기의 조세대리자로서의 예비시험 및 임명과(제156조) 세무사의 조세대리권자의 임명(제157조)의 의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④ 제159조에서는 (제3편 제1장) 강제금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의미는 제한적이다. 이의신청은 고려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러한 유형의 행정행위가 제348조에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주최고재무관청의 행정행위와 세무사법사안에 있어서의 상급재무감독청의 허가위원회 및 시험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訴願(제349조)이 인정되지 않는다. 소원은 원칙적으로 오로지 조세대리와 근로소득세 원조단체에 대한 상급재무감독청의 행정행위에 대해서만 허용된다. 다른 사안에서 특히 세무사는 재정법원법 제30조 1항 3호, 제40조, 제44조 1항에 의하여 재정법원에 직접 제소된다.

(2) 조세사건이란 조세환급을 포함한 조세의 관리 또는 재무관청에 의한 조세규정의 적용에 관련된 일체의 사건을 말하고, 국경을 통과한 물품수송 금지 및 제한의 감시를 위해 연방재무자관청 및 베를린주재무관청이 행하는 조치를 포함한다. 재정전매의 행정사건도 조세사건으로 한다. 제1항의 규정은 형벌 절차 및 과료절차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第348條 [異議申請] (1) 다음 각호에 언급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그것이 예납의 목적으로 행해지는 경우도 포함하여 권리구제로서 이의신청이 인정된다.

1. 조세결정 및 조세환급결정(제155조) 및 납세신고(제168조)
2. 확인결정 (제179조), 조세산정기준액결정(제184조), 분할결정(제188조) 및 배분결정(제190조), 및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형평조치를 제외하고 조세의 확정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 그밖의 모든 행정행위
3. 그 付與(Gewährung)²⁾ 또는 존속에 대하여 청구권이 인정되는 조세우대에 관한 행정행위
4. 책임결정 및 수인결정(제191조)
5. 관세정률구속정보
6. 제204조의 규정에 의한 구속확인
7. 브랜디전매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여 분담액을 확정하는 행정행위(분담액 결정)
8. 분배결정(제279조)
9. 제218조 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행위
10. 이자 및 비용에 관한 행정행위
11. 제251조 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행위

2) 賦與, 存在(또는 存續)(Gewährung, Belassung)

부여 또는 존재에 대하여 청구권이 인정된 조세우대는 특히 신청에 구속된 재무관청의 결정에서 주로 성립한 것이고 법률자체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 조세우대가 다른 행정행위 예컨대, 조세결정에 따라 부여된 때에는 그에 대한 취소도 이 행정행위의 변경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 항에서 뜻하는 조세우대는 직접 조세금액에 효력을 미치는 우대뿐만 아니라 징수의 종류와 방법에 관계된 조세완화도 포함된다. Gewährung, Belassung은 조세우대의 보장 및 존치라는 '단어'이고 이 단어의 법률상 큰 의미는 없다.

- (2) 제1항의 규정의 경우에 있어서 이의신청은 행정행위가 취소되거나 변경되고 또는 행정행위를 하고 그 취소, 변경의 신청이 거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第349條 [訴願³⁾] (1) 제348조의 규정에 언급한 행정행위 이외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권리구제로서 소원이 인정된다. 재판외의 권리구제에 대한 결정은 제1단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2) 소원은 전항외에 행정행위를 할 것을 구하는 자의 청구에 대하여 충분한 이유를 통지하는 일없이 상당기간내에 청구의 내용에 대하여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재판외의 권리구제에 대한 결정은 제1단의 규정에서 말하는 행정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 (3) 소원은 다음 각호에 규정한 바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1. 연방 및 주최고재무관청의 행정행위 및 연방브렌디엔매행정청의 행정행위
2. 세무사법 사건에서 재무국의 허가위원회 및 시사위원회의 결정

第350條 [不利益⁴⁾] 행정행위 또는 행정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에 한하여 권리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3) 訴願(Beschwerde)

행정행위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불복한 자로부터 취소, 변경의 청구를 받아 이를 행정기관이 재심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일종의 항고쟁송이다. 이때에 당해 문제된 행정행위를 발한 처분청에 청구하는 경우가 이의신청이고, 상급감독청에 청구하는 경우는 소원이라고 한다. 종래에 우리나라는 異議申請은 각 단행법에서 訴願은 '訴願法'에서 규정했으나, 이 소원법이 행정심판법으로 대체되었다.

4) 不利益(Beschwer)

제350조가 재정법원법 제40조 2항과 다른 점은 제40조 2항에서는 권리침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한하여 訴訟을 제기할 수 있는데 반하여 本 제350조에서는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재판절차 이외의 권리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재판절차 이외의 권리구제절차는 재정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동일한 범위에서의 사전절차로 허용된 것이다. 따라서 Beschwerde는 언제나 관계인은 행정행위 또는 부작위를 통하여 그의 권리를 침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예컨대, 조세결정에 있어서 조세의무자에게 과도한 조세확정이 이루어진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第351條 [他行政行為의 拘束力] (1) 부가쟁력있는 행정행위를 변경하는 행정행위는 당해 변경이 미치는 범위에서만 이를 다룰 수 있다. 다만 행정행위의 취소 및 변경에 관한 규정에 별단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기초결정(제171조 10항)에 있어서 결정은 당해 기초결정의 취소를 구함으로써만 이를 다룰 수 있고, 그 후속결정의 취소를 구함으로써는 이를 다룰 수 없다.

第352條 [統一確認決定에 대한 權利救濟權] (1) 영업소득, 영업의 통일가격 또는 영업의 분리경제단위에 관한 통일확인결정에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의 주장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자가 이를 할 수 있다.

1. 확인된 금액과 관계있는 자의 범위 및 당해 금액이 개개 관계있는 자에게 배분되는 방법에 관한 경우에 영향을 주는 각 사원 또는 각 공동사업자
 2. 사원 또는 공동사업자가 개인적으로 관련된 문제의 범위에 관한 경우는 당해 기간에 관한 확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당해 사원 또는 당해 공동사업자
 3. 기타의 경우는 업무집행사원 또는 업무집행공동사업자
- (2) 제1항의 규정의 경우이외의 경우에 공동사업자에 대하여 통일확인결정이 이루어진 때는 각각의 공동권리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第353條 [權利承繼人의 權利救濟權] 통일가격에 관한 확인결정, 부동산세산정기준액결정, 또는 부동산세산정기준액에 관한 분할결정 또는 배분결정이 권리승계인에 대하여 고지되지 않고, 권리승계인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는 경우(제182조 2항, 제184조 1항 4단, 제185조 및 제190조)는 권리승계인은 피승계인에 의하여 기준이 되는 권리구제기간내에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第354條 [權利救濟의 拋棄] (1) 권리구제의 신청은 행정행위가 행해진 후에 이를 포기할 수 있다. 당해 포기는 납세신고서의 제출이 있는 경우에도 조세가 납세신고서와 다르지 않게 확정된 경우에 이를 표명할 수 있다. 포기로서 권리구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 (2) 포기는 관할권있는 재무관청에 대하여 서면 또는 기록부에 기입하여 이를 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포기에 기타의 표명을 붙이지 않는다. 후에 포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는 제110조 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第 2 章 一般節次規定

第355條 [權利救濟期間] (1) 행정행위에 대한 권리구제는 행정행위의 고지후 1월 이내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납세신청에 대한 권리구제는 재무관청에 납세신고서를 제출후 1월 이내에, 제168조 2단의 규정의 경우는 동의의 통지후 1월 이내에 이를 신청해야 한다.

- (2) 제349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소원에는 신청기간의 제한이 없다.

第356條 [權利救濟의 敎示] 5) (1) 행정행위를 서면으로 행하는 경우는 권리구제의 신청기간은 관계인이 권리구제, 권리구제의 신청처인 재무관청, 그 소재지 및 신청기간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를 받은 경우에만 개시한다.

- (2) 통지가 없거나 또는 부정확하게 이루어진 경우 권리구제의 신청은 행정행위의 고지후 1년 이내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1년의 기간 경과전의 신청이 불가항력에 의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권리구제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면통지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0조 2항의 규정은 불가항력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第357條 [權利救濟의 申請] (1) 권리구제는 서면으로 신청하거나 기록부에 기입하여 표명하여야 한다. 권리구제를 신청한 자가 서면에서 명백히 한 것으로 충분하다. 전보에 의한 신청은 적법하다. 권리구제의 부정확한 표시의 경우에도 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한다.

- (2) 이의신청 또는 소원은 그 행정행위가 다투어진 재무관청 또는 행정행위를 신청한 재무관청에 대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원은 재결권한있는 재무

5) 敎示(Rechtsbehelfsbelehrung)

이는 권리구제기간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을 고지자체로부터 분명히 함으로써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권리를 보호키 위한 것이다.

관청에 대해서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과세기초의 확인 및 조세산정기준액의 확정에 대한 권리구제는 조세결정을 행하는 관할재무관청에 대하여 이를 제출함으로써 족하다. 제2단 및 제3단의 규정의 경우에는 권리구제의 신청은 관할재무관청에 이를 이송한다. 타관청에의 서면에 의한 제출은 당해 권리구제의 신청이 제1단 내지 제3단의 규정에 의해 제출할 수 있는 관청에 대하여 권리구제기간의 경과전에 이송된 경우는 적법한 신청이 된다.

- (3) 권리구제의 신청은 권리구제의 대상인 행정행위를 표시해야한다. 행정행위를 다루는 범위 및 그 취소를 구하는 범위를 표시해야한다. 더욱이 신청을 이유있게 하는 사실 및 증거방법을 摘示해야한다.

第358條 [適法要件의 審査] 권리구제에 대하여 결정하는 관할재무관청은 권리구제신청의 적법여부, 특히 법정형식 및 결정기간내에 이루어지는가의 여부를 심사해야한다. 이들 요건의 하나를 결여한 경우는 권리구제의 신청은 부적법한 것으로서 이를 각하한다.

第359條 [關係人] 다음 각호의 자는 절차의 관계인으로 한다.

1. 권리구제를 신청한 자
2. 당해 절차에 참가하고 있는 자

第360條 [節次에의 參加] (1) 권리구제에 대하여 결정하는 관할재무관청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조세법률상의 법적 이익이 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제3자, 특히 조세법률상 조세의무자와 동시에 책임을 지는 자를 참가시킬 수 있다. 참가에 앞서 권리구제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2) 타조세권리자를 위하여 조세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당해 타조세권리자는 조세권리자로서의 이익이 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이유로 이를 참가시킬 수 없다.
- (3) 결정을 제3자에 대해서도 통일적으로만 할 수 있음으로 해서 제3자가 계쟁 법률관계를 가지는 경우는 당해 제3자를 참가시켜야 한다. 제352조의 규정에 의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 공동권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절차에 참가시킨 자는 권리구제를 신청한 자와 동일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

다.

第361條 [執行의 停止] (1) 권리구제의 신청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행정행위의 집행은 제4장의 규정의 경우를 제외하고 방해받지 않고, 특히 조세의 징수는 정지되지 않는다. 기초결정이 다루어지는 경우 그것에 기초한 후속결정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2) 다루어지는 행정행위를 행한 재무관청은 그 집행을 전부 또는 일부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67조 1항 2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름이 있는 행정행위의 적법성에 대하여 명백한 의심이 있는 경우, 또는 그 집행이 관계자에 대하여 우월한 공익에 의하여 요구되지 않는 불공평, 가혹함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신청에 의해 집행의 정지를 하여야 한다. 집행의 정지는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3) 기초결정의 집행이 정지되는 경우에는 후속결정의 집행도 이를 정지한다. 후속결정을 하는 것은 이를 방해받지 않는다. 담보의 제공에 대해서는 후속결정의 정지와 동시에 이를 결정한다. 다만 기초결정의 집행정지의 경우에 담보의 제공이 명문으로서 배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영업 또는 직업의 수행의 금지에 대한 재판외의 권리구제의 자장에 의하여 다름이 있는 행정행위의 집행이 정지된다. 행정행위를 한 재무관청은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는 당해 정지효력을 특별한 명령으로 전부 또는 일부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재무관청은 서면에 의해 공익의 존재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367조 1항 2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第362條 [權利救濟의 取下] (1) 권리구제는 권리구제에 대한 결정의 통지가 있기까지 이를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57조 1항 및 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취하에 의해 신청한 권리구제는 소멸한다. 후에 취하의 무효가 신청되는 경우는 제110조 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第363條 [節次의 停止] (1) 결정을 한 관할재무관청은 권리구제에 대한 결정이 전부 또는 일부, 계속중인 소송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 또는 법원이나

행정관청에 의해 확인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련되는 경우는 당해 타소송의 종결 또는 법원이나 행정관청의 당해 결정이 있기까지 결정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2) 결정을 하는 관할재무관청은 중대한 이유에 의하여 절차를 정지하는 것이 합목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권리구제를 신청한 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第364條 [課稅基礎의 通知] 과세기초에 대하여 통지가 없는 경우는 신청에 의하여 또는 권리구제의 신청이유서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는 직권에 의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第365條 [節次規定의 準用] (1) 재판외의 권리구제의 절차에 대하여 그밖의 다툼이 있는 행정행위 또는 요구된 행정행위를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 (2) 제93조 5항, 제96조 7항 2단 및 제98조에서 제100조까지의 규정의 경우에는 관계인 및 그 대리인 및 보좌인(제80조)에 대하여 증거조사에 참가할 기회를 부여한다.

第366條 [權利救濟決定書의 形式과 內容] 권리구제에 대한 결정은 서면을 작성하고 이유를 기재하고, 권리구제에 관한 교시를 붙이고 관계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이 경우 제122조를 준용한다.

第 3 章 特別節次規定

第367條 [異議申請에 대한 決定] (1) 이의신청은 당해 행정행위를 한 재무관청이 이의결정으로 결정한다. 당해 조세사건에 대하여 후에 타재무관청이 관할을 가지게 된 경우는 당해 타재무관청이 결정한다. 이 경우 제26조 2단의 규정의 적용을 방해받지 않는다.

- (2)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한 재무관청은 그 사건의 모든 범위에 대하여 다시 심리해야 한다. 이의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이유를 들어 당해 행정행위보다도

불리한 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표시하고 또한 그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한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행정행위는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있다⁶⁾. 재무관청이 이의신청을 처리하지 않는 범위에 서만 이의결정이 요구된다.

- (3) 어떤 관청이 법률의 규정에 기초하여 관할재무관청을 위하여 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는 당해 관할재무관청이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한다. 관할재무관청을 위하여 행위하는 관청도 이의신청을 처리할 권한을 가진다.

第368條 [訴願에 대한 裁決] (1) 행정행위가 소원에 의해 다투어지거나 소원에 의해 행정행위를 할 것을 요구받고 있는 재무관청은 소원을 처리할 수 있다. 이경우 제367조 1항 2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툼이 있는 행정행위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하여 관할 재무관청을 위하여 한 관청 또는 법률의 규정에 기초하여 관할재무관청을 위하여 행정행위할 것을 요구받은 관청도 소원을 처리할 수 있다.

- (2) 소원에 대하여 처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원을 결정하는 관할 재무관청에 제출한다. 소원은 직속상급관청이 소원재결로 결정한다. 제1항 2단의 규정의 경우에는 관할재무관청의 상급관청이 결정한다.

6) 不利한 決定의 許容 및 制限

제367조 2항 2단은 권리구제를 구한 경우 구제행정청은 당해 행정행위보다 불리한 결정을 할 수도 있다고 규정한 것이다. 불리한 결정은 허용된 권리구제의 경우에만 가능하다. 따라서 권리구제가 허용되지 않는 재심사는 불리한 결정이 있을 수 없다. 권리구제절차 및 행정절차의 목적은 정당한 조세에 있기 때문에 권리구제 행정청은 권리구제를 신청한 것에 구속되지 않고 신청인에 불리하게도 결정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第 8 編 刑事規定 및 科料規定, 刑事節次 및 科料節次

第 1 章 刑事規定

第369條 [租稅犯] (1) 조세범(관세범)이란 다음 각호에 규정한 행위를 말한다.

1. 조세법률에 의하여 형벌이 부과된 행위
 2. 禁制違反¹⁾
 3. 인지위조 및 그 예비. 다만 당해 범죄가 수입인지에 관련된 경우에 한한다.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에서 정한 범죄를 범한 자에 대한 비호
- (2) 조세범은 조세법률의 형사규정에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형법에 관한 일반 법률을 적용한다.

第370條 [脫稅犯] (1)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자는 5년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에 처한다.

1. 재무관청 또는 그밖의 관청에 대하여 과세상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완전한 진술을 하는 것
 2. 재무관청에 대하여 의무에 위반하여 과세상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이를 알리지 않은 것
 3. 의무에 위반하여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 또한 이들 행위를 통하여 조세를 면하거나 자신 또는 타인이 부당한 조세상의 이익을 얻는 것.
- (2) 未遂는 이를 처벌한다.
- (3) 특히 악질적인 경우에는 형벌은 6월이상 10년이하의 禁錮로 한다. 특히 악질적인 경우란 원칙적으로 다음 각호의 경우로 한다.
1. 극심한 이기심에서 현저한 정도로 조세를 면하거나 부당한 조세상의 이익

1) 禁制違反(Bannbruch)

Bann은 명령, 금지(옛날 독일에서 Königsbann - 칙령, 王旨) bruch는 위반을 뜻한다.

을 받은 경우

2. 공무원으로서의 권한 또는 지위를 남용하는 경우
 3. 권한 또는 지위를 남용한 공무원의 원조를 이용하는 경우
 4. 변조 또는 위조된 서류를 사용하여 계속하여 조세를 면하거나 부당한 조세상 이익을 얻은 경우
- (4) 특히 조세가 확정되지 않는 경우, 세액 또는 조세가 법정기일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면세된 것으로 한다. 전항은 조세가 사전에 또는 사후심사의 유보하에 확정되거나 또는 사후심사의 유보하에 납세신고를 조세확정과 동일하게 본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당하게 부여되거나 존속된 범위에서 부당하게 조세상의 이익을 받는 조세환급도 조세상의 이익으로 본다. 범죄와 관련된 조세가 다른 근거에서 감경을 받을 수 있거나 또는 다른 근거에서 조세상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에도 1단과 2단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5) 범행은 수입, 수출, 통과운송을 금지하고 있는 물건에 관해서도 행해질 수 있다.
- (6) 제1항에서 제5항까지의 규정은 유럽공동체의 다른 구성국이 관리하거나 유럽자유무역연합의 회원국 또는 이들과 특별한 관계를 가진 국가에 귀속한 수입세에 관련된 범죄에도 적용한다. 전항은 유럽공동체의 다른 구성국이 관리하는 1992년 2월 25일 이사회의 유럽경제공동체 92/12 방침 (ABI.EG.Nr.L76.1p) 제3항 1호에서 말하는 물건에 대한 매상세 또는 단일소비세와 관계된 범죄에도 적용한다. 전단에서 규정한 범죄는 상호간에 범죄를 보증하고 후단에 따라 법규명령에서 확정된 경우에만 추급된다. 연방재무장관은 상원의 동의로 유럽공동체의 회원국 입장에서 전단에서 말하는 범행을 상호보증으로 추급할 수 있는 법규명령을 입법할 권한이 있다.
- (7) 제1항에서 제5항까지의 규정은 이 법률의 효력범위 이외에서 행하여지는 범행장소의 법과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第371條 [脱税犯의 自認] (1) 제370조의 경우에 재무관청에 대하여 부정 또는 불완전한 신고를 정정, 보완하거나 또는 탈락한 신고를 보충한 자는 그 범위에서 처벌받지 않는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1. 정정, 보완 또는 사후신고전에 다음의 사실이 있었던 경우
 - a) 조세상의 검사, 조세법 또는 조세질서위반의 조사를 위하여 재무관청의 공무원이 현장에 임했던 경우
 - b) 범인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당해 범행에 관한 형사절차 또는 과료절차개시에 대한 통지가 있었던 경우
2. 정정, 보완 또는 사후진술시에 당해 범행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미 발각되고 동시에 범인이 그것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당해 사태의 사려있는 판단에 의하면 그것을 예기하고 있었음이 명확한 경우
- (3) 조세상의 면탈이 이미 생긴 경우 또는 조세상의 이익을 이미 얻고 있는 경우에 당해 범죄에 관여하였던 자는 자기를 위하여 탈세했던 조세를 그에게 정해진 상당한 기간내에 납부한 범위에서 처벌을 면한다.
- (4) 제153조에서 규정한 신고가 법정기한에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53조에서 말하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부정 혹은 불완전한 신고서를 제출했던 제3자는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다만 당해 제3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범죄에 관하여 형사절차 또는 과료절차의 개시가 이미 통지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당해 제3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한 때에는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第372條〔禁制違反〕 (1) 금지된 목적물을 수입, 수출 또는 통과운송한 자는 금제위반을 범한 것으로 한다.

- (2) 범행을 범한 자는 제370조 1항 및 2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된다. 다만 당해 범죄가 다른 규정에서 수입금지, 수출금지, 통과금지에 대한 위반으로 형벌 또는 과료에 과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373條〔職業的, 暴力的 및 集團的 密輸〕 (1) 직업적으로 수입세를 포탈하거나 전매규정의 위반행위에 의해 직업적으로 명령위반을 범한 자는 3월이상 5년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 (2) 다음 각호에 규정한 자도 전항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1. 자기 또는 타인의 관계인으로 火器를 휴대하고 수입세의 포탈 또는 금제위반을 범한 자

2. 타인의 저항을 폭력 또는 폭력의 위협에 의해 방해하거나 제압하기 위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관계인으로 무기나 기타 도구 또는 기구를 휴대하고 수입세의 포탈 또는 명령위반을 범한 자
3. 수입세의 포탈 또는 명령위반을 연속하여 행하기 위하여 결성한 단체의 일원으로서 다른 일원의 협력을 얻어 당해 범죄를 범한 자

第374條 [租稅贓物犯] (1) 소비세나 관세에 대하여 탈세가 있거나 제372조 2항 및 제373조에서 정한 금제위반이 있었던 생산물 또는 물품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득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를 매입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케하거나 매각 또는 매각을 보조하는 자는 제370조 1항 및 2항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처벌한다. 다만 그자가 직업적으로 이를 행하는 경우는 제373조가 정하는 바에 의해 이를 처벌한다.

- (2) 제1항의 규정은 유럽공동체의 타구성국에 의해 처리되거나 유럽자유무역연합의 구성국 또는 동연합과 특별한 관계를 가진 국가에 귀속하는 수입세의 포탈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이경우 제370조 7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第375條 [竝科效果] (1) 다음 각호의 범죄를 이유로 하여 1년 이상의 자유형을 과하는 외에, 법원은 공직에 대한 자격 및 공직선거에 관한 권리를 받을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형법전 제45조 2항).

1. 탈세범
 2. 제372조 2항 및 제373조에서 정한 금제위반
 3. 조세장물범
 4. 제1호에서 전호까지의 범죄를 범한 자에 대한 비호
- (2) 탈세범, 제372조 2항 및 제373조에서 정한 금제위반 또는 조세장물범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언급한 것을 몰수할 수 있다.
1. 소비세 또는 관세의 포탈, 금제위반 또는 조세형물범과 관련된 생산물, 물품 및 기타물건
 2. 당해 범죄에 이용한 운반용기구. 이경우 형법 제74a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第376條 [訴追時效의 中斷] 조세법의 소추시효는 피의자에 대하여 과료절차의 개시가 통지되거나 또는 당해 통지가 명해진 것에 의해서도 중단한다.

第 2 章 科料規定

第377條 [租稅秩序違反] (1) 조세질서위반(관세질서위반)이란 조세법률에 의하여 과료를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를 말한다.

(2) 조세질서위반에 대해서는 조세법률의 과료규정에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질서위반에 관한 법률의 제1편의 규정을 적용한다.

第378條 [重過失에 의한 租稅免稅犯] (1) 납세의무자로서 또는 납세의무자의 사무를 행함에 있어 제370조 1항에 규정한 행위 중 하나를 중과실에 의해 범한 자는 질서위반을 범한 것으로 한다. 이경우 제370조 4항에서 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전항의 질서위반에 대해서는 100,000DM이하의 과료를 부과할 수 있다.

(3) 당해 행위를 범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당해 행위에 관하여 형벌 절차 또는 과료절차의 개시의 통지가 있기까지 당해 행위를 범한 자가 재무관청에 대한 부정 또는 불완전한 진술을 정정, 보완하거나 없었던 진술을 후에 행한 경우는 과료를 확정하지 않는다. 이경우 제371조 3항 및 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第379條 [租稅危害行爲] (1)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다음 각호의 조세를 면하거나 부당한 조세상의 이익획득을 가능케한 자는 질서위반을 범한 것으로 한다.

1. 사실에 관하여 부정한 증표를 작성하는 행위.
2. 법률상 기장 또는 기록작성의무가 있는 거래상의 사실 또는 사업상의 사실에 대하여 이를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에 관하여 부정한 기록을 하거나 이를 시킨 행위.

제1단 1호의 규정은 유럽공동체의 타구성국에 의해 관리되거나 유럽공동체

로부터 물품에 대하여 연합협정 또는 특혜협정에 기초하여 우대취급을 받는 국가에 귀속하는 수입세에 대하여 이를 면하게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370조 7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규정은 유럽공동체의 다른 구성국에 의하여 관리되는 대상세에 관계되는 범죄에 적용한다.

(2)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질서위반을 범한 것으로 한다.

1. 제138조 2항에서 정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해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법정기간까지 이행하지 않은 자
2. 제154조 1항에서 정한 계정진실성의무에 위반한 자

(3)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특별한 조세감독(제209조에서 제217조까지)의 목적을 위하여 행정행위와 관련하여 부과된 제120조 2항 4호에서 정한 부담에 위반한 자는 질서위반을 범한 것으로 한다.

(4) 전3항의 질서위반은 10,000DM이하의 과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당해 행위에 대하여 제378조의 규정에 의해 과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第380條 [源泉徴収租税危害行爲] (1)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여 이를 납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해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않거나 법정기간까지 이행하지 않은 자는 질서위반을 범한 것으로 한다.

(2) 전항의 질서위반은 10,000DM이하의 과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당해 행위에 대하여 제378조의 규정에 의해 과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第381條 [消費税危害行爲] (1) 다음 각호에 규정한 사항에 관한 소비세법률 또는 이에 관련된 법규명령의 규정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위반한 자는 질서위반을 범한 것으로 한다. 다만 소비세법률 또는 이에 관련된 법규명령이 일정한 구성요건에 대하여 본조의 과료규정의 적용을 정한 경우에 한한다.

1. 과세의 준비, 확보 또는 사후검사를 위하여 부과된 의무

2. 소비세의 과세생산물 또는 당해 생산물을 포함한 과세물품의 포장 및 표시, 당해 생산물 또는 물품에 대한 운송제한 또는 사용제한
 3. 자유항에 있어서 비과세물품의 소비
- (2) 전항의 질서위반에 대해서는 10,000DM이하의 과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당해 행정에 대하여 제378조의 규정에 의해 과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이 제한이 없다.

第382條 [輸入稅危害行爲] (1) 의무자로서 또는 의무자의 사무를 행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규정한 사항에 적용되는 관세법, 이에 관련된 법규명령 또는 유럽공동체의 이사회 또는 위원회의 명령의 규정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는 자는 질서위반을 범한 것으로 한다. 다만 관세법, 이에 관련된 법규명령 또는 본조 제4항에 기초한 법규명령이 일정한 구성요건에 대하여 본조의 과료규정의 적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 국경을 통과하는 물품운송의 확인 또는 관세법 제9조, 제40a조 및 제41조에서 규정한 종류의 관세취급
 2. 관세자유지역, 관세국경지구 또는 국경감시대상지역
- (2) 제1항의 규정은 관세법 및 이에 관련된 법규명령이 소비세에 준용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 (3) 제2항의 질서위반에 대해서는 10,000DM이하의 과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당해 행위에 대하여 제378조의 규정에 의해 과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연방재무장관은 법규명령의 정하는 바에 의해 유럽공동체의 이사회 또는 위원회의 명령의 구성요건으로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해 질서위반으로서 과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이것이 당해 법규의 집행에 필요하거나 당해 구성요건 물품의 지참 또는 제시의무, 신고서 또는 신고서의 제출의무, 기록작성의무, 및 관세서류의 기입 또는 제출의무, 당해 서류에의 통지의무에 관한 경우에 한한다.

第383條 [租稅還給請求權 및 償還請求權의 不法取得] (1) 제46조 4항 1단의 규정에 반하여 환급청구권 또는 상환청구권을 취득하는 자는 질서위반을 범

한 것으로 한다.

(2) 전항의 질서위반에 대해서는 100,000DM이하의 과료를 부과할 수 있다.

第384條 [訴追權의 時效] 제378조에서 제380조까지에 정한 조세질서위반에 대한 소추권의 시효는 5년으로 한다.

第 3 章 刑事節次

第 1 節 通則

第385條 [節次規定의 適用] (1) 조세법에 관한 형사절차는 다음조 이하의 규정에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형벌절차에 관한 일반법, 특히 형사소송법, 법원구성법 및 소년재판법을 적용한다.

(2) 조세법에 적용되는 이 장의 규정은 제386조 2항 및 제399조에서 제401조까지의 규정을 제외하고 재무관청 또는 기타 관청에 대하여 과세상 중요한 사실을 기만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조세형벌법에 위반하는 것이 아닌 범죄의 의혹이 있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第386條 [租稅犯에 대한 財務官廳의 管轄] (1) 조세법의 의혹이 있는 경우는 재무관청은 사실을 조사한다²⁾. 이 장에서 말하는 재무관청은 세관본서, 세무서 및 연방재무관청을 말한다.

(2) 재무관청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399조 1항 및 제400조 및 제401조의 규

2) 租稅犯에 관한 財務官廳의 調査

원칙적으로 재무관청은 조세법에 대한 의혹이 있는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데 이는 제386조 1항에 근거하고 있다. 그리고 2항에서 이 권한을 다른 형벌사건에 확대하고 있다. 재무관청에 조세법조사를 검찰청에 대신하여 허용한 것은 순전히 절차경제상의 이유 때문이다. 예외적으로 조세법조사에 대하여 검찰이 조사권이 있다(제386조 2항, 제386조 3항 4항의 반대해석). 검찰청은 제386조 4항 1단 2단의 경우에 당해 사건을 재무관청에 재이송이 가능하다. 다수의 재무관청들 중에서 어떤 재무관청이 물적 및 장소적으로 관할권이 있는가는 제387조-제390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정의 범위내에서 독립하여 조사절차를 행한다.

1. 당해 행위가 오로지 조세법에 해당하는 경우
2. 당해 행위가 동시에 타 형사법률에 위반되는 또한 당해 위반이 교회세 또는 과세기초, 조세산정기준액 또는 세액을 기초로 하는 기타의 공과에 관련되는 경우
- (3) 제2항의 규정은 당해 행위에 관하여 피의자에 대하여 구류장 또는 수용명령이 발해지는 때부터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 (4) 재무관청은 형사사건을 언제라도 검찰청에 이송할 수 있다. 검찰청은 당해 형사사건을 언제라도 개입할 수 있다. 어느 경우에도 검찰청은 재무관청과의 합의하에 당해 형사사건을 재무관청에 재이송할 수 있다.

第387條 [事物管轄權을 가지는 財務官廳] (1) 당해 조세를 관리하는 재무관청이 사물관할권을 가진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권은 경제사정 또는 교통사정, 행정관청의 구성 또는 기타 지역적 필요를 고려하여 합목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규명령에 의해 2이상의 재무관청의 영역에 대하여 이를 하나의 재무관청에 위임할 수 있다. 당해 법규명령은 재무관청이 주의 관청인 경우에는 주정부가, 기타의 경우에는 연방재무장관이 이를 제정한다. 연방재무장관의 법규명령은 연방상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주정부는 제2단에 정한 권한을 재무행정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 주최고관청에 위임할 수 있다.

第388條 [土地管轄權을 가진 財務官廳] (1) 다음 각호에 규정한 재무관청이 토지관할권을 가진다.

1. 조세법이 범하여지거나 발각된 地區의 재무관청
2. 형사절차개시전에 당해 조세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 재무관청
3. 형사절차개시전에 피의자가 주소를 가진 지구의 재무관청
- (2) 형사절차개시후에 피의자의 주소에 변경이 있는 경우는 새로운 주소가 있는 지구의 재무관청도 토지관할권을 가진다. 당해 조세사건에 대하여 재무관청의 관할권에 변경이 있는 경우도 동일하다.
- (3) 피의자가 이 법률의 적용범위에 주소를 가지지않는 경우 관할권은 거소지에

의해서도 결정한다.

第389條 [關聯刑事事件] 각각이 제388조의 규정과 다른 재무관청의 관할권에 속하게 되는 관련형벌사건은 당해 재무관청의 어느 관청도 관할권을 가진다. 이경우 형사소송법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第390條 [管轄權의 重複] (1) 제387조에서 제389조까지의 규정에 의해 2이상의 재무관청이 관할권을 가지는 경우는 당해 범죄에 관하여 최초로 형사절차를 개시한 재무관청의 관할권이 우선하다.
(2) 조사에 의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당해 재무관청의 의뢰로 관할권있는 타재무관청이 당해 형사사건을 인수하는 것으로 한다. 조사에 의하여 적절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당해 의뢰를 받은 재무관청의 상급관청이 결정한다.

第391條 [管轄法院] (1) 지방법원이 사물관할권을 가지는 경우는, 지방법원이 소재하는 지구의 지방법원이 토지관할권을 가진다. 전단은 준비절차에서도 법원구성법 제58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에 관계없이 형사소송법 제153조 1항 및 제153a조 1항에서 정한 법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2) 주정부는 경제사정 또는 교통사정, 행정관청의 구성 또는 기타의 지역적 필요를 고려하여 합목적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규명령으로 관할권에 대하여 제1항 1단의 규정과 다른 규정을 할 수 있다. 주정부는 전단의 권한을 주법무행정청에 위임할 수 있다.
(3) 조세법에 관한 형사사건은 지방법원에 있어서 일정 부에 각각 할당해야한다.
(4)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은 절차가 조세법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이들 규정은 동일한 행위가 마약법에 의한 범죄행위이고 자동차세에 관한 조세법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第392條 [辯護] 3) (1) 재무관청이 형사절차를 독립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형사

3) 辯護

소송법 제138조 1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세무사, 세무대리인, 經濟檢査士 및 공인장부검사사도 변호인으로 선임될 수 있다. 그밖의 경우에는 이들은 변호사 또는 독일대학법학교수와 공동으로만 변호할 수 있다.

(2) 형사소송법 제138조 2항의 규정은 그 적용을 방해받지 않는다.

第393條 [刑事節次의 課稅節次에 대한 關係] 4) (1) 과세절차 및 형벌절차에 있어서 조세의무자 및 재무관청의 권리 및 의무는 각각의 절차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과세절차에 있어서 조세의무자에 대한 강제수단(제328조)에 의해 조세의무자가 행한 조세범 또는 조세질서위반에 관하여 조세의무자가 스스로 불이익을 부담하도록 강제된 경우에는 당해 강제수단은 이를 위법으로 한다. 조세의무자에 대하여 당해 행위에 관하

① 본조는 세무사, 세무대리인, 경제검사인 및 공인장부검사사에 대한 선임 변호의 활동을 확대하고 있는 규정이다. 이들은 재무관청의 조사절차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변호할 수 있고 검찰 또는 법원의 형사절차 법원의 선임에 대한 허가없이 공동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138조 2항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에 대한 정부초안의 취지는 이들이 재무관청에서의 조사절차 사안에 합치된 변호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며 그 이유는 이들이 조사의 핵심과 또한 그에 따른 조세법분야에 대한 변호의 핵심, 즉 조세감소의 객관적 및 주관적 원인에 대한 확인 및 각각 감소된 조세금액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변호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제40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기대 등의 원칙도 인정된다.

② 본조는 조세형사범(제385조 1항)에 대한 전체 형사절차에 적용되며 또한 제385조 2항, 제410조 1항 등과 관련되므로 이들을 참조할 것이다.

4) 刑事節次와 課稅節次

본조는 동일한 사실이 과세절차와 형벌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이다. 이두 절차는 순차적으로 행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같이 행해질 수도 있고 동일한 공무원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다. 이 규정의 입법목적은 하나의 절차가 다른 절차에 의하여 방해받을 가능성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목적은 한편으로는 두 절차의 상호 독립의 원칙을 보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재무관청의 강제수단권한을 제한하고(동조 제1항 2단 3단 참조) 형사소추의 목적으로 과세절차에서 알게된 특정사실의 이용을 금지시키는 데에 있다(동조 제2항참조). 특히 이 이용금지는 관계인의 보호뿐만 아니라 과세절차시행을 보호한다는 측면이 있다. 본조는 벌과금절차(Bußgeldverfahren)에도 준용한다(제410조 1항 4호).

여 형벌절차가 개시되는 경우는 항상 제2단이 규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조세의무자는 그 기회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교시를 받은 것으로 한다.

- (2) 조세의무자가 형사절차의 개시전에 또는 형사절차의 개시를 알지 못해 재무관청에 대하여 세법상의 의무이행에 의해 명백한 사실 또는 증거에 대하여, 검찰청 또는 법원이 형사절차에 있어서 과세서류로부터 이를 아는 경우, 당해 알게된 것을 조세법이 아닌 행위의 소추로 조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이용할 수 없다. 다만 그 소추에 대하여 중대한 공익(제30조 4항 5호)이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이 제한이 없다.

第394條 [所有權의 移轉] 조세법의 현행범으로서 도망하였기 때문에 범인을 알지 못한 때 물건이 회수되어 遺留되거나 당해 물건이 압수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관된 경우, 당해 물건의 소유자가 不明하거나 재무관청이 공고에 의해 소유권상실위험을 공시한 때는, 1년을 경과한 때에 당해 물건은 국가의 소유로 귀속된다. 이경우 행정송달법 제15조 2항 1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기간은 공고를 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第395條 [財務官廳의 書類閱覽⁵⁾] 재무관청은 법원에 있거나 공소제기의 경우에 제출하게 된 서류를 열람하고 압수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관되고 있는 물건을 검사할 권한을 가진다. 당해 서류는 열람의 신청에 기초하여 재무관청에 이를 송부한다.

5) 財務官廳의 書類閱覽權

이 규정의 의미는 오직 경찰 또는 검찰에 의하여 진행되고 또한 법원에 係屬된 조세법절차의 경우에 한한다는 데 있다. 이 규정은 재무관청이 언제나 다른 곳에서 행해진 조세법절차의 상황과 조사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하려고 한 것이다. 이들 정보는 재무관청의 참가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절차의 어떤 단계에서는 본안심리의 경우에도 사실을 검사할 수 있다(제402조, 제403조, 제406조, 제407조).

* **參加權** : 절차의 公正한 해결,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의 보호 및 충분한 절차자료의 확보를 위해 이해관계있는 제3자나 다른 행정청을 절차에 참여시키는 데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참가권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行政爭訟과 관련하여 行政審判法 제16조와 行政소송법 제17조에서 審判參加와 訴訟參加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 第396條 [節次의 停止]** (1) 당해 범죄의 탈세범으로서의 판단이 조세청구권, 조세의 면탈 또는 부당한 조세상의 이익의 취득의 유무에 관련된 경우는 과세절차가 확정력으로 종료하기까지 형사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 (2) 전항에서 정한 형사절차의 정지는 조사절차에 있어서는 검찰청이, 공소제기 후의 절차에 있어서는 사건이 係屬된 법원이 이를 결정한다.
- (3) 형사절차의 정지하는 동안 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第 2 節 調査節次

第 1 款 通則

- 第397條 [刑事節次의 開始]** (1) 형사절차는 재무관청, 경찰, 검찰청, 그 보조 공무원 또는 형사재판관이 조세범죄에 관하여 특정인에게 형사법상 처벌을 목적으로 한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행하는 때에 즉시 개시된다.
- (2) 당해 조치는 그 일시를 표시하여 지체없이 관계서류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 (3) 형사절차의 개시는 피의자에 대하여 늦어도 그자가 혐의를 받고 있는 범죄에 관계있는 사실 또는 자료에 대하여 진술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받은 때 까지 이를 통지해야 한다.

第398條 [輕微한 罪를 理由로 하는 中止] 검찰청은 다만 소액의 조세면탈이 발생함에 불과하거나 소액의 조세상의 이익을 받음에 불과한 탈세범의 소추에 대해서는 범인의 책임이 경미한 것이라고 인정되고, 또한 소추에 대하여 공익이 없는 경우는 본절차의 개시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 법원의 동의가 없어도 탈세의 소추를 중지할 수 있다. 전단의 규정은 제373조에서 정한 조세장물범 및 제375조 1항 1호에서 3호까지에서 규정한 범죄의 하나를 범한 자의 비호에 관한 절차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第 2 款 租稅犯에 대한 財務官廳의 節次

第399條 [財務官廳의 權利 및 義務] (1) 재무관청이 제386조 2항의 규정에 기초하여 독립적으로 조사절차를 행하는 경우는 당해 재무관청은 조사절차에 있어서 검찰청에 속한 권리 및 의무를 가진다.

(2) 제387조 2항의 규정에 의해 2이상의 재무관청의 영역에 대한 관할권이 하나의 재무관청에 위임되는 경우, 조세범의 의혹이 있는 경우에 사건이 不明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실을 조사하고 동시에 일체의 긴급명령을 하는 당해 2이상의 재무관청의 권리 및 의무는 그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다. 이들 재무관청은 검찰청의 보조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압수, 긴급매각처분, 수색, 검사 및 기타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第400條 [略式命令 發令의 申請] 조사가 공소제기를 위해 충분한 근거를 명백히 한 경우, 재무관청은 당해 형사사건을 약식명령절차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재판관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발령을 신청한다. 약식명령절차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때는 재무관청은 관계서류를 검찰청에 제출한다.

第401條 [獨立節次에 있어서 附加效果命令의 申請] 재무관청은 몰수 또는 국가에의 귀속을 독립하여 명하거나 또는 법인 또는 인적 결합에 대하여 과료를 독립하여 결정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40조 제442조 1항, 제444조 3항)

第 3 款 檢察廳의 節次에 있어서 財務官廳의 地位

第402條 [財務官廳의 一般的 權利 및 義務] (1) 검찰청이 조사절차를 행하는 경우는 그밖의 사항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 재무관청은 형사소송법에 정한 검찰관청과 동일한 권리 및 의무, 제399조 2항 2단에서 정한 권한을 가진다.

(2) 2이상의 재무관청의 영역에 대한 관할권이 제387조 2항의 규정에 의해 하나의 재무관청에 위임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을 당해 각재무관청에 대하여 적용한다.

第403條 [財務官廳의 關與] (1) 검찰청 또는 검찰이 조세법에 관한 조사를 행하는 경우는,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 재무관청은 당해 조사에 참가할 권한을 가진다. 조사를 행하는 장소 및 일시에 대하여 재무관청에 대하여 조사전에 통지를 하여야한다. 재무관청의 대리인은 피의자, 증인 및 감정인에 대한 심문이 인정된다.

(2) 제1항의 규정은 검찰청도 참가를 인정받은 법원의 심리에 대하여 준용한다.

(3) 기소장 및 약식명령의 신청서는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 재무관청에게 이를 송달한다.

(4) 검찰청이 절차의 증지를 고려하는 경우는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 재무관청의 의견을 청취해야한다.

第 4 款 租稅査察 및 關稅査察

第404條 [租稅査察 및 關稅査察] 관세사찰관 및 조세사찰을 위촉받은 주재무관청의 부서 및 그 공무원은 조세법에 관한 형사절차에서 형사소송법의 규정에서 정한 검찰관청 및 그 공무원과 동일한 권리 및 의무를 가진다. 제1단에서 규정한 부서는 제399조 2항 2단에서 정한 권한 및 검색을 받을 자의 서류를 검사할 권한(형사소송법 제110조 1항)을 가진다. 이경우 그 공무원은 검찰청의 보조이다.

第 5 款 證人 및 鑑定人의 補償

第405條 [證人 및 鑑定人의 補償] 증인 및 감정인이 재무관청에 의하여 증거를 얻을 목적으로 출두를 요구받은 경우 이들은 증인 및 감정인의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다. 제404조의 규정의 경우도 동일하다.

第 3 節 裁判節次

第406條 [略式命令節次 및 獨立節次에 있어서 財務官廳의 協力] (1) 재무관

청이 약식명령의 發令을 신청한 경우 재무관청은 검찰청의 권리 및 의무를 가진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408조 2항의 규정에 의해 공판기일이 정해지거나 약식명령에 대하여 異議가 신청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재무관청이 몰수 또는 국가에의 귀속을 독립하여 명하는 신청, 법인 또는 인적 결합에 대하여 과료를 독립하여 결정하는 신청을 한 경우(제401조), 재무관청은 검찰청의 권리 및 의무를 가진다. 다만 구두변론이 신청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명해지는 경우는 이 제한이 없다.

第407條 [其他의 境遇에 있어서 財務官廳의 關與⁶⁾] (1) 법원은 재무관청에 대하여 재무관청의 입장에서 판결에 중요한 관점을 말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법원이 절차의 중지를 고려하는 경우도 동일하다. 공판기일 및 수명재판관 또는 위탁재판관에 의한 訊問期日(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33조)은 재무관청에 이를 통지한다. 재무관청의 대리인은 공판에 있어서 발언을 요구할 수 있다. 재무관청의 대리인은 피고인, 증인 및 감정인에 대한 신문이 인정된다.

- (2) 재판 및 절차를 종결시키는 기타의 재판은 재무관청에 이를 통지한다.

第 4 節 節次費用

第408條 [節次費用] 형사소송법 제464a조 2항 2호에서 말하는 관계인의 필요 경비에는 조세법에 관한 형사절차에 있어서는 세무사, 세무대리인, 경제검사사 또는 공인장부검사사의 법정수수료 및 법정비용도 포함된다. 수수료 및 비용이 법률상 정해지지 않는 경우는 변호사의 법정 수수료 및 법정비용액을 한도로 하여 지불할 수 있다.

第 4 章 科料節次

6) 財務官廳의 關與

본조의 핵심은 1항 1단에 있다. 기타 그밖의 규정은 1항 1단을 상세히 설명한 규정이다. 이러한 규정들은 각 개별적인 규정이 의심스러운 경우에 판결에 중요한 법률상 및 사실상의 관점을 밝히기 위하여 재무관청이 원칙적으로 관여할 권리를 가진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第409條 [管轄行政官廳] 조세질서위반의 경우 질서위반법 제36조 1항 1호에
서 말하는 관할행정관청은 제387조 1항의 규정에 의해 사물관할권을 가진 재
무관청으로 한다. 이경우 제387조 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第410條 [科料節次를 위한 補充規定] (1) 과료절차에 대해서는 질서위반법의
절차법규정외에 다음 각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재무관청의 관할권에 관한 제388조에서 제390조까지
 2. 법원의 관할권에 관한 제391조
 3. 변호에 관한 제392조
 4. 형사절차의 과세절차에 대한 관계에 관한 제393조
 5. 절차의 정지에 관한 제396조
 6. 형사절차의 개시에 관한 제397조
 7. 재무관청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제399조 2항
 8. 검찰청의 절차에 있어서 재무관청의 지위에 관한 제402조, 제403조 1항,
3항 및 4항
 9. 조세사찰 및 관세사찰에 관한 제404조 1단 및 2단 전반부
 10. 증인 및 감정인의 보상에 관한 제405조
 11. 재무관청의 관여에 관한 제407조
 12. 절차비용에 관한 제408조
- (2) 재무관청이 조세질서위반과 관련된 조세범(질서위반법 제42조 1항 2단)을
소추하는 때는 제400조에서 정한 경우에는 조세질서위반에 대한 약식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第411條 [辯護士, 稅務士, 稅務代理士, 經濟檢査士 또는 公認帳簿檢査士에
대한 科料節次]** 변호사, 세무사, 세무대리사, 경제검사사 또는 공인장부검
사사에 대하여 그 업무로서 조세사안의 상담에 종사시 행한 조세질서위반을
이유로 하여 과료경정이 이루어지기까지 재무관청은 所管職業會議所⁷⁾에 대하

7) 職業會議所의 疏明機會

(1) 意義

여 그 입장에서 결정에 중요한 관점을 주장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第412條 [送達, 執行, 費用]** (1) 송달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법 제51조 1항 1단의 규정에 관계없이 주재무관청이 결정을 한 경우에도 행정송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질서위반법 제51조 1항 2단 및 2항에서 5항까지의 규정은 그 적용을 방해받지 않는다.
- (2) 과료절차에 있어서 재무관청의 결정집행에 관하여는 질서위반법 제90조 1항 및 4항, 제108조 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이 법률의 제6편의 규정을 적용한다. 질서위반법 제2편 9장의 기타규정은 그 적용을 방해받지 않는다.
- (3) 과료절차의 비용은, 질서위반법 제107조 4항의 규정은 주재무관청이 과료결정을 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이경우 행정비용법 제19조의 규정에 대신하여 이 법률의 제227조 1항 및 제26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본조에서 말한 직업단체의 참여는 특수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직업단체와 재무관청간의 이해조정을 위한 규정이다.

(2) 要件

- ① 조세사안의 상담에 종사한 직업회의소의 구성원일 것
- ② 조세질서위반을 이유로 할 것
- ③ 벌칙금(Bußgeld) 부과결정이 있을 것

(3) 效果

- ① 직업회의소는 정보제공의무를 부담하며 단 관계인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 ② 재무관청은 소관직업회의소에 의견표시기회를 부여하고 특히 직업법상의 관점을 표시하게 된다.
- ③ 관계자가 다수의 직업회의소에 소속되어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직업회의소에 기회를 부여하게 된다.

第 9 編 終結規定

第413條 [基本權의 制限] 신체불침해 및 개인자유의 기본권(기본법률 제2조 2항), 信書郵便, 전기통신의 비밀의 기본권(기본법 제10조) 및 주거불가침의 기본권(기본법 제13조)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다.

第414條 베를린 조항(폐지)

第415條 [效力發生] (1) 이 법률은 제2항에 특별한 다른 규정이 없는 한, 1977년 1월 1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2) 제19조 5항, 제117조 5항, 제134조 3항, 제139조 2항, 제150조 6항, 제156조 1항, 제178조 3항, 제212조, 제382조 4항, 제387조 2항 및 제391조 2항의 각 규정은 공포일(1976년 3월 17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3) 제52조와 제53조는 198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附錄 I. 〈 19977년 租稅基本法 施行法 抜譯 〉

1976년 12월 14일

(BGBl I S. 3341 ; BStBl I 1976, S. 694)

聯邦議會는 聯邦上院의 同意를 얻어 다음의 法律을 議決하였다.

第 1 章 財政制度 領域에 있어서의 法律의 改正

第1. 財務行政法(略)

第2. 分割法

第3. 對外去來課稅法

第4. 會社自己資金에 의한 增資 및 從業員에의 自己株式의 讓渡에 대한 稅
法上の 措置에 관한 法律

第5. 베를린 促進法

第6. 評價法

第7. 礦物採掘權의 統一價格의 基本確認 (1) 광물채굴권에 대한 이후의 통일
가격의 기본확인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1977년 기본확인)

(2) 1977년 1월 1일에 성립한 가격관계의 광물채굴권에 대한 통일가격은 맨처음
으로 1977년 1월 1일의 영업행위에 대한 통일가격확인과 1976년 12월 31일
이후에 성립한 조세확정의 경우에 적용한다.

第8. 稅務士法

第9. 所得稅法

第10. 所得稅施行令

第11. 法人稅法

第12. 營業稅法

第13. 營業稅施行令

第14. 財産稅法

- 第15. 不動產稅法
- 第16. 相讓稅 및 贈與稅法
- 第17. 賣上稅法
- 第18. 保險稅法
- 第19. 어음稅法
- 第20. 담배稅法
- 第21. 커피稅法
- 第22. 홍차稅法
- 第23. 설탕稅法
- 第24. 소금稅法
- 第25.麥酒稅法
- 第26. 브랜디 專賣法
- 第27. 삼페인 酒稅法
- 第28. 성냥稅法(省略)
- 第29. 성냥 專賣法
- 第30. 照明器具稅法(省略)
- 第31. 카드류 稅法
- 第32. 鑛油稅法
- 第33. 關稅法
- 第34. 徵收法
- 第35. 負擔調整法
- 第36. 證據保全 및 確認法
- 第37. 戰災賠償法
- 第38. 商船의 建造 및 取得貸付法

第 2 章 其他 聯邦法律의 整備

第 1 節 行政法의 領域에 있어서 法律의 改正

- 第39. 行政送達法

第40. 行政執行法

第41. 行政費用法

第42. 病院融資法

第43. 航空機騒音保護法

第 2 節 裁判, 民事法 및 刑事法の 領域에 있어서 法律의 改正

第53. 民事訴訟法

第54. 財政裁判法

第55. 司法強制徵收法

第56. 商法典

第57. 株式法

第 3 節 防衛法の 領域에 있어서 法律의 改正(第58 省略)

第 4 節 經濟法の 領域에 있어서 法律의 改正

第59에서 第81까지 (省略)

第 5 節 勞動法, 社會保險 및 戰爭犠牲者補助法の 領域에 있어서 法律의 改正

第82에서 第90까지 (省略)

第 6 節 郵便制度 및 送信制度 및 交通制度의 領域에 있어서 法律의 改正

第91에서 第94까지 (省略)

第 7 節 其他의 法律의 改正

第95. (11의 法律의 改正, 省略)

第 8 節 諸規定의 實效

第96. 租稅基本法の 效力發生과 동시에 다음에 規定한 各 法令은 實效한다.

1. 조세기본법(31년 5월 22일, 최근의 개정 : 75년 7월 25일 「신문 및 방송의 협력자의 증언거절권에 관한 법률」)
2. 조세기본법 제160조 2항의 규정의 시행령(32년 3월 24일)
3. 장부검사 및 경영검사의 시행령(25년 11월 9일)
4. 조세기본법 제402조 및 제413조의 시행령(40년 8월 17일)
5. 조세조정법(34년 10월 16일, 최근의 개정 : 74년 12월 21일 「소득세개혁법 시행법」)
6. 공동이용시행령(1953년 12월 24일, 최근의 개정 : 1969년 8월 18일 「1969년의 조세개정법」)
7. 배분시행령(1963년 11월 8일, 개정 : 1965년 10월 6일 「재정법원법」)
8. 조세유예법(1961년 7월 13일, 최근의 개정 : 1975년 7월 24일 「조세심의법개정에 대한 제3법률」)
9. 조세유예시행령(1962년 8월 15일, 개정 : 1969년 6월 9일 「조세유예법시행령 개정에 대한 시행령」)
10. 징수법(1923년 6월 23일)
11. 징수법실시를 위한 시행령(1923년 7월 5일)
12. 개인 및 사업기록에 관한(일람표원본) 시행령(1935년 5월 16일)
13. 물건입고장부기록에 관한 시행령(1935년 6월 20일, 최근의 개정 : 1959년 3월 2일 「상법 및 조세법상의 보관기간단축에 관한 법률」)
14. 농업장부기록에 관한 시행령(1935년 7월 5일)
15. 물건출고시행령(1936년 6월 20일, 최근의 개정 : 1956년 5월 11일 「제국조세기본법 제3장 규정의 개정에 관한 법률」)
16. 과세절차상의 관할권에 관한 시행령(1944년 1월 3일)
17. 제국조세기본법상의 강제집행비용에 관한 법(1961년 4월 12일, 최근의 개정 : 1975년 5월 20일, 「제국조세기본법상의 강제집행비용에 관한 법률

개정법」)

18. 토지평가결과의 보류에 관한 시행령 제6조 2항 4단(1936년 1월 31일)
19. 경마 및 복권법 제15, 제20조(1922년 4월 8일, 최근의 개정 : 1974년 12월 16일 「경마 및 복권법개정에 관한 법률」)
20. 제국재무행정의 직무범위에 대한 상환절차상의 강제집행에 관한 시행령 (1937년 12월 17일)
21. 농업노무자 및 수공업자를 위한 소작인주택, 노무자주택, 가족주택의 건설촉진에 관한 시행령 제5조(1937년 3월 10일, 최근의 개정 : 1969년 8월 28일 「등기법」)
22. 농업노무자 및 수공업자를 위한 소작인주택 및 노무자주택, 가족주택의 건설촉진에 관한 제2차 시행령(38년 1월 27일)의 제2조 3항
23. 연방식량·농림업자의 대외거래부문의 수수료징수법(51년 12월 17일)의 제3조
24. 가축 및 食肉法(51년 4월 25일, 최근의 개정 : 76년 6월 23일 「시장규제 부문의 신조직법」)의 제21조 3항
25. 설탕법(51년 1월 5일, 최근의 개정 : 74년 8월 15일 「식료품법의 총개혁 법」)의 제11조 3항

第 3 章 終結規定

第97. 經過規定

第1條 [開始되어 있는 節次] (1) 1977년 1월 1일에 계속되고 있는 절차는 다음조 이하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2) 1985년 12월 19일개정 또는 첨부된 규정과 이들 규정을 기초로 한 법규명령에 의한 1986년의 조세정리법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들 규정의 효력발생에 계속되고 있는 일체의 절차에 적용한다.

이들 규정이 서면의 행정행위의 고지를 규정하고 있는 범위에서 규정의 효력발생은 우편으로 행한 일체의 행정행위에 적용한다.

(3) 1988년 7월 25일 개정된 규정에 의한 1990년의 조세개혁법 제15조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들 규정의 효력발생에 계속되고 있는 일체의 절차에 적용한다.

第1a條 [租税優待가 排除되지 않는 活動] 조세우대가 배제되지 않는 활동에 관한 조세기본법 제58조 7호의 규정은 1986년의 조세정리법의 법문을 적용한다.

第1b條 [病院] 병원의 목적적합사업의 성질에 관한 조세기본법 제67조 1항의 규정은 1986년 1월 1일부터 1986년의 조세정리법의 법문을 적용한다.

第1c條 [스포츠 行事] 스포츠행사의 목적적합사업의 성질에 관한 조세기본법 제67a조의 규정 및 조세기본법 제68조 7항의 효과규정은 1986년 1월 1일부터 1986년 조세정리법의 법문을 적용한다.

第1d條 [租税優待目的] 조세기본법 제51, 52, 58, 64, 67a조 및 제68조의 규정은 1990년 1월 1일부터 1989년 12월 18일의 사단촉진법 제1조의 법문을 적용한다.

第2條 [期間] 1977년 1월 1일전에 진행이 개시되어 있는 기간은 다음조 이하에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계산한다. 기간의 개시가 제국조세기본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연기되기 때문에 1977년 1월 1일전에 기간의 진행이 개시되지 않는 경우도 전단과 동일하다.

第3條 [不動産取得稅, 防火稅] 조세기본법 및 제97조의 규정은 부동산취득세 및 방화세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한다. 이와 다른 주법의 규정은 그 효력을 방해받지 않는다. 부동산취득세가 주재무관청에 의하여 관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세기본법 제1조 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第4條 [廢止]

第5條 [廢止]

第6條 [廢止]

第7條 [廢止]

第8條 [遲延加算金] 지연가산금에 관한 조세기본법 제152조의 규정은 1976년 12월 31일후에 제출할 조세신고서에 이를 최초로 적용한다. 이 경우 조세신고서의 제출기간의 연장은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 전단외에 제국조세기본법 제168조 2항의 규정은 1976년 12월 31일후에 확정된 지연가산금의 10,000DM까지 이를 준용한다.

第9條 [行政行爲의 取消 및 變更] 행정행위의 취소 및 변경에 관한 조세기본법의 규정은 1976년 12월 31일후에 행정행위가 취소되고, 변경되는 때 최초로 이를 적용한다. 취소되거나 또는 변경되는 행정행위가 1977년 1월 1일전에 이루어진 때도 전단과 동일하다. 제국조세기본법 제100조 1항의 규정에 의한 假조세결정에는 조세기본법 제165조 2항의 규정을 제국조세기본법 제100조 2항 및 1974년 1월 1일전 현행법문의 상속세법 제28조의 각 규정에 의한 조세결정에는 조세기본법 제164조 2항 및 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第10條 [確정의 時效] (1) 확정의 시효에 관한 조세기본법의 규정은 1976년 12월 31일 이후에 발생하는 조세, 조세환급 및 조세부대급부에 대하여 확정의 시효가 정해져 있는 범위에서 - 조세부대급부의 확정, 확정의 취소 및 변경에 대하여 최초로 이를 적용한다. 1976년 12월 31일이전에 발생한 청구권에 대해서는 제국조세기본법의 시효 및 제척기간의 규정이 조세, 조세환급 또는 조세부대급부의 확정, 이들 확정의 취소 혹은 변경, 또는 환부청구권의 행사에 대하여 의의를 가지는 범위에서 이들 규정을 계속 적용한다. 이 제97의 제14조 2항의 규정은 그 적용을 방해하지 않는다.

- (2) 제1항의 규정은 과세기초의 분리확인, 조세산정기준액의 확정, 분할 및 배분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통일평가에 관하여는 「조세청구권 발생시」대신에 「기본확인, 변경확인, 추가확인 또는 통일가격의 취소가 이루어지는 때」를 우선한다.
- (3) 종결협의 또는 마지막 조사가 1987년 1월 1일 이전에 행해진 경우에는 조세기본법 제17조 제4항 3단에 따른 계산기간은 1987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 (4) 조세기본법 제171조 제14항의 규정은 1986년 조세정리법의 효력발생의 경우 아직 경과하지 않는 모든 확정기간에 대하여 적용한다.

第10a條 [申告義務] 신고의무에 관한 조세기본법 제181조 제2항의 규정은 1987년 1월 1일 이전의 기간 또는 시점관련하여 아직 행해지지 않은 확인 신고에 대하여도 1986년의 조세정리법의 법문을 적용한다.

第11條 [責任] (1) 조세기본법 제69조에서 제76조까지 및 제191조 3항에서 5항까지의 각 규정은 1976년 12월 31일 이후에 책임을 발생케한 요건사실이 실현되는 때에 이를 적용한다.

(2) 책임에 관한 조세기본법의 규정은 1986년 12월 31일 이후에 책임을 발생케한 요건사실이 실현된 경우에는 1986년의 조세정리법의 법문을 적용한다.

第12條 [臨場調査에 基礎한 拘束確言] 입장조사에 기초한 구속확언에 관한 조세기본법의 규정(제204조에서 제207조까지)은 1976년 12월 31일 이후에 종결협의를 행해진 때, 또는 종결협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1976년 12월 31일 이후에 조세의무자가 조사보고서를 수리한 때에 이를 적용한다.

第13條 [保證金] 제국조세기본법 제203조의 규정은 동조에 규정한 특별조건이 1977년 1월 1일이전에 준수되지 않았던 범위에서는 1976년 12월 31일 후에도 이를 적용한다. 보증금을 확정하는 행정행위에는 재정재판법 제100

조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第14條 [支拂時效] (1) 조세기본법의 지불시효에 관한 규정은 조세기본법 제2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효가 1976년 12월 31일 이후에 개시하는 조세기본법 제228조 1단의 규정에서 말하는 일체의 청구권에 이를 적용한다.

(2) 제1항의 요건이 없는 때는 당해 청구권에 대하여 시효 및 제척기간에 관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1977년 1월 1일 이후 시효는 조세기본법 제230조 및 제231조의 규정에 따라서만 정지 또는 중단된다. 조세기본법 제231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시하는 새로운 시효기간에는 조세기본법 제228조에서 제2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第15條 [利子] (1) 1976년 12월 31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조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다. 집행정지의 경우의 이자는 조세기본법 제237조에 따라 이자계산이 1987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한 범위에서 1986년 조세정리법의 법문에서도 발생한다.

(2) 1976년 12월 31일을 지나 무이자로 조세가 유예된 때는 조세기본법 제234조 2항의 규정에서 말하는 이자의 포기로 본다.

(3) 확정기간에 관한 조세기본법 제239조 1항의 규정은 이 규정에 의하여 확정기간이 1977년 12월 31일 이후에 개시하는 일체의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4) 조세기본법 제233 a, 235, 236 및 239조의 규정은 1988년 7월 25일의 조세개혁법 1990 제15조 3항부터 5항까지 그리고 7항이 법문 및 1989년 12월 22일의 주택건설촉진법 제9조의 법문을 1988년 12월 31일 이후에 성립한 일체의 조세에 적용한다.

第16條 [延滯 加算金] (1) 연체가산금에 관한 조세기본법 제240조의 규정은 1976년 12월 31일 이후에 실현되는 연체가산금에 최초로 이를 적용한다.

(2) 1980년 12월 31일까지는 주 최고재무관청에 의하여 징수절차에 있어서 합리화시험의 실시를 지정되어 있는 세무서에 관한 조세기본법 제240조의 적용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조세기본법 제240조 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소득세, 법인세, 영업세, 재산세, 부동산세, 특별재산세, 신용이득특별세 및 매상세에 관하여서는 연체가산금의 실현에 대하여 납기일에 대신하여 납기일의 익일 20일로 한다. 조세기본법 제240조 3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2. 동일 조세종류에 관하여 납기일경과후 1년내에 지불이 반복하여 이루어 지는 때는 연체가산금은 납기일경과시로부터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세기본법 제240조 3항의 규정의 적용을 방해받지 않는다.
 3. 연체가산금의 산출은 각 조세종류의 미납금액을 합산하여 100DM미만의 금액은 이를 절사한다.
- (3) 조세기본법 제240조 3항의 규정은 1993년 6월 23일 법률 제17조 법문을 1993년 12월 31일 이후에 실현된 연체가산금에 처음으로 적용한다.

第17條 [債務原因의 記載] 1980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청구권에 조세기본법 제260조의 규정을 적용하는데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재무관청이 집행채무자에게 그 채무의 발생, 납기한 및 변제에 관하여 계정표에 의하여 계속하여 알게한 때는 재무관청이 조세종류 및 강제징수 금액을 기재하고 또한 미불을 증명하는 계정표를 표시함으로써 족하다.

第17a條 [押留手數料] 압류수수료액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조세기본법 제339조 1항 1호의 경우에는 수수료징수에 대한 법률요건이 충족된 시점의 수수료법을 적용한다.
2. 조세법 제339조 1항 2호의 경우에는 압류처분이 집행관청의 범위를 떠난 시점의 수수료법을 적용한다.

第18條 [裁判外의 權利救濟] (1) 1977년 1월 1일 이전에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행정행위가 다투어지는 때는 재판외의 권리구제의 적법성의 유무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권리구제에 관하여 1976년 12월 31일 이후에 결정하는 때는 재판외의 권리구제의 종류 및 기타의 절차는 신규정에 의한다.

(2) 1976년 12월 31일 이후는 재판외의 권리구제에 대한 수수료는 조세기본법 제256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확정의 요건이 1977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

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확정한다.

第19條 [特定租稅義務者の 記帳義務] (1) 조세기본법의 효력이 발생하기까지는 조세기본법 제161조의 규정은 다음의 규정을 준용한다.

소득세법 제13a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농림업이익이 1973년 12월 31일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개개의 사업에 대하여 12,000DM을 넘는 때는 이에 의하여 기장을 하고, 동시에 매년의 재고에 의하여 定期에 결산을 하는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조세기본법 제141조의 요건이 있는 때는 이 제한이 없다.

(2) 조세기본법 제141조 1항 1호의 규정은 1986년의 조세정리법을 1983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작한 1년의 매상에 적용한다.

(3) 조세기본법 제141조 1항 2호의 규정은 1986년의 조세정리법을 1983년 12월 31일 이후의 확인시점에 적용한다.

(4) 조세기본법 제141조 1항에 의한 기장의무는 당해 경제년도 다음에 오는 경제년도의 경과로 종료하고 또한 재무관청은 조세기본법 제141조 1항의 요건이 1986년의 조세정리법에는 더이상 규정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한다.

(5) 기장의무개시에 관한 통지는 조세기본법 제141조 1항의 요건을 1984년 1월 1일 이전의 1년 또는 확인시점에 대하여 충족한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조세기본법 제141조 1항의 요건은 1986년의 조세정리법의 법문이나 1984년의 1년 또는 1984년의 확인시점의 경우에는 이 제한이 없다.

(6) 조세기본법 제141조 1항 1호의 규정의 적용에 대하여는 1986년의 조세정리법의 법문을 상법전 시행법 제23조 1항과 5항, 제24조 1항부터 5항까지 및 제28조 1항에 포함된 결산표준법률의 경과규정에 준용한다. 이 경우 경제년도가 영업년도를 대신한다.

第20條 [白地委任規定에 있어서 引用의 必要性] 조세기본법 제381조 1항, 제382조 1항에 규정된 인용은 동조항에 규정한 법률 및 법규명령이 1968년 10월 1일 이전에 제정되어 있는 범위에서는 필요하지 않다.

第97a. 獨逸統一回復으로 인한 誘導規定

第1條 [管轄] (1) 1994년 1월 1일 이전의 독일연방공화국법 또는 독일민주공화국법에 의하여 성립한 재산세와 거래세, 수당과 프리미엄에 대한 조세법의 적용과 또한 이들에 속한 조세상의 부대급부에 대하여는 개별조세법 규정을 포함한 종래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관할하는 재무관청에 계속하여 관할권이 있다. 전단은 권리구제절차에도 적용된다.

(2) 토지관할의 변경으로 하나의 재무관청이 통일조약 제3조에서 말하는 지역에서 조세기본법 제184조 1항 1호에 의한 분리확인과 1977년 1월 19일의 배당명가시행령에 의한 분리확인 또는 재산에 대한 과세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기본법 제26조 1항에 관계없이 1995년 1월 1일의 확인 또는 1995년의 재산세에 대하여 종전의 관계에 관할권있는 재무관청이 관계가 있는 범위내에서 마지막으로 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는 권리구제절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第2條 [統一條約 第3條에서 말하는 地域에서의 租稅基本法適用에 대한 指導規定] 통일조약 제3조에서 말하는 지역에서의 조세법적용에 대하여는 다음의 각호에 따른다.

- (1) 가입의 효력발생의 경우에 관련된 절차는 다음에 특별한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끝까지 조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한다.
- (2) 가입의 효력발생전에 진행을 시작했던 기간은 다음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1990년 6월 22일의 독일민주공화국(DDR)의 조세법규정 및 1990년 6월 22일의 독일민주공화국 조세법시행법에 따라 계산한다.
- (3) 제152조는 가입의 효력발생이 이루어진 이후의 납세신고에 최초로 적용한다. 이 경우 납세신고기간연장을 고려하지 않는다.
- (4) 행정행위의 취소, 변경에 관한 규정은 가입의 효력발생이후에 행정행위가 취소되거나 변경된 경우에 최초로 적용한다. 전단의 규정은 취소 또는 변경될 행정행위가 가입의 효력발생전에 행해진 경우에도 적용한다. 독일민주공화국 조세기본법 제100조 1항에 의한 가조세결정은 1970년 11월 18일 법문에서 제165조 2항을 적용하고 또한 독일민주공화국 조세기본법 제100조 2항에 의한 조세결정은 1970년 11월 18일 법문에서 제164조 2항과 3항

을 적용한다.

- (5) 확정시효에 관한 규정을 조세, 조세상환 및 조세상의 부대급부에 대하여 확정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범위에서의 가입의 효력발생이후에 성립한 조세상의 부대급부의 확정 및 확정의 취소와 변경에 적용한다. 이전에 성립한 청구권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1990년 6월 22일의 독일민주공화국 조세기본법규정과 1990년 6월 22일의 독일민주공화국 조세기본법 시행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조세상환 또는 조세상의 부대급부의 확정 및 당해 확정의 취소변경, 또는 상환청구권의 주장에 대하여 의미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본조 (9)항의 2단에서 4단까지의 적용을 방해 받지 않는다. 본항 1단과 2단의 규정은 과세기초의 분리확인, 조세산정기준액의 확정, 분배, 배분에 대하여 준용한다. 통일가격의 경우에는 조세청구권의 성립시점 대신 기본확인, 변경확인, 사후확인 또는 통일가격의 취소가 행해진 시점으로 한다.
- (6) 책임을 근거지우는 법률요건이 가입의 효력발생후 실현된 경우에도 제69조부터 76조 및 제191조 3항에서 5항까지를 적용한다.
- (7) 제141조 1항 3호를 적용할 경우에는 대응경제가격(평가법 제125조)이 경제가격을 대신한다.
- (8) 입장조사에 기초한 (제204조부터 제207조까지) 구속적 확언에 관한 규정은 종결협정이 가입의 효력발생후에 행하여졌거나 그같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가입의 효력발생후에 조세채무자에게 심사보고가 행하여진 경우에 적용한다. 종결협정이 1990년 6월 3일 이후 가입의 효력발생이전에 행하여졌거나 그러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조세채무자에 심사보고가 1990년 6월 30일 이후 가입의 효력발생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입장조사에 기초한 구속적 확언에 관한 1990년 6월 22일의 독일민주공화국의 종래의 조세기본법규정과 1990년 6월 22일의 독일민주공화국의 조세기본법시행법의 종래의 규정을 계속 적용한다.
- (9) 지불시효에 관한 규정은 가입의 효력발생이후 제229조에 따라 시효가 시작된 제228조 1항에서 말하는 일체의 청구권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단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들 청구권에 대하여 계속하여 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1990년 6월 22일의 독일민주공화국의 조세기본법규정과

1990년 6월 22일의 독일민주공화국의 조세기본법시행법을 적용한다. 시효는 다만 가입의 효력발생부터 제230조와 제231조에 의해서만 중단 또는 정지된다. 제231조 3항에 의하여 시작되는 새로운 시효기간에 대하여는 제228조부터 제232조를 적용한다.

(10) 이자는 가입효력발생이후의 시간에 대하여 조세기본법규정에 따라 발생한다. 조세추가청구와 조세환부의 이자에 관한 제233 a조의 규정은 1990년 12월 30일 이후에 성립한 조세에 대하여 최초로 적용한다. 조세가 가입의 효력발생의 날을 지나 이자 없이 유예된 경우에는 제234조 2항에서 말하는 이자의 표기를 적용한다. 확정기간에 관한 제239조 1항의 규정은 이 규정에 기초한 확정기간이 가입의 효력발생이후에 시작한 일체의 경우에 적용한다.

(11) 제240조는 가입의 효력발생이후에 이루어진 연체가산금에 대하여 최초로 적용한다.

(12) 가입의 효력발생이전에 효력을 갖는 행정행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외의 권리구제의 적법성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한다. 가입의 효력발생이후의 권리구제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외의 권리구제의 종류 및 그 밖의 절차는 새로운 규정에 따른다.

(13) 가입의 효력발생이전에 시작한 강제집행조치는 종전의 법에 따라 처리한다. 가입의 효력발생이후에 시작한 강제집행의 속행에 대한 그밖의 독자적인 조치에 대하여는 조세기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독자적인 조치는 압류된 대상의 평가에도 적용한다.

第3條 [1990년 後半 6個月에 支拂된 財産稅에 대한 精算] 1990년 6월 27일의 시행령에 따라 종합세율로 1990년 후반 6개월에 지불된 재산세는 1990년 연말신고에서 세율범위내에서 자본회사로 전환된 종전의 기업사업 및 시설의 법인세 및 영업세와 정산한다.

第98. [引用] 법규에, 이 법률에 의하여 폐지된 규정을 인용되는 범위에서 조세기본법의 해당규정이 당해 규정에 대신하는 것으로 한다.

第99. [委任] (1) 연방재무장관은 소비세법이 소비세과세물품에 대하여 비과세, 조세경감액 또는 기타의 조세우대를 이들 물품이 특별용도에 제공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정해지는 경우에, 조세수입의 확보 및 절차간소화를 위해 법규명령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규정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조세가 조건부로만 발생하는 사항. 조세경감액에 관해서는 경감전의 세율과 경감된 세율과의 차액에 관하여 적용하는 사항.

2. 조건부 조세가 법령의 경우외에 다음에 규정한 경우에도 무조건으로 되는 사항.

a) 소비세과세물품이 조세감독절차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반하여 불법하게 유치 또는 奪取되는 경우

b) 조세우대의 요구에 대한 기한부 허가가 소멸하는 경우. 이 소멸시에 허가를 받은 자의 수중에 현존하는 조세우대를 받아 구입된 소비세과세물품의 재고에 대하여.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규명령 및 소비세 및 재정전매의 영역에 있어서 이 법률에서 정한 위임(제20에서 제32까지)에 의하여 제정된 법규명령은 맥주세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연방참의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第100. [新公示의 委任] 소관연방장관은 이 법률에 있어서 사용되는 법률의 문언을 새로운 법문, 새로운 날짜, 새로운 표제로 공시할 수 있다. 그 경우 조항의 순서를 변경하고, 또한 문언의 불일치를 제거할 수 있다.

第101. [베를린 條項]

第102. [發效] (1) 이 법률은 별단의 규정이 없는한, 1977년 1월 1일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제1의 7호b, 제11, 제17의 13c, 제97의 제19조 및 제99의 법문의 재무행정법 제17조 3항의 규정은 공포의 익일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3) 제14의 1호a는 1975년의 재산세에 최초로 이를 적용한다.

附錄 II. 〈 少額租稅 施行法 〉

1980년 12월 10일

1976년 3월 16일의 조세기본법 제156조 1항에 근거하여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어 저축이익금법 제56조 1항에 대하여는 1977년 12월 20일의 고지법문에서, 주택건설장려금법 제8조 1항은 1977년 12월 22일의 고지법문에서, 투자보조금법 제5조 5항은 1979년 1월 2일의 고지법문에서 그리고 베를린조성법 제19조 7항에 대하여는 1978년 12월 22일의 고지법문에서 규정하였다 :

第1條 [租稅確定の 變更 또는 訂正] (1) 다음 각호의 조세확정은 종전의 확정 또는 종전의 상환액과의 차이가 최소한 20DM에 달하거나 조세의무자가 변경 또는 정정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조세의무자에 불이익하게 변경 또는 정정된다.

1. 소득세
2. 법인세
3. 재산세
4. 상속세(증여세)
5. 가산세를 포함한 토지취득세
6. 매상세
7. 거래소매상세
8. 보험세
9. 경마세 및 복권세
10. 근로소득세 - 연말 정산액

소득세와 법인세의 경우에는 각각 조세공제액과 법인세를 계산하여 남은 조세채무를 비교한다. 재산세의 경우에는 년세의 차액을 기준으로 한다.

- (2) 신고된 매상세에납과 1년에 신고된 매상세 또는 신고된 방화세는 신고된 세액과의 차이가 최소한 20DM에 달한 경우에 한하여 재무관청은 조세의무자에

게 불리하게 확정하거나 변경 또는 정정한다. 이들 조세가 조세결정에 따라 확정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 (3) 근로소득세가 조세결정으로 확정되거나 근로소득세신고가 다룰수 없게 된 경우에 제2항을 준용한다.

第2條〔營業稅 算定基準稅額의 變更 또는 訂正〕 확정된 영업세산정기준세액은 종전의 확정과의 차이가 최소한 5DM에 달한 경우에 한하여 조세의무자의 불이익으로 변경 또는 정정한다.

第3條〔所得의 分離確認의 變更 또는 訂正〕 (1) 소득의 분리 및 통일확인 은 소득이 최소한 1인의 관계인에 대하여 낮거나 약 40DM 또는 그보다 높은 경우에 한하여 소득액을 변경 또는 정정한다.

- (2) 분리확인에 대하여는 조세기본법 제180조 1항 2호 b의 경우에 소득이 낮거나 또는 약 40DM보다 높은 경우에 한하여 소득액을 변경 또는 정정한다.

第4條〔投資補助金の 變更 또는 訂正〕 투자보조금결정은 투자보조금이 약 20DM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 수령자에 불리하게 변경 또는 정정된다.

第5條〔貯蓄利益金과 住宅建設獎勵金の 返還請求〕 저축이익금, 주택건설 장려금 및 저축이익금의 이자는 반환청구가 20DM에 달한 경우에만 반환을 청구한다.

第6條〔廢止〕

第7條〔租稅義務終了시의 自動車 등의 租稅〕 자동차 등의 조세의무가 종료된 경우에 조세의무의 종료가 납부기한내에 이루어진 때의 조세는 새로 확정될 세액이 50DM 이하인 경우에는 조세를 면제한다. 동일한 자동차 등과 동일한 조세의무자에 대하여 동시에 조세가 변경된 세액으로 새로 확정된 경우에는 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第8條 [切算] (1) 토지세와 조세상의 부대급부이외의 조세는 조세의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DM단위로 절산하여 확정한다. 납세신고에서는 10독일페니히 단위로 계산한다.

(2) 조세상환, 조세환급 및 투자보조금은 DM단위로 확정한다.

(3) 저축이익금 및 주택건설장려금의 계산은 각 저축계약에 대하여 1년에 부담하였던 비용총액의 DM단위와 그로부터 발생한 프리미엄의 10페니히단위로 절산하여 계산한다.

(4) 이상과 다른 절산규정은 조세법률의 적용을 방해받지 않는다. 제1항과 제2항의 절산규정은 그밖에 관세, 소비세 유럽공동체의 법률문서에 기초한 조세 및 법인세의 환급 및 자본수익에의 상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第9條 [切算施行令의 取消] 연방관보 제3부 목차번호 610-4-3에서 공포한 정리법문상의 절산시행령은 폐지한다.

第10條 [베를린(대상없음)]

第11條 [效力發生] 이 시행령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第二部 財政法院法】

第 1 編 法院組織

第 1 章 法院¹⁾

第1條 [財政裁判管轄權²⁾의 獨立性] 재정재판관할권은 행정관청으로부터 분리된 독립한 특별 행정법원에 의하여 행사된다.

第2條 [財政裁判管轄權의 法院의 種類] 재정재판권을 가진 법원은 다음과 같다.

주에서는 주고등법원으로서의 재정법원(Finanzgericht).

1) 獨逸의 各種 法院

독일에는 여러 최고법원을 두고 있다. 연방헌법재판소 이외에 연방대법원, 연방노동법원, 연방행정법원, 연방사회법원 및 연방재정법원이 그것이다. 이들은 서로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 연방헌법재판소도 특정한 헌법사건에서 다른 연방대법원의 判決을 변경할 수 있을 뿐이지 그 지위가 上位인 것은 아니다. 이들 연방최고법원들간의 判決을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聯合部(gemeinsamer Senat)가 구성된다(독일기본법 제95조). 그리고 각 최고법원은 당해 연방최고법원의 判決을 통일하기 위하여 大合議部 또는 大裁判部(große Senat) 또는 單一大裁判部를 둔다. 이외에 영업상의 권리보호사건을 위한 연방재판소가 연방대법원 아래에 설치되어 영업상의 무체재산권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고(연방특허법원) 연방대법원의 하급법원으로 군사형사법원의 설치가 기본법에 규정(同法 제196조 1항 2항)되어 있다.

또한 위의 연방최고법원의 하급법원으로는 各州의 각급법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州의 법원이 최종심은 아니다. 그러나 독일기본법은 반드시 三審制를 통하여 연방대법원에 上告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밖에 독일에는 다양한 법원의 설치가 허용되는데 이를테면 上告審을 연방행정대법원으로 하는 연방징계법원 및 연방소청법원 등이 있다.

2) 財政裁判管轄權

특별행정법원의 성질을 가진 재정법원에 의하여 행사되므로 역사적으로는 재정재판관할권은 행정재판관할권에 속한다. 따라서 재정재판권은 행정재판권의 특별한 부분으로 공법상 분쟁의 특별한 부분에 미친다. 이 특별한 부분은 公法上的 公課事件 및 그에 관련된 사건을 말한다.

연방에서는 뮌헨에 소재하는 연방의 연방재정법원(Bundesfinanzhof).

第3條 [財政法院의 設置, 移轉, 廢止] (1) 다음에 언급한 사항은 법률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1. 재정법원의 설치 및 폐지
2. 법원소재지의 이전
3. 법원관할구역의 변경
4. 둘 이상의 재정법원의 관할구역에 대한 재정법원에서의 개별 사물관할³⁾ (Sachgebiet)의 지정
5. 다른 장소에서의 재정법원의 개개의 재판부 설치
6.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의한 규정을 하고 있는 경우, 관할권이 종전 규정에 의하지 않는 경우, 다른 법원에서의 계속소송의 이송

(2) 둘 이상의 주는 공동의 재정법원 또는 하나의 재정법원의 공동재판부의 설치 또는 주의 관할지역을 초월하여 법원의 관할구역의 확대 및 개개의 사물관할을 위해서도 협정할 수 있다.

第4條 [法院組織法の 適用] 재정재판관할권을 가진 법원은 법원구성법 제2편의 규정을 준용한다.

第5條 [財政法院의 構成] 4) (1) 재정법원은 법원장, 부장판사 및 필요로 하는

3) 事物管轄

본항은 비용절약을 위하여 특별한 분야에 대한 재판을 재판가능한 다수의 재정법원의 관할구역에서 하나의 재판부 또는 특별재판부에서 재판하도록 하는 것이다. 전문분야로는 각주에 따라 관세사건, 특별소비세사건, 전매사건 등으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다.

4) 財政法院의 構成

① 法院長 : 1개 재정법원에는 1인의 法院長을 두어야 한다. 법원장은 법관이다. 법원장은 司法行政을 관장한다.

② 部長判事와 判事 : 재정법원법은 직업법관과 명예직재판관으로 구별된다. 본조 1항은 직업법관만을 규정한 것이다. 부장판사는 재판부의 재판장이 된다. 직업법관만이 법원의 구성원이 되고 명예직재판관은 재판에 관여하기는 하지만 조직상의 의미에서 법원에 속하지 않는다.

기타 법관으로 구성한다. 하나의 법원에 하나의 재판부만 존재하는 때는 부장판사를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

- (2) 재정법원에는 재판부⁵⁾를 설치한다. 관세사건, 소비세사건 및 재정전매사건은 특별 재판부에서 총괄한다.
- (3) 재판부는 단독재판관이 결정하지 않는 범위에서 3인의 법관과 2인의 명예직 법관⁶⁾(Ehrenamtliche Richter)의 합의부에서 재판한다. 구두변론 이외의 결정(Beschluss) 및 가결정(제90조 a)에는 명예직법관은 관여하지 않는다.
- (4) 각 주는 법률로 단독법관의 판결에 대하여 2인의 명예직법관이 관여케할 수 있다. 이 경어에는 3항 2단의 적용을 방해받지 않는다.

第6條 [訴訟의 單獨法官에의 委任] (1) 재판부는 다음의 경우에 그의 구성원의 1인에게 단독법관으로서 판결을 하도록 소송을 이송할 수 있다.

- 1. 사건이 사실상으로나 법률적으로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 때
- 2. 법률사안이 기본적으로 중요하지 않는 경우
- (2) 소송은 재판부의 구두변론이 행해지기 전에는 단독법관에게 위임할 수 없다. 다만 留保判決, 一部判決, 中間判決이 행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단독법관은 법률사안이 기본적으로 중요하거나 또는 그 사건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으로 특별히 어렵게 된 절차상의 근본적인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소송을 재판부에 환송할 수 있다.
- (4)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결정은 다룰 수 없다. 위임부작위는 상고로 구제받을

5) 裁判部構成(合議部)

재판부는 개개의 소송사건에 대하여 재판할 재판단위이다. 재판부구성은 필수적이다. 관세, 특별소비세, 재정독점에 대하여는 특별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다.

6) 名譽職 法官

명예직 법관은 구두변론 이외의 결정에는 관여하지 않지만 구두변론에 기초한 결정과 모든 예비결정과 판결에 관여한다. 다만 명예직법관의 법원의 법원 직원의 제척(제15조 1항), 종전상태로의 회복(제56조 4항), 제3자소환(제60조 4항), 대리권자의 선임(제62조 1항 2단), 집행의 정지(제69조 3항)에 대한 관여는 고려되지 않는다.

수 없다.

第7條 [削除]

第8條 [削除]

第9條 [削除]

第10條 [聯邦財政法院의 構成] 7) (1) 연방재정법원은 법원장 및 부장판사 및 필요한 수의 법관으로 구성한다.

(2) 연방재정법원에는 재판부를 설치한다. 이 경우 제5조 2항 2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연방재정법원의 재판부는 5인의 법관의 합의부에 의해서 재판을 한다. 구두 변론을 요하지 않는 결정에서는 3인의 법관의 합의부에 의해서 재판을 한다.

第11條 [大裁判部] 8) (1) 연방재정법원에는 대재판부를 설치한다.

7) 聯邦財政法院의 構成

(1) 법관

① 법원장 : 1인의 법원장을 둔다.

② 부장판사, 판사 : 연방재정법원의 법관은 법관선거위원회와 공동으로 연방법무부장관이 선출하고 연방대통령이 임명한다.

(2) 재판부

재정법원과 동일

8) 大裁判部

대재판부는 연방재정법원에 설치된 것으로 다른 모든 연방최고법원의 규정과 마찬가지로 통일적인 판결을 위하여 이 제도를 두고 있다. 대재판부는 연방재정법원장과 의장단에서 매2년마다 선출된 6인의 법관으로 구성한다. 대재판부의 법관은 통상적으로 법관직을 떠날 때까지 중임된다. 그 이유는 대재판부의 판결의 안정성 내지 계속성을 유지하려는 데에 기인한다. 우리나라는 大法院에 司法行政에 관한 사항을 주로 결정하는 大法官會議(헌법 제104조 3항)와 司法機能을 수행하는 大法官全員の 2/3이상으로 구성하고 대법관이 재판장이 된 大法官全員會議體가 있다(법원조직법 제7조). 대법관의 심판권은 대법관전원합의체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특히 명령, 규칙의 위헌위법결정,

- (2) 법문제에 있어 한 재판부가 다른 재판부 또는 대법정의 재판과 다른 재판을 행할 경우에는 대재판부가 재판한다.
- (3) 대재판부에의 제출은 다른 재판을 할 재판부가 선고하는 재판부의 질문에 대하여 그의 법적 견해의 유지를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다른 재판을 한 재판부가 사업할당계획의 변경으로 법적 문제를 더이상 취급할 수 없게 된 때는, 당해 재판부는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다른 재판이 이루어진 경우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게 된다. 질문 및 대답에 대해서는 곧대 재판부가 판결에 필요한 정원으로 결정으로 재판한다.
- (4) 선고를 하는 재판부는 그 견해에 따라 법의 형성 또는 통일적 재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의의를 가지는 문제를 재판하기 위하여 대법정에 제출할 수 있다.
- (5) 대재판부는 법원장 및 법원장이 부장이 아닌 재판부의 각 1인의 법관으로 구성한다. 법원장에게 유고가 있는 때는 법원장이 속하는 재판부의 1명의 재판관이 이에 대신한다.
- (6) 정원 및 대리인은 사무년도 간부회가 이를 임명한다. 대재판부에서 의장은 법원장으로 한다. 법원장에게 유고가 있는 때는 근속년수가 가장 긴 대재판부법관으로 한다. 가부동수의 경우는 의장이 투표한다.
- (7) 대재판부는 법률문제에 대해서만 재판한다. 대재판부는 구두변론을 하지 않고 재판할 수 있다. 대재판부의 재판은 현존사건에 대하여 선고재판부를 구속한다.

第12條 [事務局] 각 법원에는 사무국(Geschäftsstelle)을 설치한다.

사무국에는 필요한 수의 서기관(Urkundsbeamte)을 둔다.

第13條 [司法供助 및 行政供助] 일체의 법원 및 행정관청은 재정재판관할권을 가지는 법원에게 사법공조(Rechtshilfe) 및 행정공조(Amtshilfe)를 한다.

총선 대법원 판례의 변경은 반드시 이 합의체에서 심판해야한다. 물론 대법원에 部를 둘 수 있다. 일반부에는 民事部, 刑事部, 특정부에는 행정, 조세, 노동, 군사 특허부가 있다.

第 2 章 裁判官

第14條 [終身法官] 9) (1) 재판관은 제15조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종신 임명된다.

(2) 연방재정법원의 판사는 만 35세이상이어야 한다.

第15條 [試補法官] 10) 재정법원에는 시보법관(Richter au 재정법원 Probe) 또는 위탁에 의한 법관¹¹⁾을 임용할 수 있다.

9) 終身法官

독일법관법(Deutsche Richtergesetz)은 직업법관과 명예직법관을 구분하고 있으며 본조는 직업법관에 관한 규정이다. 이 법관은 연방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종신으로 임명될 수 있으며 이는 법관의 완전한 인적 독립을 위한 것이다. 독일기본법 제97조 2항은 “정원내의 전임판사는 법원의 판결과 법률에 규정된 사유와 방식에 의해서만 그 의사에 반하여 임기 전에 면직되거나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정직되거나 他職에 전출되거나 은퇴할 수 있다. 立法權은 停年制를 규정할 수 있고 정년에 달한 終身判事를 은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0) 試補法官

시보법관의 임명에는 일반적인 요건 특히 법관자격이 있는 자라야 한다. 시보법관으로 선임되는 시보기간은 최소3회 최고5년이다. 시보법관은 물적으로는 완전히 독립되나 인적 독립은 경우에 따라 제한된다.

11) 委託에 의한 法官

위탁에 의한 법관의 임명에는 일반적인 요건 특히 법관자격을 필요로 한다. 임명장에는 “위탁에 의한 법관관계”에 의하여 선임되었음을 明記해야 한다. 늦어도 2년후에 종신직 법관에 임명되거나 선출을 위한 법관선거위원회에 회부된다. 위탁에 의한 법관은 시보법관처럼 物的으로는 완전히 독립되어 있으나 人的 독립은 제한되어 있으므로 명기간안에 면직될 수도 있다.

*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의미의 시보법관이나 위탁에 의한 법관제도는 없다. 다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의 일정기간을 수료한 자에 대한 判事試補制가 있으나 이것은 연수차원에서 행해진 것으로 독일의 시보법관과는 다르다.

第 3 章 名譽職法官

第16條 [名譽職法官의 地位] 12) 명예직법관은 구두변론 및 판결의 발견(Urteilsfindung)에 법관과 동일권리를 가지고 관여한다.

第17條 [名譽職法官의 委屬要件] 명예직법관은 독일인이여야한다. 재판관은 만30년 이상의 자로 그 선임직전의 연도중 주소 혹은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법원의 관할구역내에 가지고 있어야한다.

第18條 [名譽職裁判官의 除斥事由] 13) 다음의 각호의 자는 명예직재판관의 직무로부터 제척된다.

1. 판결에 의하여 공직취임능력을 상실했거나 고의범으로 6월이상의 자유형에, 또는 최근 10년내에 조세법, 전매법행에 의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된 자. 다만 선고에 적용되는 법률이 과료만을 부과하는 범행을 제외한다.
2. 공직취임능력상실의 결과가 될 수 있는 범행때문에 公訴가 제기되어 있는 자

12) 名譽職法官

명예직법관은 직업법관과 마찬가지로 독립이고 오로지 법률에만 복종한다. 따라서 그를 선출한 직업대표단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인적 독립에 관한 기본법 제97조 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재임기간 이전의 면직은 제21조의 규정에 따른다. 명예직법관은 公職務에 취임하나 공무원은 아니다. 왜냐하면 공무원관계로 선출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조직상 의미에서의 법원구성은 아니다.

명예직재판관은 구두변론(제90조), 판결의 發見(103조), 구두변론에 기초한 결정(제90조 4항), 구두변론없이 판결한 경우(제190조 2항) 등에 관여한다. 직업법관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며 서류열람권,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질문할 수 있는 권리(제93조 2항)를 가진다. 다만 그는 판결문작성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判決文에 서명하지는 않는다. 또한 명예직법관은 公判, 구두변론개시전에 기소장, 소장 등의 文書열람권은 없다.

13) 名譽職裁判官의 除斥事由

본조는 명예직법관의 제척사유 4항에서 말하는 금전채무는 조세채무에 한한 것은 아니다. 조세기본법 제332조의 선서에 대신하는 보증의 경우는 특별히 규정한 것이다.

3.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재산처분을 제한받고 있는 자
- 4 최근 3년간, 금전채무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 선서에 대신한 보증을 하였거나 이 기간중에 관련된 선서에 대신한 보증의 강제때문에 구류를 명령받고 있는 자
5. 주 입법기관에 대한 선거권을 가지지 않은 자

第19條 [名譽職裁判官 任命不適格者] 다음에 언급한 자를 명예직재판관에 임명할 수 없다.

1. 연방의회, 유럽의회, 주의 입법단체,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의 구성원
2. 법관
3. 연방 및 주의 세무행정의 공무원, 사용인
4. 직업군인 및 기한부군인
5. 변호사, 공증인, 변리사, 세무사, 세무사가 아닌 세무회사의 이사, 세무 대리사, 공인회계사, 공인장부검사사(vereidigter Buchprü재정법원er) 및 직업으로 타인의 법률사건을 처리하는 자¹⁴⁾

第20條 [名譽職裁判官에의 任命拒絶權] (1) 다음에 언급하는 자는 명예직재판관직에 임명된 것을 거절할 수 있다.

1. 목사 및 종교봉사자(Religionsdiener)
2. 배석판사 및 다른 명예직재판관
3. 8년간 재정법원의 명예직재판관으로서 근무한 자
4. 의사, 간호원, 산파
5. 약제상의 사용인을 사용하지 않은 약국
6. 연령 만65세에 달한 자

(2) 특별히 부적합한 경우에는 전항외에 신청에 의하여 취임을 면할 수 있다¹⁵⁾.

14) 任命不適格者

본조는 독일연방공화국의 행정법원법 Verwaltungsgerichtsordnung 제22조 제5항에서 규정한 명예직행정재판관의 除斥事由와 동일하다. 특히 변호사, 세무사 등의 재정법원에의 명예직재판관 위촉을 금지한 것은 이들 직업인들의 경우에는 재정법원이 취급하는 사건과 이해관계충돌의 위험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第21條 [名譽職裁判官職 解免의 事由] (1)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명예직재판관직에서 해면되어야한다.

1. 제17조에서 제19조까지의 각 규정에 따라 임명할 수 없게 되었거나 또는 더이상 임명할 수 없는 자
 2. 제20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거절 사유를 주장하는 자
 3. 자기의 직무상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4.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신적 또는 육체적 능력을 더이상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
 5. 법원 관할구역내의 주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포기하는 경우
- (2) 특히 부적합한 경우에는 전항이외에 신청에 의하여 직무수행을 면할 수 있다.
- (3) 각 사무년도에 미리 幹部會가 지정한 재판부가 제1항 1호, 3호 및 4호의 경우에는 재정법원장의 신청에 의하여 제1항 2호 및 5호, 제2항의 경우에는 그 명예직재판관의 신청에 의하여 재판한다. 재판은 각 명예직재판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결정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 (4) 제20조 2항의 경우에는 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5) 제18조 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소된 경우, 형사피고인이 면소 또는 무죄를 선고를 받을 확정력을 가진 경우에는 명예직재판관의 신청에 의하여 제3항에 의한 재판을 취소해야한다.

第22條 [名譽職裁判官의 選出] 명예직재판관은 각 재정법원에 대하여 후보자 명부(제25조)에 따라 선거위원회에서 4년의 임기로서 선출된다.

第23條 [選舉委員會] (1) 각재정법원마다 각 명예직재판관 선거위원회를 설치

15) 任命拒絶權

본조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해면된다.

해명절차는 명예직재판관의 신청(제2호, 제5호) 또는 법원장의 신청(제1호, 제제3호, 제4호)에 의하여 진행된다. 신청에는 신청사유를 기재하고 이에 대한 재판은 법원장에 의해서 一年의 업무기간으로 임명된 재판부에서 재판한다. 재판은 명예직재판관의 서면 또는 구두의 의견을 청취한 후 결정으로 재판한다.

한다.

- (2) 위원회는 위원장인 재정법원장, 상급재정관리국(Oberfinanzdirektion)에 의하여 결정된 주 재정관리부의 공무원, 명예직재판관으로서 임명요건을 충족한 7인의 신임자(Vertrauensleute)로 구성한다. 신임자, 그 7인의 대리인은 주의회 또는 주의회에 의하여 결정된 주의회위원회 또는 주법률에 따라 4년의 임기로 선정된다. 제3조 2항의 경우 및 한 주내에 둘 이상의 상급재정관리국의 관할구역내에 하나의 재정법원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주재정관리부의 공무원의 임명에 대한 상급재정관리국의 관리권 및 신임자의 선거에 대한 주의 관할권은 당해 재정법원의 소재지에 의한다. 이들 경우에 주입법부는 각 관련상급재정관리국이 위원회에 재무행정부의 1인의 공무원을 파견하는 것 및 각 관련주는 2인 이상의 신임자를 임명할 것을 정할 수 있다.
- (3) 위원회는 적어도 위원장, 재무행정부의 1명의 대표자, 및 3명의 신임자가 출석한 경우에는 결의할 수 있다.

第24條 [議員數의 決定] 각 재정법원에 필요한 명예직재판관의 수는 각 명예직재판관을 그 연도에 최장 12일의 정기개정일에 초치되도록 재정법원장이 이를 정한다.

第25條 [候補者名簿] 명예직재판관의 후보자명부는 각 4년마다 재정법원장이 작성한다. 재정법원장은 미리 직업대표부의 의견을 청취한다. 후보자명부에는 제24조에 따라 선정될 명예직재판관의 3배의 수를 수록해야한다.

第26條 [選任節次] (1) 위원회는 명예직법관의 필요한 수를 후보자명부에서 최소한 투표의 2/3이상의 다수결로서 선정한다.

(2) 종전의 명예직재판관은 새로운 선임이 끝날 때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한다.

第27條 [名簿 및 補助名簿] 16) (1) 재정법원의 간부회는 사무연도 개시전에

16) 補助名簿

① 보조명부의 작성은 명예직재판관의 예견할 수 없는 장애발생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처음의 심리에서 장애가 발생하여 참여치 못한 명예직재판관은

명부를 작성하여 명예직재판관의 소집순서를 정한다. 각 재판부에 대하여 12인이상의 성명을 기재한 명부를 작성한다.

- (2) 예견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의 대리인소집을 위하여 법원소재지 또는 그 인근에 거주하는 명예직재판관의 보조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第28條 [削除]

第29條 [補償] 17) 명예직재판관 및 신임자(제23조)는 명예직재판관의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다.

第30條 [秩序罰] (1) 충분한 사유(Entschuldigung)가 없이 적법한 시기에 법정에 출석하지 않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의무를 회피하는 명예직재판관에 대하여 질서금(Ordnungsgeld)을 확정할 수 있다¹⁸⁾. 동시에 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 (2) 전항의 재판은 재판장이 한다. 재판장은 후에 면책사유¹⁹⁾가 발생한 경우에 그 다음의 심리에도 참여할 수 없다.

② 보조명부는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 작성할 수 있으며 장애발생은 예상할 수 없는 경우라야 한다.

17) 補償

명예직재판관은 명예직이기 때문에 보수는 없고 보상만 받는다. 명예직재판관보상법에는 1시간에 6DM의 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여비 및 숙박비 등을 지급한다.

18) 秩序罰의 要件

① 적법한 시기에 출석치 않았을 것 : 늦게 출석한 경우나 완전히 결석한 경우를 포함한다.

② 의무를 회피하였을 것

예컨대 표결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① 이외의 사유로 의무를 이행치 않는 경우

19) 免責事由

면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다. 이 사후취소에 관한 기간제한은 없기 때문에, 설령 질서금이 부과된 후에 납부한 경우에도 취소가 가능하다.

는 이 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第 4 章 司法行政

第31條 [勤務監督] 20) 법원장은 법관, 공무원, 사용인 및 작업원의 근무감독(Dienstaufsicht)을 한다.

第32條 [行政事務委託의 禁止] 21) 법원에는 사법행정 이외의 행정사무를 위탁할 수 없다.

第 5 章 財政訴訟方法 및 管轄權

第 1 節 財政訴訟方法

第33條 [財政訴訟方法의 許容] (1) 재정소송방법(Finanzrechtsweg)²²⁾은 다음

20) 勤務監督

법원장의 법관에 대한 근무감독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독한다. 따라서 근무감독처분이 법관의 독립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법관은 이에 대해 취소청구를 할 수 있고 법관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독일법관법의 규정에 따라 재판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경우에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것인가 근무감독범위내의 것인가를 결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와 같은 한계적인 경우를 위하여 職務法院(Dienstgerichte)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직무법원에서는 법원장이 행한 문제된 조치에 대한 심사를 한다.

21) 재정법원의 조직상의 독립을 보장한 규정이다.

22) 財政裁判方法(Finanzrechtsweg)

재판 또는 소송의 방법 또는 관할의 법률용어는 독립한 법관에 의하여 구성되고 절차에 관한 특별한 법적 보장된 절차에 의하여 행해진 법원내의 제소를 말한다. 사안의 성질에 따라 이종다기의 법원에 관할권을 각각 인정한다. 재정재판권의 범위는 일반행정재판권으로서 재정법원법이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33조에서 규정한 재정법원의 재판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일반행정재판권의 관할에 속한다. 행정법원법 제40조는 헌법상 분쟁이외의 공법상의

에 언급된 분쟁에 대하여 인정된다.

1. 公課가 연방의 입법에 관련되고 연방재정관청 또는 주재정관청에 의하여 관리되는 한도에서 公課사건에 관한 공법상의 분쟁.
 2. 제1호에 언급된 이외의 사건에서 행정행위의 집행에 관한 공법상의 분쟁. 다만 행정행위가 연방재정관청, 주재정관청에 의하여 조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집행되고, 또한 다른 재판방법이 명기하여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3. 세무사법 제1편, 제2편 제2장, 제6장 및 제3편 제1장에 정해진 사건에 대한 공법상 및 직업법상의 분쟁.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와는 다른 공법상의 분쟁. 다만 이 분쟁에 대하여 연방법률 또는 주법률에 의하여 재정재판방법이 개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2) 이 법률에서 말하는 공과사건이란 공과의 관리, 공과법상의 규정의 재정관청의 적용과 관련되는 사건으로 貨物의 越境거래에 대한 금지, 및 제한의 업무에 대한 연방재정관청, 베를린 州의 조치를 포함한다. 재정전매관리사건은 특별세사건과 동일시한다. 제1항의 규정은 형벌 및 과료절차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第34條 [削除]

第 2 節 事物管轄²³⁾

분쟁에 대한 일반조항이다. 따라서 이 의미에서의 公法上的의 紛爭은 헌법상 분쟁 및 민법상 분쟁과 구별된다. 이중에서 재정재판은 행정법원법 제40조가 규정한 공법상 분쟁 중 公課에 관련된 사건에 관할권을 갖는다. 공법상 분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헌법적 성질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주로 公課와 관련하여 행정주체가 우월한 지위에서 갖는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와 관련된 紛爭은 물론이고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의 결과로서 생긴 분쟁 및 그밖에 행정주체와 대등한 당사자간의 공법상의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을 포함한다.

23) 事物管轄

본절에서 말하는 관할은 訴訟法上的의 관할로서 異種多技의 법원간의 재판권분

第35條 [財政法院의 事物管轄] 재정법원은 재정재판방법이 인정되는 일체의 분쟁에 대하여 제1심으로 재판을 한다.

第36條 [聯邦財政法院의 事物管轄] 연방재정법원은 다음에 언급한 상소에 대하여 재판한다.

1. 재정법원의 판결 및 재정법원의 판결과 동등한 재판에 대한 상고
2. 재정법원, 재판장 또는 보고자의 다른 재판에 대한 항고

第37條 [削除]

第 3 節 土地管轄

第38條 [財政法院의 土地管轄] (1) 소가 제기된 관청의 소재지의 관할구역내의 재정법원이 토지관할권을 가진다.

(2) 제1항에 언급된 관청이 최고재무관청인 때는 원고가 주소, 주된 사무소 또는 거소를 가진 관할구역내의 재정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 관세, 소비세 및 전매특별세에 대해서는 법률이 公課에 대하여 정한 과세요건이 실현되는 관할구역내에 있는 재정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 원고가 최고재정관청의 관할구역내에 주소, 주된 사무소 및 거소를 가지지 않는 때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재정관청의 소재지가 그 관할구역외에 있는 때는, 토지관할권은 제1항의 규정과는 달리 관할구역의 상황에 의한다.

장을 말한다. 개개의 법원측에서 보면 법원이 행사할 수 있는 재판권의 범위가 문제되고, 구체적인 사건이나 관계인측에서 보면 그 사건 및 관계인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원(관할법원)의 문제가 대두된다.

관할은 표준에 따라 事物管轄, 土地管轄, 職分管轄 등으로 구분하고 사물관할은 관할구역을 같이하는 異種의 제1심법원 중 어느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로서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토지관할은 同一審級의 법원간의 관할을 地域에 따라 분배한 것으로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第39條 [聯邦財政法院에 의한 法院의 指定] (1) 다음 각호에 언급된 경우에는 연방재정법원이 관할재정법원을 지정한다.

1. 관할권을 가진 재정법원이 개개의 경우에 재판권의 행사를 법적으로나 사실상 지장을 받고 있는 경우
 2. 어떤 재정법원이 당해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는가에 대하여 경계를 달리하는 법원관할구역이 불확실한 경우
 3. 둘이상의 재정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고 선고되어 확정력을 가지는 경우
 4. 둘이상의 재정법원중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을 갖는 법원이 관할권을 갖지 않는다고 선고되어 확정력을 발생하고 있는 경우
 5.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할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2) 소송관계인 및 당해 소송에 대하여 지정을 받은 재정법원은 연방재정법원에 소송할 수 있다. 연방재정법원은 구두심리를 거치지 않고 재판할 수 있다.

第 2 編 節次

第 1 章 訴訟의 種類, 當事者適格, 訴訟의 要件, 訴訟의 拋棄

第40條 [取消訴訟, 義務履行訴訟] 1) (1) 소송에 의하여 행정행위의 취소, 제

1) 取消訴訟, 義務履行 訴訟

본조 제1항은 취소소송과 의무이행소송의 두 종류를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이들 소송의 허용성에 대하여 그리고 제3항에서는 公課權利者를 위한 소송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1) 取消訴訟

행정청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처분 또는 재결)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행정소송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행정청의 公定力을 가진 공권력행사나 그 거부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함으로써 그 효력을 원칙적으로 기왕에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내용의 형성소송으로서 행정소송 내지 조세소송의 유형 중 가장 대표적인 소송형태이다.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에서 규정하는 소송의 종류와 다른 점은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에서는 抗告訴訟을 규정하고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법확인소송을 抗告訴訟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독일 행정법원법 제40조에서 취소소송과 의무이행소송(학자에 따라서는 의무화소송이라고도 함 Verpflichtungsklage)을 규정하고, 제41조에서 확인소송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독일의 Anfechtungsklage(제40조)는 取消訴訟으로 이해된다. 제40조의 취소소송에 의하여 취소대상이 되는 행위는 예컨대 확정된 조세결정이 이에 해당된다.

(2) 義務履行訴訟

거부된 행정행위 및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 거부된 행위의 발령 및 부작위된 행위의 발령을 구하는 소송이다. 이 경우의 소송은 행정행위를 발령토록 선고하는 소송형태이기 때문에 이행소송에 속한다. 만일 행정청이 행정행위를 발령토록 한 청구를 거부할 경우에는 (1)에서 말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직접 행정행위를 발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소송도 가능하다.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상으로는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거부처분 또는 不作爲에 대해서는 抗告訴訟을 제기해야 한다. 다만 우리 행정소송법 제30조에서는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을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밖의 관계행정청을 羈束한다고 규정하고,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한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

100조 2항의 경우에는 행정행위의 변경(취소소송) 및 거부된 행정행위 또는 부작위한 행정행위의 실행을 위한 선고(의무이행소송), 또는 기타 급부에 대한 선고는 소송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다.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는 소송은 원고가 행정행위로서 또는 행정행위의 거부, 부작위한 기타의 급부에 의하여 그 권리의 침해를 받은 것을 주장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 (3) 연방 또는 주재무관청이 공과권리자를 위하여 공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하는 때는 연방 또는 주가 당해특별세, 또는 그 일부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第41條 [確認訴訟] 2) (1) 원고가 신속한 확인에 대하여 정당한 이해관계를 가

한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다. 만일 행정청이 이러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심 受訴法院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決定으로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내에 이행치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제34조). 이는 우리 행정소송법이 행정청에 대하여 직접 이행토록 하는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는 대신 간접강제의 방법을 취했다고 볼 수 있다.

(3) 訴의 許容性

취소소송과 의무이행소송은 행정청의 행정행위, 거부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그의 권리가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원고의 권리가 실제로 침해되었는가의 문제는 訴訟要件에는 해당되지 않고 나중의 심리의 대상에 속한다. 심리결과 원고의 주장의 이유없으면 棄却裁判을 받는다.

2) 確認訴訟

(1) 意義

확인소송은 하나의 절차상의 제도로써 판결에 의한 확인으로 특정한 사안의 법률적인 청구에 대한 특별한 권리를 구제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다.

(2) 確認訴訟의 對象

확인소송에는 ① 법률관계의 존재 또는 부존재에 대한 확인, ② 행정행위의 무효확인, ③ 예방확인소송 등이 있다.

(3) 確認訴訟의 許與 與否

확인소송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조세법에서 예방확인소송의 허용여부이다. 예컨대 납세할 수 없는 일정한 매상액에 관련된 납세의무자가 미리 이 일정한 매상액에 해당되는 납세를 할 수 없음을 확인하는 청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에 관해서는 의견대립이 있으나 소극설이 多數說이다. 우리나라

지는 때는 법률관계의 존부 또는 행정행위의 무효확인을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다(확인소송).

- (2) 전항의 확인은 원고가 형성의 소나 급부의 소에 의하여 자기의 권리를 추구할 수 있거나 또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될 수 없다. 행정행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42條 [取消請求不能의 行政行爲] 3) 조세기본법에 기초하여 발부된 변경결정 및 후속결정은 재판외의 전치절차에 있어서 취소할 수 있는 이상의 범위에서는 다룰 수 없다.

第43條 [訴의 併合] 수개의 提訴는 그것이 동일피고에 대한 것이며 서로 관련되고 또한 동일법원이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원고에 의하여 하나의 소로서 병합되어 소추될 수 있다.

라는 무효확인소송, 부작위확인소송을 항고소송의 형태로 이해하여 취소소송과 함께 규정하고 있다. 다만 독일 재정법원법 제41조 2항은 다른 소송형태를 통하여 자기의 권리를 추구할 수 있거나 추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확인소송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행정소송법의 규정과 학설은 이러한 제한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독일 재정법원법 제41조 2항의 규정은 행정행위를 형성의 소, 이행의 소, 부작위의 소를 통하여 다룰수 있는 경우에는 확인의 소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이들 이행의 소 등이 확인의 소의 내용을 이미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訴訟과 별도로 확인의 訴를 독립하여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다.

3) 取消請求不能의 行政行爲

원칙적으로 다룰 수 없는 범위에 대하여 형식상 및 실질적 내용을 정하여 관계인을 구속하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행정소송의 대상은 전심절차가 요구된 경우, 전심절차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전심절차에서 행한 裁決이 行政訴訟의 대상이 된다. 다만, 예컨대 行政審判節次終了후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訴訟係屬된 상태에서 行政審判 내지 行政訴訟의 對象이 된 處分을 행정청이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처분에 대하여 다시 처음부터 行政審判을 거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請求의 基礎가 同一하면 간단히 訴의 변경을 통하여 심리가 진행된다. 이러한 경우는 독일도 마찬가지로 예컨대 세무관서에 의한 조세결정처분이 재판외의 전치절차를 거친후 변경된 경우인데 이때에는 제42조의 규정 그대로 적용할 수 없게 된다.

第44條 [裁判外의 權利上의 救濟] 4) (1) 재판외의 권리상의 구제가 인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45조 및 제46조의 각 규정을 제외하고, 재판외의 권리구제의 前置절차가 전부 또는 일부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소송이 허용된다.

(2) 전치절차 후의 취소청구의 소송목적물은 재판외의 법률상 구제결정에 의하여 알게 되었던 原行政行爲로 한다.

第45條 [飛躍訴訟] 5) (1) 취소소송은 재판외의 권리구제에 관하여 결정할 관청

4) 裁判外의 權利救濟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청에 대한 處分, 不作爲 등에 대한 前置節次를 두는 이유는 ① 행정청 스스로 행정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구제함과 동시에 行政의 自己統制的인 의의에서의 行政의 自律性을 보장하고 ② 복잡하게 발전된 행정의 어려운 문제를 전문성과 기술성을 가진 행정청이 신속 적절하게 해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법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데에 있다. 재판외의 권리구제절차에 관해서는 조세기본법 제7편에서 규정하고 제347조와 제348조, 제349조에서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제347조에서는 권리구제의 허용에 대해서, 제348조에서는 異議申請에 대해서, 제349조에서는 訴願에 대해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行政訴訟法에서도 取消訴訟 등에서는 원칙적으로 前審節次로서 行政審判을 제기하도록 하고 있다(제18조). 다만 行政訴訟에 대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별한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제8조), 재정법원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조세쟁송도 일반 행정사건과 같이 취급하고 있으나 다만, 國稅基本法에서는 行政審判法 및 行政訴訟法에 대해서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즉 國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國稅廳長에 대한 審査請求와 國稅審判所長에 대한 '審査請求'의 二審制度로 되어 있으나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에 앞서 異議申請을 할 수 있도록 규정(국세기본법 제61조 1항 단서, 제66조 1항)하고 있다. 關稅稅에 대해서도 國稅에 대한 行政審判과 유사하게 규정(관세법 제43조의 7)하고 있고 地方稅에 대해서는 異議申請과 道知事 또는 내무장관에 대한 審査請求가 인정된다. 국세, 관세, 지방세 모두 監査院에 대한 심사청구가 인정되며, 監査院에 대한 심사청구만으로 모든 前置節次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된다(장재식, 조세법, 1993, 573면).

5) 飛躍訴訟

이 소장의 송달 후 1월 이내에 법원에 동의한 때는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적법으로 한다. 2인이상의 권리자중, 1인은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다른 권리자는 직접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먼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한다.

(2) 法院은 전항에 의하여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소송을 형식 또는 범위에 따라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 그밖의 사건해명이 필요하고 또한 관계인의 이해를 고려할 때에 송부가 적절한 때에는 행정청의 서류가 법원에 접수된 후 3개월 이내에 늦어도 소장송달 6개월 이내에 결정으로 전치절차실시를 위하여 관할행정청에 송부할 수 있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다를 수 없다.

(3) 행정청이 제1항의 경우에 동의하지 않거나 법원이 제2항에 의하여 소를 송부한 경우에는, 그 訴는 재판외의 법률상구제로 취급된다.

(4) 그밖에 압류명령의 위법성이 주장된 때에는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고 訴를 제기할 수 있다.

第46條 [不作為訴訟] 6) (1) 재판외의 권리구제에 대하여 충분한 이유를 통지하지 않고 상당기간내에 본안에 대한 결정이 없는 때는 소송은 제44조의 규정과는 달리 전치절차의 종결을 기다리지 않고 적법으로 한다. 이 소송은 재판외의 권리상의 구제제기로부터 6월을 경과하기까지는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사건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6월보다 짧은 기간일 것을 요하는 경우는 이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前置節次를 거쳐야만 하는 것이나, 일정한 경우 예컨대, 행정청이 소장의 송달 후 1월내에 동의한 때에, 2인의 권리자 중 1인이 異議申請을 제기한 경우의 다른 권리자, 그리고 押留命令의 위법성이 주장된 때에는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의 行政訴訟法 제18조 2항에서는 일정한 경우에는 行政審判의 裁決을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를 그리고 3항에서는 일정한 경우에는 行政審判 자체를 제기함이 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6) 不作為訴訟

이의신청 등 裁判외의 權利救濟節次를 밟았으나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에도 재결이 없는 때에는 裁判외의 권리구제제기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裁決을 더 이상 기다릴 필요없이 行政訴訟를 제기하도록 한 규정이다. 우리나라 行政訴訟法에서도 行政審判請求가 있는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裁決이 없는 때에는 行政審判의 裁決을 거치지 않고 訴訟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8조 2항 1호).

제한이 없다. 법원은 연기할 수 있는 지정기간이 경과하기까지 그 소송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이 기간내에 재판외의 권리구제가 인용되거나 이 기간내에 신청에 관련된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때는 당해 소송본안이 해결된 것으로 간주된다.

- (2) 제1항 제2단, 제3단의 규정은 조세기본법 제349조 제3항에 언급한 기관이 당해 행정행위를 할 신청에 대하여 충분한 이유를 통지하지 않고 상당한 기간내에 본안에 대하여 재판하지 않는 것이 주장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第47條 [取消訴訟의 出訴期間] (1) 취소소송의 출소기간은 1월로 한다. 이 기간은 재판외의 권리상의 구제결정의 고지시로부터 기산한다. 제45조 규정의 경우 및 재판외의 권리상의 구제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행위의 고지시로부터 기산한다. 이 규정은 행정행위를 하도록하는 신청이 거부된 경우 의무이행소송에 대하여 준용한다.

- (2) 출소기간은 제정행정행위, 제정결정을 한 관청, 관계인에게 고지한 관청, 또는 후에 당해 조세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게 되는 관청에 대해서는 소송이 기간내에 제기하거나 기록부에 기록한 때는 준수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에 당해 관청은 소장을 지체없이 법원에 移送해야한다.
- (3) 과세기초의 확인 또는 조세산정기준액의 확인에 대하여 제기된 소송이 조세결정을 할 권한을 가진 기관에게 제기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4) 삭제

第48條 [訴權] 7) (1) 영업소득, 영업소득의 통일가격 또는 영업의 부분경제단

7) 訴權

본조는 제40조 2항에서 규정한 취소소송과 의무이행소송의 경우의 특별한 訴權을 규정한 것이다. 이러한 특별訴權은 제40조 2항이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도에서' 제40조 2항을 준용한다는 규정에서 연원한다. 제48조는 소원과 관련하여 訴訟을 영업소득에 관한 단일한 확인결정 및 영업소득의 단일가격인가 또는 제1항의 경우 이외의 단일한 확인결정인가에 따라 구별하고 있다. 제1항의 결정은 訴權을 人的 그리고 物的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제한한 이유는 관여자의 수가 지나치게 많은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위에 관한 통일된 확인결정사건에 있어서 다음 언급한 자는 소송을 제기할 있다.

1. 확인된 금액에 관여하고 있는 자의 범위 및 이 금액의 개개의 관계자에서의 배분방법에 관한 경우

확인에 의하여 배분에 영향을 받은 사원 또는 조합원

2. 1인의 사원 또는 조합원이 무한책임을 지는 문제에 관련된 경우

당해 문제에 대한 확인에 따라 영향을 받는 당해 사원 또는 조합원

3. 기타의 경우

업무집행권을 가진 사원 또는 조합원에 한한다.

(2) 제1항의 경우 이외에 있어서 공동권리자에 대하여 단일적으로 확인결정이 이루어지는 때는 각 공동권리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第49條 [削除]

第50條 [訴訟의 抛棄] 8) (1) 행정행위 發付後 소송의 제기를 포기할 수 있다.

조세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조세가 조세신고서와 다르게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포기를 표시할 수 있다. 포기를 하는 것과 관계없이 제기된 소송은 부적법한 것으로 한다.

(2) 포기는 관할관청에 대하여 서면이나 調書로 표시한다. 포기는 그이상의 표시를 해서는 안된다. 후에 포기가 무효인 것이 주장되는 때는 제56조 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第 2 章 節次總則

8) 訴訟의 抛棄

訴의 포기는 과세절차에 있어 특별한 필요에 의하여 인정된 제도이다. 訴의 포기는 조세의무자에게 특히 현장검사 및 압류와 관련된 조세사건을 가능한 한 신속히 해결하는데 있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조세행정의 입장에서 보면 과세를 신속히 실시함으로써 많은 노력과 시간이 요구되는 권리구제절차를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조세의무자의 訴의 포기는 예컨대 재무관청으로부터 유예의 이익의 허용이 기대될 수도 있다(조세기본법 제222조).

第51條 [除斥 및 忌避] (1) 법원직원의 제척 및 기피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41조에서 제49조까지의 각 규정을 준용한다. 법원직원의 협력으로 업무상 또는 사업상 비밀의 침해, 관계인의 업무활동에 대한 손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도 당해직원을 기피할 수 있다.

(2) 선행행정절차에 협력한 자도 법관, 명예직재판관 또는 서기관으로서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3) 법관 또는 명예직재판관이 당해 사단의 대표이거나 대표였던 경우에는 당해 사단의 이익이 절차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편견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한다.

第52條 [法庭警察 등] (1) 공개, 법정경찰, 법원용어, 審議 및 평결에 관한 법원구성법 제169조, 제171b조에서 제197조까지의 각 규정을 준용한다.

(2) 재무관청이 아닌 관계인이 신청한 경우에도 비공개로 한다.

(3) 세법상의 연수에 종사하고 있는 자도 재판관직의 자격을 가지고, 또한 재판장이 그 참석을 허용하는 한, 평결 및 심의에 참석할 수 있다.

第53條 [送達] (1) 기간을 진행시키는 명령, 재판, 기일의 지정 및 소환장은 관계인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다만 고지한 경우에는 명시규정이 있는 경우에만하여 송달을 요한다.

(2) 송달은 행정송달법의 규정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행한다.

(3) 이 법률의 적용영역에 주소 또는 법인주소를 가지지 않는 자는 요청에 의하여 1인의 송달수령대리인을 선임해야한다. 송달수령대리인이 선임되지 않는 때는 우편물이 배달불능으로 반송되는 경우에도 우편물을 우송한 것을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第54條 [期間進行之 開始] (1) 기간의 진행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행위 또는 재판의 고지 또는 고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시기에 개시한다.

(2) 기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222조, 제224조 2항 및 3항, 제225조 및 제226조의 각 규정을 적용한다.

第55條 [期間의 敎示] (1) 항고소송의 경우에 행정행위가 서면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출소기간은 권리자가 소송 및 소장을 제출할 법원, 관청, 그 소재지 및 준수할 기간에 대하여 서면으로 교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진행은 개시한다. 법원의 재판에 대한 법률상 구제에 대하여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교시가 없거나 올바르지 않은 경우 법률상의 구제의 제기는 제54조 1항의 규정에서 말하는 고지시로부터 1년내에 한하여 적법한 것으로 한다. 다만 그 1년의 기간이 경과하기까지의 제기가 불가항력으로 가능하지 않거나 법률상의 구제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서면에 의한 교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 2항의 규정은 불가항력의 경우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第56條 [地位回復] 9) (1) 누구든지 그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법정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종전의 지위로의 회복이 그에게 허용되어야 한다.

(2) 전항의 신청은 그 사유가 종료된 후 2주내에 이를 제출해야한다. 신청의 이유가 되는 사실은 신청서 제출시나 또는 신청에 관한 절차에서 이를 소명해야한다. 해태된 소송행위는 이 신청기간내에 추완되어야 한다. 이 추완이 행해진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회복이 허용될 수 있다.

(3) 해태된 기간의 종료후 1년후에는 그 신청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1년의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그 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지위회복의 신청에 대해서는 해태된 소송행위에 대하여 심판해야할 법원이 재판한다.

(5) 원상회복에 대해서는 이를 다룰 수 없다.

9) 地位回復

이 제도는 특히 법정에서의 청문권실현에 봉사한다. 자기의 책임없는 사유로 기간 또는 기일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절차법에서 상세히 규정된 요건에 따라 본안에 대한 지체된 소송행위나 의사표시를 하는 지위를 회복해주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법률은 이 조항에 의하여 이미 확정력을 발생한 재판에 대해서도 사후의 확정효력제거의 가능성의 길을 열어놓고 있다.

第57條 [節次の 關係人] 절차의 관계인은 다음 각호에 언급된 자로 한다.

1. 원고
2. 피고
3. 소송참가인(Beigeladene)
4. 절차에 참가하고 있는 관청(제61조 및 제122조 2항)

第58條 [訴訟行爲能力] (1) 다음 각호에 언급하는 자는 소송행위(Verfahrenshandlung) 능력을 가진다.

1. 민법상의 행위능력자
 2. 민법에 의한 한정행위능력자 중에서 민법 또는 공법의 규정으로 소송목적물에 대하여 행위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한다.
- (2) 권리능력있는 사단 및 권리능력없는 사단, 행위무능력자 또는 한정행위능력자, 재산관리의 일체의 경우 및 기타 법인과 유사한 조직으로 과세된 것에 대하여 및 납세의무자소멸의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이들에 권한을 가진 자가 행위를 한다.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53조에서 제58조까지의 각 규정을 준용한다.
- (3) 민법전 제1903조의 규정에 따른 동의의 유보가 소송물인 경우 행위능력을 가진 주선자(Betreuer)는 주선을 받은 자의 동의없이 민법전의 규정에 따라 행위할 수 있고, 또는 공법의 규정에 따라 행위능력을 인정받은 범위에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第59條 [共同訴訟]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59조에서 제63조까지의 규정은 각 규정을 준용한다.

第60條 [訴訟參加 (Beiladungen)] ¹⁰⁾ (1) 재정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으로 조

10) 訴訟參加

행정소송에 있어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보호, 소송자료의 확보 및 公益과 관계있는 行政訴訟의 公正, 신속한 해결을 위해 利害關係人 있는 제3자 또는 행정청은 소송에 참여시켜 판결의 효력을 이들 모두에게 미치게 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訴訟參加는 補助參加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에서도 제

세법률에 따른 법적 이익에 대해 재판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자, 특히 조세 법률에 따라 납세의무자와 같은 책임을 지는 자를 소송에 참가(teilhaben)시킬 수 있다. 납세의무자가 절차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참가전에 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2) 公課가 다른 公課權利者를 위하여 관리되는 경우에는 당해 公課權利者는 권리자로서의 이익이 재판에 영향을 받는다는 이유로는 참가할 수 없다.
- (3) 계쟁법률관계에 제3자가 관여하고 있고, 재판을 이 제3자에 대하여 통일적으로만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켜야 한다(필요적 소송참가).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訴權을 가지지 않는 공동권리자에 대하여는 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4) 소송참가의 결정은 모든 관계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그 경우 사건의 상황 및 소송참가의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 (5) 공동권리자로서의 참가인에 대하여는 공동의 송달수령대리인의 지정을 명할 수 있다.
- (6) 소송참가인은 원고 또는 피고인으로서의 관계인의 신청범위내에서 독립하여 공격 및 방어에 방법을 행사하고, 모든 소송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 소송참가인은 필요적 허용참가의 경우에 한하여 다른 본안신청을 할 수 있다.

第60a條 [參加의 限界] 제60조 3항에 의한 참가인이 50인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은 일정한 기간안에 참가신청을 한 자만 참가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다를 수 없다. 이 결정은 연방관청에 공시해야 한다. 이 결정은 그밖에 당해 재판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 지역의 일간신문에 게재해야 한다. 기간은 연방관청의 공시후 최소한 3개월이어야 한다. 일간신문의 게재에서는 기간경과일을 고지해야 한다. 기간해태에 관한 종전의 지위회복에 대해서는 제5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법원은 재판에 관하여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자는 신청없이도 참가시켜야 한다.

第61條 [官廳의 參加] 11) 재판외의 전치절차에 소원결정이 이루어지는 때는

3자의 소송참가(동법 제16조 1항)와 行政廳의 訴訟參加(동법 제17조 1항)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 결정을 한 행정청은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第62條 [代理人 및 補助人] (1) 관여자는 대리인에게 대리시키고 구두변론에 보조인을 사용할 수 있다. 결정에 의하여 대리인을 선임하고, 보조인을 입회시켜야 한다는 취지를 명할 수 있다.

(2) 서면 또는 구두로 적당한 진술을 할 수 없는 대리인, 보조인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전단은 세무사법 제3조 및 제4조 1호와 2호에서 규정한 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세무사법의 규정에 따른 권한없이 세무사건에서 업무보조를 하는 대리인 및 보조인은 거부된다¹²⁾.

(3) 대리권의 수여는 서면으로 한다. 법원은 직권으로 대리권의 하자를 심사해야 한다. 대리권의 수여는 후일에 이를 할 수 있다. 대리권의 수여에 대하여는 법원은 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기간해태로 인한 종전의 지위회복에 관하여는 제 5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대리인이 선임된 때는 법원의 송달 또는

11) 官廳의 參加

본조는 원래의 행정행위를 발한 행정청에 대한 소송을 규정한 제63조와 관련된 조항이다. 행정행위에 대한 권리구제가 제기되고 그에 대하여 조세기본법 제349조에 따라 소원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세기본법 제348조에 따라 그 소원에 관하여는 직근上級行政廳이 소원결정을 할 때에는 문제된 행정행위를 발한 행정청이 이에 참가할 수 있게 한 것이다.

12) 代理權의 拒否

서면 또는 구두로 적당한 진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代理人 또는 補助人은 구두변론의 대리인, 보조인으로서 거부된다. 적당한 진술능력의 범위는 발표력과 작성력에 한하지 않고 충분한 법률지식 특히 조세 및 재정절차법분야의 법률지식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한 의사표현능력만을 의미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세무사법 제3조와 제4조에서 규정한 자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없다. 여기에는 세무사, 세무대리권자, 세무회사, 변호사, 경제평가사, 경제평가회사, 선서한 장부심사자, 장부검사회사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그들의 자격 내지 지위자체가 이미 이러한 법률지식을 갖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또한 세무사법 제4조에서 규정한 자는 그의 권한 범위내에서는 세무사건에 있어 업무보조를 할 수 있다. 업무는 독자적인 행위를 하고 동일한 행위를 반복해서 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관여자의 사무원이나 세무사의 사무원 등은 세무사건의 업무보조가 허용되지 않는다. 세무사건에서의 보조행위는 조세법상 중요한 범위에서의 장부와 기장기록에 관한 일체의 보조를 포함한다.

통지는 대리인에 대하여 한다.

第 3 章 第1審 訴訟

第63條 [訴訟提出處] (1) 소송은 다음 각호에 규정한 행정청에 대하여 한다.

1. 당초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
2. 신청을 받은 행정행위 또는 기타의 급부를 하지 않았거나 거부한 행정청
3. 법률관계의 존속유무의 확인 또는 법률행위의 무효확인에 대하여 요구를 받은 행정청

(2) 재판외의 권리구제의 결정이 있기 전에 당초 관할권을 가지고 있지않은 행정청이 당초 조세사건에 대하여 토지관할권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소송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前置의 異議의 경우에는 이의결정을 한 행정청에 대하여
2. 전치의 항고의 경우에는 항고관청의 직접하급행정청으로 항고결정을 하는 시기에 조세사건에 토지관할권을 가진 행정청에 대하여
3. 재판외의 권리구제에 대하여 충분한 이유를 통지하지 않고 상당한 기간내에 본안에 대하여 결정되지 않은 경우(제46조)에는 소송제기의 시기에 당해 조세사건에 대하여 토지관할권을 가진 행정청에 대하여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권을 가진 행정청에 대하여 행위할 권한을 가진 행정청이 당초 행정행위를 발부하거나 또는 신청된 행정행위, 또는 기타 급부를 하지 않았거나 거부한 때는 소송은 관할권을 가진 행정청에 대하여 한다.

第64條 [訴訟의 提起方法] (1) 소송은 법원에 서면으로서 제기하거나 사무국의 서기관의 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으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소장에는 다른 관계인을 위한 복사본을 첨부해야한다. 이 경우 제77조 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第65條 [訴狀의 必須內容] (1) 소장에는 원고, 피고 및 소송물, 항고소송에는 계쟁행정행위와 재판외의 권리구제에 관한 결정을 기재해야 한다. 소장에는

일정한 청구를 포함해야 한다. 또 청구원인에 도움이 되는 사실 및 증거방법을 기재한다.

- (2) 소장이 이들 요건을 충분히 만족하지 않은 때는 재판장 또는 재판장이 지정한 판사(보고자)는 원고에 대하여 지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할 것을 독촉해야 한다. 제1항 1단에서 요구한 사항을 결했을 경우에는 재판장은 원고에게 보정을 위하여 배타적 효력을 갖는 기간을 인정할 수 있다. 기간해태로 인한 종전의 지위회복에 대하여는 제5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第66條 訴訟係屬 (1) 소송제기에 의하여 계쟁사건은 소송계속을 발생한다.

(2) 삭제

(3) 삭제

第67條 [訴의 變更] (1) 소의 변경은 기타 관계인이 동의한 때 또는 법원이 변경을 적절하다고 인정한 때는 적법한 것으로 한다. 제68조의 규정은 그 적용을 방해받지 않는다.

(2) 피고가 소송의 변경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지 않고 서면 또는 구두변론으로 변경된 소송에 응한 때는 피고는 소송변경에 승락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소송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거나 소송의 변경이 적법한 재판은 독립하여 다를 수 없다.

第68條 [係爭行政行爲의 變更] 계쟁행정행위가 소송의 제기후 다른 행정행위에 의하여 변경 또는 代替된 때에는 당해 다른 행정행위는 원고의 청구로 소송의 목적물이 된다. 청구는 새행정행위 고지후 1개월 내에 해야 한다. 이경우 이의신청의 고시를 해야 한다.

第69條 [執行의 停止] 13) (1) 행정행위의 변경으로 계쟁행정행위의 집행은 제5

13) 執行의 停止

독일에서는 행정청의 행정작용에 대한 권리구제를 규정한 절차법에서 권리구제의 청구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행정청이 행한 행위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법원법 제69조에서는 모든 절차법에서 규정한 것과는 반대로 권리구제의 경우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公課인 경우 권

항의 규정의 경우를 제외하고 정지되지 않는다. 특히 공과의 징수는 방해받지 않는다. 기초결정의 취소청구의 경우 이 결정에 기인한 후속결정에 대해서도 같다.

- (2) 관할권을 가진 재무관청은 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취소 청구된 행정행위의 적법성에 대하여 현저한 의심이 있거나 관계인에 대한 집행이 주로 공익에 반하지 않는 불형평한 가혹함이 되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정지해야 한다. 정지는 담보제공에 관련시킬 수 있다. 기초결정의 집행이 정지되는 범위에서 후속결정의 집행도 정지된다. 후속결정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 담보제공에 대해서는 후속결정의 정지의 경우 담보제공에 관하여 결정해야 한다. 기초결정의 집행정지에 대하여 담보제공의 제외가 명시되어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신청으로 본안의 법원은 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2단에서 제6단까지의 규정과 제100조 2항 2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소송의 제기전에 신청할 수 있다. 행정행위가 결정시기에 이미 집행된 때에는 법원은 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해제를 담보를 제공케 해서라도 명할 수 있다. 긴급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결정할 수 있다.
- (4) 제3항에 의한 신청은 행정청이 집행정지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 1. 재무관청이 신청에 관하여 충분한 이유의 제시없이 상당한 기간내에 사안에 대하여 결정하지 않은 때
 - 2. 강제집행이 임박한 경우
- (5) 영업 또는 직업종사정지에 대하여는 소의 제기로 계쟁행정행위의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 행정행위를 발한 행정청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특별명령으로 부정지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

리구제제기는 고려되지 않는다. 따라서 과세처분도 그리고 후속절차로서의 체납처분도 그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 다만 일정한 경우 예컨대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현저한 의심 또는 형평에 맞지 않는 가혹함이 인정된 경우에 재무관청은 담보제공과 관련하여 또는 담보제공 없이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만일 집행정지의 신청이 재무관청에 의하여 거부한 경우에는 법원이 거부된 범위 내에서 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본조는 그밖에 영업 또는 직업종사에 대해서도 소가 제기되면 영업 등의 정지효력이 제한되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5항).

공익을 서면으로 명기해야 한다. 행정행위의 적법성에 대하여 현저한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본안의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부정지효력을 회복할 수 있다. 긴급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결정할 수 있다.

- (6) 본안의 법원은 제3항 및 제5항 3단에 의한 신청에 관한 결정을 언제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모든 관계인은 변경된 상황 또는 본래의 절차에서 자기의 책임없이 주장될 수 없었던 상황을 이유로 변경 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 (7) 행정청이 집행의 정지를 거부할 경우에는 제3항과 제5항 3단에 따라서만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第70條 [訴訟係屬의 效力：權利救済의 許容에 관한 裁判] 사물 및 토지관할에 대해서는 법원조직법 제17조부터 제17b조까지를 적용한다. 법원조직법 제17a조 2항 및 3항에 따른 결정은 다를 수 없다.

第71條 [訴狀의 送達] (1) 소장은 직권으로 피고에게 송달해야 한다. 소장송달과 동시에 피고는 서면으로 또는 사무국의 서기관의 기록부에 의견을 표시해야 한다. 이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할 수 있다.

- (2) 관계재무관청은 계쟁사건에 관한 서류를 소장수리후, 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第72條 [訴의 取下] 14) (1) 원고는 판결의 확정력이 발생하기까지는 소를 취할 수 있다. 구두변론의 종결후, 구두변론의 포기의 경우 및 가결정이 있는 후는 피고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취하할 수 있다.

- (2) 소의 제기에 대하여 기간이 구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취하는 소권상실의 효과를 발생한다. 소가 취하된 때는 법원은 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중지한다. 소송취하의 무효가 후에 주장된 때는 제56조 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4) 訴의 取下

원고가 제기한 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스로 철회하는 法院에 대한 의사표시이다. 취하는 書面에 의한 것이 원칙이지만, 변론 또는 준비절차에서는 구두로 행할 수도 있다. 종국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訴의 취하는 당해 소송절차를 더이상 진행시키지 않겠다는 절차상의 의사표시이므로 소에서 주장한 자기의 청구에 대한 실질적 법적인 포기가 아니다.

第73條 [둘 이상의 訴의 併合] 15) (1) 법원은 결정으로 그 법원에 계속하는 둘이상의 소송절차를 공동심리 및 재판을 위하여 병합하고 또한 다시 분리할 수 있다. 법원은 하나의 소송절차에 결합된 둘이상의 소송물을 분리한 소송절차로 심리하고, 재판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 소송물 때문에 제60조 3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소송절차에 참가하게 된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두 소송절차를 공동심리 및 통일재판하기 위하여 병합함으로써 원고의 필요적 참가가 이루어진다.

第74條 [審理의 停止] 법원은 소송의 재판이 다른 계속중인 소송의 목적물이 된 법률관계 또는 행정청에 의하여 확인될 법률관계의 존부에 전부 또는 일부가 관련되어 있는 때는 다른 소송의 종결 또는 그 행정청의 결정이 있기까지 심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第75條 [關係人에 대한 課稅基礎의 通知] 관계인에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범위에서, 신청 또는 소장의 내용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직권으로 과세기초를 통지해야한다.

第76條 [法院에 의한 事實調査] (1)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한다. 사실 조사를 위하여 관계인을 호출할 수 있다. 관계인은 사실상의 상황에 대하여 완전하게 진실에 따라 진술하고, 법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다른 관계인이 제시한 사실에 대하여 진술해야한다. 이 경우에는 조세기본법 제90조 2항, 제93조 3항 2단, 제97조 1항 및 3항, 제99조, 제100조의 각 규정을 준용한다.
16). 법원은 관계인의 제시 및 증거의 신청에 구속받지 않는다.

15) 訴의 併合

訴가 併合되면 원칙적으로 同一한 절차로 심판되므로 당사자가 소송수행의 부담이 가벼워지고 심리의 중복이나 裁判의 矛盾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무제한으로 허용하면 심리가 복잡하고 소송지연의 우려가 있으므로 일정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併合한 것을 다시 分離하여 심리할 수도 있다(제1항).

16) 租稅基本法 關聯條文: 제90조 2항, 제93조 3항 2단, 제97조 1항 3항, 제99

- (2) 재판장은 형식상의 하자를 제거하고, 적절한 신청을 하고, 불명확한 신청을 해명하고, 불충분한 사실기재를 보충하고, 다시 사실확인 및 인정에 있어 중요한 일체의 진술을 하도록 노력해야한다¹⁷⁾.
- (3) 사실조사(조세기본법 제88조, 제89조)에 관한 재정관청의 의무는 재정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第77條 [書面] (1) 관계인은 구두변론의 준비를 위하여 서류를 제출한다. 재판장은 이 서면을 기간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다. 서면에는 다른 관계인을 위하여 등본을 첨부해야한다. 서류는 관계인에게 직권으로 송달해야한다.

(2) 서면에는 인용되는 문서를 원본 또는 등본으로, 전부 혹은 초본을 첨부해야한다. 증서가 상대방에게 이미 알려진 때 또는 증서가 대량인 때는 그 증서를 상세히 표시하고, 법원에서 이를 열람시킨다는 보장으로 족하다.

(3) 재무관청이 소송의 제기후 행정행위를 다른 행정행위로 변경 또는 대체한 때에는 당해 재무관청은 법원에 당해 다른 행정행위의 등본을 송부해야한다.

第78條 [書類의 閱覽] (1) 관계인은 소송기록(Gerichtsakten) 및 법원에 제출된 서류를 열람하고, 자기의 비용으로 사무국에 정본, 초본 및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법원기록이 정본을 대신하기 위하여 녹화물에 축소재현된 때는 민사소송법 第299條의 규정을 준용한다.

(2) 판결, 결정 및 명령의 초고, 그 준비를 위한 서류, 법원의 평석 또는 질서벌에 관한 서류는 제시 또는 등본으로 통지되지 않는다.

第79條 [裁判의 迅速化措置] ¹⁸⁾ (1) 재판장 또는 당해 재판장이 정하는 판사는 구두변론에 앞서 가능하면 1회의 구두변론으로 소송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조, 제100조, 제88조, 제89조.

17) 法官의 調査義務

재판장 뿐만 아니라 법관도 사안의 불명확, 모순을 제거 또는 통일시키기 위하여 원고로 하여금 자료를 보충하고 해명토록 조치를 해야한다. 이때의 조사 의무는 서류의 내용에 한정된다는 데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법관은 서류의 내용 이외의 사항 예컨대 조세기본법 제17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새로운 사실 등에 대해서는 조사할 의무가 없다.

일체의 명령을 해야한다. 그는 특히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다.

1. 사실 및 분쟁상태의 진술 및 유효한 소송참가를 위한 관계인의 소환
 2. 관계인에게 준비한 서류의 보정 또는 해명 및 원본의 제출과 타인에 의하여 작성된 법원에 필요한 목적물의 요구. 특히 일정한 해명이 필요한 사항의 진술을 위한 기간 지정.
 3. 정보수집
 4. 원본의 제출명령
 5. 관계인본인의 출두명령 : 제8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6. 구술심리를 위한 증인 및 감정인의 소환
- (2) 관계인은 모든 명령을 통지받아야 한다.
- (3) 재판장 또는 당해 재판장이 정하는 判事(Berichterstatter)는 각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전항은 법원에서 심리를 간이화하는데에 적절하고 우선 법원이 당해 증거결과가 즉각적인 인상에서가 아니라 증거조사와정에 관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한 범위내에서만 허용된다.

第79a條 [準備節次の 裁判] 19) (1) 재판이 준비절차에서 행해진 경우에는 재판장은 다음의 사항을 재판한다.

1. 절차의 정지 및 중단에 관하여
2. 소의 취하
3. 본안의 소송종료
4. 訴訟價

18) 裁判의 迅速한 措置

본 조항은 절차를 가능하면 1회의 구두변론만을 거쳐서 해결하기 위한 재판장의 신속화조치를 규정한 것으로 이를 위한 사전조치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19) 準備節次裁判

準備節次는 원래 裁判部事件에 관하여 재판부(합의부)의 부담을 경감하고 구두변론의 준비 특히 증거, 쟁점조사 및 整理를 위하여 재판부의 재판장 또는 재판장이 지정한 判事が 주재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다만 본조에서는 통상의 준비절차에서보다 裁判長の 준비절차에서의 권한이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5. 비용

- (2) 재판장은 구두심리없이 법원의 결정(제90a조)으로 재판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법원결정이 송달된 후 1개월 이내에 구두심리의 신청만을 할 수 있다.
- (3) 관계인의 동의로 재판장은 그밖의 사항에 대해서도 재판부 대신 재판할 수 있다.
- (4) 재판장이 정한 판사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판사가 재판장 대신 재판한다.

第79b條 [期間指定] (1) 재판장 또는 재판장이 정한 판사는 원고에게 행정절차에서의 考慮 또는 不考慮로 인하여 그가 불만을 느꼈던 사실의 진술을 위하여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전항의 기간지정은 제65조 2항 2단에 의한 기간 지정과 결합될 수 있다.

- (2) 재판장 또는 재판장이 정한 판사는 1인의 관계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일정한 절차에서 다음의 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 1. 사실의 진술 또는 증거자료제시
- 2. 관계인의 의무를 지는 범위에서의 원본 또는 다른 동산의 제출

- (3) 법원은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기간후에 제출된 진술 및 증거자료에 대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각하 및 더이상의 조사없이 재판할 수 있다.

- 1. 그의 허용이 법원의 자유로운 확신에 따라 소송의 종료를 지연시킬 수 있을 때
- 2. 관계인의 지체에 충분한 사유가 없는 때
- 3. 관계인이 기간해태의 결과에 대하여 교시를 받은 때

사유의 근거는 법원요구가 있을 경우 소명해야한다. 관계인의 협조없이도 사실을 조사하는 것이 소액의 비용으로 가능할 경우에는 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第80條 [本人出頭] (1) 법원은 관계인의 본인출두를 명할 수 있다. 결석의 경우에는 법원은 신문기일에 출두하지 않은 증인에 대한 것과 같은 질서금을 경고할 수 있다. 결석한데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에 의하여 경고한 질서금을 확정한다. 질서금의 경고 및 확정은 이를 반복할 수 있다.

- (2) 관계인이 법인 또는 사단인 때는 법률 또는 정관에 의한 대표권자에게 질서

금을 경고하고 또한 그 대표권자에 대하여 확정한다.

- (3) 법원은 관계법인 또는 행정청에 구두변론을 위하여 대표권에 대한 증명서를 가지고, 또한 사실상황 및 법률상황에 대하여 정통한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第81條 [證據調査] (1) 법원은 구두변론에서 증거조사를 한다. 법원은 특히 검증을 하고 증인, 감정인 및 관계인을 신문하고 또한 증서제출을 명할 수 있다.

- (2) 법원은 적당한 경우에는 구두변론전에 그 재판관 1인을 수명법관으로서 증거조사를 시키고 개개의 입증사항을 명시하여 다른 법원에 증거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第82條 [證據調査의 節次] 제83조에서 제89조까지 각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 제358조에서 제377조까지, 제380조에서 제382조까지, 제386조에서 제414조까지 및 제450조에서 제494조까지의 각 규정을 증거조사에 준용한다.

第83條 [證據調査에서 關係人の 權利] 관계인은 일체의 증거조사기일의 통지를 받고 또한 증거조사에 입회할 수 있다. 관계인은 증인 및 감정인에 대하여 적절한 질문을 할 수 있다. 질문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는 법원이 재판을 한다.

第84條 [證言拒否權] (1) 증언거부권과 증언거부권에 관한 고지의무에 대해서는 조세법 제101조부터 제10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2) 가족으로서 증언거부권을 가진 자는 선서를 거절할 수 있다.

第85條 [證人の 補助義務] 기억에 따라 진술할 수 없는 증인은 자기의 자유로 서류 및 업무장부를 참조하고, 또한 필요한 때는 이들로부터도 기록을 취해야한다. 이 경우에는 조세기본법 제97조 1항 및 3항, 제99조, 제100조, 제104조의 각 규정을 준용한다.

第86條 [書類提出 및 情報提供] (1) 행정청은 조세비밀(조세기본법 제30조)로 보호된 제3자의 사정이 모두 공개되지 않는 한 증서 및 서류를 제출하고 또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진다.

(2) 증서, 서류 또는 정보의 공시가 연방 또는 독일의 주의 불이익이 될 경우, 또는 그 사정이 제1항과는 다른 이유로 법률 또는 그 본질상 비밀이 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소관최고감독청은 증서, 서류의 제출 및 정보의 제공을 거절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관계인의 신청으로 본안의 법원은 증서, 서류의 제공거절 및 정보의 제공에 대한 법률요건의 존재에 대한 소명여부를 결정에 따라 재판한다. 제2항의 경우에는 최고감독관청을 이 절차에 참가시킨다. 결정은 독립하여 항고로서 다룰 수 있다.

第87條 [行政廳 등의 證言] 행정청, 사업 또는 직업분야의 단체 및 대표,상공기업, 사단 또는 시설의 증언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특정인이 증인으로서 고려되지 않는 때는 지도부 또는 주된 사무자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第88條 [鑑定人の 忌避에 대한 그밖의 理由] 관계인은 감정인의 초빙으로 사업상의 비밀침해 또는 자기의 업무활동에 대한 손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도 감정인을 기피할 수 있다.

第89條 [證書提出의 強制] 법률로 정해진 증서제출의 강제는 민사소송법 제380조 및 조세기본법 제225조의 각 규정을 준용한다.

第90條 [口頭辯論에 의한 裁判의 原則 - 豫備決定] (1) 법원은 특별히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구두변론에 의하여 재판한다. 판결이 아닌 법원의 재판은 구두변론없이 재판할 수 있다.

(2) 법원은 관계인이 동의한 때는 구두변론없이 재판할 수 있다.

(3) 삭제

第90a條 【口頭審理없는 裁判】 (1) 법원은 적당한 경우에 구두심리없이 가결정²⁰⁾으로 재판할 수 있다.

(2) 관계인은 가결정이 송달된 후 1개월 이내에,

1. 상고가 허용된 경우에는 상고할 수 있다.
2. 상고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不許抗告를 제기하거나 구두심리를 신청한다. 전단의 두가지 권리구제가 허용될 경우에는 구두심리를 행한다.
3. 상소가 허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구두심리를 신청한다.

(3) 가결정은 판결의 효력을 갖는다. 適期에 구두변론이 신청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구두변론이 신청된 경우에는 법원은 가결정의 이유를 추론하고 또한 이를 당해 재판에서 확인한 범위에서 판결에서 법률요건과 재판이유에 관한 상세한 설시를 생략할 수 있다.

第91條 【關係人の 召喚】 (1) 구두변론기일이 지정되면 즉시 관계인은 2주 이상의 소환기간으로서, 연방재정법원에는 4주 이상의 소환기간으로서 호출을 받는다. 긴급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2) 소환장에는 관계인을 소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인이 출두하지 않아 도심리를 하고 또한 재판할 수 있다는 것을 기재한다.

(3) 법원은 적절한 해결에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소재지 외에서도 법정을 열 수 있다.

第92條 【辯論의 進行】 (1) 재판장은 구두변론을 개시하고 이를 지휘한다.

(2) 재판장 또는 재판장이 지정한 판사는 사건을 호명 후, 서류의 중요한 내용을 보고한다.

(3) 이에 대하여 관계인은 신청을 하고 또한 그 신청의 이유에 대한 발언을 얻는다.

20) 假決定(Vorbescheid)

이는 예비결정이라고도 한다. 訴가 受理될 수 없거나 또는 명백히 이유없다고 판명된 경우에는 법원은 구두변론의 기일이 결정될 때까지 가결정으로 이유를 부기하여 그 소에 대한 却下裁判을 한다(독일행정법원법 제84조). 가결정은 구두변론의 회피를 통하여 절차를 간이화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다.

第93條 [係爭事項의 解明] 21) (1) 재판장은 관계인과 같이 계쟁사항에 관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해명을 해야한다.

(2) 재판장은 요구있는 때는 법원의 각 구성원에게 질문할 것을 허용해야한다. 질문에 대하여 이의가 제출되는 때는 법원이 재판한다.

(3) 계쟁사항을 해명한 후 재판장은 구두변론의 종결을 선언한다. 법원은 再開를 결정할 수 있다.

第94條 [調書] 조서는 민사소송법 제151조에서 제165조의 각 규정을 준용한다.

第94a條 [公正한 裁量에 의한 節次] 법원은 금전급부 또는 금전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행위에 대한 訴의 訴價가 1000DM을 상회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한 재량에 의한 절차를 결정할 수 있다. 1인의 관계인의 신청에 대하여 구두로 심리해야 한다. 법원은 판결로 소에 관하여 재판한다. 이 경우 조사 원칙에 관한 제76조와 법원결정에 관한 제79a조 2항, 제90a조의 적용을 방해 받지 않는다.

第 4 章 判決 및 其他 裁判

第95條 [判決] 소송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판결에 의하여 재판한다.

第96條 [自由心證, 判決의 必要的 內容] (1) 법원은 소송의 전결과에서 얻어진 자유심증에 따라 재판한다. 이 경우 조세기본법 제158조, 제160조, 제162조의 각 규정을 준용한다. 법원은 訴求의 범위를 초월할 수는 없지만 신청의 문언에는 구속되지 않는다. 판결에는 재판관이 심증을 얻은 이유를 기재한

21) 繫爭事項의 解明

소송의 전절차는 제76조에 따라 사실조사의 원칙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법원은 직권으로 시안을 중심으로 사실상 및 법률상 문제를 분명히 해야한다. 이때에 법원은 관계인의 제출이나 신청에 구속되지 않는다. 관계인은 계쟁사항의 해명을 위하여 협조해야 될 의무가 있다.

다.

- (2) 판결은 관계인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었던 사실 및 증거의 결과만을 기초로 할 수 있다.

第97條 [訴訟의 許容에 관한 中間判決] 소송의 허용성은 중간판결에 의하여 우선 재판할 수 있다.

第98條 [一部判決] 22) 소송물의 일부만이 재판을 할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는 법원은 일부판결을 할 수 있다.

第99條 [請求原因에 관한 中間判決] 23) (1) 조세기본법 제348조의 규정에서 규정한 종류의 행정행위에 대한 급부소송 또는 취소소송에서 청구원인 및 금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때는 법원은 먼저 그 원인에 대하여 중간판결로 재판할 수 있다.

- (2) 법원은 적절하고 피고 또는 원고의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간판결로 재판상 중요한 사실문제 또는 법률문제에 관하여 우선 재판할 수 있다.

第100條 [判決에 의한 係爭行政行爲의 取消] 24) (1) 계쟁행정행위가 위법이

22) 一部判決

동일 소송절차에 係屬되어 있는 수개의 청구중의 하나 또는 사건의 一部를 다른 부분으로부터 분리시켜 먼저 완결짓는 終局判決로서 全部判決에 대한 것이다.

23) 中間判決

소송심리를 정리하고 終局判決을 준비할 목적으로 소송진행 중에 문제되었던 개개의 소송상 또는 실체상의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확인적 성질의 판결이다. 중간판결을 할 것인가의 여부는 法院의 재량이다.

중간판결은 ① 독립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재판이 끝났을 때, ② 중간의 다툼에 관하여 심리가 끝났을 때, ③ 청구의 원인 및 數額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 등에 할 수 있는데, 제99조는 ③ 경우에 관하여 규정이다.

24) 繫爭行政行爲의 取消

본조는 法院이 재무행정청에 대하여 행정행위를 하도록 命令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한 제40조를 보다 구체화한 규정이다. 우리나라

고, 그에 따라 원고가 그 권리를 침해받은 때는, 법원은 당해 행정행위 및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이외의 법률상의 구제에 관한 결정을 취소한다. 재무관청은 취소의 기초가 된 법적 결정에 구속되고 신규로 알려진 사실 및 증거방법이 다른 인정을 정당화하지 않는한 사실상의 판단에 구속된다. 행정행위가 이미 집행된 때는, 법원은 신청으로 재무관청이 집행을 해제해야한다는 것 및 그 방법을 선고할 수 있다. 이 선고는 관청이 해제할 수 있는 상황에 있고, 또한 이 문제가 선고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을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행정행위를 취소하고, 기타의 방법으로 해결된 때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원고가 이 확인에 대한 정당한 이익을 가진 경우에는 행정행위가 위법인 것을 판결로서 선고한다.

(2) 원고가 금액확정 또는 금액확정과 관련된 확인에 관한 행정행위의 변경을 訴求한 경우에는 법원은 그 금액을 다른 액수로 확정하거나 다른 방법의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확정할 금액 또는 확인할 금액의 조사에 과다한 비용이 요구된 경우에는 법원은 부당하게 고려한 또는 고려하지 않는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관계에 관한 실시를 통하여 행정행위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행정청은 재판의 청구원인에 근거하여 금액을 산출할 수 있다. 행정청은 관계인에게 새로이 산출한 금액을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즉시 통지한다. 재판의 확정력에 따라 행정행위는 변경된 내용으로 새로이 고지된다.

(3) 법원은 그밖의 사안해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종류 또는 범위에 따라 필요한 조사가 아직 현저하고 취소가 관계인의 요구를 고려해서도 적절한 경우에 한하여 사안자체에 관한 재판없이 행정행위 및 재판외의 법률상 구제에 관한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전단의 규정은 조세의무자가 본인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과세기초가 산정된 범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법원은 새로운 행정행위가 발령될 때까지 假規定을 정할 수 있다. 특히 담보제공 또는 전부 또는 일부의 존속 및 급부의 우선반환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결정은 언제나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다. 1단에 의한 재판은 행정청에 서류가 접수된 후 6개월 이내에서만 법원이 선고할 수 있다.

行政訴訟法은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지 않는다. 자세한 것은 제40조에 관한 설명 참조.

- (4) 행정행위의 취소 이외에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절차에서 급부에 대한 피고패소의 선고도 허용된다.

第101條 [行政行爲發令의 判決] 행정행위의 거부 또는 부작위가 위법이고, 이에 따라 원 고가 그 권리를 침해받은 때에는 법원은 본안에 대하여 판결할 단계에 이르렀을 경우에는 요구받은 행정행위를 할 재무행정청에 소구된 행정행위를 발할 의무를 선고한다. 법원은 본안이 판결할 단계에 이르지 않은 때에는 원고에게 법원의 법적 견해를 고려하여 결정할 의무를 선고한다.

第102條 [裁量權行使의 再審査] 25) 재무행정청이 그 재량으로 행위하거나 또는 결정할 권한을 가지는 범위에서 법원은 당해 행정행위, 행정행위의 거부 또는 행정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재량의 법률에 의한 한계를 초월하고 있거나 재량권수여의 목적에 일치하지 않는 방법으로 행사한 재량권에 대한 위법 여부를 심사한다.

第103條 [判決에 關係하는 法官] 판결의 기초인 심리에 관계했던 법관 및 명예직재판관만이 판결에 관계할 수 있다.

第104條 [判決의 宣告 및 送達] (1) 판결은 구두변론이 있는 때는 통상적으로 구두변론이 종결된 기일에 이를 선고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즉시 결정하는

25) 裁量權行使의 再審査

조세법규는 많은 경우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예, 公益상 필요한 때 등) 이 법규를 적용하는데 있어 재무행정청이 재량으로 결정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 ‘不當하게 낮은 대가’(부가가치세법 제13조 1항 3호)라고 할 때에 이 규정의 의미내용을 명확히 해야만 租稅法의 기본원칙의 하나인 法律明確主義에 위배되지 않는다. 제102조는 재무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재량권수여의 목적에 일치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량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違法으로 보고, 法院은 재무행정청의 재량권행사에 대한 위법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행정청의 재량권행사에 대한 司法審査문제는 학설상으로는 논란이 많은 부분이다. 제102조의 재량권의 남용·유월에 대한 법원의 심사에 대해서는 異論이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문제는 어떠한 경우에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것인가 하는 한계판단에 있다.

기일에 이를 선고한다. 다만 그 기일은 2주일이상 지연될 수 없다. 판결은 주문의 낭독으로 이를 선고한다. 판결은 관계인에게 이를 송달해야한다.

(2) 선고에 대신한 판결의 송달은 적법한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는 판결은 구두변론종결후 2주내에 사무국에 교부되어야한다.

(3) 법원이 구두변론을 거쳐 재판할 때는 선고는 관계인에 대한 송달로 對替한다.

第105條 [判決의 形式] (1) 판결은 국민의 이름으로 한다. 판결은 서면으로 작성하고 판결에 협력한 재판관이 이에 서명한다. 법관이 그의 서명을 하는데 지장이 있는 때는 재판장이 그 장애사유를 동재판장에게 지장이 있는 때는 근무연한이 가장 긴 배석판사가 이를 판결에 附記한다. 명예직재판관의 서명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2) 판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관계인, 그 법정대리인 및 임의대리인의 성명, 직업, 주소 및 소송절차에 서의 지위의 표시
2. 법원의 표시 및 재판에 협력한 구성원의 성명
3. 판결주문
4. 구성사실
5. 판결이유
6. 상소에 관한 고지사항

(3) 구성사실에서는 신청에서 주장한 본안상황 및 소장상황을 그의 중요한 내용에 따라 간결하게 기재해야한다. 상세한 사항은 서류, 조서 및 기타자료에 본안상황 및 訴狀상황이 충분히 나타난 한도에서 참조되어야 한다.

(4) 선고한 때에 완전히 작성되지 아니하였던 판결문은 선고일로부터 기산하여 2주내에 완전히 작성하여 사무국에 인도되어야 한다. 예외적으로 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 2주일내에 구성사실, 판결이유 및 상소에 관한 고지사항의 기재없이 관여한 판사들에 의하여 서명된 판결문이 사무국에 인도되어야 한다. 구성사실, 판결이유 및 상소에 관한 고지사항은 즉시로 추후에 작성하여 관여한 판사들이 개별적으로 서명하여 사무국에 인도되어야 한다.

(5) 법원은 판결이유의 상세한 기재는 행정행위의 이유 또는 재판외의 권리구제

에 관한 결정을 추론할 수 있고 또한 이것을 그의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한도에서 생략할 수 있다.

- (6) 사무국의 서기관은 판결에 송달일을 부기하고 제104조 제1항 제1단의 규정의 경우에는 선고일을 부기하고 또한 이 부기에 서명해야한다.

第106條【假決定】 제104조 및 제105조의 각 규정은 가결정에 대하여 준용한다.

第107條【判決의 訂正】 (1) 판결에서 誤記, 틀린 계산 및 이와 유사한 명백한 오류를 법원은 언제라도 정정해야한다.

- (2) 정정은 구두변론없이 재판할 수 있다. 정정결정은 판결문 및 정본에 부기한다.

第108條【構成事實 訂正申請】 (1) 판결의 구성사실에 기타의 오류 또는 불명확한 점이 있는 때에는 판결의 송달후 2주내에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 (2) 법원은 증거조사없이 결정에 의하여 재판한다. 이 결정은 다를 수 없다. 이 재판에는 판결에 관여했던 판사들만이 관여한다. 판사 1인에게 지장이 있는 때에는 가부동수인 때는 재판장의 표가 이를 결정한다. 정정결정은 판결 및 정본에 부기한다.

第109條【判決의 補完】 (1) 구성사실에 의거하여 관계인이 제기한 신청이나 재판의 비용이 전부 또는 일부 탈루된 경우에는 그 판결은 신청에 의하여 추후에 행한 재판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 (2) 전항의 재판의 신청은 판결의 송달후 2주내에 이를 해야한다. 구두변론은 소송의 완결되지 않은 부분만을 대상으로 한다.

第110條【判決의 確定力】 (1) 확정판결로 그 쟁송사항에 관하여 재판된 범위 내에서 羈束된 자는 다음과 같다

1. 관계인 및 그 권리승계인
2. 제48조 1항 3항의 경우에 원고적격을 갖지 않는 사원 또는 조합원

3. 제60조의 경우에 참가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기일내에 신청하지 않은 자
재무관청에 대하여 행해진 판결은 관여한 재무관청에 소속하는 공법단체에
대해서도 효력을 미친다.

(2) 행정행위의 철회, 취소, 폐지, 변경 및 조세추징에 관한 조세기본법 및 기
타 조세법률에 관한 규정은 제1항 제1단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한 결과가 없
는 한 그 적용을 방해받지 않는다.

第111條 [削除]

第112條 [削除]

第113條 [決定] 26) (1) 결정은 제96조 제1항 제1단 및 제2단, 제105조 제2항

26) 決定

재판은 재판을 행하는 기관이나 절차에 따라 判決, 決定, 命令으로 나눌 수
있다.

(1) 判決(Urteil)

법원이 소송사건에 의거한 종국적 또는 중간적인 판단을 표시하기 위하여 원
칙적으로 구두변론을 거쳐 행하는 재판이다. 판결은 법정의 형식에 의하여 판
결문을 작성하고(제105조) 이에 의거하여 宣告를 해야 효력을 발생한다. 판결
은 형식으로 보아 ① 종국판결, 중간판결, ② 전부판결, 일부판결, 추가판결,
③ 本案判決, 訴訟判決로 구분되고, 그 내용 및 효력에 따라 확인판결, 이행판
결, 형성판결로 분류된다. 판결에 대한 上訴手段은 抗訴와 上告이다. 판결은
上訴를 不許하는 경우에는 선고와 동시에, 상소를 허용한 경우는 상소기간 도
과시에, 상소권을 포기하면 上訴期間의 만료시에 羈束力, 確定力, 既判力, 執
行力, 形成力 등의 효력이 발생한다.

(2) 決定(Beschluß)

법원이 하는 재판중 判決의 형식에 따르지 않는 것을 말한다. 命令은 개개의
법관이 하나 결정은 法院이 한다. 결정은 주로 소송절차상의 사항에 관한 재판
이며 구두변론을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 當事者訊問에 의하여 소송자료를 수집
할 수 있고 告知의 형식도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고지함으로써
성립하고 효력이 발생한다. 결정에 대한 上訴手段은 抗告이다. 제113조에서는
일정한 경우의 필요적 이유부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3) 命令(Verordnung)

재판장, 命令法官이 그 자격으로서 하는 재판, 判決이외의 재판인 점에서 決

제6호, 제107조에서 제109조까지의 각 규정을 준용한다.

- (2) 이 결정은 상소에 의하여 다룰 수 있거나 권리구제에 관하여 재판하는 경우에는 이유를 부기해야한다. 집행정지의 신청에 관한 결정(제69조 제3항)에는 항상 이유를 붙인다. 집행정지에 관한 결정(제69조 3항과 5항), 가(처분)명령에 대한 결정(제114조 1항) 및 본안에 있어서의 소송종료 후의 결정(제138조)에는 항상 이유를 부기해야한다. 상소에 관하여 재판한 결정은 법원이 상소를 계쟁재판청구원인에서 이유없는 것으로 기각하는 한도에서 그밖의 이유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第114條 [假處分命令] 27) (1) 법원은 현존상태의 변경으로 신청인이 권리를 실행할 수 없게 하거나 이를 실행함에 현저히 곤란하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提訴전이라도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명령을 발할 수 있다. 가(처분)명령을 係爭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잠정적인 상태를 규제하기 위해서도 허용된다. 다만 이 명령은 특히 계속적인 법률관계에 있어서 현저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나 긴급한 强暴을 피하기 위하여 또는 기타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한한다.

- (2) 본안에 관하여 재판하는 법원이 가(처분)명령을 발할 권한을 갖는다. 전단의 경우는 제1심법원이 이를 행한다. 긴급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재판할 수 있다.

定과 동일하나 法院의 재판이 아닌 점에서 決定과 구별된다. 압류명령, 支給命令 등은 결정 또는 판결의 성질을 갖는데도 명령이란 문구를 사용하는데, 이는 재판의 형식으로 표시한 명령이 아니다.

27) 假處分命令

권리의 실현이 판결로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일이 걸려서, 소송의 지연으로 인하여 설령 승소하더라도 권리보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판결전에 일시적, 잠정적으로 권리를 보호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일반적으로 가처분제도이다. 가압류와 더불어 保全訴訟의 일종이다. 이러한 가처분에는 ① 係爭物에 관한 假命令(금전채권 이외의 특정물의 급부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집행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과 ② 다루는 권리관계에 대해서 임시의 지위(假地位)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제114조는 이들 두경우 모두에 대하여 가처분명령을 허용하고 있다.

- (3) 가(처분)명령의 발포는 민사소송법 제920조, 제921조, 제926조, 제928조에서 제932조까지, 제938조, 제939조, 제941조 및 제945조의 각 규정을 준용한다.
- (4) 법원은 결정으로 재판한다.
- (5)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각 규정은 제69조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第 5 章 上訴 및 再審節次

第 1 節 上告²⁸⁾

第115條 [上告의 許容] (1) 소송물의 가액이 1000DM을 초과한 때 또는 재정법원이 상고를 허용한 때는 재정법원의 판결에 대하여(제36조 제1호) 관계인은 연방재정법원에 상고를 할 수 있다.

(2) 상고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²⁹⁾.

1. 기본적으로 중요한 법률문제에 관한 경우
2. 판결이 연방재정법원의 재판에 반하고 또한 그 반하는 바를 기초로 하는 경우

28) 上告

終局判決에 대한 法律審에의 上訴로서 原判決에 대하여 法律的 方面으로부터 不服의 주장을 하고 그 當否의 심판에 필요한 한도내에서 事件의 再審判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抗訴審의 종국판결에 대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나 고등법원이 제1심법원인 경우(우리 행정소송법 제9조)에는 예외로서 제1심판결에 대해서 직접 상고할 수 있다.

29) 上告의 制限

상고는 원칙적으로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서만 인정되고 있다(제115조 2항). 이같이 上告를 制限한 이유는 濫訴를 막음으로서 法律的인 중요한 爭點事項에 대한 大法院의 集中審理를 도모하자는 데에 있다.

* 우리나라의 上告許可制 : 판례는 上告許可制度는 民事訴訟에만 적용하고 行政訴訟에는 적용하지 않음을 분명히 한다[81부4(1982.6.8 大1決)]. 우리나라 행정소송법 제9조 2항에서는 취소판결에 불복한 자는 大法院에 上告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를 다른 訴訟에서 준용하고 있다(제38조, 제40조).

3. 절차상의 하자가 주장된 경우에는 계쟁재판이 절차상의 하자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3) 상고를 인정하지 않는데 대해서는 판결의 송달후 1월이내에 항고(30)에 의하여 독립하여 이를 다룰 수 있다. 항고는 다툼이 있는 재판을 할 법원에 제기해야한다. 항고장에는 법률문제의 기본적 중요성을 명시하거나 판결이 그와 위배된 연방재정법원의 재판 또는 절차상의 하자를 기재해야한다.

(4) 항고의 제기로 판결의 확정력은 정지된다.

(5) 항고로 오류가 更正(abhelfen)되지 않는 때에는 연방재정법원이 결정에 의하여 재판한다. 항고가 전원일치로 棄却 또는 각하되는 경우의 결정에는 이유를 요하지 않는다. 단 이때에는 미리 그 허용이나 항고의 이유에 대한 疑義가 항고인에게 통지되어야 하며, 이 통지에는 신청인은 통지서가 송달된 후 1개월내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지시사항을 부기한다. 연방행정법원에 의하여 항고가 각하됨으로써 그 판결은 확정력을 가진다.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항고결정이 송달됨으로서 상고기간의 진행이 개시한다.

第116條 [許可를 요하지 않는 判決] (1) 절차의 중요한 하자로서 다음 각호에 언급한 사항이 非難되는 경우에는 상고의 제기에 대한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1. 판시하는 법원이 규정에 따라 구성되지 아니하였던 경우
2. 법률로 법관의 직무행사에서 제척되었거나 불공평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유효하게 기피된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한 경우
3. 소송에서 1관계인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 다만 그 관계인이 명시 또는 묵시로 소송의 진행에 동의하였던 경우에는 제외한다.
4. 판결이 절차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구두변론에 기하여 이루어진

30) 抗告

판결이외의 재판(결정, 명령)에 대한 독립의 上訴를 말한다. 判決節次에서 종국판결전에 행해지는 모든 재판이 반드시 終局的裁判과 더불어 上訴法院의 판단을 받게 되면 절차가 복잡하므로, 사건의 實體와 관계가 희박하고 그것만을 分離시켜도 해결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절차진행상 신속하게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사건의 실체와 분리시켜 상소를 허용한 것이다.

경우

5. 재판에 이유가 부기되지 않은 경우

(2) 관세정율사건에서 판결에 대한 상고에 있어서도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第117條 [削除]

第118條 [上告理由] 31) (1) 상고는 계쟁판결이 연방법의 위반에 의거한다는 것만을 이유로 할 수 있다. 제33조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주법률에 따라 이 절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정해져 있는 때에는 상고는 계쟁판결이 주법의 위반에 기인한다는 것을 이유로 할 수 있다.

(2) 연방재정법원은 계쟁판결에 있어서 이루어진 사실확인에 구속된다. 다만 이 사실확인에 관하여 적법하고 또한 근거있는 상고이유가 제출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상고가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하는 것이고 또한 동시에 제115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 중의 하나라도 결한 때에는 주장된 절차상의 하자에 대해서만 재판한다. 그밖의 경우에는 연방재정법원은 주장된 상고이유에 구속되지 않는다.

第119條 [聯邦法違反의 境遇] 판결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상 연방법의 위반에 기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1. 판시한 법원이 규정에 따라 구성되지 아니하였던 경우
2. 법률에 따라 법관의 직무행사에 의하여 제척되거나 불공평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유효하게 기피된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한 경우
3. 1관계인의 법률상의 의견청취가 허용되지 아니하였던 경우

31) 上告理由

당사자가 上告를 신청하는 이유로서 그것이 인정되면 原審判決破棄의 이유로 되는 것을 말한다. 상고이유는 係爭判決이 연방법에 위반한 것에 한하지만(제1항 전단), 제33조 1항 4호의 경우에는 州法에 위반함을 이유로도 할 수 있다. 上告審은 法律審이기 때문에 事實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原審係爭判決에 구속된다(제2항). 어떠한 경우를 연방법위반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119조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4. 관계인의 1인이 소송에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
다만 당해 관계인이 소송의 수행에 명시 또는 묵시로 동의하였던 경우를
제외한다.
5. 판결이 소송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배된 구두변론에 의한 경우
6. 판결에 이유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第120條 [上告의 提起] (1) 상고는 완비한 판결의 송달후 또는 상고의 허가에
관한 결정(제115조 제5항)의 송달후 1월이내에 서면으로 재정법원에 제출하
고 또한 늦어도 그다음 1월이내에 이유를 첨부해야한다. 상고이유서제출기간
은 그 기간경과전에 이루어진 신청으로 연방재정법원의 소관재판장은 이를
연장할 수있다.

(2) 상고는 係爭판결을 지정해야한다. 상고이유서 또는 상고장에는 특정한 청구
를 기재하고 위배된 법규를 표시해야 하며 또한 절차상의 흠결이 있을 경우
에는 그 흠결을 증명하는 사실을 표시해야한다.

(3) 재정법원은 상고장 또는 항고장을 소송기록과 함께 연방재정법원에 송부한
다.

第121條 [節次規定] 상고절차에 대해서는 상고에 관한 법규에 특별한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제1심절차에 관한 규정과 판결 및 다른 재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예심판사에 의한 재판에 관한 제70a조와 공정한 재량에 의한 절차
에 관한 제94a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79b조에 의하여 재정법원이 적법하게
각하한 진술과 증거자료도 상고절차에서 제외된다.

第122條 [上告訴訟에 있어서 關係人] (1) 상고소송의 관계인은 소에 관한 절
차에 관여하였던 자로 한다.

(2) 소송이 연방법에 의한 공과 또는 연방법에 관한 분쟁에 관한 것인 때에는
연방장관은 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소송이 주재정관청에 의하여 관리된
공과 또는 주법에 대한 분쟁에 관한 것인 때에는 소관주최고관청도 이 소송
참가권을 가진다. 법원은 관할서에 대하여 참가를 요구할 수 있다. 참가에
의하여 관청은 관계인의 법적 지위를 얻는다.

第123條 [訴의 變更 및 召喚의 不許可] 소의 변경 및 소환은 상고소송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제68조는 그 적용을 방해받지 않는다.

第124條 [上告의 許可審査] (1) 연방재정법원은 상고가 허용되거나 상고가 법률에 의한 형식 및 기간에 제기되고 또한 이유부기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이들 요건의 하나를 결한 때는 상고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2) 상고의 판단은 종국판결 이전에 행해진 재판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다룰 수 있는 한도에서 이들 재판도 그의 기초로 한다.

第125條 [上告의 取下] (1) 상고는 판결이 확정력을 가지기까지는 취하할 수 있다. 구두변론종결후 구두변론포기의 경우 및 법원결정발부후에는 피상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취하할 수 있다.

(2) 취하는 제기된 상소에 대한 敗訴의 효력을 발생한다.

第126條 [上告裁判] 32) (1) 상고가 허용되지 않는 때에는 연방재정법원은 결정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

(2) 상고가 이유없는 때에는 연방재정법원은 이를 기각한다.

32) 上告裁判

① 上告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각하결정을 한다. 却下決定은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上告제기의 訴訟要件을 缺했다는 이유로 행하는 재판이다(제1항).

② 上告가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原告敗訴判決로서 棄却判決을 한다(제2항). 즉 上告는 허용되지만 本案을 審理한 결과 上告人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경우이다.

③ 상고가 허용되어서 本案에 대해서 審理한 결과 上告人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㉞ 연방재정法院 스스로 忍容判決을 할 수도 있고,

㉞ 原審法院에서 다시 심리하여 재판토록 原審判決을 破棄하고 원심법원에 되돌려 보낼 수 있다(제3항). 이 경우 원심법원은 연방재정법원의 법적 판단을 기초로 해서 裁判해야 한다(제5호).

④ 재판자체가 정당한 때에는 上告를 棄却한다(제4호). 제4호에 의한 상고의 기각은 재정법원법 제119조에서 의미하는 절대적 상고이유(판결에의 영향과는 무관계하게 法令違反이 상고이유가 된 경우)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다(통설).

- (3) 상고가 이유있는 경우에는 연방재정법원은,
1. 사건에 대하여 스스로 재판을 할 수 있고,
 2. 계쟁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 및 재판을 하게하기 위하여 사건을 환송할 수 있다.
- (4) 재판이유는 현존권리의 침해를 발생시키는 것이지만 재판자체는 다른 이유로 정당한 때에는 그 상고를 기각한다.
- (5) 다시 변론 및 재판을 하기 위하여 사건의 환송을 받은 법원은 연방재정법원의 법적 판단을 그 재판의 기초로 해야한다.

第127條 [還送] 상고소송중에 신규 행정행위 또는 변경된 행정행위가 소송의 목적물(제68조, 제123조 제2단)이 된 때에는 연방재정법원은 계쟁판결을 파기하고 또한 다시 변론 및 재판을 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사건을 재정법원에 환송할 수 있다.

第 2 節 抗告³³⁾

- 第128條 [抗告가 許容되는 境遇]** (1) 판결 또는 가결정 이외의 재정법원의 재판 및 재정법원의 재판장 또는 재판장이 정한 판사의 결정에 대하여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관계인 및 그 이외에 재판에 관계를 가지는 자는 연방재정법원에 항고할 수 있다.
- (2) 소송상 중요한 처분, 釋明處分, 기간의 연장 또는 확정에 관한 결정, 증거에 대한 결정, 증거신청 각하결정, 소송절차 및 청구에 관한 병합 및 분리에 관한 결정은 항고로서 다룰수 없다. 다만 소송의 정지에 관한 재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3) 제69조 3항과 5항에 의한 집행정지에 관한 결정과 제114조 1항에 의한 가(처분)명령에 관한 결정은 결정문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만 관계인에게

33) 抗告 - 제115조에서 설명

제1항은 抗告로 다룰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2항, 제4항에서는 抗告로서 다룰 수 없는 決定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안이 원칙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決定에 대해서는 항고를 제한함을 의미한다.

항고가 허용된다. 허용에 대해서는 제115조 2항이 적용된다.

- (4) 비용에 관한 쟁송에서는 항고를 제기하지 못한다. 전단은 상고의 不許可에 대한 항고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第129條 [抗告提出] (1) 항고는 재정법원에 서면으로 또는 사무국의 서기관의 조서에의 기록에 의하여 재판의 선고후 2주 이내에 제기해야한다.

- (2) 항고기간은 항고가 그 기간내에 연방재정법원에 제기된 때에도 준수된다.

第130條 [聯邦財政法院의 更正과 提起] (1) 계쟁판결을 한 재정법원 또는 재판장은 항고에 이유가 있는 것을 인정할 때는 당해 재판을 更正해야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때는 당해 항고를 지체없이 연방재정법원에 송부해야한다.

- (2) 재정법원은 관계인에게 항고의 제기를 알려야한다.

第131條 [抗告의 延期的 效力] (1) 항고는 질서수단 또는 강제수단의 확정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延期的 효력을 가진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계쟁재판을 한 재정법원재판장 또는 재판장이 정한 판사는 계쟁재판의 집행을 잠시 정지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 (2) 법원구성법 제178조 및 제181조 제2항의 규정은 그 적용을 방해하지 않는다.

第132條 [抗告에 관한 裁判] 항고에 관해서는 연방재정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한다.

第133條 [法院의 裁判에 대한 異議申請] (1) 受命判事³⁴⁾나 受託判事³⁵⁾의 재

34) 受命判事(受命法官)

裁判部(合議制)인 法院의 구성원인 法官이 법률로 정해진 사항(예, 증거조사, 준비절차 등)에 대하여 재판부를 대표하여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의 法官으로서 裁判部の 裁判長이 이를 지정한다. 受命法官이 직무를 행한 때에는 재판장과 같은 권한을 가지나 裁判部の 감독에 복종해야한다. 수명법관의 재판 중 원래 抗告할 수 있는 성질의 것에 대해서는 異議申請이나 取消, 變更의 청구를 할 수 있다.

판 또는 법원서기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정법원의 재판이 선고된 후 2주일이
내에 異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신청은 서면 또는 법원사무국의 서기가 작
성하는 조서에 의하여 제기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제129조와 제131조를 준용
한다.

- (2) 연방재정법원 이전의 절차에 대해서는 수령판사, 수탁판사 또는 사무국의
서기의 재판에 대한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第 3 節 再審³⁶⁾

第134條 [民事訴訟法の適用] 확정력을 가지는 종결된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
4편의 諸規定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35) 受託判事(受託法官)

法院간의 共助로서 訴訟이 係屬되어 있는 다른 법원의 촉탁을 받아 일정한
사항(예, 증거조사)을 처리하는 受託法院의 判事を 말한다. 촉탁을 한 법원의
구성원은 아니지만 그 위임에 기하여 촉탁법원을 대신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점
에서 受命法官에 준하여 취급된다.

36) 再審

확정판결에 의하여 종결된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가 再審事由의 존재를 주장
하고 不服을 신청하여 그 판결의 취소와 사건의 再審制를 요구하는 것 또는
그 절차를 의미한다. 確定判決은 法的 安定性の 견지에서 함부로 취소, 변경할
수 없으나 중대한 하자가 있는 데도 그대로 방치한 것은 당사자에게 가혹하고
재판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때에는 再審을 허용한
다. 따라서 일정한 再審事由의 존재가 필요하다. 再審에는 判決에 대한 것, 確
定判決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확인 및 請求의 확인, 포기조서와 즉시항고로 不
服할 수 있는 결정, 명령에 대한 것(準再審)이 있다. 일반적으로는 판결에 대
한 것만을 가리킨다.

再審事由는 法定되어 있다. 우리 民事訴訟法은 제422조와 제423조에서 再審
事由에 대해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第 3 編 費用 및 執行

第 1 章 費用¹⁾

- 第135條 [費用義務者]** (1) 소송비용은 패소한 관계인이 이를 부담한다.
(2) 성과없이 제기된 상소비용은 이 상소를 제기한 자가 이를 부담한다.
(3) 소송참가인에게는 그가 참가신청을 하였거나 상소를 제기하였던 경우에 한하여 소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4) 허용된 재심소송의 비용은 관계인의 책임에 의하여 발생하지 않는 한 국고에 부담시킬 수 있다.

1) 訴訟의 費用

(1) 根據法

소송의 비용에 관해서는 독일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에 관한 법률(Gerichtskostengesetz)이 있는 이외에 각 개별법에서 소송비용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각 개별법에서 訴訟費用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고 특히 우리 민사소송법 제3장에서 소송비용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소송비용에 관한 일반법인 소송비용에 관한 법률 이외에 재정법원법에서 별도로 비용의무자(제135조), 비용의 상계(제136조), 비용에 관한 裁判(제138조, 제143조), 비용의 상환(제139조) 및 비용원조(제142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소송비용의 내용

소송의 비용은 소송의 촉진 및 심판을 위하여 직접으로 당사자 및 法院이 支出할 비용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裁判費用(법원의 행위에 대하여 요하는 비용. 송달 등의 비용. 증인, 감정인 등의 여비, 일당 등)

② 관계인의 비용(관계인이 스스로 지출한 비용 : 소송서류작성 당사자출장비 및 세무사건에서의 대리인 또는 보조인의 수수료 및 경비(제139조 3항) 등으로 나눈다. 변호사의 수수료 및 경비도 비용에 포함된다(제139조 3항 2단).

우리 민사소송법 제99조 2도 소송대리를 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한 또는 支給할 보수는 이를 소송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송비용원조에 관하여 규정한 재정법원법 제142조에 비교하여,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서도 소송비용을 지출할 實力이 부족한 자의 申請에 의하여 各審에서 敗訴할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한 訴訟上 救助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나라 민사소송법 제118조-제123조).

- (5) 2인이상의 자에 의하여 비용의무부분이 존속한 때는 이들은 사람수에 따라 책임을 진다. 이 관여에 대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는 때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그 관여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第136條 [費用의 相計] (1) 어떤 관계인이 일부 승소하고 일부 패소하는 경우에는 비용은 상계되거나(gegeneinander aufteilen) 또는 비율에 따라 분할되어야 한다. 비용이 서로 상계되는 때에는 재판비용은 각 당사자가 그 반액을 부담한다. 다른 관계인의 패소가 근소부분에 불과한 때는 일방의 관계인에게 비용의 전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2) 청구, 소, 상소 또는 기타 법률상의 구제를 취하한 자는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3) 종전 상태로의 회복의 청구에 의하여 발생한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4) 폐지

第137條 [關係人의 費用負擔] 관계인이 보다 빨리 주장 또는 입증할 수 있었고 주장 또는 입증했어야 할 사실에 기초한 재판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 관계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관계인의 책임에 의하여 발생한 비용은 이 관계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第138條 [決定에 의한 費用裁判] (1) 소송이 본안에 대하여 종결한 때는 법원은 공평한 재량에 따라 소송비용에 대하여 결정으로 재판한다. 이때 종전의 사실상태 및 계쟁상태를 고려해야 한다.

(2) 계쟁행정행위의 취소 또는 변경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청구가 인정되거나 또는 부작위소송의 경우에 제46조 제1항 제3단 제2분단의 규정으로 법정기간 내에 재판외의 법률상의 구제가 인용되거나 또는 신청한 행정행위가 이루어짐으로써 소송이 종결하는 범위에서 비용은 행정관청의 부담으로 한다.

第139條 [費用의 償還] (1) 비용은 재판비용(수수료 및 지출비) 및 합목적적인 권리의 추구 또는 방어에 필요한 관계인의 지출비로 하여 전치절차의 비

용을 포함한다.

(2) 재정관청의 비용은 상환되지 않는다.

(3) 세무사법의 규정에 따라 세무사건에서 업무로서 원조를 할 권한을 가진 임의대리인 또는 보조인의 법률로 정해진 수수료 및 경비는 언제나 상환할 수 있다. 수수료 및 경비가 법률로 정해지지 않은 임의대리인 또는 보조인에 대한 비용은 변호사의 법정수수료 및 경비액 이하에서 상환될 수 있다. 전치절차가 계속하고 있는 범위에서 법원이 전치절차로 임의대리인 또는 보조인의 입회를 구할 것을 필요로 한다고 판시하는 경우, 수수료 및 비용은 상환될 수 있다. 임의대리인 또는 보조인이 관계인과 피용자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입회에 의하여 발생하는 수수료는 상환되지 않는다.

(4) 보조인의 재판외의 비용은 법원이 이를 공평의 견지에서 패소당사자 또는 국고에 부담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상환할 수 있다.

第140條 [削除]

第141條 [削除]

第142條 [貧民無料訴訟權(Bewilligung des Armenrechts)] (1) 소송비용원조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은 이를 준용한다.

(2) 소송비용원조가 승인되는 관계인에게에는 세무사도 보조받을 수 있다.

第143條 [費用에 대한 裁判] (1) 법원은 비용에 대하여 판결로 또는 소송이 판결이외의 방법으로 종결된 경우에는 결정으로 재판해야한다.

(2) 사건이 연방재정법원에 의하여 재정법원에 환송된 때는 재정법원에 소송비용에 대한 재판을 이송할 수 있다.

第144條 [權利救濟의 取下 境遇의 訴訟費用에 대한 裁判] 법률상의 구제의 전부가 취하된 때는 관계인이 비용의 상환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소송비용에 대하여 재판한다.

第145條 [費用裁判의 取消] 2) 비용에 관한 재판의 취소는 본안의 재판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第146條 [削除]

第147條 [削除]

第148條 [削除]

第149條 [償還費用의 確定] (1) 관계인이 상환받을 비용은 신청으로 제1심법원의 서기관이 이를 확정한다.

(2) 확정에 대하여는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제기기간은 2주이다. 이의의 허용에 관하여 관계인에게 고지해야한다.

(3) 재판장 또는 법원은 집행을 가정지를 명할 수 있다.

(4) 이의는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한다.

第 2 章 執行

第150條 [租稅基本法規定의 適用] 공과관리자로서의 연방, 주, 시조합, 시, 공법상의 단체, 시설 또는 재단을 위하여 집행이 이루어져야할 때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조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집행을 한다. 집행은 제6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第151條 [民事訴訟法規定의 適用] (1) 연방, 주, 시조합, 시, 공법상의 단체, 시설 또는 재단에 대하여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때에는 강제집행은 민사소송법 제8편을 준용한다. 제150조의 규정은 그 적용을 방해받지 않는다. 집행법원은 재정법원이다.

2) 費用裁判의 取消

비용재판에 대한 소송은 원칙적으로 本案裁判에 대한 소송과 연계해서만 허용된다는 의미이다.

(2) 집행은 다음에 따라 이를 한다.

1. 확정력을 가진 법원의 재판 및 가집행을 할 수 있는 법원의 재판
2. 가(처분)명령
3. 소송비용확정결정

(3) 항고소송 및 의무이행소송의 판결은 비용에 대해서만 가집행의 선언을 할 수 있다.

(4) 집행을 위하여 관계인의 신청으로 관계인에게 사실 및 판결이유의 기재없이 등 판결정본을 교부할 수 있다. 그 송달은 완전한 기재가 있는 판결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第152條 [金錢債權에 대한 執行] 3) (1) 제151조의 경우에 금전채권에 대하여 집행이 이루어지는 때에는 집행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으로 집행을 한다. 집행법원은 실시할 집행처분을 특정하여 그의 실시를 관할법원에 위탁한다. 수탁기관은 현행의 집행규정에 따라 그 위탁을 이행할 의무를 진다.

(2) 법원은 집행처분을 명하기 전에 집행받을 행정청에 대하여 또는 공법상 단체, 시설과 재단의 경우에는 그 법정 대리인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기간내에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을 최고하는 동시에 예정된 집행을 통지해야 한다. 그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3) 공적임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결하거나 그의 양도가 公衆에 반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집행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대한 異議에 관하여서는 주무감독행정청 또는 최고연방행정청이나 최고 州행정청인 경우에는 주무장관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법원이 이를 재판한다.

(4) 공법상의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5) 가(처분)명령의 집행의 경우에는 집행의 통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최고 기간을 반드시 정할 필요도 없다.

3) 집행시에는 원칙적으로 通知와 催告期間을 필요로 하나 가처분명령은 급박한 경우에 한하여 발해지는 것이므로 통지나 최고기간이 必須的 要件은 아니라고 규정한 것이다 (제152조 5항).

第153條 [執行文을 요하지 않는 境遇] 제150조, 제152조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경우에는 집행문을 요하지 않는다.

第154條 [強制金賦課] 제100조 제1항 제2단, 제101조 및 제114조의 경우에 재무관청이 판결 또는 가(처분)명령으로 부과시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제1심법원은 청구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그 재정관청에 대하여 200DM까지의 강제금을 결정에 의하여 부과하고, 기간을 경과한 때는 이를 확정하고, 또한 직권으로 집행할 수 있다. 강제금은 반복하여 이를 부과, 확정 및 집행할 수 있다.

第 4 編 經過規定 및 終結規定

第155條 [法院構成法, 民事訴訟法の 準用] 이 법률에 대하여 규정이 없는 한 법원구성법을, 민사소송법의 기본적인 차이 때문에 준용을 배제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第156條 [削除]

第157條 [州法の 規定의 無效宣言의 效果] 주의 헌법재판소가 주법의 무효를 확인하였거나 또는 주법의 규정의 무효를 선언한 때에는 주법에 의한 특별한 법률상의 규정을 제외하고 재정재판권을 가진 법원의 이미 확정된 재판은 무효에 의거하더라도 그대로 효력을 가진다. 이러한 재판에 의한 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7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第158條 [宣誓에 의한 訊問, 宣誓] 재정법원에 의한 조세기본법 제94조에 의한 정보의무자의 선서에 의한 訊問 또는 조세기본법 제96조 7항 5단에 의한 감정인의 선서는 신문 또는 선서를 위하여 業務配當案에 정해진 법관앞에서 행한다. 증인 감정 선서거부의 적법성에 관해서는 재정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한다.

第159條 [削除]

第160條 [參加 및 召喚] 1) 제3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財政訴求가 개시되는 때는 이 법률의 규정과는 달리 소송에의 관여 및 참가는 법률로 정할 수 있다.

1) 召還

제1항을 통하여 제33조 1항 4호에 따라 州법률에 의한 재정소송의 방법이 개시된다. 즉 제33조 1항 4호가 州法에 의하여 明文으로 규정될 때에는 주법에 의한 재정소송방법이 허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자치단체의 조세사건에 대한 재정소송방법이 가능하다. 이때에는 소송에의 관여 및 참가는 재정법원법의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第161條 [舊法令의 廢止] (1) 이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동일대상을 규제하는 종래의 법률 및 명령의 일체의 규정이 이미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 한 폐지한다. 특히 다음에 규정한 법률 및 동일대상에 대하여 공포된 일체의 시행법, 시행명령 및 행정규칙이다.

1. 57년 10월 22일부 『재정재판권의 분리에 있어서 조치법』(BGBl I 1746)
 2. 50년 6월 29일부 『BFH법』(BGBl 257)
 3. 영국군정부 제175호명령(영국지대명령집 48년 385면)
 4. 54년 7월 21일부 『재정법원의 선거직원의 선거기간연장의 주정부에의 수권법』(BGBl I 213)
 5. 24년 2월 14일부 『제3차조세긴급령』(BGBl I 74) 제50조 및 제51조
 6. 47년 3월 21일부 『조세사건에 있어서 공소절차의 재채용 및 재정법원조치법에 관한 법지시』(뷔르텐베르크·호헨졸레른 주의 政府報 102면)
 7. 48년 8월 25일부 『행정법원에 관한 감독위원회법 제36호의 집행명령』(바덴 법령보 111면)
 8. 58년 6월 30일부 『재정법원법』(바덴-뷔르텐베르크 법률집 170면)
 9. 48년 5월 19일부 『재정재판권의 부활법』(바이에른 법령집 87면)
 10. 48년 10월 22일부 『FGO』(바이에른 재무행정규정訂正集 I 321)
 11. 57년 12월 17일부 『FGO』(한자 자치도시 부레멘 법률집 183면)
 12. 47년 10월 13일부 『FGO』(헷센주법령집 108면)
 13. 49년 5월 31일부 『FG직원의 宣誓令』(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법령집 177면)
 14. 58년 8월 12일부 『재정법원 榮譽직원의 선거기간연장명령』(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법령집 343면)
 15. 49년 8월 11일부 『라인란트-팔츠 주정부의 법령집338면』
 16. 51년 5월 15일의 재정법원법(싸르란드 관보 425면)
 17. 58년 1월 28일의 싸르란드의 재정재판권영역의 조치에 관한 법률 제616호(싸르란드 관보 425면)
- (2) 다른 법률이 이 법률에 의하여 폐지된 명칭을 사용하거나 규정을 포함한 한도에서 이 법률의 적합한 명칭 및 규정이 사용된다.

第162-第181條 : 다른 租稅法律의 改正規定들로서 掲載되지 않음.

第182條 [削除]

第183條 [(베를린에서의 효력) 適用對象地域 없음]

第184條 [效力] (1) 이 법률은 196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62조 33호, 44호, 46호, 52호와 법규명령을 발포할 권한을 부여하거나 또는 州法의 발포를 정하는 규정들은 공고한 다음날 효력을 발생한다.

(2) 임시조치로서(für die Überleitung) 다음 각호의 규정이 적용된다.

1. 법률상의 구제에 대한 기간의 진행이 본법시행전에 개시된 사건에 있어서는 법률상의 구제에 관한 재판에 대한 기간 및 관할권은 종래의 규정에 의하고 그밖의 절차는 본법의 규정에 의한다. 충분한 법률상 구제에 대한 고지가 행해지지 아니함으로써 종래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의 진행이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률상의 구제는 본법 시행후 1년내에만 제기될 수 있다. 제56조 3항의 규정이 준용된다.
2. 본법의 시행전에 행해진 재판에 대한 법률상 구제의 허용은 종래의 규정에 의한다.
3. 본법시행시에 재정법원에 소가 제기되어 있는 사건의 관할권은 종래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1항 6호의 적용을 방해받지 않는다.
4. 본법시행시의 명예직재정재판관의 직무는 본법시행후 1년내에 종료한다. 제25조에 의한 후보자명부는 본법시행후 6월내에 처음으로 제출된다.
5. 하나의 법률문제에 있어서 연방재정법원의 재판부가 본법시행전에 다른 재판부 또는 대재판부가 행한 재판 또는 종전의 민헨 최고재정법원의 재판과 상위할 경우에는 종래의 재판이 제국조세법 제64조에 따라 선고된 경우에만 대재판부(제11조)가 재판한다.

【第三部 (稅務)企業調査規則】

企業調査를 위한 一般行政規則

Allgemeine Verwaltungsvorschrift für die Betriebsprüfung-

(稅務)企業調査規則

Betriebsprüfungsordnung(Steuer)-BpO(St)-Vom 17. 12. 1987 BAnz. Nr. 241 vom

24. Dezember 1987/BStBl. IS. 802(BdF IV A7-S 1401-6/78)

상기의 일반행정규칙은 본기본법 제108조 7항의 규정에 기초하여 연방참의원의동의하에 제정되어 있다.2)

第1條 [(稅務)企業調査規則의 適用範圍] (1) 이 행정규칙을 州조세행정청 및 연방국세청의 기업조사과의 일반임장조사(기업조사)에 적용한다.
(2) 특별임장조사에 대하여는 제5조에서 제12조까지의 규정이 제5조 4항 2단을 제외하고 적용한다.

第2條 [企業調査課의 所管事務] (1) 특히 영리사업 또는 농림업을 영위하는 납세의무자 또는 자유업을 영위하는 납세의무자의 허락하의 임장조사는 기업조사과가 이에 해당한다.
(2) 조세기본법 제193조 2항의 의미에서 임장조사, 특별조사 및 조사의 성질을 갖는 기타 활동, 예컨대 지불능력조사도 기업조사과에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조세범칙조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기업조사의 목적은 과세상 의의가 있는 사실관계의 정당한 조사와 평가이지, 보다 많은 조세를 징수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조사조치의 지시와 시행

2) 기업조사에 관한 행정규칙은 우리나라의 경우 국세청의 훈령으로 시행하는 사항에 해당한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 이러한 집행상의 문제도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여 행정관청이 행정편의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것을 통제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입법양태는 우리나라에서도 받아들여야 할 의미있는 일로 의회의 입법권 특히 국민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규정하는 조세문제 입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본보기가 되어야 할 것 것이다.

에 있어서는 재량행사의 범위내에서 수단과 최소침해의 비례원칙을 고려해야 한다. 3)

- (4) 조세행정청은 기업조사를 실시하는가, 언제 실시하는가에 대하여 의무적 재량에 의하여 결정한다. 납세의무자가 경제적 처분권(wirtschaftliche Disposition), 예컨대 영업양도 또는 자본수입을 이유로 하여 즉시 기업조사를 받을 때도 동일하다.

第3條 [規模別 分類] 4) 기업조사를 받는 납세의무자는 다음에서 규정한 규모별로 분류한다.

대기업 (대)

중기업 (중)

소기업 (소) 및

영세기업 (영세)

기일, 기준이 되는 과세기간, 및 이 분류의 지표는 州최고재무관청이 연방재무장관과 그때마다 협의하여 정한다.

第4條 [企業調査의 範圍] 5) (1) 재무관청은 의무재량에 따라 조사대상의 범위를 정한다.

3) 세무조사의 목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다. 세무조사시 조사권의 실행에 있어서 과세자가 세수실적 또는 기타 이유에 의하여 과다하게 부과하는 것을 막고 납세자의 사생활과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엄정하게 과세권을 행사할 것을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납세자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이러한 규정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4) 기업의 세무조사는 무엇보다 당해 기업의 상황에 맞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때 가장 먼저 제기되는 것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세무조사의 방법이나 내용 및 절차가 달라야 실효성이 있는 세무조사를 실행할 수 있고 납세자 관리가 합리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5) 기업조사의 범위를 명시하므로서 과세자 및 납세자는 세무조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가지게 되어 세무조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 수 있다. 특히 대기업에 대하여는 연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원할히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

- (2) 대기업의 경우, 조사대상기간은 前回の 조사대상기간에 계속하는 것으로 한다. 처음의 조사의 경우에는 조세행정청은 조사를 미쳐야하는 기간을 특정한다.
- (3) 기타 기업의 경우, 조사대상기간은 조사명령의 고지전에 수익세과세표준신고서가 제출되었던 최근 3과세년도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다만 조사대상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과세기초가 확인되지 않는 때, 적지 않은 추가납세청구 또는 환급금이 예기될 수 있는 때, 또는 조세질서위반의 혐의가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4) 기업을 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하여 조사를 할 것인가의 판단은 기업이 조사명령의 시점에 분류된 규모기준을 준용한다. 어떤 기업이 통상 정기조사의 개시시에 대기업으로 분류·고체된 경우, 예외적으로 이 조사는 여전히 제3항이 준용하는 시기로 한정된다.
- (5) 조사시에는 사업용재산의 조사대상기간의 최종일에 표준가액 및 재산세 - 연결조사가 실시되지 않는 한 - 조사대상기간의 개시 및 필요한 경우에는 주식, 지분권과 이익배당證의 총가액의 확인도 포함시켜야 한다.

第5條 [企業調査의 命令] 6) (1) 과세권한을 가진 재무관청이 기업조사를 명한다. 기업조사의 명령은 수입 재무관청에도 위임할 수 있다.

(2) 조사명령에는 임장조사의 근거법령, 조사를 받는 세목 또는 조사를 받는 환급금, 조사를 받는 특정 사실관계, 조사대상기간을 기재해야한다. 조사명령에는 임장조사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본질적 권리의무를 기재해야한다. 조세기본법 제203조의 간이임장조사를 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해야한다. 기업조사의 범위를 사후적으로 확장하는 경우에는 보충조사명령서를 발해야한다.

(3) 기업조사의 개시에정기일, 기업조사관 및 기업조사보조원의 성명, 및 기타

6) 세무조사의 실행에 앞서 납세자에 세무조사의 근거, 목적, 세목, 기간, 조사관의 인적사항 등에 대하여 자세히 규정한 조사명령서는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의 발동에 대한 규제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조사명령서에 의하지 않고는 세무조사를 임의로 할 수 없어 납세자의 영업상 또는 사생활에 대한 기본권이 과세권으로부터 보호받게 되므로 이는 중요한 적법절차의 하나가 되고 있다.

조사시행규정의 통지는 조사명령서와 동시에 할 수 있다.

- (4) 조사명령서 및 제3항의 통지는 조사목적에 해하지 않는 한 조사개시전 상당한 시기에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해야한다. 통상 대기업의 경우 4주간, 그리고 중기업의 경우 2주간이 적당하다.
- (5) 조사개시의 연기신청은 중요한 이유, 예컨대 납세의무자의 질병, 그자의 세무사의 질병, 중요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종업원의 질병, 개축 또는 천재지변에 의한 현저한 기업혼란인 경우에 인정된다. 조세의무자의 연기신청은 예컨대 조사를 위한 준비작업의 처리와 같은 의무이행에 대해서도 허용될수 있다.
- (6) 사원과 조합원 및 감사기관의 구성원의 조세상의 관계가 기업조사의 대상에 포함된 경우에는 각 관계자에 대하여 특별한 조사명령서를 부여해야 한다.
- (7) 당해 조사대상기간의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조사기간과 관계가 없는 장부, 기록, 업무용서류 기타 자료의 第출을 조사대상기간을 확장시키지 않고 요구할 수 있다.

第6條 [企業調査의 重點] 7) 기업조사는 본질적인 것을 대상으로 하여 그 대상기간을 필요한 정도에 한정해야한다. 기업조사는 첫째 최종적인 세액부족 또는 환급금 또는 의미있는 이익의 이전을 초래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그 대상으로 해야한다.

第7條 [從業員에 대한 質問] 8) (1) 조사개시시에 납세의무자들에게 그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제공을 위한 참고인을 지명할 수 있다는 취지를 알려야

7)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까지 세무조사권 즉 질문검사권이 조세고유의 목적에 한하지 않고 세무조사를 기화로 다른 목적을 위하여 예를 들면 물가단속, 과외 단속, 환경공해단속 등 사회적 현안의 해결 또는 공정하지 못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남용되어 왔다. 이러한 옳지 못한 관례를 타파하기 위하여 독일의 예처럼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세무조사의 목적과 범위를 한정하여 질문검사권의 남용을 억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8) 세무조사시 종업원에 대한 질문검사권의 행사도 일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사전에 납세의무자에게 알리지 않고는 직접 질문검사를 할 수 없다는데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대한 도입문제가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하다. 정보제공자의 성명은 기록에 남겨야한다. 조세의무자의 정보제공의무자 및 그밖의 협력의무자의 의무를 정보제공자의 지명으로 납세의무자의 정보제공의무 및 기타협력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 (2) 기업조사관이 조세기본법 제200조 1항 3문 및 4문에 기초한 조사권한의 범위에서 정보제공자로서 지명되지 않은 종업원에 대하여 정보제공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는 납세의무자에게 적시에 또는 필요한 경우 다른 정보제공자를 지명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第8條 [統制調査資料의 通知(Kontrollmitteilungen)] 9) (1) 조세기본법 제194조 3항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과세를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확인사항은 소관재무관청에 통지해야 한다. 납세의무자가 조세기본법 제102조에 의한 정보제공거부권을 가지고 이를 명백하게 포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제조사자료의 통지는 작성되어서는 안된다.

- (2) 종업원의 정보제공거부권은 감사자료 통지의 작성을 방해하지 않는다.
(3) 해외거래관계에 관한 통제조사의 자료는 이용을 위하여 연방국세청에 대해서도 송부해야한다.

第9條 [租稅刑事犯의 嫌疑] 10) 재무관청이 그 조사에 대하여 권한을 가지는 범죄행위의 혐의가 기업조사 도중에 명백하게 되는 때, 당해 범죄행위의 취조권한을 가지는 기관에게 지체없이 통지해야한다. 혐의가 납세의무자에 대한 것인 경우, 형사절차의 개시가 그자에게 통지되는(조세기본법 제390조) 때 최초로, 조사(조세기본법 제194조)는 혐의가 미치는 범위에서 그자에 대하여 계속할 수 있다. 그때 확인사항이 형사절차의 목적에도 사용될 수 있는 범위에서 납세의무자는 이미 과세절차에 있어서 협력을 강제받지 않는(조세

9) 세무조사시 발견되는 자료로서 의미있는 과세자료는 관련기관에 통지하도록 하여 과세자료를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근거규정이다. 이에 따라 모든 관련 조사관 또는 조사관청은 세무조사시 파생되는 유효한 과세자료를 통보해야하는 의무가 주어지게 된다.

10) 일반의 세무조사와 형사상의 세무조사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다. 일반의 세무조사가 직접 형사상의 세무조사로 이행하는 경우 납세자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기본법 제393조 1항) 것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교시해야한다. 이 교시는 날짜 및 시간을 기록으로 남겨야하고, 또한 요건에 기초하여 서면에 의하여 확증해야한다.

第10條 [秩序違反의 嫌疑] 전조의 규정은 질서위반의 혐의에 준용한다. 단 질서위반에 관한 법률 제47호에 의한 과료절차의 실시를 제외하고, 제2단에서 제4단까지의 규정은 준용하지 않는다.

- 第11條 [終結論議]** 11) (1) 종결논의가 행해지는 때(조세기본법 제201조), 종결논의의 논점 및 기일을 논의전 상당한 시기에 납세의무자에 알려야한다.
- (2) 조세확정의 결정권을 가진 공무원이 종결논의에 참가하는가를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알려야한다.
- (3) 조세기본법 제201조 2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한다.

- 第12條 [調査報告와 調査確認事項의 利用]** 12) (1) 사실관계에 대하여 권리구제 또는 구속적 확언을 구하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실관계를 포괄적으로 조사보고서에 기술해야 한다.
- (2) (조세확정의 결정권을 가진 공무원이) 조사보고의 이용에 대하여 중요한 점에서 기업조사관의 확인사항과 다르게 견해를 변경하는 경우, 당해 조사관에게 견해를 명백히 할 기회를 부여해야한다. 중요한 점에서 납세의무자가 불이익하도록 견해를 변경하도록 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기회가 그 납세의무자에게도 주어져야 한다.
- (3) 조사명령서에 의하여 미리 정해진 틀내에서 기업조사는 조세확정에 관한 통지 또는 성과가 없는 조사에 대한 통지(시인통지)에 의하여 종료해야 한다.

11) 종결논의에 관하여는 조세기본법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요성에 비추어 시행규칙에서 그 절차에 대하여 한번 더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12) 세무조사의 종결논의의 실효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내용을 일정한 보고서형식으로 밝히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납세자에 명확하게 확인시키는 것은 매우 당연한 요청이다. 이러한 제도와 규정은 우리나라에서도 바로 받아들인데 문제가 없다고 본다.

第13條 [콘체른 調査] 13) (1) 콘체른에 속한 기업 또는 지배기업에 의하여 결합되어 있는 기업은 콘체른 기업의 외부매상이 년액총계 5000만 마르크이상인 때, 연결하여 통일적 지휘하에 또한 통일적 관점에 기초하여 조사를 받아야한다. 제4조 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2) 법적으로 독립기업으로 통일적 지휘하에 있는 것은 콘체른에 속한다. 하나 또는 복수의 자연인 혹은 법인, 재단 또는 기타의 목적재산이 기업으로서 하나 또는 복수의 기업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그 기업은 지배관계에 의하여 결합되어 있다.

(3) 복수콘체른에 속하는 하나의 기업은 그 기업에 대하여 최대 자본참가를 하고 있는 콘체른과 일괄하여 조사를 받아야한다. 자본참가의 비율이 같은 때, 조사상 기업은 그 기업의 업무집행에 대하여 권한있는 콘체른에 편입되어야 한다.

第14條 [콘체른 調査의 指揮] (1) 콘체른조사의 경우, 지휘를 받거나 지배를 하는 기업에 대하여 기업조사의 권한을 가진 재무관청이 통일적 조사의 지휘를 해야 한다.

(2) 기업조사를 독자적으로 받지 않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 콘체른을 지배하고 있는 때,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종속기업에 대하여 기업조사의 권한을 가지는 재무관청이 통일적 조사의 지휘를 해야 한다. 관계재무관청의 이해가 있는 경우 이와 달리 할 수 있다.

第15條 [콘체른 調査의 開始] (1) 콘체른조사의 지휘권을 가지는 재무관청은 콘체른 조사를 추진하고, 관계재무관청과 평가하고 토의한다.

13) 재벌그룹의 세무조사는 정치적·사회적·경제적인 의미에서 파급효과가 크므로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기업집단 또는 계열기업군에 대한 세무조사는 별도의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는바 시행규칙에서 대기업조사에 대한 조사방법과 절차 그리고 사후관리등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이는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의 원활한 시행과 대기업세무관리의 합리화를 위하여 매우 필요한 규정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 (2) 콘체른조사의 지휘권을 가지는 재무관청이 조사를 요청한 때 비로소 콘체른 기업은 조사를 받아야 한다.

第16條 [콘체른 調査의 實施을 위한 指針] 콘체른조사의 권한을 가지는 재무관청은 조사의 지침을 정할 수 있다. 지침에는 조사기술의 세목과 병행하여 사실관계에 대한 통일적 판단의 제안도 기재할 수 있다.

第17條 [콘체른 調査報告의 評價와 終了] 콘체른기업에 대한 기업조사에 관한 보고는(관계재무관청과) 순차로 평가되어야하고, 또한 콘체른조사의 지휘권을 가진 재무관청은 (조사보고의 평가) 종료후 최초로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송부해야한다.

第18條 [其他 結合企業에 대한 企業調査] 통일적 조사는 특별한 이익이 있는 한 다음에 규정한 자에 대해서도 실시할 수 있다.

1. 제13조 1항의 매상한도액을 하회하는 콘체른 및
 2. 콘체른에 속하지 않지만 예컨대, 관계인의 혈족관계, 공동체적 기업활동에 의하여 경제적으로 상호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 기업
- 제13조에서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第19條 [外國콘체른 企業에 대한 企業調査] (1) 제13조에서 제18조까지의 규정은 외국의 하나 또는 복수의 자연인 혹은 법인, 재단 또는 기타 목적재산이 지휘를 받거나 지배하고 있는 복수의 내국법인에 대한 조사, 외국기업과 경제적으로 결합하고 있는 복수의 내국법인에 대한 조사에 준용한다.

- (2)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내국법인에 대하여 기업조사의 권한을 가지는 재무관청이 통일적 조사의 지휘를 취한다. 관계재무관청의 이해가 있는 경우, 이와 달리 할 수 있다.

第20條 [協力の 態樣] (1) 연방국세청은 州조세행정청이 실시하는 기업조사에 대하여 조사활동 및 논의의 참가에 따라 협력한다(조세행정법 제19조 1항 1문).

- (2) 관계조세행정관청이 그때마다 쌍방의 동의를 얻어 협력의 태양과 범위를 정한다(조세행정법 제19조 2항 1문).
- (3) 주조세행정청은 기업조사의 진행에 대하여 책임질 조사관을 지정한다.

第21條 [企業의 選定 및 豫定の 協力에 관한 敎示] (1) 주조세행정청은 늦어도 조사예정기일의 개시 10일전에 대기업 및 콘체른에 대하여 작성한 조사계획을 연방국세청에 송부한다. 주조세행정청은 그 조사에 대하여 연방국세청의 협력을 합목적적이라고 사료되는 기업을 [연방국세청에게] 알려야 한다. 연방국세청은 그 조사에 협력하도록 할 기업을 지체없이 주조세행정청에 통지한다.

- (2) 주조세행정청이 조사개시를 통지한 경우, 직접 동행정청은 연방국세청으로부터 예정협력에 대하여 교시를 받는다.

第22條 [調査活動에 의한 協力] 연방국세청이 조사활동에 의하여 협력하는 때, 연방기업조사관은 통상 일정범위의 조사를 떠맡고, 또한 이 부분의 조사보고서를 起草해야한다. 조사자료를 쌍방의 이해를 얻어 관계기업조사관에게 배포한다.

第23條 [調査報告書] 연방국세청이 기업조사에 협력한 때, 동국세청은 조사보고서등본을 수취한다.

第24條 [聯邦國稅廳과 州租稅行政廳 間 見解의 差異가 있는 境遇의 節次] 기업조사의 협력에 대하여 연방국세청과 주조세행정청간에 발생한 견해의 차이를 당사자가 해소할 수 없는 경우, 연방과 주의 최고조세행정청은 보고를 받아 그 결정을 해야한다.

第25條 [企業調査官으로서 公務員의 使用] 원칙적으로 징수부문에 소속된 공무원을 기업조사관으로서 이용하는 경우, 그 사용은 - 2개년의 부과활동 및 기업조사에 있어서 6개월이상의 실습후- 州의 최고조세행정청 또는 동행정청에 의하여 지명을 받은 기관의 동의를 얻어야만 허용된다. 이에는 예외

도 인정될 수 있다.

第26條 [企業調査官으로서의 行政事務員의 活用] 14) (1) 이미 세무행정에서 종사하고 있는 행정사무직원은 다음에 규정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때, 기업조사관으로서 활용될 수 있다.

1. 최소한 3년이상 부과업무에 종사하고, 또한 그중 최소한 9개월이상 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할 것
 2. 제1호에 언급한 요건을 충족하고 시험에 합격할 것
 3. 최소한 기업조사에 6개월이상 실습할 것
- (2) 그밖의 참가자는 다음의 모든 요건을 갖춘 때, 행정사무직원으로서 기업조사에 활용할 수 있다.
1. a) 관계고등교육(법률학, 경제학, 보험수학, 농림업학) 또는
b) 상업 또는 기타의 관계의 기본적 교육을 받고, 규정된 수료시험에 합격하여 수년간 상인의 경영경제의, 감사기술의 활동을 한 증명
 2. 1호a 또는 b의 요건을 충족하고 시험에 합격
 3. 기업조사 이외에 최소한 12개월이상 활동하고 이중 최소한 9개월 동안 부과업무와 관련된 활동
 4. 최소한 6개월이상의 기업조사실습
- (3) 국세국장은 제1항 및 제2항 2호에서 4호까지의 규정에 대하여 개별사안에 있어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 (4) 조사를 위한 허용에 대한 법률상의 청구권(Rechtsanspruch auf Zulassung zur Prüfung)은 성립하지 않는다.
- (5) 필기시험은 장부 및 대차대조표의 제도에 대하여 논문형식으로 출제되고, 감독하에 답안을 작성한다.

14) 기업의 세무조사에는 법률과 회계 등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한다. 따라서 기업세무조사 담당자는 일정한 자격과 경험을 가진 자만이 임용되도록 명확히 한 규정이다. 특히 제 26조에서는 이러한 자격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앞으로 우리나라의 조세행정에서도 이러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대부분 국세청의 훈령으로 대신하고 있으나 단순히 국세청의 내부효력에 그치는 훈령으로는 그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이는 지금까지의 경험적 사실이기도 하다.

- (6) 구술시험은 조세법, 민법, 상법통칙, 특히 장부 및 대차대조표제도 및 회계제도통칙을 그 대상으로 한다.

第27條 [企業調査官 및 企業調査係長으로서의 投入] (1) 공무원 및 행정사무직원을 만 54세이상이면 배타적으로 기업조사관으로 투입해서는 안된다. 기업조사관으로서의 투입의 개시일은 기록에 남겨야한다.

(2) 기업조사계장은 국세국장의 동의를 얻어야만 선임될 수 있다.

(3) 기업조사계장 및 기업조사관은 국세계장의 동의를 얻어야만 기업조사 이외의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第28條 [企業調査補助官] 기업조사보조관을 기업조사관에게 붙일 수 있다. 기업조사보조관은 기업조사관의 지도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야한다.

第29條 [調査官의 身分證明書] 기업조사계장 및 기업조사관은 신분증명서를 제시야한다. 신분증명서의 기재사항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발행하는 조세행정청의 명칭
- 발행장소와 년월일
- 연속번호
- 職名(기업조사관/계장)
- 직위 및 직무 명
- 성명
- 생년월일
- 유효기간
- 職印이 찍힌 사진과 자필서명
- 소지자의 권한
- 職人인 찍힌 발급권한자의 職位, 職名과 署名

第30條 [企業調査官의 協議] 15) 기업조사계장은 그 계의 기업조사관과 함께,

15) 세무조사시 발견된 새로운 사항이나 의미있는 사례에 대하여는 기업조사관들이 상호 협의하프로서 조세행정의 발전과 사무의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다.

국세국장은 기업조사계장 또는 국세관내의 기업조사관과 함께, 수시로 조사 활동사무에서 생긴 의심스러운 문제에 대하여 협의하고, 새로운 재판례나 새로운 문헌을 알리고 장래의 업무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第31條 [專門(部門)個別調査官의 協議] 16) (1) 전문(부문)별 조사관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협의가 실시되어야 한다. 이 경우에 부문에서의 지식경험(Branchenerfahrungen)을 교환하고, 비교검토해야 한다. 합리적인 조사방법, 지수(Kennzahlen) 및 조사기술상의 조치에 적합한 양식서를 개발하여 [全州에] 공통한 기본통달을 작성해야 한다.

(2) 연방국세청에 소관국세국(40조)이 실시하는 專門별조사협의에 참가할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第32條 [企業카드面] 17) (1) 기업조사과는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적 보조수단(예컨대 ADV)을 이용하여 대기업, 중기업에 대하여 카드(기업카드)를 작성해야 한다.

(2) 기업카드란 명부카드와 부문별카드를 말한다. 명부카드는 알파벳순 색인카드로 하고, 부문별카드는 경제분점(산업분류카드)의 체계적인 번호로 작성해야 한다.

(3) 농림업의 副業은 본업의 부문별카드에만 기입해야 한다.

(4) 기업카드함의 보충기입은 각각 일정한 자료에서 확인된 기업의 규모-통상 3년간 계속-를 기준으로 한다. 기업은 부과처분의 결과에 따라 그리고 보조

특히 조세행정의 연구·개발에 매우 중요한 절차가 될 수 있다.

16) 전문분야별 조사관의 협의는 조세행정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수적인 과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조세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이러한 제도가 입법의 수준에서 도입될 필요가 있다.

17) 납세자별 카드를 작성하여 개별납세자에 대한 자료와 정보가 체계적·일관성있게 유지·통제된다면 납세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납세자별 카드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세무관리가 과세공무원이 개인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자료와 정보에 의존하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이 이전되면 납세자의 관리도 단절되어 납세자를 합리적으로 관리·통제하는데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적으로는 납세신고에 따라 규모별로 분류한다. 기업의 분류시의 오류는 언제나 訂正할 수 있다.

- (5) 규모별분류를 지속하는 기업지표의 변동은 다음회의 규모별분류가 있기까지 고려되지 않는다. 그밖의 점에 변동이 있으면 카드에 계속하여 기입해야한다. 주소(주소 또는 거소)의 이전에 기초한 퇴거신고가 있는 경우, 색인카드 는 새로운 소관조세행정청에 송부하기 위하여 부과처분용서류에 첨부해야한다. 타조세행정청에서의 신규편입과 신규설립은 기업카드함에 기입되어야한다.

第33條 [콘체른 目錄] (1) 각국세청장은 제13조, 제18조 및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콘체른목록(Verzeichnis)을 작성해야한다. 콘체른목록은 각콘체른의 개요를 기재하고, A부기재란과 B부기재란으로 구분해야한다.

- (2) 지휘를 받는 기업 또는 지배기업에 대한 조사소관이 상급국세국관내(Oberfinanzbezirk)에 있는 경우, 콘체른개요는 A부기재란에 기재해야한다. 조사관할이 그밖의 국세국관내에 있는 경우, 자기의 국세국관내에 조세법상 파악되는 콘체른종속기업에 대한 개요는 B부기재란에 기재해야한다.

- (3) 고유장부를 구비한 지점에 대해서는 본점(Hauptbetrieb)의 콘체른개요중 요점을 기재해야 한다.

第34條 [콘체른 目錄의 變更 및 補充] (1) 세무서는 콘체른목록의 변경 및 보충을 필요로 하는 지식을 국세국장에게 통지해야한다.

- (2) 국세국장은 A부기재란에 변경사항 및 보충사항을 관계국세국장 및 연방국세청에게 통지하고, B부기재란에 변경사항 및 보충사항을 A부기재란에 콘체른개요를 작성하는 국세국장에게만 통지한다.

第35條 [調査實施計劃의 作成] 18) (1) 조사를 위하여 예견되는 사안은 정기적

18) 세무조사 실시계획을 사전에 작성하고 세무조사를 실행함으로써 세무조사의 예측가능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특히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의 기준과 대상을 사전에 정함으로써 대기업세무조사와 관련한 불신과 의혹을 제거하고 효과적인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본다.

인 간격을 두고, 보충할 수 있는 조사실시계획증서를 작성한다. 간격은 대기업의 경우 6개월 이상 12개월 이하이어야 한다. 조사실시계획서에는 konkrete 절차를 따라야 한다.

(2) 예정된 시기에 조사를 받지 않은 기업은 다음의 조사실시계획에 표시되어야 한다.

第36條 [年間統計] 19) (1) 기업조사과는 년간통계를 작성해야하고, 그 기업조사과는 연방재무장관이 정한 양식에 따라 상급청에 제출해야한다.

(2) 주최고조세행정청은 연방재무장관에 대하여 매년 5월 10일까지 기업조사의 작업결과를 통지한다. 연방재무장관은 그 전체작업결과에 대하여 이를 정리 요약한 간행물로 매년 공표한다.

(3) 그 통계에는 투입된 조사관의 수, 실시된 기업조사의 건수 및 기업조사전의 세액과 기업조사후에 확정력(공정력)이 발생한 세액과의 차액을 기재한다.

(4) 각 조사관에 의한 조사성과에 관한 통계수치를 기입해서는 안된다.

第37條 [企業調査記録集] (1) 조세상의, 조사기술상의, 분류에 특유한 일반경제적인 경험은 상급재무관리청에게 통지해야한다. 상급재무관청은 그 지식경험을 수집하고 이를 기업조사기록집에 이용한다.

(2) 국세청은 일반적 의의가 있는 조사상의 지식경험을 국세국장에게 통지한다.

第38條 [企業調査記録集의 項目] (1) 기업조사기록은 A부기재란과 B부기재란으로 분류한다.

(2) A부기재란은 - 두자리 수로 분류하여 - 모든 직업 및 경제부문에 관련된 조세법상, 조사기술상 및 경제상의 자료Material를 그 내용으로 한다.

(3) B부기재란은 - 경제부문의 체계분류번호(산업분류번호)에 따라 분류한다. - 각직업 및 경제부문에 관련된 조세법상, 조사기술상 및 경제상의 자료를 그

19) 세무조사과정에서 이루어진 여러가지 세무조사내용은 일정한 내용과 방법으로 정리하여 공표되어야 한다. 조세행정정보의 공개에 대한 명확한 의무규정으로 관련납세자, 조세전문가, 정책당국자 등에게 필요한 조세행정정보가 충분히 공시되도록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대한 규정이 도입되어야 한다.

내용으로 한다.

第39條 [標準率] 20) 국세국장은 기업조사의 지식경험에 기초하여 매상과 이익의 검사와 산정을 위하여 부문별 표준율을 조사한다. 이 표준율은 표준율집(Richtsatzsammlungen)에 공표한다.

第40條 [主된 場所 및 從된 場所] 각 직업 또는 경제부문의 주된 장소는 종된 장소를 특정한다. 국세국장은 당해 직업 또는 경제부문의 과세에 의의가 있는 자료(Unterlagen)를 수집하고 이를 평가해야한다. 그 평가결과는 타국세국장 및 연방국세청에게 통지한다. 주된 장소 또는 종된 장소의 소관사무의 위임을 받은 국세국장은 감가상각표의 작성에 협력한다.

第41條 [施行] 이 일반행정규칙은 연방관보에 의한 공시일일로부터 시행한다. 동일자 1978년 4월 27일부 기업조사를 위한 일반행정규칙 - (세무)기업조사규칙 - (1978년 4월 29일부 연방관보부 기록28호)는 폐지한다.

1987년 12월 17일

연방수상

베르마르토·콜

연방재무장관

슈르트벤데르크

20) 세무조사기업의 조세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당해 기업의 영업상황에 대한 여러가지 비율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표준소득을 또는 수율조사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조사를 필요시 별도로 하고 있으나 독일의 경우에는 이러한 비율조사를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조사시 작성한다. 이러한 통계자료는 각 납세자별 또는 산업별 기타 유형별 납세상황을 파악하는데 확실한 단서와 근거가 되며 조세행정관리에 있어서 납세자의 성실도를 평가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통계자료의 작성을 세무조사시 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입법수준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세무)기업조사규칙은 1987년 12월 24일부 연방관보 제241a호에 게재되고, BStBl. I 1987, 802에 있어서 공표되었다. 또 “(세무)기업조사규칙의 적용에 관한 시행통달”은 그 제22와 제23에서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세무)기업조사규칙에 관한 통달 》

22. 법률규정 또는 특별훈령과 저촉하지 않는 한, 연방에서 통일적으로 교부된 1965년 12월 23일 (세무)기업조사규칙에 관한 통달은 이후도 적용되어야한다.

舊통달의 폐지

23. 1965년 12월 30일의 시행통달(S/400-8-V A 2)은 폐지한다. (세무)기업조사의 다른 통달 또는 본통달에 저촉하는 범위에서 그 시행통달은 이미 적용될 수 없다.

〈 譯 解 後 記 〉

本書는 1993년도 시행 獨逸의 租稅基本法과 財政法院法 그리고 (稅務)企業調查規則을 原典대로 번역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註解를 달았다. 조세기본법은 재정법원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번역해야 그 본질을 이해하는데 용이하다. 한편 (稅務)企業調查規則은 별도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무기업조사규칙과 같은 문제는 國稅廳의 內部訓令으로 그칠 사안이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 이러한 執行上의 문제들도 議會의 承認을 받아 시행하고 있는 바 이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세무행정에서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稅法이 어렵다는 것은 모든 나라에 공통되는 현상이라고 한다. 公平과 效率이라는 二律背反의 目標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세법도 어렵다고 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세법이 어려운 것은 公平과 효율을 합리적으로 추구하기 위하여 어려운 것이 아니라 체계가 혼란스럽고 세법고유의 논리와 이론이 제대로 갖추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데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租稅法體系는 본질적으로 다시 짜져야 한다. 이러한 과업을 수행하는데는 실정법국가의 모범으로 불리우는 독일의 조세기본법과 재정법원법을 표본으로 삼아 구상하여 보는 것도 의미있는 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본다. 장구한 세월을 통하여 학설과 판례를 통하여 논의되고 발전되어온 독일의 조세기본법과 재정법원법은 우리나라의 조세법 이론과 체계의 연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서에서 (세무)기업조사규칙을 추가한 것도 남다른 이유가 있다. 세무행정에 있어서 適正節次는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조세입법은 대부분 과세요건 등만 의회에서 정하고 실제 납세자의 조세액결정을 좌우하는 대부분의 적정절차는 집행청에서 임의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어 조세법률주의는 형식에 그치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大陸法系 國家로서 분류된다고 주장하려면 당연히 이러한 독일의 입법행태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조세법을 전개하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은 이와 관련한 用語와 概念이 細分化되고 定立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본 독일의 조세기본법과 재정법원법 그리고 (세무)기업조사규칙을 통하여 앞으로 우리나라의 세법체계와 세법용어 그리고 제반개념이 세분화되어 정립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실정법에서 집행상의 문제에까지 자세히 규정하여 세무행정과정에서 납세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독일 의회의 세심한 입법자세는 우리나라에서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안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여러가지로 제약이 많아 충분한 번역과 주해를 하지 못하여 독자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 앞으로 계속 연구하여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로 한다.

1995년 3월

譯解者 識

韓國租稅研究所 研究委員 名單

職 位	姓 名	略 歷
所 長	方 孝 宣	韓國稅務士會 會長
研 究 委 員	郭 泰 元	西江大 教授·經博
"	金 東 建	서울大 教授·經博
"	宋 雙 鍾	서울市立大 教授·法博
"	吳 載 善	稅務大學 教授·經博
"	尹 建 永	延世大 教授·經博
"	尹 桂 燮	서울大 教授·經營博
"	李 愚 澤	漢陽大 教授·經營博
"	李 哲 松	漢陽大 教授·法博
"	李 泰 魯	서울大 教授·法博
"	鄭 泰 仁	江陵大 教授·經營博
"	崔 洸	韓國外國語大 教授·經博
"	崔 明 根	서울市立大 教授·法博
"	黃 厦 周	前 國稅審判所長
"	權 海 浩	稅務士·法博
"	金 冕 圭	稅務士
"	金 完 石	江南大 教授·法博
"	明 炯 植	稅務士·圓光大 教授·法博
"	徐 順 鍾	稅務士·法博
"	李 元 錫	稅務士
"	李 承 文	稅務士
"	李 澤 龍	稅務士·明知專門大 教授·經營博
"	張 珩 鍾	稅務士·經營博
"	趙 暎 來	稅務士·經營博
"	洪 學 杓	稅務士·建國大 教授·行政博

■ 研究叢書案內

① 資本市場 育成을 위한 租稅政策方向

宣 炳 完 1987. 3

李 愚 澤

② 特別消費稅制의 合理的 改善方向

金 完 淳 1987. 3

金 完 石

③ 租稅確定의 適正節次 保障에 관한 研究

崔 明 根 1988. 2

金 冕 圭

李 承 文

④ 附加價值稅의 政策課題와 改善方向

崔 洸 1988. 3

李 愚 澤

⑤ 租稅審判制度의 合理的 改善方案

李 哲 松 1988. 4

金 完 石

〔6〕 韓國稅制의 合理化에 관한 研究

金 東 建 外 1988. 7

〔7〕 稅務士制度의 發展方向

申 東 雲 外 1988. 10

〔8〕 附加價值稅 納付稅額計算과

課稅特例制度의 改善에 관한 研究

崔 明 根 外 1991. 11

〔9〕 土地稅制의 長期的 改編方案에 관한 研究

金 東 建 外 1993. 8

〔10〕 相續課稅의 制度改善에 관한 研究

李 鎮 淳 1994. 10

李 哲 松

■ 研究叢書案内

[11] 租稅行政의 適正節次와 合理化에 관한 研究

李 愚 澤 1995. 3

[12] 租稅制裁法制의 再整備

崔 明 根 1995. 3

① 西獨의 稅務士法에 관한 研究

李 承 文 1987. 2

② 主要國의 法人所得課稅制度

吳 赫 柱 1987. 3
李 愚 澤
李 哲 松
權 海 浩

③ 主要國의 個人所得課稅制度

吳 赫 柱 1988. 3
崔 炳 哲
李 哲 松
權 海 浩

④ 主要國의 相續課稅制度

崔 炳 哲 1989. 3
李 哲 松
權 海 浩
吳 赫 柱

■ 研究調查資料案內

5] 主要國의 消費課稅制度

金	文	守	1993. 4
崔	炳	哲	
李	哲	松	
權	海	浩	

6] 獨逸의 稅務代理制度에 관한 研究

金	完	石	1994. 10
李	鍾	永	

7] 獨逸의 租稅基本法과 財政法院法

李	愚	澤	1995. 3
張	台	柱	

調查報告書

第7輯(1995. 3)

獨逸의 租稅基本法과 財政法院法

1995年 3月 15日 印刷

1995年 3月 20日 發行

著者 李愚澤・張台柱

發行人 方孝宣

發行處 韓國稅務士會

137-07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97-16

電話(代) 587-6021

登錄: 1988年 11月 11日(바 1184)

〈非賣品〉